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35-240026-1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2년 10월 11일에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기한이 준수되었기에, 이번 획정위원회의 활동 개시는 국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달리 이번 획정위원회의 활동 역시 순탄하지는 못했습니다.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지역선거구 수,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획정기준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는데,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여 그 결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5개월여에 걸쳐 11개 시·도를 찾아가 지역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지역의 교통·문화·생활권 등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을 개선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현황 참고자료를 작성하는 등 언제라도 구체적인 획정기준이 확정되면 그 즉시 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2023년 12월에 국회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을 송부받고 곧바로 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설치된 이후 가장 먼저 제출된 획정안이었습니다.

비록 선거제도 및 지역선거구 수 등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선거구가 과거에 비해 빨리 확정되지는 못했으나, 획정안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제출됨으로써 유권자와 후보자에게 조금이나마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획정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독립적인 획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획정기준의 결정 주체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구 획정의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선거관리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큼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상당수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합니다.

획정위원회는 이번 선거구획정에서의 활동 과정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각계각층의 선거구획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관련 업무 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 협조해 주신 정당, 국회의원, 언론, 시민사회 및 행정안전부, 경찰 관계자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허철훈

일람표(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한 '535일' 간의 여정)

- 2022.9.13

- 획정위원회 사무국 설치(1단계)

- 2022. 10. 4

- 획정위원회 의원 위촉



- 2022. 10. 11.(제1차 위원회의)

- 획정위원회 출범
- 획정위원장 (송봉섭) 호선



- 현판 제막식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위촉



● 2022. 12. 20. (제2차 위원회의)

· 전임위원 경험사례 연찬회



● 2023. 1. 26. (제3차 위원회의)

·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2023. 2. 6.

·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수 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 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1.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인 2023. 3. 10.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2023. 4. 10.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3. 2. 13. (제4차 위원회의)
 -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1차)





- 2023. 3. 13. (제5차 위원회의)
 - 법정제출기한 경과에 대한 입장발표

보도자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공일자 2023. 3. 13. 총 3년 TEL. 02)3299-3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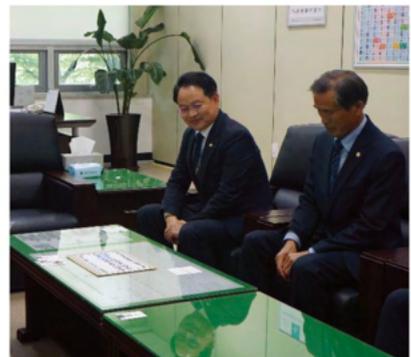
선거구획정인의 법정제출기한 경과에 대한 입장 발표 = 법률에 따른 소임 완수 못해 송구...조속한 획정안 확정 위해 노력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13일(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2023년 3월 10일)이 경과한 것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따른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 2023. 4. 5.
 - 전라남도 순천시 국회의원선거구 관련 의견서 제출



- 2023. 4. 19.
 - 강원도 춘천시 국회의원선거구 관련 의견서 제출



- 2023. 4. 21. (제6차 위원회의)
 -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2차)



- 2023. 5. 12.
 - 경상북도 지역의견 청취



● 2023. 5. 19.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견 청취



● 2023. 6. 1.

· 위원장 결위

● 2023. 6. 16.

· 인천광역시 지역의견 청취



- 2023. 6. 21. (제8차 위원회의)
 · 위원장 호선(허철훈)



- 2023. 6. 23.
 · 전라남도 지역의견 청취



- 2023. 7. 12.
 · 충청북도 지역의견 청취



- 충청남도 지역의견 청취



- 2023. 8. 22.
· 경상남도 지역의견 청취



- 2023. 8. 23.
· 부산광역시 지역의견 청취



- 2023. 9. 1.
· 경기도 북부 지역의견 청취



- 2023. 9. 8.
· 경기도 남부 지역의견 청취



- 2023. 9. 11.
· 선거구획정안 기준 확정 재촉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수 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 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재촉구

1.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월 우리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범정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2023. 9. 15.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의견 청취



- 2023. 10. 20.
· 서울특별시 지역의견 청취



- 2023. 11. 20.
· 선거구획정 기준 확정 세 번째 촉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수 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 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세 번째 촉구

1.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는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귀 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사·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2023. 12. 1.

• 국회의장 확정기준 통보

• 정당의견 청취



대한민국 국회



수신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과 유)

제 목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기준 송부

1. 귀 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출범 이후 총 세 차례(2월 6일, 9월 11일, 11월 20일)에 걸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자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하여 제시해 줄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이러한 귀 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선단체 간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 도출이 지체됨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11월 12일)이 도과함은 물론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12월 12일)을 앞두고서도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 논의



- 2023. 12. 5.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제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 고 서

2023. 12. 5.

● 2024. 2. 29.

• 정개특위 재확정 요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신자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안 재확정 요구

- 제22대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확정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4.2.29.)는 귀 위원회에서 2023.12.5. 제출한 국회의원선거구확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불입과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같은 법 제24조제2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확정안을 재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오니 2024.2.29. 16: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안 재확정 요구서, 1부.

• 국회의장 획정기준 재송부



대한민국 국회



수신자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기준 재송부

'제22대 국회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기준 재송부 공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기준 재송부 공문 1부, 끝.

• 선거구 재확정 논의



● 2024. 2. 29.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채택 제출



● 2024. 3. 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20370호) 공포



목 차

- 발간사
- 일람표(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한 '535일'간의 여정)

제1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개관

제1절 법 규정으로 보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	24
1. 획정위원회	25
2. 선거구획정기준	26
3.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절차	26
제2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 결과 요약	28
제3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주요 기록	29

제2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제1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36
1. 위원구성	36
2. 위원회의 운영	37
제2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	40
1. 사무국 운영	40
2. 사무국 역할 및 업무분장	41

제3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을 위한 준비과정

제1절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46
1.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 정비	46
2. 선거구획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47
3.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51
4. 경험사례 연찬회 실시	52
제2절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취	53
1. 공청회 개최	53
2. 지역 현지 의견청취	57
3. 정당 의견청취	63
4. 민원 등 수렴	64

제4장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
제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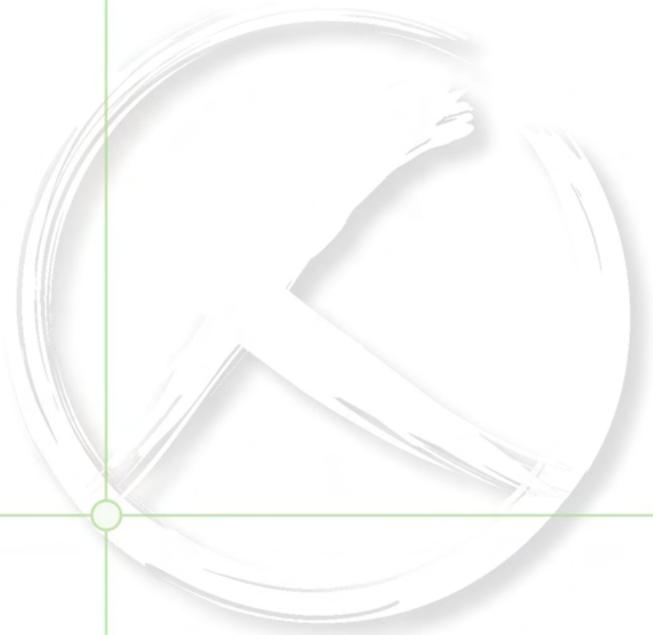
제1절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68
1. 첫 번째 촉구(2023. 2. 6.)	68
2. 두 번째 촉구(2023. 9. 11.)	69
3. 세 번째 촉구(2023. 11. 20.)	69
제2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	70
1. 선거구획정안 논의 배경	70
2. 선거구획정 기준	70
3. 인구범위 및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결정	72
4. 시·도별 선거구획정 주요 내용	74
5. 국회 및 정치권 등의 반응	78
제3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80
1.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경과	80
2.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재획정안	81
3. 지역선거구 법률안 심사	88
4.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경과조치	88

제5장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에
대한 평가

제1절 내부평가	92
제2절 외부평가	96

부 록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125
2.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	207
3. 관련 법령 및 규정	317
4. 역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기준	331
5.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및 직원 명단	339



제 1 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개관

제1절 법 규정으로 보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제2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 결과 요약

제3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주요 기록



제 1 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개관

제1절 법 규정으로 보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선거구의 획정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역 구분에 따라 그 지역의 선거인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적절한 선거구의 획정은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¹⁾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처음 국회에 설치된 이래 자문기구로 운영되어 왔고,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때에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만 있었다. 이로 인해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불합리하게 조정되는 일이 빈번하였고,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²⁾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1회에 한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수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015년 6월 19일 「공직선거법」(이하 법)이 개정되었다.

1) 헌법재판소 2004. 2. 26. 2003헌마285 결정

2) 「공직선거법」(법률 제13334호, 2015. 6.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참고

1. 획정위원회

가. 임무 및 권한

획정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운영 기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운영된다.

다. 위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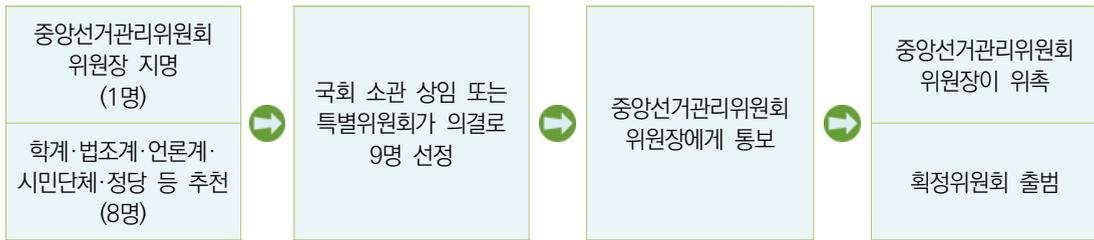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통보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획정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위원은 획정위원회 존속기간을 임기로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표 1-1〉 위원 위촉 절차



라. 지원조직

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무국 직원도 위원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 선거구획정기준

법 제25조는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를 기준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금지 원칙하에 인구범위(인구비례 2:1)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의석수 또한 필요하나 결정 주체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절차

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획정위원회는 법 제25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은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받은 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선거구법률안으로 제안한다. 이 경우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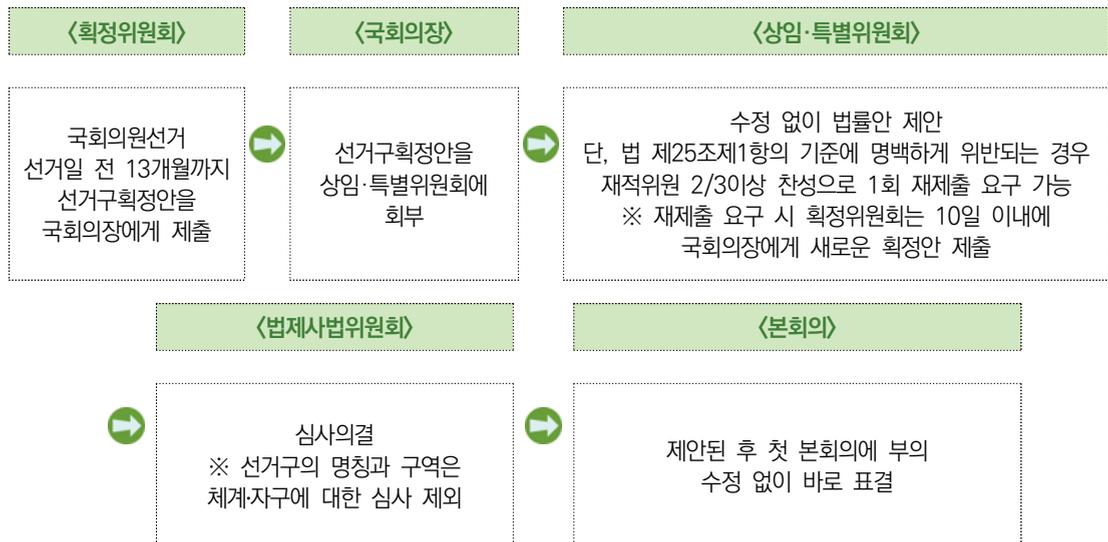
재제출 요구를 받은 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된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회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 수정 없이 표결한다.

이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포함된 선거구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획정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다.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안 마련부터 선거구 개정 법률 시행까지 일련의 선거구획정 절차는 선거일 전 1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 1-2〉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절차



제2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 결과 요약

획정위원회가 2024년 2월 29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에서 통보한 획정 기준인 ▲지역구국회의원 수 254명(제21대 대비 1명 증가), ▲인구범위(하한 136,600명, 상한 273,200명), ▲자치구 및 시 일부 분할(성동구, 양주시, 춘천시, 군산시, 순천시), ▲현행 선거구 경계 및 구역조정 최소화, ▲시·도별 의원 정수 조정(서울 1석 감소, 인천 1석 증가, 경기 1석 증가) 등을 적용하였다.

획정 결과 5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4개 선거구를 통합했다. 4개 시·도에서 구역조정이 있었고, 15개 자치구·시·군에서 경계조정이 있었다.

제3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주요 기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22년 10월 1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혁위)에서 통보받은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획정위원회가 공식출범한 제1차 위원회의(2022. 10. 11.)에서는 송봉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선거구획정 개황 보고를 통해 향후 획정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위원 모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획정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은 2022년 9월 13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3명으로 운영되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5명이 추가 되어 총 8명으로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제2차 위원회의(2022. 12. 20.)에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획정위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효과적 언론 대응을 위한 언론전담 위원으로 장선화 위원, 최준영 위원을 지정했다. 그리고, 향후 실시할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및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제3차 위원회의(2023. 1. 26.)에서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로부터 지난 선거의 선거구획정 기준일 이후 선거구별 인구·행정구역 변동 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획정위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획정위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고, 2월에 개최 예정인 공청회의 개최일시, 장소, 진행방법, 진출인 선정 대상 등을 논의하였다.

제4차 위원회의(2023. 2. 13.)에서는 정당과 학계 등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구획정 법정기한 준수를 위해 국회의 조속한 선거구획정기준 확정을 요청하였다.

획정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가며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하지 않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 제출의 법정기한(2023년 3월 10일)은 또다시 지켜지지 못했다.

이후 개최된 제5차 위원회의(2023. 3. 13.)에서는 획정안 제출 기한 경과와 관련하여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하며, 획정위원회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추가 공청회 실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제6차 위원회의(2023. 4. 21.)는 선거구획정안과 관련된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 두 번째 공청회를 확정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공청회 전 과정은 녹화되어 확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확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11개 시·도를 방문하여 총 12회에 걸쳐 지역 현지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제20대 및 제21대 확정위원회보다 의견 청취 대상과 횟수를 확대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획정방안을 청취할 수 있었다.

한편, 송봉섭 위원장이 사직원을 제출해 2023년 6월 1일자로 해촉되면서, 제7차 위원회의(2023. 6. 16.)에서는 후임 위원 위촉 및 위원장 호선 절차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앞서 실시된 경북과 전북 지역의 의견청취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3년 6월 21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철훈 사무차장을 확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제8차 위원회의(2023. 6. 21.)에서는 허철훈 위원이 신임 확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되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법정 선거사무일정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선거 제도 개편논의는 진척되지 않아 획정기준의 통보 시기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9차 위원회의(2023. 7. 21.)에서는 국회에 획정기준 통보 요청과 관련하여 여부 및 방법·시기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20대, 제21대 확정위원회의 운영과정을 살펴보면서 획정기준 미통보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제10차 위원회의(2023. 9. 8.)에서는 국민 참정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1개월 전(2023. 10. 12.)까지 선거구획정기준 등을 확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국회 정개특위에 송부할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재촉구문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9월 하순 예정되어 있던 언론전담 위원의 언론대담을 통해 전달할 확정위원회의 의견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국회는 확정위원회에서 요청한 2023년 10월 12일에도 획정기준을 통보하지 않았다. 확정 위원회는 2023년 10월 20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총 11개 시·도의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마치고, 제11차 위원회의(2023. 10. 20.)를 개최해 획정기준이 통보되지 않은 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의견 청취의 주요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 현황도 검토하였다.

제12차 위원회의(2023. 11. 17.)에서는 선거구획정기준 등 확정 세 번째 촉구문을 채택하고

지역의견청취 결과보고를 통해 시·도별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거일을 불과 134일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2023년 12월 1일자로 획정기준을 통보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달됨에 따라 획정위원회는 제13차 위원회의(2023. 11. 28.)를 개최하여 획정기준이 통보되는 경우 그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선례에 따르면 시·도별 의석수 등 국회가 통보하는 선거구획정기준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서명한 공문으로 송부해왔으므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통보하는 획정기준에 따라 획정위원회가 획정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의 타당성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획정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국민 참정권의 침해 최소화를 위해 국회의장이 통보하는 획정기준에 따라 획정안 논의를 시작하는 데 찬성하였고, 추가로 법정 절차인 국회의석정당의 의견청취 방안을 논의하였다.

2023년 12월 1일 오전 9시경,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획정위원회는 제14차 위원회의(2023. 12. 1.)를 개최하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7개 정당을 대상으로 선거구획정에 대한 정당의견을 청취하였다.

정당의견 청취를 마친 후 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기준을 바탕으로 시·도별 의원 정수 등 구체적인 획정기준을 결정하였고 주말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제15차 위원회의(2023. 12. 2.)와 제16차 위원회의(2023. 12. 3.)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제17차 위원회의(2023. 12. 4.)에서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채택하여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출시한인 2023년 12월 5일에 제출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제약적인 조건하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향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없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선거관리사무가 진행되었다.

이후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미흡,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내용 미반영 등 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년 2월 29일에 선거구획정안 재제출을 요구하였고, 연이어 국회의장으로부터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에 따른 새로운 획정기준이 통보되었다.

이에 획정위원회는 신속히 제19차 위원회의(2024. 2. 29.)를 개최하여 획정안 재제출 여부 등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획정위원회는 앞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지만, 법 제24조의2 제3항제4항에 따라 국회의 재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획정위원회에는 선거구획정안을 재제출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고 정치권에서 합의하여 통보한 획정기준을 반영하여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심도 있는 검토·분석과 치열한 논의 끝에 국회의 획정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채택하였고, 같은 날 국회의장에게 다시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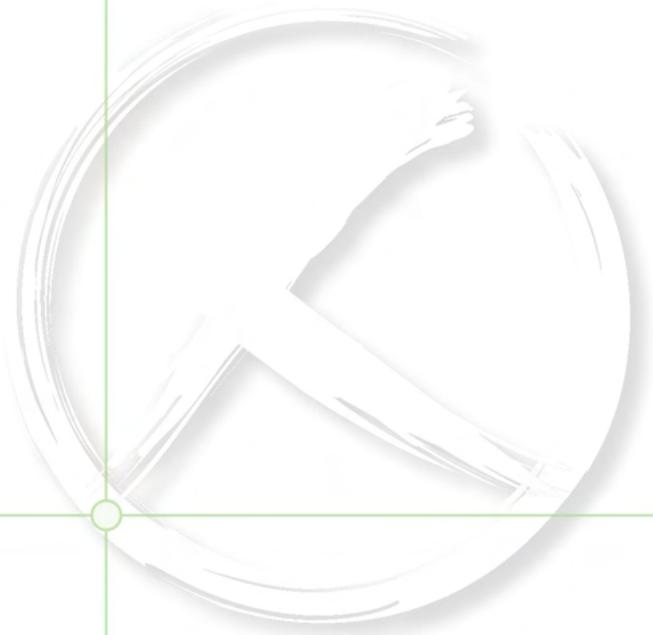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2024년 2월 29일 저녁 정개특위에서 심사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의결되었고, 같은 날 법사위의 심사·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24년 3월 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370호)이 공포되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획정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었다.

〈표 1-3〉 선거구획정 주요일지

일 자	주요 내용
2022. 09. 13.	• 사무국 설치(1단계) : 사무국장 및 기획·운영팀 총 3명
2022. 09. 29.	• 정개특위, 위원 위촉 대상자 통보
2022. 10. 10.	• 획정위원회 위원 위촉(9명)
2022. 10. 11. (제1차 위원회의)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획정위원회 출범 • 위원장 호선 : 송봉섭 • 선거구획정 개황 보고
2023. 01. 01.	• 사무국 설치(2단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8명
2023. 01. 26. (제3차 위원회의)	• 행정안전부의 인구·행정구역 현황 보고
2023. 02. 06.	•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 첨부
2023. 02. 13. (제4차 위원회의)	•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제1차)
2023. 03. 13. (제5차 위원회의)	•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 경과에 대한 입장 발표
2023. 3월~5월	• 선거구획정 관련 현지실사
2023. 04. 21. (제6차 위원회의)	•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제2차)
2023. 05. 12.	• 경상북도 지역의견 청취

일 자	주요 내용
2023. 05. 19.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견 청취
2023. 06. 01.	• 위원장 결위(해촉 통지)
2023. 06. 16.	• 인천광역시 지역의견 청취
2023. 06. 23.	• 전라남도 지역의견 청취
2023. 06. 21. (제8차 위원회의)	• 위원장 호선 : 허철훈
2023. 07. 12.	• 충청북도 지역의견 청취 • 충청남도 지역의견 청취
2023. 08. 22.	• 경상남도 지역의견 청취
2023. 08. 23.	• 부산광역시 지역의견 청취
2023. 09. 01.	• 경기도(북부) 지역의견 청취
2023. 09. 08.	• 경기도(남부) 지역의견 청취
2023. 09. 11.	•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재촉구」
2023. 09. 15.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의견 청취
2023. 10. 20.	• 서울특별시 지역의견 청취
2023. 11. 20.	•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세 번째 촉구」
2023. 12. 01.	• 국회의장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기준」 통보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의견청취(제14차 위원회의)
2023. 12. 02. (제15차 위원회의)	•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2023. 12. 03. (제16차 위원회의)	•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2023. 12. 04. (제17차 위원회의)	• 선거구획정보고서 채택
2024. 02. 06. (제18차 위원회의)	• 선거구획정안 관련 논의
2024. 02. 29.	• 정개특위 「재획정 요구」 • 국회의장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기준」 재송부(2. 29. 16:00까지 제출) • 새로운 선거구획정보고서 채택·제출(제19차 위원회의) • 국회 본회의 선거구법률안 통과
2024. 03. 0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370호) 공포



제 2 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제1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



제 2 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제1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1. 위원구성

2022년 9월 29일 국회 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 통보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정 획정위원회 설치시기에 맞춰 2022년 10월 10일자로 국회에서 통보받은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후 2023년 6월 1일에 사퇴한 송봉섭 위원의 후임 위원인 허철훈 위원은 2023년 6월 21일 위촉되었다.

과거와 달리 제22대 획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제때에 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이 이루어져 법정 설치시한에 맞춰 구성되었고, 위원의 추천기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표 2-1〉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경 력	위촉일자 (해촉일자)	비 고
위원장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2023. 06. 21.	송봉섭 위원 후임
위 원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 10. 10.	
위 원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2022. 10. 10.	
위 원	장선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 인문사회교양학부 강사	2022. 10. 10.	
위 원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2022. 10. 10.	
위 원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2. 10. 10.	
위 원	최준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2. 10. 10.	
위 원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2. 10. 10.	
위 원	홍재우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2022. 10. 10.	
위원장	송봉섭	(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2022. 10. 10. (2023. 06. 01.)	사퇴

2. 위원회의 운영

가. 회의소집

위원회의는 확정위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매회의 산회 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다음 회의 일정을 조정하였다.

위원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공문으로 통지하되, 위원 개인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하였다. 다만, 선거구획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15차 회의부터는 공문을 생략하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만 안내하였다.

나. 의결

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선거구 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는 법 제24조제1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합의로 처리하였다.

다. 의사 기록

위원회의 의사는 대한속기협회 소속 속기사를 고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속기록을 첨부한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였다.

라. 언론전담제 운영

일관성 있는 언론 대응을 위해 위원 간 합의를 거쳐 장선화 위원과 최준영 위원을 언론전담 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있을 시에는 언론전담 위원을 통해 확정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언론전담제 운영에 따른 대언론활동 (좌 '23.09.20. 동아일보, 우 '23.11.09. SBS)

마. 위원회의 개최 경과

2022년 10월 11일 제1차 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한 제19차 위원회의까지 총 19회의 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였으나 2차례의 공청회와 정당의견청취의 일부분은 공개회의로 진행하였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위원회의에 최대한 많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시간을 조정해 제13차 위원회의는 7시 30분에 개최하기도 하였고, 본격적인 획정안 논의가 이어진 제15차 위원회의부터는 주말과 평일 저녁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표 2-2〉 역대 위원회의 개최 현황

(단위: 회)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6	14	9	9	30	28	19

〈표 2-3〉 위원회의 운영 현황

차수	운영일시	주요 안건
1	2022. 10. 11. 10:00~10:48	위원장 호선 및 선거구획정 개황 보고
2	2022. 12. 20. 16:03~16:48	획정위 운영규정 의결, 회의진행안 논의
3	2023. 01. 26. 14:00~15:05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획정위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공청회 진행방안 논의
4	2023. 02. 13. 14:00~16:58	공청회 개최(제1차)
5	2023. 03. 13. 16:30~18:00	위원회의 운영방안 논의
6	2023. 04. 21. 15:00~17:50	공청회 개최(제2차)
7	2023. 06. 16. 15:40~16:22	위원장 결위에 따른 보고
8	2023. 06. 21. 11:11~11:36	위원장 호선
9	2023. 07. 21. 14:33~15:41	위원회의 운영방안 논의
10	2023. 09. 08. 16:00~17:50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재촉구문안 의결
11	2023. 10. 20. 15:47~17:25	위원회의 운영방안 논의
12	2023. 11. 17. 14:00~17:34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문안 의결, 지역의견 청취 결과 논의
13	2023. 11. 28. 07:30~09:02	정당의견 청취 방안 결정
14	2023. 12. 01. 15:00~23:10	정당의견 청취, 선거구획정 기준 등 논의
15	2023. 12. 02. 10:00~19:36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16	2023. 12. 03. 10:00~14:11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17	2023. 12. 04. 17:00~18:02	선거구획정보고서 채택
18	2024. 02. 06. 17:12~17:29	선거구획정안 관련 논의
19	2024. 02. 29. 14:37~17:05	새로운 선거구획정보고서 채택

제2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

1. 사무국 운영

가. 1단계

2022년 9월 13일부터 연말까지 3명으로 구성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사무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이 겸임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2명이 기획운영팀으로 배치되어 사무실 설비 및 예산확보,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수집 등 획정위원회 본격적인 출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2단계

2023년 1월 1일부터 획정위원회 존속기한까지 선거구획정사무를 전담할 직원으로 구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사무국에는 기획운영팀, 관리팀을 두었으며,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팀원 5명을 두어 총 8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2-4〉 사무국 직원 현황

(2024. 3. 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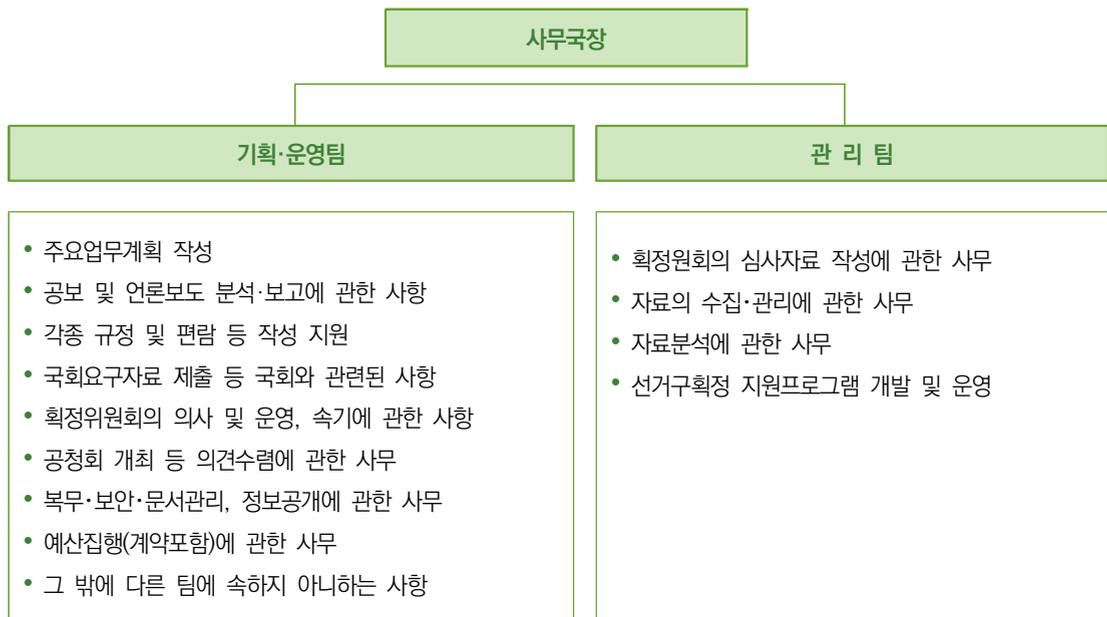
직 위	성 명	직 급	비 고
사무국장	조봉기	부이사관	
기획·운영팀장	조준기	서기관	
기획·운영팀	문주희	행정주사	
기획·운영팀	서은주	행정주사	
기획·운영팀	최일식	행정주사	
관리팀장	구원우	행정사무관	
관 리 팀	강민경	행정주사	
관 리 팀	김재황	행정주사	

2. 사무국 역할 및 업무분장

가. 사무국 직무

사무국은 획정위원회 회의 진행 보좌, 회의결과 정리, 선거구획정을 위한 참고자료 작성 등 획정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였다. 사무국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2-5〉 사무국 사무분장



나. 사무국 운영

1) 권한과 책임의 배분

획정위원회 사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을 제정하였다.

획정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에 관한 기본계획 등은 위원장 결재로 하고, 그 밖에 획정위원회 운영 지원 등 일반적인 사항은 사무국장과 팀장을 전결권자로 하였다.

2) 각종 민원 대응 및 청사방호·보안 관리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등의 집단민원·항의방문 등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무실 출입 통제 및 문서보안 강화로 각종 사건·사고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각종 민원 대응 요령 및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민원인 등 현장 방문 등 각종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시위·집회자 등의 소란·난동행위에 대비하여 관악소방서, 관악경찰서, 보안업체 담당자와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1년 이상의 획정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제 3 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을 위한 준비과정

제1절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제2절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취



제 3 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을 위한 준비과정

제1절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획정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선거구획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선거구획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선거제 개편 논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국회의 선거구획정 기준 결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고 선거구획정 기준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1.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 정비

획정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법은 획정위원회의 지위, 위원 구성 방법,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획정위원회 및 지원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인 획정위 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법과 규칙의 범위 안에서 획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획정위원회는 제1차 위원회의(2022. 10. 11.)에서 위원장 호선 후 선거구획정 기본 개황 보고를 통해 향후 획정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논의하며 기반을 다졌다. 제2차 위원회의(2022. 12. 20.)에서는 위원장 표결권, 위원회의 비공개 원칙, 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규정한 위원윤리 강령 등이 포함된 획정위 운영규정을 의결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2023. 1. 16.)로 획정위 규칙이 개정되면서 위원 안전검토수당 지급기준이 신설되고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획정위원회 성격을 고려하여 의안 등재방식도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제3차 위원회의(2023. 1. 26.)에서 안전검토수당과 관련된 획정위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일련번호를 기존 연도별 부여방식에서 누년 부여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3. 1. 20. 공포) 주요내용〉

- 위원이 획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획정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일비 지급기준 개정(제6조제1항)
- 위원의 안전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검토수당 지급기준 신설(제6조제2항)
- 획정위원회의 의결사항 일련번호를 누년으로 부여(제9조제1항)

2. 선거구획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인구수 및 행정구역 현황 정비

법은 선거구획정의 인구기준을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의 인구기준일은 2023년 1월 31일이었다.

획정위원회는 제3차 위원회의(2023. 1. 26.) 시 선거구획정 사전 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행정구역과 인구수 자료 및 제21대 선거구획정의 인구기준일(2019. 1. 31.) 이후 인구변동과 행정구역 변경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보고에 따르면, 선거구별 인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기준일인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5,182만 6,287명에서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5,143만 9,038명으로 약 38만 7,249명이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세종, 경기, 제주 등 4개 시·도의 인구가 증가했고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는 인구가 감소했다. 253개 선거구 중에서 82개 선거구에서 인구가 증가하였고, 171개 선거구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선거구별 행정구역은 2020년 3월 11일 법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43개 선거구에서 52건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2023년 7월 1일자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으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었다.

획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구역표와 선거구별 인구수 자료를 정비한 후 인구기준일인 2023년 1월 31일 현재 읍·면·동별 인구자료를 다시 제출받았다. 또한, 인구기준일 이후 변경된 행정구역 현황 자료도 수시로 파악하여 선거구획정안 작성 시 변경된 행정구역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나. 평균인구수 기준 인구범위 불부합 선거구 현황 작성·제공

2014년 헌법재판소는 전국 평균인구수(전국인구수/지역선거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적용한 인구범위를 설정한 바 있다. 법 제25조제1항은 선거구획정의 인구범위를 인구 비례 2:1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구기준 설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지난 제20대·제21대 획정위원회는 정치권에서 합의하여 설정한 인구범위를 선거구획정 기준으로 삼았고, 이번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인구범위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서 획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하여 전국 평균인구수에 상하 33⅓%를 적용한 인구범위를 우선 설정하고 평균인구수 기준 인구범위 불부합 현황을 작성하였다.

인구범위 불부합 선거구는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가 18개, 하한에 미달한 선거구가 11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선거구가 1개로 나타났다.

이렇게 작성된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은 국회와 언론사에 제공하여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구체적 지역을 알리고 국회와 해당 지역주민 등이 선거구획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위원회의와 각종 의견 청취 시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3-1〉 평균 및 상·하한 인구수

(인구기준일: 2023. 1. 31.)

총 인구수	지역구수	평균인구수	상한인구수	하한인구수
51,430,018	253	203,281	271,042	135,521

다. 지방자치단체 현황 참고자료 작성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 자료가 필수적이었다. 획정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자치구·시·군별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선거구획정 시 고려해야 할 획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과 도시 및 선거구 연혁, 인구변동 추이 등 선거구획정 시 참고할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현황 참고자료를 작성했다.

자료 작성을 위해서 해당 지역의 통계자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공식적으로 발표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조사하는 작업이 선행되었고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사무국 전 직원이 시·도 및 조사 항목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현황 참고자료는 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며, 회의 시 획정위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라. 현지실사

불부합선거구 및 특례적용 선거구³⁾ 등 획정 관련 현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인터넷 및 문헌 조사 외에도 현지실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선거구 경계지역에 위치한 읍·면·동 간 생활권 분리 현황, 인근 행정구역과 문화적 동질성, 교통 등 교류 여건, 행정구역 내 선거구를 구분할 수 있는 자연지물 등 지리적 경계 유무 등을 확인하였다.

당초 2개월여(2023년 3월~5월)에 걸쳐 현지실사를 실시하였으나, 2023년 12월 5일 선거구 획정안 제출 이후 국회 논의 진행 상황과 지역 여론 등을 파악하면서 2024년 1월에 현지실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현지실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현황 참고자료에 반영하여 선거구획정안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위원회의에서 지역 사정에 대한 위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선거구획정안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표 3-2〉 현지 실사 주요 수집 요목

구 분	세부내역
지리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하천, 지세 등 지리적 여건 • 산, 하천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 간 왕래 여부 등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등 주요 대중교통 노선 • 고속도로, 철도 등 광역 교통망을 활용한 인근 지역으로 이동 방법 등
생활문화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구도심 등 도심 역할을 하는 지역 파악 • 청사 소재지 등 주요 거점 지역 확인 • 도심 형성에 따른 지역 간 문화차이 여부 • 지역의 발전 상황(읍→동으로 변경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 변천 내역 및 향후 변경 예정상황 등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부칙으로 결정된 지역은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기 화성시 3곳이다.

마. 해외사례 연구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인구격차는 법 제25조제2항의 “인구범위(인구비례 2:1)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의 충족을 어렵게 한다. 이에 선거구획정 시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조사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국

- 650개 소선거구(하원),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년을 주기로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하원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왕의 재가를 받아 확정
- 선거구획정안 보고서 마련 전 공개협의 3회 실시
- 선거구당 면적은 13,000km² 이내로 제한하고 일부지역에 대해 인구기준 적용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
 - (선거권자수) 전체 선거권자 수를 선거구 수로 나눈 평균선거권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선거구당 선거권자 수는 전국 평균선거권자수(선거인 할당량)의 ±5% 이내여야 함.
 - (예외적용) ①보호선거구[인구수가 적은 섬·제도로 의회선거구법(1986)에 명시]이거나 ②선거구 면적이 12,000km²를 초과하면서 획정위원회가 선거인 허용범위 준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덴마크

- 총 179석을 10개 대선선거구(135석), 전국 단일선거구(40석), 2개 소선거구(4석, 각 2석)로 나눔
- 의석 할당 시 각 선거구 인구수, 직전 선거의 선거권자 수, 선거구면적(km²)×20의 합산 값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의석을 배분(최대잔여방식)

3) 노르웨이

- 총 169석을 19개 중대선거구로 나눔

- 의석 할당 시 선거일로부터 2년 전 연말 인구수와 선거구 면적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합산하여 기준을 산정
 - 기준값: [선거구 면적(km²)×1.8]+[선거구 인구수]
 - 기준값을 1,3,5,7..로 나누어 몫이 큰 선거구 순으로 배분(생-라제 방식)

4) 캐나다

- 338개 소선거구(하원),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0년 주기의 인구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선거구 간 인구가 비슷하도록 선거구를 획정
- 각 주의 인구수를 각 주에 할당된 하원의원수로 나누어 '주별 기준수'를 산출하고 '주별 기준수' 상하 ±25%(1.67:1)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
 - ※ 3개 준주(Northwest Territories, Yukon, Nunavut)의 경우 면적과 원주민대표성을 고려하여 선거구 기준수에도 불구하고 1개의 선거구로 구성
- 선거구 결정 시 주 내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 선거구의 역사적 형태 및 인구희박지역, 농촌 또는 북쪽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선거구로서 관리가 가능한 규모인지를 고려(선거구획정조정법 제15조)

3.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획정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구획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에 관계되는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선거구획정 기준에 해당하는 인구, 행정구역 등 기초자료 제공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선거구획정 관련 집단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관악경찰서, 관악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4. 경험사례 연찬회 실시

2022년 12월 20일 제2차 위원회의 종료 이후 제21대 획정위원회 위원과의 경험사례를 공유하는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연찬회에는 제21대 획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지병근(조선대 교수)·조숙현(변호사) 전(前) 위원이 참석하여 선거구획정안 논의 시 고려사항과 제21대 획정위원회의 획정안 재제출 과정에 대한 경험사례를 발표하였고, 이후 전·현 위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날 지병근 전(前) 획정위원은 ‘영국·미국의 선거구획정의 사례를 통해 선거구획정에 대한 초안 제출의 중요성 및 다수의 공청회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안에 반영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시도별 지역의견 청취에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조숙현 전(前) 획정위원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제출(2020. 3. 3.)하게 된 과정과 제출 이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통보하여 재제출을 하게 된 과정을 생생하게 발표함으로써 긴박했던 제21대 선거구획정의 일련의 과정을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획정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선거구획정안 논의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경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구획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제22대 획정위원회의 사무국이 본격적으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1월 5일 전임직원을 초청하여 경험사례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제20대 획정위원회 사무국의 기획팀장(최관용 부이사관), 제21대 획정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주무관(곽진경 사무관)을 경험사례 발표자로 초청하여 업무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 선거구 자료 수집·분석 및 획정안 자료 작성, 언론관계자 대응 방법, 집단민원 대처요령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전임 위원 및 직원 경험사례 연찬회

제2절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취

획정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당,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2회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획정위원이 11개 시·도를 방문하여 선거구획정을 위한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선거구 획정 기준이 송부(1차, 2023. 12. 1.)된 후 법 제24조제10항에 따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또한, 획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유의견 게시판을 개설하고 누구든지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방문·전화·국민신문고·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된 민원은 모두 위원회의에 보고되었다.

1. 공청회 개최

가. 제1차 공청회

선거구획정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획정안 마련에 반영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진술인은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국회에 의석을 가진 5개 정당과 대한지리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에서 전문가 각 1명씩을 추천받기로 결정하였다.

공청회는 총 9명의 진술인이 참석하여 각 10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한 후 위원과 진술인 간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 관련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획정위원회의의 권한과 역할, 적극적 의견수렴,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고려방안 등이 주로 제시되면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공청회가 선거구획정안 제출 법정기한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개최된 만큼, 위원장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 개최 사실은 보도자료, 국회 구내방송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공청회의 전 과정도 국회방송(NATV)를 통하여 생중계하였으며, 획정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공청회 전체 영상을 공개하여 가급적 많은 국민이 선거구획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제1차 공청회 (2023. 2. 13.)

〈표 3-3〉 제1차 공청회 주요 진술내용

추 천	진술인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김진영 (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 대표성 확대 및 입법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의원정수 및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나 국민적 공감대 전제 소선거구, 중대선거구는 각각 장단점 존재. 현행 제도하에서 개선방안 마련하는 것이 수용성 측면에서 바람직. 다만, 중대선거구 도입 시 동일 선거구 내 복수 공천 금지 조항은 필수적 선거구획정 시 농산어촌에 대한 고려는 단순한 지역 안배 차원을 넘어 적극적 검토가 필요
국민의힘	김준석 (동국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 현상 유지 선호 경향이 있고, 선거구획정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획정위는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고민 필요 획정위는 국회와 정치권, 시민사회, 일반 대중 등 여러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 수행 필요 선관위 지원 인력 외 획정위 상근 인력 및 한시적 전문 인력 보강필요 회의 일정·의제·내용 등 충분한 공개 필요
정의당	김준우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 선거제 개선 논의와 별도로 획정위는 법정제출시한 준수 위한 노력 필요 인구비례기준(2:1) 및 사도별 의원정수 배장주체가 법상 불명확하므로 획정위가 자체 기준을 제시하되, 그 근거와 논의과정 공개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금지를 전제로 획정안을 제출하고, 불가피하게 지역구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다면 국회에 적극 의견 개진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는 중요한 가치이나, 표의 등가성 범위인 2:1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며, 지역 대표성 보장 시에는 비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입법적 장치 동반 필요

추천	진술인	주요내용
기본소득당	오준호 (정책연구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제 개혁 방안으로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및 완전 연동형 비례제로 전환, 의원정수 확대, 의석 배분 최소기준(봉쇄조항) 완화 및 정당연합명부제 도입, 민주주의 기본소득 도입 제시 •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획정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획정위를 상설화하거나 시·도별 의원정수를 획정위에 일임하는 등 획정위 권한 강화 및 독립성 실질화 필요
시대전환	유명종 (정책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도과하면 자동 발효되는 제도 도입 필요 • 의원정수를 인구별·선거구별로 연동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인구 하한 미달 지역 의석 보존 방안, 의원정수를 확대하되 의원실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여 저항을 줄이는 방안 등 제안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2:1, 권역별비례대표, 명부형비례대표, 대선구제 등 제시
대한지리학회	지상현 (경희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비수도권의 의석수 불균형 문제,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는 '아래로부터의 조정방식'과 시도별 의원정수에 따라 새롭게 정하는 '위로부터의 방식' 중 선택 등 고민 필요 • 지속가능한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지리적 요건, 생활권 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그 대안으로 인구비례는 광역자치체 단위로 맞추고, 하위단계에서는 조금 완화하는 방안 제안 • 선거구획정 결과를 지도 등 공간모뎀 형태의 DB로 제공 필요
한국공법학회	강승식 (원광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획정 인적 기준을 현행처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 필요 • 지역대표성 보안을 위해서는 선거구의 조밀성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공개하고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 •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해 선거구의 평균 면적을 크게 초과한 선거구에 대해서는 인구기준 적용 완화 필요. 현재가 이러한 농어촌특별선거구에 대해서도 평등선거 원칙을 관철할지는 미지수
한국정치학회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선거구획정 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조화 방안 고찰 필요 • 획정위 활동 및 획정안(잠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한국행정학회	김동욱 (서울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가 지역선거구 총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 적용 선거구 범위에 대해 조속한 확정 필요 • 인구 기준을 유권자수로 적용하는 등 농산어촌 배려가 필요하고, 현행 선거구의 개편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획정위원 전원이 세종-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중심도시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필요 • 획정위가 법적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인력 등의 넉넉한 배치 필요

나. 제2차 공청회

선거구획정안의 법정 제출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국회가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통보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하고 관련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2023년 4월 21일 획정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하는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의를 통해 진술인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기로 결정하였고, 시민단체는 제안되는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각 2명씩의 진술인을 추천받았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각 1명씩 진술인을 추천받아 총 6명의 진술인이 공청회에 참석하였다.

진행 방식은 제1차 공청회와 동일하게 모든 진술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과 진술인 간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획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청회 전 과정을 녹화한 영상도 게시하였다.

진술인들은 반복적인 선거구획정 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획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면적이나 유권자수를 선거구획정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획정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구획정안 제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며 국회에 선거구획정 기준의 조속한 통보를 재요청하기도 하였다.



▲ 제2차 공청회 (2023. 4. 21.)

〈표 3-4〉 제2차 공청회 주요 진술내용

추천	진술인	주요내용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	윤 광 일 (숙명여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에도 선거 직전에 선거제 개편 및 획정안 제출 가능성이 큼. 획정위 차원의 대국민 여론 형성 노력 필요 과거 획정위 회의록 회람 등 경험 공유 및 쟁점 지역 방문 등 필요 현지실사, 지역·정당 의견 청취 확대, 소위원회 활동 활성화 필요

추천	진술인	주요내용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	이재욱 (한국외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별 의석수 불균형, 획정 지연,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과잉분할에 따른 게리맨더링 문제 반복 제기 시·도별 의석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나, 단기간에 어렵다면 획정위와 국회 간 소통창구 마련, 시민사회·유권자 의견 개진 통로 확대 등 필요 국도의 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을 근거로 농산어촌은 인구 외 면적 등 고려한 획정 필요, 유권자수 기준 획정 방안도 고려
범시민 사회단체연합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적인 안이 아닌 실현 가능하면서 바람직한 안을 찾는 측면에서 볼 때 전면적 소선거구제, 전면적 중대선거구제는 부적절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한 안은 도농복합형 선거제이고, 80~100만 대도시 대상 4~5인 이상 선출, 연기명 투표 채택 바람직
	정경모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의 등가성 보장, 승자독식 기득권 해소, 지역 일당 체제 해소, 정당 공천에 유권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선거제 개선 필요 80만 이상 도시는 4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채택, 의원정수 증원이 어려운 현실 고려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폐쇄형 명부 바람직
대한변호사협회	송혜미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 사표 축소, 유권자 의사 왜곡 방지, 책임 정당정치 제도화 가능, 민주적 책임성 향상 및 지역주의 완화 기여 등의 장점이 있음. 다만, 초과의석 발생에 따른 총 의석수 변동 문제가 쟁점
한국 지방자치학회	이석환 (한양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법 제25조제2항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볼 때 인구수 기준은 지역대표성 및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 등 다른 기준에 우선 투표가치 평등 측면에서 인구수보다는 유권자수가 타당해 보이므로 사회적 합의 필요 제20대·제21대 국선 선거구는 광역자치단체별 과대 또는 과소 대표 문제 발생, 향후 획정 전 사도별 의석할당절차 법제화 필요 면적을 획정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안 고려 필요

2. 지역 현지 의견청취

획정위원회는 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자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11개 시·도를 방문하여 12회에 걸쳐 지역 현지 의견을 청취하였다.

제20대, 제21대 획정위원회가 7개 도(道) 지역을 10여 일에 걸쳐 방문하고 지역 현지 의견을 수렴한 것과 달리, 2023년 1월 31일 현재 평균인구수 기준 인구범위를 벗어나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거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1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를 대상으로 총 6개월간 지역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지난 획정위원회에 비해 지역 의견청취 대상과 횟수를 확대한 것으로 인구범위 불부합 선거구 수가 많은 경기도는 북부·남부지역으로 나누어 지역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급적 많은 획정위원이 직접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매월 2개 시·도를 방문하였고, 획정위원에게 인구수 및 행정구역, 현행 지역선거구 등의 기본현황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선거구획정 관련 지역 현안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사전 제공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견 청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지역의견 청취 자리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시·도당,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역을 대표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3곳)에서 추천한 각 1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였다.

지역의견 청취는 참석위원 중 연장자가 진행하였고, 모든 진술인의 의견 발표 후 위원과 진술인 간의 질의·응답 순서로 이뤄졌으며, 참석한 방청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부여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속기사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특히, 진술인에게 선거제 개편이나 선거구획정 제도 개선 위주의 의견 진술이 되지 않도록 발표 준비를 요청하고 평균인구수 기준 인구범위 불부합 선거구 현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구역표, 획정위원회 백서 등의 자료를 사전 제공하여 지역 사정에 근거한 구체적인 선거구획정안이 제안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인구범위 불부합 해소를 위해 전북·경북 등에서는 구역조정 방안이, 서울·경기 등에서는 경계 조정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한편, 강원·전북에서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한 특례선거구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이와 관련한 다양한 획정안이 제안되었다.

이후 위원회의에서는 지역의견 청취에서 제안된 획정안을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안 논의가 이뤄졌고,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 중 지역에서 구체적 획정안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자체 조정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의견이 선거구획정안 논의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 지역 의견청취 (2023. 5월 ~ 10월)

〈표 3-5〉 지역 의견청취 실시 현황

지 역	일 시	장 소	참석위원	
경북	2023.05.12.(금) 14:00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강당	장선화, 정상우, 조진만, 홍재우	
전북	2023.05.19.(금) 13:00	전라북도청 중회의실	박재윤, 임부영, 정상우, 조진만, 최준영, 최현선, 홍재우	
인천	2023.06.16.(금) 14:00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	박재윤, 임부영, 장선화, 조진만, 최준영, 최현선, 홍재우	
전남	2023.06.23.(금) 13:00	전남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컨벤션홀	임부영, 장선화, 정상우, 최준영, 홍재우	
충북	2023.07.12.(수) 10:00	세종시티 오송호텔 대회의실	박재윤, 임부영, 장선화, 정상우, 조진만, 최준영, 최현선, 홍재우	
충남	2023.07.12.(수) 14:00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	박재윤, 임부영, 장선화, 정상우, 조진만, 최준영, 최현선, 홍재우	
경남	2023.08.22.(화) 14:00	경상남도청 본관 대회의실	임부영, 장선화, 정상우, 조진만, 최준영, 최현선, 홍재우	
부산	2023.08.23.(수) 10:00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제1강의실	임부영, 장선화, 정상우, 최준영, 최현선, 홍재우	
경기	북부	2023.09.01.(금) 13:00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	박재윤, 임부영, 장선화, 정상우, 조진만, 최준영, 최현선, 홍재우
	남부	2023.09.08.(금) 14:00	선거연수원 별관동 다목적실	임부영, 장선화, 정상우, 조진만, 최준영, 최현선, 홍재우
강원	2023.09.15.(금) 13:00	강원연구원 대회의실	임부영, 최준영, 홍재우	
서울	2023.10.20.(금) 14:00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위원회의실	박재윤, 임부영, 장선화, 조진만, 최준영, 홍재우	

제3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을 위한 준비과정

〈표 3-6〉 지역 의견청취 진술인 명단

지 역	구 분	추 천	소 속	직 위	성 명
경북	정 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임미애
		정의당	정의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이승열
	시민단체	대구경북기자협회	영남일보	기자	민경석
		대한지방자치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백석기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조영창

지역	구분	추천	소속	직위	성명
전북	정당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의회	의원	한정수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북도당	기획과장	한영균
		정의당	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김민아
		시대전환	국민주권, 정치개혁 행동연대	상임대표	김용채
		진보당	진보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전권희
	시민단체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두세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	김영기
인천	정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정인갑
		국민의힘	국민의힘 인천시당	조직팀장	이명원
		정의당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박병규
	시민단체	인천경기기자협회	인천일보	부국장	남창섭
		인천YMCA	인천YMCA	사무처장	차성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전남	정당	더불어민주당	조선대학교	교수	지병근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남도당	조직과장	나정훈
		정의당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박명기
		진보당	진보당 전남도당	총선특위위원장	김선동
	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순천대학교	교수	김선명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남협의회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공동대표	송영종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강도용
충북	정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주시상당구 지역위원장	이강일
		국민의힘	국민의힘 충북도당	조직팀장	박두용
		정의당	정의당 충북도당	조직국장	박노일
		진보당	진보당 충북도당	청주지역위원장	이명주
	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중원대학교	교수	한형서
	시민단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	정상호

지역	구분	추천	소속	직위	성명
충남	정당	더불어민주당	선문대학교	교수	윤 황
		국민의힘	씨엘미디어 한민리서치	대표	유창림
		정의당	정의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유미경
		진보당	진보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김용자
	시민단체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S대치영어학원	원장	이종찬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윤권중
경남	정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	이흥석
		국민의힘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최낙범
		정의당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임동선
		진보당	진보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조용한
	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창원대학교	교수	송광태
	시민단체	경남시민주권연합	경남시민주권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진철
		지방분권경남연대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	강재규
부산	정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수석대변인	최형욱
		국민의힘	국민의힘 부산시당	조직과장	강영완
		정의당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이성한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부산시당	위원장	홍지수
		진보당	진보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	김병규
	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신라대학교	교수	박재욱
	시민단체	21세기정치학회	동서대학교	교수	이성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도한영
경기 북부	정당	더불어민주당	전략그룹 나무	책임 컨설턴트	강원구
		국민의힘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처장	이준호
		정의당	정의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조윤민(서면)
		진보당	진보당 경기도당	부사무처장	박승하

지 역	구 분	추 천	소 속	직 위	성 명	
강원	학 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신한대학교	교수	장인봉	
		시민단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한국전문기자협회 경기북부협회		한국전문기자협회 경기북부협회	자문위원	류재수	
	정 당	더불어민주당	전략그룹 나무	책임 컨설턴트	강원구	
		국민의힘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처장	이준호	
		정의당	정의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조윤민(서면)	
		진보당	진보당 경기도당	부사무처장	박승하	
	학 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성결대학교	교수	임정빈	
		시민단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프론티어문화예술단	회장	전애리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	유병욱	
	인천경기기자협회		경기일보	부국장	김재민	
	강원	정 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대변인	허소영
			국민의힘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대변인	한중일
			정의당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사무처장	이호성
학 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이훈래(서면)	
시민단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윤도현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고문	권오덕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오동철	
서울	정 당	더불어민주당	구민신문	대표	권경호	
		국민의힘	국민의힘 서울시당	동작갑 당협위원장	장진영	
	학 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송실대학교	교수	손종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하상응(서면)	

3. 정당 의견청취

2023년 12월 1일,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원회로 송부(1차, 2023. 12. 1.)해움에 따라 구체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의 첫 번째 절차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7개 정당을 대상으로 선거구획정에 대한 정당의견을 청취하였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이었고, 한국의희망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참여하지 않았다.

정당 의견청취는 각 정당별 진술인 1명이 국회 다수의석 정당 순으로 발표하고, 모든 진술인이 발표한 후 위원과 진술인 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정당 의견청취는 제14차 위원회의로 진행되어 비공개하였으며, 지역구 의석수 253석 내 시도별 의원정수 조정방안, 특례선거구 적용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의석 증석 요인 발생 시 가급적 수도권 내에서 의석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행 선거구 유지나 수도권 의석 증가 완화 등을 위해 특례선거구 적용도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정의당과 진보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정당 의견청취 (2023. 12. 1.)

〈표 3-7〉 진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추천	진술인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김진영 (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선거구 유지 등을 위한 인구기준 상·하한 범위 결정 필요 ● 지방소멸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현행 선거구 유지 위해 특례선거구 필요 ● 수도권 의석 조정은 수도권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

추천	진술인	주요내용
국민의힘	전선영 (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의석 증석 시 수도권에서 감석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 기준 인구 감소요인이 많은 광역단체부터 감석 • 기존 선거구 변경 최소화 필요 •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위해 농산어촌 선거구 통합 최소화 • 수도권 의석 증가 완화를 위해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예외는 탄력적으로 활용
정의당	윤재설 (원내행정기획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대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간 의석수 차이 심화 방지 필요 • 농산어촌 지역 거대선거구(최대 5개 자치구·시·군) 발생을 최소화하는 적정 하한 인구수 설정 필요 • 상·하한 인구범위 내에 있어도 수도권, 광역시의 선거구 중 의석수 감석이 가능한 경우 선거구 조정 필요 •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예외 적용은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거대 선거구를 방지하는 것은 총 의석 확대를 통해 접근
진보당	홍연아 (조직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특례선거구를 두는 것은 현 선거제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부정적, 제도 개선 필요 • 경기, 부산, 전남, 전북 선거구획정 방안 제안
한국의희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례의석 확대로 대표성 강화, 결선투표제·선호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선 방안 제시

4. 민원 등 수렴

가. 민원

획정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수백 건의 선거구획정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중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한 집단 민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등기우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다수의 지역주민 및 기초의원 등이 획정위원회 청사에 직접 찾아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선거구획정 관련 민원은 크게 3가지로 ① 선거구획정안(하한 미달·상한 초과 등 특정 선거구 조정방안 등), ② 제도 개선(선거구획정 지연 문제 해결방안 등), ③ 절차문의(선거구획정 관련 현행 규정 및 절차문의 등)로 분류할 수 있었다.

사무국에서는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일체를 선거구별로 정리하여 위원회의에 보고해 선거구획정 논의 시 심도 있는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집단방문을 통한 의견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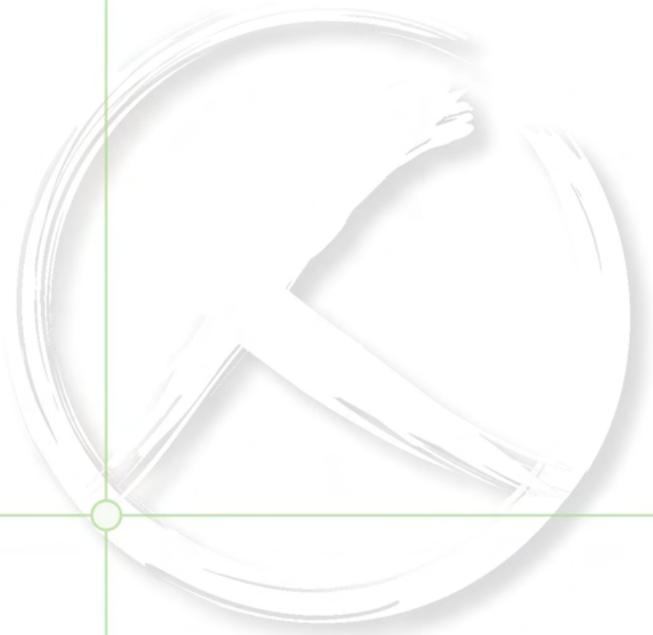
나.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개설·운영

제22대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자유의견> 게시판을 처음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해당 게시판에 민원인이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을 거쳐 질문유형 및 해당 선거구 선택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도록 설계하여 민원인에게 진정성 있는 의견작성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로 접수된 의견을 선거구별로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도 민원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접수된 의견과 함께 위원회의에 보고하여 해당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선거구획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획정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제4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 제출과정

제1절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제2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

제3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제 4 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 제출과정

제1절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1. 첫 번째 촉구(2023. 2. 6.)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지역선거구 총정수, 시·도별 의원정수, 인구범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도별 의원정수와 인구범위의 결정 방법 및 주체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지역선거구 총정수는 법 제21조에 253명⁴⁾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변경된 선례를 고려하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제20대·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획정위원회는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의장이 송부한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였다.

현행법상 획정기준의 결정 주체 및 방법이 명확하지 않지만, 헌법 규정상 선거구획정은 입법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과거 선례 역시 입법권을 존중했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획정위원회도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 해줄 것을 기다렸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2023. 3. 10.)이 임박해올 때까지도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획정위원회는 2023년 2월 6일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때 획정위원회는 국회가 선거구획정기준 논의를 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인구범위를 적용할 때 불부합되는 선거구 현황도 함께 송부하였다.

획정위원회가 송부한 불부합 선거구 현황은 당시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상당한 관심을 받았으나, 국회는 2023년 3월 30일 전원위원회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보고하는 등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변경 논의에만 중점을 두었다.

4) 2024. 3. 8.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행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254명임.

결국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해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2. 두 번째 촉구(2023. 9. 11.)

획정위원회는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2023. 2. 26. 1차)한 이후 공청회, 지역의견 수렴 및 현지실사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그 과정(공청회 2회, 11개 시·도 지역 의견 청취)에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선거구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통되고 강력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는 국외부재자신고(2023. 11. 12.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2023. 12. 12.부터) 등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불과 2달여 앞둔 9월 초까지도 선거구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었고, 언론 및 각계각층에서도 더 이상 선거구획정이 지연되게 되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에 획정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받아 2023년 9월 11일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하여 줄 것을 재촉하였다.

3. 세 번째 촉구(2023. 11. 20.)

선거구획정기준 확정 재촉구(2023. 9. 11. 2차) 후에도 획정위원회는 정개특위 등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선거구의 조속한 확정 필요성 및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국외부재자신고 등 선거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도 국회로부터 선거구획정 기준을 통보받지 못했다.

결국, 2023년 11월 20일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이 더 이상 지체되는 경우 유권자의 알권리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의 기회 등 정치적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우려되고,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위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회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제2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

1. 선거구획정안 논의 배경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3. 12. 12.)이 임박한 시기인 2023년 11월 말까지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양당 간 협의에는 진전이 보이지 않았었다. 그 무렵, 선거구획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의 동의를 받아 선거구획정 기준을 단독으로 마련하여 송부하겠다는 의사를 획정위원회에 알려왔다. 이에 획정위원회는 제13차 위원회의(2023. 11. 28.)를 개최하여 선거구획정 관련 법규정과 절차, 과거 선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서 통보해 오면 이를 참고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23년 12월 1일 국회의장이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기준을 송부해 오면 따라 획정위원회는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시작하였다.

2. 선거구획정 기준

국회의장이 송부한 선거구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1〉 국회의장 통보 선거구획정 기준

구 분	내 용
인구기준일	- 2023년 1월 31일 현재
인구범위	-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내에서 인접한 자치구·시·군을 과도하게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경계 및 구역조정	- 인구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경계 및 구역조정을 하여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 지역구 국회의원 총정수: 253명 -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 현행 정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감안하여 정수 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획정위원회는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논의에 앞서 국회의장이 송부한 선거구획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지에 대해 먼저 논의하였다. 그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부분이었다. 국회의장이 송부한 선거구획정 기준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내에서 인접한 자치구·시·군을 과도하게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과는 배치⁵⁾되는 내용이었다.

결국 획정위원회는 ‘법집행 기관인 획정위원회가 현행 법규정에 배치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 국회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기준
<p>수신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 목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기준 송부</p> <p>1. 귀 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송부 이후 총 세 차례(2월 6일, 9월 11일, 11월 20일)에 걸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 자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하여 제시해 줄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p> <p>2. 이러한 귀 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간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 도출이 지체됨에 따라, 국외부처자신고 개시일(11월 12일)이 도래함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12월 12일)을 앞두고서도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p> <p>3. 현재와 같이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면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p> <p>4. 이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 및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 범위와 헌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구획정 기준을 담은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기준’을 불응과 같이 제시하오니,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자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또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5일 14:00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붙임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기준 1부. 끝.</p>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의장</p> <p>주무관 진수현 행정사무관 이윤규 의안과장 나재석 의시과장 장영호 차장 권영환 총장 이광재 국회의장 김진표</p> <p>시행 의안과(☎)28744(2023. 12. 1.) 전용(02)6788-3404 전용(02)6788-3363 /공개</p>	<p>1. 인구기준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2023년 1월 31일 현재로 한다.</p> <p>2. 인구편차 허용범위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p> <p>3.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내에서 인접한 자치구·시·군을 과도하게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p> <p>4. 경계 및 구역조정 인구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경계 및 구역조정을 하여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한다.</p> <p>5.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253명으로 유지하며, 각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정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감안하여 정수 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p>

▲ 국회의장 통보 선거구획정기준 공문

5) 입후보예정자 및 유권자의 혼란을 고려하면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서 제21대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회의 의견도 있었다.

〈표4-2〉 국회의장 통보 선거구획정 기준 및 획정위원회 결정사항 비교

구 분	국회의장 통보 획정기준	획정위원회 결정사항
인구기준일	2023년 1월 31일 현재	적용 (법 제25조제1항제1호)
인구범위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적용 (136,600명 ~ 273,200명)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내에서 인접한 자치구·시·군을 과도하게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미적용 (법규정에 배치)
경계 및 구역조정	인구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경계 및 구역조정을 하여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	적용 (불부합선거구 중심 조정 원칙)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 국회의원 총정수: 253명 -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 현행 정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감안하여 정수 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 국회의원 총정수: 253명 -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49석 → 48석(△1) 인천 13석 → 14석(+1) 경기 59석 → 60석(+1) 전북 10석 → 9석(△1) - 그 외 시·도는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동일

3. 인구범위 및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결정

인구범위에 관하여 법에는 ‘인구비례 2:1의 범위’라고 규정(§25①2)되어 있고, 국회의장이 송부한 선거구획정 기준에는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에 관하여 국회의장이 송부한 선거구획정 기준에는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총정수(253명)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감안하여 그 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⁶⁾.

한편, 2023년 12월 1일 획정위원회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자리에서 각 정당은 공통적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증석 요인 발생 시 가급적 수도권 내에서 의석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획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법규정, 국회의장이 송부한 선거구획정 기준 및 국회 의석 보유 정당

6) 법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도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정수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선거구획정 결과를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이를 4년 후에 실시되는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획정기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그동안의 인구증감, 행정구역 변화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적합하지는 않다.

의 의견, 선거일이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같은 취지에서 인구범위 역시 인구수 상한을 초과하여 분구가 불가피하거나, 인구수 하한에 미달하여 통합이 불가피한 선거구의 숫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범위를 설정해야 했다.

획정위원회는 인구범위에 따라 시·도별 의원정수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범위와 시·도별 의원정수를 동시에 논의했다. 우선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 대비 인구범위(135,521명~271,042명)를 기준으로 의원정수가 증가하는 시·도는 3개(부산 +1석, 인천 +1석, 경기 +3석), 감소하는 시·도는 1개(전북 △1석)였다. 일반적으로 인구범위를 하향할수록 선거구별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분구 대상 선거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도별 의원정수의 증석 압박이 커지고, 반대로 상향할수록 선거구별 인구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은 통합 대상 선거구가 늘어나 감석 압박이 커지게 된다.

획정위원회는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 대비 인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범위와 시·도별 의원정수에 대해 늦은 밤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구범위는 136,600명 이상 273,200명 이하로 정하고, 그에 따라 의석수가 증가하는 시·도 2개(인천 +1석, 경기 +3석), 감소하는 시·도 1개(전북 △1석)를 결정하였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경우 의석수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 내에서 자체 조정하는 등 증석을 최대한 억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장 많은 증석 요인이 있었던 경기(+3석)의 경우 인구하한에 미달되지 아니한 안산시와 부천시를 각각 1석씩 줄여 경기는 도합 1석 증석하였다. 서울은 인구하한에 미달되지 아니한 노원에서 1석 감석하였으며, 증석요인만 있는 인천은 1석 증석하였다. 다만, 전북은 인구감소로 2개 선거구가 인구하한에 미달함에 따라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인구범위(인구비례 2:1) 및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등 법상 획정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1석 감석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정수는 253개 지역구 수 범위에서 4개 시·도(서울·전북 각 1석 감석, 인천·경기 각 1석 증석)의 의원정수만 조정하였다.

아울러 획정위원회는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하면서 강원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고성군선거구와 관련하여 범규정에 따른 제한적인 획정위원회의 권한 때문에 농산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에서 인구비례와 지역대표성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시·도별 선거구획정 주요 내용

가. 총괄

선거구 조정은 인구범위에 따른 불부합선거구 위주로 하였다. 지역 현지 의견청취에서 제시된 획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6개의 선거구를 분구하고, 6개의 선거구를 통합하였으며, 5개의 시·도에서 자치구·시·군 단위로 선거구의 구역을 조정하고, 15개 자치구·시·군 내에서 읍·면·동 단위로 선거구 간 경계를 조정하였다.

인구수 최다 선거구는 동래구선거구로 273,177명이고, 최소 선거구는 익산시갑선거구로 136,629명이다.

나. 시도별 선거구 조정내역

〈표 4-3〉 시도별 선거구 조정내역

사도	증감	제21대 선거구구역표	선거구획정안	비 고
계	±0	253	253	
서울	△1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구역조정
		노원구갑·을·병	노원구갑·을	통 합
		강동구갑·을	강동구갑·을	경계조정
부산	±0	남구갑·을	남구	통 합
		북구강서구갑·을	북구갑·을 강서구	분 구
		사하구갑·을	사하구갑·을	경계조정
대구	±0	동구갑·을 (군위군)	동구군위군갑·을	구역조정
인천	+1	연수구갑·을	연수구갑·을	경계조정
		계양구갑·을	계양구갑·을	경계조정
		서구갑·을	서구갑·을·병	분 구
경기	+1	수원시병·무	수원시병·무	경계조정
		부천시갑·을·병·정	부천시갑·을·병	통 합

사도	증감	제21대 선거구구역표	선거구획정안	비 고
		광명시갑·을	광명시갑·을	경계조정
		평택시갑·을	평택시갑·을·병	분 구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기평군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기평군	구역조정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	안산시갑·을·병	통 합
		고양시갑·을·병	고양시갑·을·병	경계조정
		시흥시갑·을	시흥시갑·을	경계조정
		하남시	하남시갑·을	분 구
		용인시을·병·정	용인시을·병·정	경계조정
		파주시갑·을	파주시갑·을	경계조정
		화성시갑·을·병	화성시갑·을·병·정	분 구
강 원	±0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구역조정
충 남	±0	천안시갑·을·병	천안시갑·을·병	경계조정
전 북	△1	전주시갑·병	전주시갑·병	경계조정
		익산시갑·을	익산시갑·을	경계조정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통 합
전 남	±0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통 합
		여수시갑·을	여수시갑·을	경계조정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분 구
경 북	±0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구역조정
경 남	±0	김해시갑·을	김해시갑·을	경계조정

모든 선거구가 인구범위를 충족하고,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정수의 변화가 없는 등 선거구 조정 사유가 없는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제주 등 6개 사도를 제외하고, 11개 사도에서 선거구가 조정되었다.

서울은 노원구갑·을·병선거구를 노원구갑·을선거구로 통합 조정하였다. 또한, 기존 중구성동구을선거구에서 중구를 종로구선거구와 합쳐 종로구중구선거구로 조정하고, 성동구를 단독으로 갑·을선거구로 조정하였다. 이는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면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금지한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중구는 인구수가 인구 하한에 미달⁷⁾하여 단독으로 선거구를 구성할 수는 없으나, 인접한 종로구와 합하면 인구범위를 충족하게 되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성동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거구를 구성한 기존 선거구를 조정한 것이다. 강동구는 갑선거구가 인구범위를 초과해 갑선거구의 1개 동을 을선거구로 편입시켜 선거구를 조정하였다.

부산은 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 남구갑·을선거구를 남구선거구로 통합 조정하였고, 북구강서구를 중 강서구 지역의 인구증가⁸⁾로 인해 강서구를 단독선거구로 구성하고, 북구 역시 단독으로 갑·을선거구로 조정하였다. 사하구는 갑선거구가 인구범위에 미달하여 을선거구의 1개 동을 갑선거구로 편입시켜 선거구를 조정하였다.

대구는 2023년 7월 경북에서 편입된 군위군을 기존 동구을선거구와 합쳐 동구군위군을선거구로 조정하되, 동구군위군갑선거구와 인구편차가 심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을선거구의 1개 동을 갑선거구로 조정하였다.

인천은 서구 지역의 인구증가로 검단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7개 동으로 서구병선거구를 신설하고, 기존 갑선거구의 2개 동을 을선거구로 조정하였다. 연수구는 갑선거구가 인구범위에 미달하여 을선거구의 3개 동을 갑선거구로 편입시켰다. 계양구의 경우 갑선거구가 인구범위에 미달하여 갑선거구와 을선거구의 인접한 동을 상호 조정⁹⁾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하였다.

경기는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가 인구상한을 초과하여 평택시갑·을선거구를 평택시갑·을·병선거구로, 하남시선거구를 하남시 갑·을선거구로, 화성시갑·을·병선거구를 화성시갑·을·병·정선거구로 각각 분구하였다. 부천시¹⁰⁾와 안산시는 각각 기존 4개의 선거구를 3개의 선거구로

7) 2019. 1. 31. 현재 인구수 서울 중구 125,872명(인구 미달), 종로구 152,866명으로 합치면 278,738명(인구 초과)

2023. 1. 31. 현재 인구수 서울 중구 120,317명(인구 미달), 종로구 141,223명으로 합치면 261,540명(인구 충족)

8) 2019. 1. 31. 현재 인구수 부산 강서구 123,915명(인구 미달)

2023. 1. 31. 현재 인구수 부산 강서구 143,066명(인구 충족)

9) 계양구 각 동별 인구수를 고려하면, 갑·을선거구 모두 인구범위에 부합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갑·을선거구 간 상호 조정이 불가피하였다.

10) 부천시는 2024. 1. 1.자로 3개의 행정구를 신설하고 기존 10개 동을 37개 동으로 분동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확정안 제출(2024. 12. 5.) 당시에는 10개 동이었기 때문에 당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할 수밖에

통합 조정하였다.

동두천시연천시선거구는 인구범위 하한에 미달하여 연천군을 인접한 포천시가평균선거구와 합쳐 포천시연천군가평균선거구로 조정하고, 동두천시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양주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동두천시양주시갑·을선거구로 조정하였다. 그 밖에도 수원시무, 광명시갑, 고양시을, 시흥시갑, 용인시병, 파주시갑선거구가 각각 인구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해당 자치시 내에서 읍·면·동 간 경계를 조정하였다.

강원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선거구가 법 부칙에 따라 춘천시 일부 지역을 분할하여 특례선거구¹¹⁾로 지정되어 있었다. 동 부칙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춘천시를 갑·을선거구로 조정하고,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인접한 속초시·인제군·고성군과 합쳐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선거구로 조정하였다. 기존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선거구에서 분리된 양양군은 인접한 강릉시선거구와 합쳐 강릉시양양군선거구로 조정하였다.

충남은 천안시을선거구가 인구범위 상한을 초과하여 을선거구의 2개 동을 병선거구로 편입시키고, 지역 의견 청취 시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참석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병선거구의 1개 동을 갑선거구로 편입시켜 선거구를 조정하였다.

전북은 인구범위 하한에 미달하는 김제시부안군선거구와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를 인접한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와 구역을 조정하여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선거구,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 김제시완주군임실군선거구로 획정하였다. 전주시는 병선거구가 인구범위 상한을 초과하여 병선거구의 2개 동을 갑선거구로 편입시켜 선거구를 조정하였다. 익산시는 갑선거구가 인구범위에 미달하여 갑선거구와 을선거구간 면·동을 상호 조정¹²⁾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하였다.

전남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선거구가 법 부칙에 따라 순천시 일부 지역을 분할하여 특례선거구¹³⁾로 지정되어 있었다. 동 부칙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에 없었다.

11) 공직선거법 부칙 <법률 제17070호, 2020. 3. 11.>

제2조(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12) 익산시 각 읍·면·동별 인구수를 고려하면, 갑·을선거구 모두 인구범위에 부합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갑·을선거구간 상호 조정이 불가피하였다.

13) 공직선거법 부칙 <법률 제17070호, 2020. 3. 11.>

제2조(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순천시를 갑·을선거구로 조정하고,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하였다.

또한, 전남의 의원정수를 현행 유지하기 위하여 인구기준을 충족한 다른 선거구의 구역을 통합 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선거구를 분리하여 인접한 선거구에 각각 편입시켜 목포시신안군선거구, 나주시화순군무안군선거구,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로 조정하였다. 여수시는 갑선거구가 인구범위 하한에 미달하여 을선거구의 1개 동과 1개 면을 갑선거구로 편입시켜 조정하였다.

경북은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가 인구범위 하한에 미달되고, 2023. 7. 1.자로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인접한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와 구역을 조정하여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선거구와 영주시영양군봉화군선거구로 확정하였다.

경남은 김해시을선거구가 인구범위를 초과하여 을선거구의 1개 동을 갑선거구로 편입시켜 조정하였다.

5. 국회 및 정치권 등의 반응

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¹⁴⁾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2023년 12월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보고서 제출 직후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역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선거구획정이라는 의견도 있었고¹⁵⁾, 반면에 정당 간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범위만 반영한 선거구획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¹⁶⁾

일부에서는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기준을 송부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선거구획정안 보고서가 제출된 데 대해 획정위원회가 충분한 검토를 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했었다. 하지만, 2022년 10월 11일 공식 출범한 이래 획정위원회는 국회의 선거구획정 기준 송부만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었다.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외에 총 11개 시·도를 방문하여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었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14) 실제로는 합의 처리함

15) 연합뉴스 2023. 12. 5. 민주, 선거구 획정안에 “與 의견만 편파적 반영…수용 불가”

16) 연합뉴스 2023. 12. 6. 與, ‘선거구 획정안 초안’ 野 반발에 “불리하다는 건 선입견”

민원 현황을 검토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전 준비작업을 토대로 신속하게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제출한 직후 정개특위 양당 간사 측에서 획정위원회에 여야간 원활한 협의를 이유로 선거구 구역의 세부 내용을 비공개할 것을 요청해왔고, 획정위원회도 국회의 선거구법률안 심사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일정 기간 시·도별 의석수 증감, 구역조정 현황 등 주요 내용만 공개하기도 하였다.

제3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1.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경과

획정위원회가 2023년 12월 5일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한 후, 국회 정개특위는 2023년 12월 7일 여야 간사와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거구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양 당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2024년 1월 말 무렵부터 여야가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의 일부 선거구를 수정하기로 하고 이를 획정위원회에 재제출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획정위원회는 제18차 위원회의(2024. 2. 6.)를 소집하여 논의한 결과 '비록 여야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비공식적으로 특정 선거구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과거 국회에 두었던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여 국회의원선거구를 정당 간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하고자 하는 법 제24조의 입법취지¹⁷⁾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만약 실제 그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정개특위 양당 간사 등 책임있는 관계자에게 획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사유 등을 직접 설명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¹⁸⁾

이후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고, 그 직후인 2024년 2월 29일에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가 의결되었다. 국회는 재제출 요구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새로운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송부하면서 재제출 기한을 2월 29일 당일 16:00까지로 하였다.

17) 공직선거법 개정이유(법률 제13334호, 2015. 6. 19., 일부개정)

18) 다만, 이후 국회가 획정위원회에 실제 재제출을 요구하여 새로운 선거구획정 기준을 송부하면서 특례선거구 형태로 지정하여 우려되었던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p>대한민국국회</p> <p>국회의장</p>	<p style="text-align: center;">합 의 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제24대 국회의원선거 예정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단 -</p> <p>1. 국회의원 정수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제24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선거구 국회의원 254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확정한다.</p> <p>2. 인구기준일 제24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선거구확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2023년 1월 31일 현재로 한다.</p> <p>3. 인구편차 허용범위 각 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인구수는 13만 6천 이백 명 이상, 27만 3천 2백 명 이하로 한다.</p>	<p>4. 자치구·시·군에 일부 분할</p> <p>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의 고려와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분할하여 종로구 선거구, 중구성동구갑·을 선거구를 편성할 수 있다. - 경기도 양주시 일부를 남면, 은현면을 분할하여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 편입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분할하여 양천군선거구 내 후회 선거구를 편성할 수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일부를 내면, 외면면을 분할하여 김제시 유정군 선거구에 편입할 수 있다. - 경기도 순천시를 분할하여 안성군 내 13개 선거구 중 서수지구-을 선거구를 제외하고 12개 선거구를 편성할 수 있다. <p>5. 정례 및 구역부정</p> <p>선거 실시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정례에 관하여 선거구 확정 및 구역 부정을 제외하고, 정례는 선거구 등 변경된 행정구역을 반영한 관공로, 행정구역·자치구·시·군·교동·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한다.</p>	<p>5. 시·도별 지역구배분할 정수</p> <p>각 시·도별 지역구배분할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서울특별시</td><td>18</td></tr> <tr><td>부산광역시</td><td>18</td></tr> <tr><td>대구광역시</td><td>14</td></tr> <tr><td>인천광역시</td><td>8</td></tr> <tr><td>대전광역시</td><td>7</td></tr> <tr><td>울산광역시</td><td>6</td></tr> <tr><td>경상남도</td><td>9</td></tr> <tr><td>경상북도</td><td>8</td></tr> <tr><td>충청남도</td><td>8</td></tr> <tr><td>충청북도</td><td>11</td></tr> <tr><td>전라북도</td><td>10</td></tr> <tr><td>전라남도</td><td>10</td></tr> <tr><td>경상북도</td><td>13</td></tr> <tr><td>경상남도</td><td>16</td></tr> <tr><td>제주특별자치도</td><td>3</td></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2월 29일</p> <p style="text-align: center;">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홍기표 윤재호 </p>	서울특별시	18	부산광역시	18	대구광역시	14	인천광역시	8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6	경상남도	9	경상북도	8	충청남도	8	충청북도	11	전라북도	10	전라남도	10	경상북도	13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3
서울특별시	18																																
부산광역시	18																																
대구광역시	14																																
인천광역시	8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6																																
경상남도	9																																
경상북도	8																																
충청남도	8																																
충청북도	11																																
전라북도	10																																
전라남도	10																																
경상북도	13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3																																

▲ 국회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재획정 요구 공문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회로부터 선거구획정안 재제출을 요구받은 획정위원회는 재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획정위원회는 선거일이 불과 40여 일밖에 남지 않아 시급하고 중대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재제출 요구를 받은 즉시 긴급히 제19차 위원회의(2024. 2. 29.)를 개최하였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2월 29일 17:20경 국회에 제출하였다.

2.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재획정안

가. 선거구획정 기준

국회에서 재송부한 선거구획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4-4〉 국회 재송부 선거구획정 기준

구 분	내 용
국회의원 정수	- 국회의원 정수 300명 - 지역구국회의원 254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확정
인구기준일	- 2023년 1월 31일 현재
인구편차 허용범위	- 13만 6천 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의 고려와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 -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분할하여 종로구선거구, 중구성동구갑·을선거구 현행 유지 - 경기도 양주시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하여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에 속하게 함.

제4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제출과정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분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하여 김제시부안군선거구에 속하게 함. - 전라남도 순천시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시갑·을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
경계 및 구역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현행 선거구의 경계 및 구역조정을 최소화 - 경기도 부천시 등 변경된 행정구역을 최대한 존중하고,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야 함.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

국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1명 늘렸다. 인구범위는 획정위원회가 2023년 12월 5일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동일하게 하여 현행 시도별 의석수 변동을 최소화했다. 다만, 2023년 12월 1일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기준에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는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였으나, 2024년 2월 29일 통보한 획정기준에는 5개 자치구시를 명시하여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경계 및 구역조정에 대해서도 선거구획정안 제출 후 2024년 1월 1일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기 부천시를 변경된 구역에 따라 획정하도록 하였다.

나. 선거구획정안 작성

획정위원회는 2023년 12월 5일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국회가 재제출 요구 사유로 든 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제24조의2제3항·제4항에 따라 국회가 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재제출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므로, 국회에서 합의하여 통보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반영하여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1) 특례선거구

국회가 새로 송부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수용하여 자치구·시의 일부를 분할한 특례선거구 5개를 획정하였다. 그중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강원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춘천시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선거구에, 전남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에 각각 속하게 하였고,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의 고려를 위하여 서울 성동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중구성동구를선거구에, 경기 양주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동두천시 양주시연천군을선거구에, 전북 군산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선거구에 각각 속하게 하였다.

2) 행정구역 개편 등 반영

2023년 12월 5일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한 당시에는 경기 부천시가 총 10개 행정동(行政洞)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활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후 2024년 1월 1일 부천시의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3개 행정구(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신설되고, 기존 10개였던 행정동이 37개로 분할되었다.

국회도 선거구획정 기준에 변경된 행정구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부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을 최대한 반영하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구역을 기준으로 조정을 최소화 하였다.

3) 구역조정

전북의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된 김제시부안군선거구를 인접한 군산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특례선거구로 지정하였으며, 역시 인구 하한에 미달된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도 인접한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 중 장수군을 분리하여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선거구로 조정하여 기존 의석수인 10석을 유지하게 되었다.

다. 선거구획정안 변경사항

〈표 4-5〉 선거구획정안 주요사항 비교

구 분	선거구획정안		비 고
	2023. 12. 5. 제출	2024. 2. 29. 제출	
인구편차 허용범위	136,600명 이상, 273,200명 이하		
지역구국회의원 수	253명	254명	비례대표 △1
시·도별 의원정수 변동	- 서울 △1, 전북 △1 - 인천 +1, 경기 +1	- 서울 △1 - 인천 +1, 경기 +1	전북 특례선거구 구성 현행(10석) 유지
특례선거구	-	5개	

〈표 4-6〉 선거구획정안 변경 세부내역

사도	2023. 12. 5. 제출		2024. 2. 29. 제출	
	선거구명	선거구역	선거구명	선거구역
서울	종로구중구	[종로구, 중구] 일원	종로구	[종로구] 일원
	성동구갑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용답동	중구 성동구갑	[성동구]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
	성동구을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중구 성동구을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중구] 일원
경기	부천시갑	심곡동, 신중동, 오정동	부천시갑	[원미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춘의동, 도당동 [오정구] 일원
	부천시을	중동, 상동, 대산동, 소사본동	부천시을	[원미구]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병	부천동, 범안동, 성곡동	부천시병	[원미구]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소사구] 일원
	동두천시 양주시갑	[양주시]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옥정1동, 옥정2동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갑	[양주시]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옥정1동, 옥정2동
	동두천시 양주시을	[양주시]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동두천시] 일원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을	[양주시] 은현면, 남면 [동두천시, 연천군] 일원
	포천시연천군 가평군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일원	포천시가평군	[포천시, 가평군] 일원
강원	춘천시갑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조운동, 약사명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갑	[춘천시] 동산면, 신동면, 남면, 동내면, 남산면,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춘천시을	신북읍, 동면, 동내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소양동, 교동, 근화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신사우동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을	[춘천시]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신사우동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일원

사도	2023. 12. 5. 제출		2024. 2. 29. 제출	
	선거구명	선거구역	선거구명	선거구역
	강릉시양양군	[강릉시, 양양군] 일원	강릉시	[강릉시] 일원
	속초시철원군 화천군양구군 인제군고성군	[속초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일원	속초시인제군 고성군양양군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일원
전북	군산시	[군산시] 일원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갑	[군산시] 옥구읍, 옥산면, 임피면, 서수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해신동, 월명동, 신평동, 삼학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군산시] 회현면, 대야면 [김제시, 부안군] 일원
	정읍시순창군 고창군부안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일원	정읍시고창군	[정읍시, 고창군] 일원
	남원시진안군 무주군장수군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일원	남원시장수군 임실군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일원
	김제시완주군 임실군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일원	완주군진안군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일원
	목포시신안군	[목포시, 신안군] 일원	목포시	[목포시] 일원
전남	순천시갑	승주읍, 주암면, 서면, 향전면, 월등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왕조1동, 왕조2동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갑	[순천시] 승주읍, 서면, 향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
	순천시을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덕연동, 풍덕동, 도사동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을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일원
	나주시화순군 무안군	[나주시, 화순군, 무안군] 일원	나주시화순군	[나주시, 화순군] 일원
	광양시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일원	해남군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일원
	해남군영암군 완도군진도군	[해남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일원	영암군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일원

※ 음영 : 특례선거구

라. 선거구획정 개요

1) 총괄

획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송부한 획정기준을 반영한 선거구획정안을 2024년 2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5개의 선거구를 분구하고, 4개의 선거구를 통합하였으며, 4개의 시·도에서 자치구·시·군 단위로 선거구의 구역을 조정하고, 15개 자치구·시·군 내에서 읍·면·동 단위로 선거구간 경계를 조정하였다.

인구수 최다 선거구는 동래구선거구로 273,177명이고, 최소 선거구는 익산시갑선거구로 136,629명이다.

2) 시·도별 선거구조정 내역

모든 선거구가 인구범위를 충족하거나 시·도간 경계조정 발생 등의 사유가 없는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제주 등 7개 시·도를 제외한 10개 시·도의 선거구가 조정되었다. 서울의 의석이 1석 감소하였고, 인천·경기의 의석이 1석 증가하였으며, 그 외 시·도는 의원정수 변동이 없었다.

〈표 4-7〉 선거구구역표 비교

사도	증감	제21대 선거구구역표	제22대 선거구구역표	비 고
계	+1	253	254	
서울	△1	노원구갑·을·병	노원구갑·을	통 합
		강동구갑·을	강동구갑·을	경계조정
부산	±0	남구갑·을	남구	통 합
		북구강서구갑·을	북구갑·을 강서구	분 구
		사하구갑·을	사하구갑·을	경계조정
대구	±0	동구갑·을 (군위군)	동구군위군갑·을	구역조정
인천	+1	연수구갑·을	연수구갑·을	경계조정
		계양구갑·을	계양구갑·을	경계조정
		서구갑·을	서구갑·을·병	분 구
경기	+1	수원시병·무	수원시병·무	경계조정
		부천시갑·을·병·정	부천시갑·을·병	통 합
		광명시갑·을	광명시갑·을	경계조정
		평택시갑·을	평택시갑·을·병	분 구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을	구역조정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	안산시갑·을·병	통 합
		고양시갑·을·병	고양시갑·을·병	경계조정
		시흥시갑·을	시흥시갑·을	경계조정
		하남시	하남시갑·을	분 구
		용인시을·병·정	용인시을·병·정	경계조정
		파주시갑·을	파주시갑·을	경계조정
		화성시갑·을·병	화성시갑·을·병·정	분 구
충남	±0	천안시갑·을·병	천안시갑·을·병	경계조정
전북	±0	전주시갑·병	전주시갑·병	경계조정
		군산시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을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	구역조정
		익산시갑·을	익산시갑·을	경계조정
전남	±0	여수시갑·을	여수시갑·을	경계조정
경북	±0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구역조정
경남	±0	김해시갑·을	김해시갑·을	경계조정

3. 지역선거구 법률안 심사

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다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제출 당일인 2024년 2월 29일 정개 특위의 심사를 거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의결되었고, 같은 날 법사위의 심사의 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2024년 3월 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370호)이 공포되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표 4-7〉 역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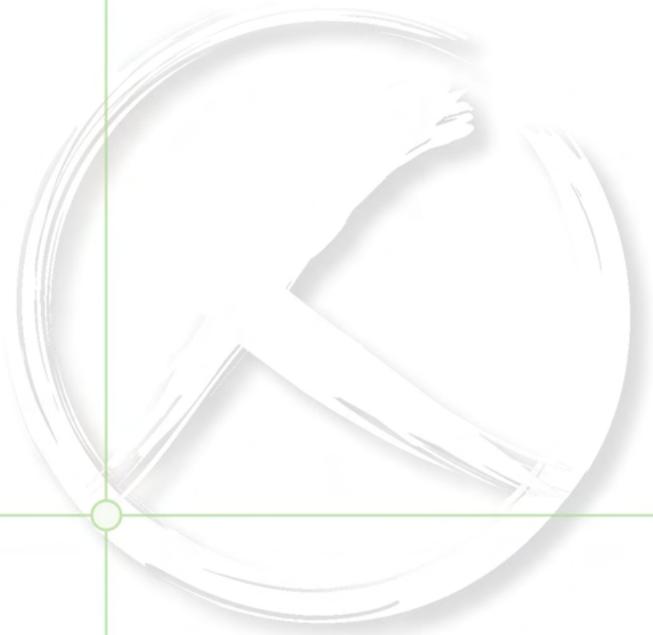
국회의원선거	인구기준일	획정위 보고서 제출	국회 본회의 의결	공직선거법 시행일	선거일
제18대	2007. 12. 31.	2008. 02. 25.	2008. 02. 22.	2008. 02. 29.	2008. 04. 09.
제19대	2011. 10. 31.	2011. 11. 25.	2012. 02. 27.	2012. 02. 29.	2012. 04. 11.
제20대	2015. 10. 31.	2016. 02. 28.	2016. 03. 02.	2016. 03. 03.	2016. 04. 13.
제21대	2019. 01. 31.	2020. 03. 06.	2020. 03. 07.	2020. 03. 11.	2020. 04. 15.
제22대	2023. 01. 31.	2024. 02. 29.	2024. 02. 29.	2024. 03. 08.	2024. 04. 10.

4.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경과조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것은 2023년 12월 12일이었다. 그리고 선거구 구역표가 개정된 것은 이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24년 3월 8일로 기존 선거구구역표에 의해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회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변경에 따른 선거사무소 이전, 선거비용 지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구역표 개정 시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은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예비 후보자 등록-홍보물 발송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선임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다.





제 5 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에 대한 평가

제1절 내부평가

제2절 외부평가



제 5 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에 대한 평가

제1절 내부평가

1. 들어가며

선거구의 획정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획정이 지연되어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5년 6월 19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법률 제13334호) 종래 국회에 두었던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지게 하였다.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면 법정기한 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많은 이들이 기대하였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지역 선거구는 2016년 3월 3일(선거일 전 41일), 제21대는 2020년 3월 11일(선거일 전 35일), 제22대는 2024년 3월 8일(선거일 전 33일) 확정되었다. 이는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있던 시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단순히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선거구획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2.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 미준수 문제에 대하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둔 이래 실시된 세 차례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기한이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선거구획정 과정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다.

현행법은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의 의결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상 규정된 절차만 살펴보면 획정위원회가 정당 간 이해관계에 관계 없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법정기한 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 제출 이후가 아닌, 처음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하는 단계에 있다.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지역선거구 총정수, 시·도별 의원정수, 인구범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구획정 기준의 결정 주체와 결정 방법이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명시되어 있던 의원정수도 제19대 299석에서 제20대 300석으로 증가되었고 제21대에는 법 제21조에 지역선거구 수를 253석으로 규정했으나 제22대에서 1석 증가시켜 254석이 되었다.

제20대·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획정위원회는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의장이 송부한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며, 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획정위원회도 동일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거구획정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보니, 획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치권의 참여한 대립으로 인해 이에 대한 결정은 매번 지연되었고, 그 결과 법정기한이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못했다. 결국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의 결정 주체와 결정 방법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정치권 협의에 의존하는 관행이 지속되면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일부에서는 법률에 시·도별 의원정수 등을 결정하는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획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규정상 선거구획정은 입법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선거구획정 과정은 고도의 정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기준만을 가지고 획정위원회가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하에서는 국회가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문제에 대하여

법 제25조는 선거구획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인구기준일과 법상 허용된 인구범위(2:1),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금지 원칙 및 예외에 대하여 규정한 강행규정이다. 제2항은 선거구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선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12월 1일 국회의장이 송부한 획정기준에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내에서 인접한 자치구·시·군을 과도하게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배치되는 것으로,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획정위원회가 현행법에 부합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획정위원회가 2023. 12. 5.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는 6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강원특별자치도의 속초시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선거구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행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교육지책으로 제안된 것으로, 소위 거대 선거구의 획정은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제19대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입법자들은 도시집중화로 인한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소멸, 국토 균형 발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지역선거구의 축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그 결과 선거구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 제25조제2항이 신설된 것이다.

제21대·제22대 획정위원회는 특정 지역의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도록 한 정치권의 합의를 반영하여 거대 선거구를 해소하였으나, 향후에는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와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4. 나가며

제22대 획정위원회는 비록 법정기한 내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송부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았다.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을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는 외에,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총 11개 시·도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현황을 검토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고자료를 수집·정리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렇듯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비록 정치권에서 매우 급박하게 선거구획정안을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신속하게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의 가장 큰 의의는 2023년 12월 1일 국회의장이 송부한 기준 범위 내에서 획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획정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의 내용을 국회에서 대부분 수용했다는 데에 있다. 획정위원회가 정한 인구범위는 국회의 재제출 요구 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시·도별 의원정수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비례대표 1석을 줄여 10석을 유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향후 선거에서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20대·제21대 획정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이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지역선거구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을 결정할 주체와 결정 기한을 법률에 규정하여 선거구획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앞으로는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하여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외부평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방안

조진만(덕성여자대학교)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하는 원인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에 있다. 2015년 6월 1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독립성 확보와 선거구 획정안 제출기한 명문화가 이루어졌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직선거법이 마련된 이후 준수한 적은 없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총선을 40여 일 앞둔 2024년 2월 29일에 마무리되었다.

2023년 12월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22대 획정위에 기존 지역구 의석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여 선거구 획정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 지역별 의석수 등을 제때 결정하여 획정위에 넘겨줄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을 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에 획정위는 사전에 검토한 데이터, 전문가 간담회, 지역순회 의견 청취 등의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2023년 12월 5일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 결과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는 명확한 선거구 획정 기준 제시를 통한 즉각적인 획정안 재제출 요구도 획정위에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는 22대 총선을 41일 앞둔 2024년 2월 29일에 지역구 1석 증가, 비례대표 1석 감소, 전북특별자치도 10석 보장, 5개의 특례 선거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한 후 획정위에 획정안 재제출을 요구하였다.

22대 획정위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보내준 획정 기준을 수용하여 22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22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도 이전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총선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어 선거 예측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선거구 획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였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입후보자의 혼란과 어려움, 그리고 지역구 유권자의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구 획정의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22대 획정위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헌법, 국회법, 공직선거법상에서 획정위가 선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사전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기준을 제때 제시하지 못하면 선거구 획정 지연의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하여 획정위 운영에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안하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선거구 획정 제도의 쟁점과 해외 사례 비교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선거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한국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제41조제1항에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가 선거에서 동등하게 1표(one vote, one value)를 행사해야 한다는 평등선거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등선거 원칙은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대통령선거나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는 완벽하게 구현된다. 하지만 지역 단위에서 실시하는 선거에서 평등선거의 원칙이 온전히 구현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의원을 한 명을 선출하는데 투입되는 유권자의 수가 선거구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구별 유권자 수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과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선거구제에서 선출하는 국가에서 선거구 획정이 중요한 이유이다. 선거구 획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결과를 도출하여 유권자의 대표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한국의 선거에서 각 정당과 정치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결과를 끌어내기 위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은 지방의 의석수를 늘리거나(줄이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을 선거구에 포함하는(배제하는) 시도를 많이 하였다(심지연 2005; 음선필 2014, 225). 물론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과 같이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로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미국에서도 소위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¹⁹⁾이라고 하는 불공정한 선거구 획정의 역사는 유명하고 오래되었다(이준희·류석진 2022; Balinski and Young 1982; Butler and Cain 1992; Hibbing and Patterson 1986).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4 대 1을 초과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비례 원칙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주영 2013, 26).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이후 2001년과 2014년에도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표 1> 헌법재판소 선거구 획정 관련 주요 결정

사건	선고일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 1995 헌마224등(병합)	1995년 12월 27일	위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비례 원칙에 따른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평등선거 원칙 위배로 위헌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 편차 60%(인구비례 4 대 1)
헌법재판소 2000 헌마92등(병합)	2001년 10월 25일	헌법불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 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구로서 선거구 획정의 일차적 기준 투표 가치의 평등성 침해와 게리맨더링은 국회의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위배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 편차 50%(인구비례 3 대 1)
헌법재판소 2012 헌마190등(병합)	2014년 10월 30일	헌법불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 헌법불합치 투표가치의 평등이 지역대표성보다 우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 편차 33⅓%(인구 비례 2 대 1)

문제는 헌법에 기반하여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의 기준은 다양하다는 점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선거구 획정의 기준으로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요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제25조제1항의2에서 자치구, 시, 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기준으로서 인구 범위(인구비례 2 대 1)를 제시하고 있다. 제25조제2항에서도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19)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는 1812년 매사추세츠 정치인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선거구를 재조정하였는데, 그 모양이 불도마뱀(Salamander)을 닮았다는 점에 유래하여 만들어졌다.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인구범위가 선거구 획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다양하고 상호 충돌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공직선거법상 명시되어 있어 정치권과 지역의 처지, 입장,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만들거나 지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²⁰⁾

결국 오늘날 한국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의 핵심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선거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지방의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할 것인가에 있다(강우진 2015). 실제로 연구자가 22대 획정위 위원으로서 지역의 의견 청취를 다녀본 결과, 인구 소멸에 따른 지방의 지역구 의석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나 저항감은 상당하였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구 획정 기준만을 놓고 보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시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이 이 사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타협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하는 것이 총선을 실시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의 갈등과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표 2〉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준

조항	내용
제25조	<p>(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p> <p>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p> <p>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p> <p>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p> <p>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p>

또 다른 쟁점은 선거구 획정의 절차와 관련한 부분이다. 공정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획정위의 구성과 운영이 중요하다(음선필 2014, 233-239). 민주화 이후 제14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을

2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소수 의견으로 국회의원의 주민(지역) 대표성을 살리는 것이 의회제도 발전의 연원, 소수자 보호 원칙, 국가 통합 원리 등에 비추어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김주영 2013, 32; 헌법재판소 2001, 2000헌마92 참조).

1994년 3월 4일에 제정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15대 총선을 앞두고 획정위가 국회에 설치되었다(심지연 2005, 62). 이것은 과거 정부 산하 기구로서 존재하였던 획정위가 여야가 함께 있는 국회로 이관되었다는 점에서 큰 개선을 이룬 것이었다(지병근 2021, 111-112).

하지만 획정위가 국회에 설치되었음에도 정파적 요인으로 인하여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2001년(3 대 1)과 2014년(2 대 1)에 내림에 따라 국회는 2015년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획정위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여당과 야당이 각각 선호하는 후보를 획정위 위원으로 추천하여 갈등이 존재하였던 20대 획정위의 경험을 토대로 21대 획정위부터는 정개특위에서 정당들이 기피하는 후보를 제외하고 합의하여 획정위 위원을 선출하는 관행을 정립하였다(홍재우 2016, 20).

이러한 획정위 제도의 발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획정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중립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구성과 운영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²¹⁾ 문제는 획정위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다. 획정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의원정수와 권역별 의원정수가 고정되어 있거나, 국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이 공직선거법상 충족되지 않는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1조제1항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국회의 의원정수,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1조제1항은 총선을 실시할 때마다 개정되고 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로 여야가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이 조항이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획정위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획정위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에서 선거제도에 대하여 합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토대로 국회 의원정수와 권역별 국회의원 수를 획정위에 넘겨줘야 실질적인 선거구 획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에도 그렇고 22대 획정위에서도 국회가 제때 획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획정위가 자체적으로 선거구 획정 업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21) 국가별로 선거구 획정의 권한(책임)을 가지는 기관은 어디인가를 조사한 결과(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https://aceproject.org/epic-en/> “Comparative Data: Boundary Delimitation-Body Responsible for Drawing Boundaries.” 2024년 6월 21일 검색)에 따르면, 정보 접근과 분류가 가능한 222개국 중 선거구 획정을 정부 산하 기관에서 담당하는 국가는 10개국(4.5%)에 불과하다. 선거구 획정의 주체는 의회(하원: 74개국, 33.3% / 상원: 15개국, 6.8%), 선거관리기구(위원회)(65개국, 29.3%), 독립적인 획정위(40개국, 18.7%)로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에 따른 획정위의 한계,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에 대한 존중, 획정위 자체안에 대한 국회의 재논의 요구의 기정사실화,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혼란 우려 등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합의를 끌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표 3〉 소선거구제 채택 주요 국가의 선거구 획정 방식 비교

국가	주체	주기	핵심 기준	인구 편차	의회 권한
미국	주의회, 주 독립기구	10년	인구비례	0.35%~0.7%	없음
영국	독립기구	8년	인구비례 (지역별)	지역별 평균 유권자 수 근접	없음
캐나다	주 독립기구	10년	인구비례	25%	재심의 요청
프랑스	헌법평의회-최고 재판소	12년~14년	인구비례 (예외 허용)	동일 지역 내 20%	없음
호주	주 독립기구	7년	인구비례	10%(재획정 후 3년 6개월 3.5%)	없음
독일	독립기구	4년	인구비례	15%~25%	없음
일본	정부 산하기구	10년	인구비례	33.3%	선거구획정안 최종 확정

출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2020; 김지윤 2013; 서복경 2015; 선거연수원 2023; 음선필 2014;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음선필 2014; Butler and Cain 1992). 〈표 3〉은 소선거구제(단순다수제, 절대다수제,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국가에서 선거구 획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한국의 선거구 획정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선거구 획정 주체와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가 한국과 유사하게 독립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을 담당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독립기구가 아닌 정부 산하 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내각부 산하의 중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리에게 선거구 획정 보고서를 제출하면, 총리가 이를 의회에 보고한 후 법률안 형식으로 선거구 획정을 확정한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2020, 122). 특이한 사례는 프랑스로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평의회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고, 최고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회의 영향력을 동시에 배제한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선거구 획정의 주기가 짧지 않다. 한국은 총선이 실시할 때마다 15개월 전 인구를 파악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비교적 그 주기를 길게 가져감으로써 선거구

획정에 따른 불안정성을 감소하는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해외 국가에서도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비례의 원칙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일부 예외를 둔다. 그리고 한국의 인구 편차 기준과 비교할 때, 더욱 엄격한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 특히 미국과 같이 선거구 획정의 주기가 긴 국가에서는 선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구비례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인구비례 원칙과 더불어 지역 대표성 문제를 증시하는 한국에서 참고할만한 해외 사례는 영국이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4개 지역별 전체 유권자 수를 선거구 수로 나눈 평균 유권자 수에 가능한 근접한 인구비례 기준을 적용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2020, 125).

넷째, 독립기구인 획정위에서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일본은 정부 산하 내각부에 획정위를 설치하고, 의회가 법률안의 형식으로 최종적으로 선거구를 확정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형식적 권한은 강하다. 하지만 일본은 자민당 중심으로 권력이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의회가 획정위가 제출한 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정 요구나 거부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 영국 의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최종 권고안을 수정 없이 표결하여 확정하였는데, 2020년 의회선거구법이 마련된 이후에는 추밀원(Privy Council)과 함께 최종 획정안을 전달받고 의결 절차 없이 그대로 승인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선거연수원 2023, 471-473). 캐나다에서는 주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하여 주 의회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보장한다.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쟁점들을 논의하고 해외 사례도 살펴보았다. 평등선거의 원칙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싼 국가별 고민과 제도적 선택은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한국에서 선거구 획정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이상과 현실을 잘 조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II. 22대 선거구 획정의 과정과 결과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직선거법 제24조는 획정위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22대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일 18개월 전인 2022년 10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정개특위로부터 통보받은 9명의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설치되었다.

〈표 4〉 획정위 구성과 운영 관련 공직선거법 내용

조항	내용
제24조	<p>(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p> <p>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으로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p> <p>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p> <p>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p> <p>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p> <p>⑦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⑧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으로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⑫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지원 조직”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다.</p> <p>⑭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제5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에 대한 평가

22대 획정위 위원은 개인적 배경을 고려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1명, 학자 7명, 법조인(변호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 학자는 전공을 고려할 때, 정치학자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법학자가 2명, 행정학자가 1명이었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위원이 8명이었고, 지방에 거주하는 위원이 1명이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위원이 6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지방에 거주하는 위원은 서울에서 열리는 획정위 회의에 참석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획정위 위원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당 등에서 추천할 때,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획정위 위원을 선정할 때, 거주지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지방에서 참여한 획정위 위원은 선거구 획정에서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에 거주하는 위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이쉽다는 문제 제기도 하였다.

22대 획정위 위원으로 참여한 연구자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22대 획정위 위원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원들 간에 견해 차이가 존재하였던 적도 많았지만 다수결적인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22대 획정위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 중 가장 공정하고 설득력 있다고 판단되는 안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유연한 관점에서 지연을 최소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였다.

22대 획정위가 출범한 이후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총 19차의 공식 회의를 진행하였다. 다만 22대 획정위가 출범한 직후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확인하였다.

첫째, 21대 획정위 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통하여 직전에 실시한 선거구 획정에서 어떠한 고민과 고충이 있었는지, 그리고 22대 획정위가 어떠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당시 21대 획정위 위원을 역임한 조선대 정치외교학과의 지병근 교수와 조숙현 변호사는 비공식 형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자유롭게 21대 선거구 획정의 경험을 얘기하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지 교수는 해당 간담회에서 향후 개선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로 획정위의 독립성 강화, 선거구 획정 기준의 다양성 확보, 획정위 위원의 소임 인식 등과 관련한 언급을 하였다.

둘째, 행정안전부로부터 22대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변동 및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를 통하여 21대 총선 때보다 인구가 387,249명 감소하였다는 점과 지역별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거구와 관련하여 행정구역이 변경된 내용도 확인하였다. 결국 국회가 인구가 늘어난 지역과 줄어든 지역의 의석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획정위가 인구비례 기준을 준수하면서 선거구 조정을 행정구역 변경과 연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22대 획정위는 이러한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불부합 예상 선거구와 21대 특례 적용 선거구 등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구 획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개선하는 고민을 하였다. 22대 획정위에서 활용한 선거구 획정 지원 프로그램은 인구수, 지도, 항공사진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선거구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지원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한층 발전된 특징을 보였다. 실제로 22대 선거구 획정 지원 프로그램은 효율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22대 획정위는 이와 같은 직무와 관련한 사전 준비를 마친 후 다양한 차원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10항에서 획정위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획정위는 정당, 학회, 시민단체로부터 진술인을 추천받아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정당 관계자를 진술인으로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전국 11개 시·도를 현지 방문하여 12회에 걸쳐 해당 지역의 정당,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의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²²⁾ 이와 같은 공론화 절차는 22대 획정위 위원들이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선거구 획정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이바지하였다. 이 외에도 22대 획정위는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개선하여 누구든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방문, 전화, 국민신문고,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접수된 다양한 민원은 획정위 회의에 보고되고 논의하였다.

다만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22대 획정위에 다음과 같은 요구와 고민이 던져졌다. 첫째, 어느 지역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았다. 인구비례 원칙에 따라 권역별 국회의원 수와 선거구별 구획을 재조정하는 것이 획정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역의 요구는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다. 둘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특징보다는 분산되는 특징을 보였다. 특정 지역이 어느 선거구에 새롭게 편입되거나 빠져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각각 나름의 논리가 존재하였다. 결국 논란이 되는 선거구의 모든 유권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는 획정위 위원들에게 큰 고민거리였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국회가 의원정수, 권역별 국회의원 수 등과 같은 필수적인 획정 기준을 합의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획정위 준비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관행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지연하는 상황 속에서 획정위의 공청회, 지역 의견 수렴, 정당 의견 진술 등의 사전작업도 제때 진행하지 못하고 선거구 획정 마감일 이후까지 진행하는 한계를 보였다. 공직선거법 제24조제11항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보고서를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획정위 차원에서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획정위 설치 시기를 좀 더 앞당기고, 획정위 일정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점은 22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점이다. 22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때

22) 20대 획정위와 21대 획정위는 7개 도를 10여 일에 걸쳐 방문하고 지역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것과 비교하여 22대 획정위가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5개월 동안 지역 의견을 청취한 것은 지역의 다양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양당 원내대표의 동의를 받아 2023년 12월 1일 확정위에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준연동형 선거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 해서 제기되었던 상황 속에서 여당과 야당은 어떠한 선거제도로 22대 총선을 치를 것인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선거구 확정 기한 내에 도출하지 못하였다. 당연히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는데 필수적인 기준인 권역별 지역구 의석수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 확정 기준은 지역구 253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최소 조정을 통한 신속한 선거구 획정에 방점이 있었다. 22대 확정위는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와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장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22대 확정위는 국회의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법정 확정 기준 준수,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혼란 방지를 위한 선거구 조정 최소화,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 지방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가급적 수도권 증석 지양과 자체 조정,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특례 선거구 방지를 확정 기준으로 삼아 곧바로 작업을 진행하였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12월 5일).

〈표 5〉 22대 선거구 확정 지역별 의석 조정 과정

지역	확정위 최초안 (2023년 12월 5일)	정개특위 확정 기준 (2024년 2월 29일)	최종 확정안 (2024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	48 (-1)	48 (-1)	48 (-1)
부산광역시	18	18	18
대구광역시	12	12	12
인천광역시	14 (+1)	14 (+1)	14 (+1)
광주광역시	8	8	8
대전광역시	7	7	7
울산광역시	6	6	6
세종특별자치시	2	2	2
경기도	60 (+1)	60 (+1)	60 (+1)
강원특별자치도	8	8	8
충청북도	8	8	8
충청남도	11	11	11
전북특별자치도	9 (-1)	10	10
전라남도	10	10	10
경상북도	13	13	13
경상남도	16	16	16
제주특별자치도	3	3	3
합계	253	254	254

주: 괄호 안의 수치는 21대 국회 대비 지역별 의석수 증감 수치를 의미함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22대 획정위는 2023년 12월 5일에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2대 획정위가 마련한 최초 획정안은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특례 선거구를 만들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구가 많이 증가하여 의석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증석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한 석씩만 의석을 늘리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한 서울특별시와 전국적인 차원에서 가장 인구 감소가 많았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한 석씩을 감축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22대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최초안에 대하여 정개특위는 2024년 2월 29일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제시하면서 당일 오후 4시까지 재획정한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개특위는 재획정 요구의 사유로 공직선거법상 제25조제1항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치중하여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다른 기준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역행하였다는 점,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되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기도 양주시, 강원도 춘천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라남도 순천시 5개 지역에 대하여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특례 선거구를 만드는 것에 합의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정개특위가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이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붙여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개특위가 획정위에 재획정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야가 사전에 합의하여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22대 총선이 임박한 시기에 당일 재획정안을 제출하라고 획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리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헌법 제41조제1항의 평등선거 원칙과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에 명시된 획정 기준은 인구비례 원칙을 일차적으로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인구비례 원칙을 벗어난 특례 선거구의 허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획정위의 성격상 이와 같은 법 규정을 초월하는 정치적인 고려와 결정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회가 획정 기준을 사전에 합의하여 제시하지 않고 선거가 임박하여 제시한다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그리고 지연을 피할 길이 없다.

22대 획정위는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안 재제출 요구를 받은 즉시 소집하여 관련 사안을 논의하였다. 획정위 위원들은 이 사안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표명하였고,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많은 고민 속에서 22대 총선이 임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획정위 차원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늦추는 것은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고, 현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를 형성하였다. 결국 22대 획정위가 논란 속에 국회가 제시한 획정 기준을 수용하여 획정안을 재제출함으로써 극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22대 획정위의 운영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획정위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국회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둘러싼 공방과 지연은 개선될 것이다. 문제는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직무를 법을 준수하면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 문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의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정치인에게 선거는 생명과 같이 중요하고, 선거구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양당과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공정하지만 불확실한 특징을 보이는 게임의 구도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懷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3대 국회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난 선거구 획정의 문제 점을 잘 파악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IV. 22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유권자 인식 분석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유권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까?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정치인에게는 당락(當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 처지에서는 정치에 관심이 덜하거나, 자신이 속한 지역에 큰 변화가 없다면 정치인과 같은 관심을 가질 유인은 크지 않다. 다만 이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권자 수준에서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하여 큰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만이 있다면 안정적인 대의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표 6〉은 한국정치학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스탯(K-stat)에 의뢰하여 22대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유권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²³⁾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서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한 결과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잘 이루어졌다(약간

23) 지금까지 전문적인 학회와 여론조사기관이 함께 총선마다 유권자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질문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평가한 유권자 비율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 유권자의 비율은 33.1%를 차지하였다. 모름/무응답에 해당하는 유권자 비율은 25.9%였다.

유권자의 정치·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큰 차이가 목격되지는 않았다. 다만 22대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18세부터 29세 사이의 유권자 집단, 더불어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 유권자 집단, 서울특별시 거주 유권자 집단, 호남 지역 거주 유권자 집단은 22대 선거구 획정 결과를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2대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잘 이루어졌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에 큰 관심을 두기 힘들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안 되는 유권자만이 선거구 획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갈등과 지연, 그리고 미디어 보도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선거구 획정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유권자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6〉 22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유권자 평가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0)	5.5	27.6	34.2	6.8	25.9
성별	남성	(496)	7.1	29.8	34.3	7.3	21.6
	여성	(504)	4.0	25.4	34.1	6.3	30.2
연령	18~29세	(161)	4.3	14.9	36.0	8.1	36.6
	30대	(149)	2.7	24.2	36.2	10.1	26.8
	40대	(179)	6.7	26.3	36.3	6.7	24.0
	50대	(195)	5.6	27.7	33.3	6.7	26.7
	60대 이상	(316)	6.6	36.4	31.6	4.7	20.6
거주지역	서울	(186)	5.9	30.1	29.0	7.0	28.0
	인천/경기	(321)	4.7	27.4	34.6	5.3	28.0
	대전/세종/충청	(107)	5.6	22.4	33.6	8.4	29.9
	광주/전라	(97)	8.2	32.0	41.2	5.2	13.4
	대구/경북	(98)	2.0	30.6	27.6	8.2	31.6
	부산/울산/경남	(149)	6.0	25.5	36.9	8.1	23.5
	강원/제주	(42)	9.5	21.4	45.2	9.5	14.3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학력	고졸 이하	(250)	4.8	28.0	33.2	5.6	28.4
	대학 재학 이상	(750)	5.7	27.5	34.5	7.2	25.1
정치 관심도	매우 많음	(236)	7.6	32.6	33.9	13.1	12.7
	조금 있음	(514)	3.5	29.0	40.3	5.8	21.4
	(별로+전혀) 없음	(250)	7.6	20.0	22.0	2.8	47.6
제22대 총선 지역구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360)	2.2	29.7	38.1	8.9	21.1
	국민의힘	(254)	6.3	31.1	37.0	10.2	15.4
	새로운미래	(31)	12.9	29.0	38.7	3.2	16.1
	개혁신당	(33)	12.1	21.2	42.4	9.1	15.2
	기타/모름/무응답	(229)	4.8	24.9	27.9	1.3	41.0
제22대 총선 비례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84)	1.1	26.6	43.5	10.9	17.9
	국민의미래	(187)	5.9	35.3	37.4	8.0	13.4
	새로운미래	(42)	16.7	16.7	47.6	4.8	14.3
	개혁신당	(34)	8.8	23.5	26.5	17.6	23.5
	조국혁신당	(178)	2.8	32.6	36.0	6.2	22.5
	기타/모름/무응답	(282)	5.3	25.2	27.7	3.9	37.9
이념 성향	보수	(202)	7.9	28.2	32.2	7.4	24.3
	중도	(456)	6.1	25.0	34.0	3.7	31.1
	진보	(342)	3.2	30.7	35.7	10.5	19.9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평가	(242)	5.8	28.1	38.0	10.7	17.4
	부정 평가	(669)	5.7	29.9	33.9	5.8	24.7
	모름/무응답	(89)	3.4	9.0	25.8	3.4	58.4

다음으로 <표 7>은 22대 선거구 획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유권자 331명을 대상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를 질문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기본 선택지는 네 가지가 제시되었고, 기타라는 항목도 추가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지역 특성 미반영(42.6%)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선거구 획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구비례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 표출이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 거주 유권자, 군소정당인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지지 유권자, 이념적 중도 성향 유권자 집단에서 지역 특성 미반영의 문제를 제기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기준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정당 구도가 고착된 상황에서 이에 불만을 느끼는 유권자 집단의 평가가 선거구 확정 영역에서도 표출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부분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 거주 유권자 집단이 선거구 확정에 지역 특성 미반영을 지적한 이유와 더불어 추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7〉 22대 선거구 확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분		사례수	선거구 확정 지연	과다한 지역구 인구수	과대한 지역구 면적	지역 특성 미반영	기타
전체		(331)	20.2	18.1	15.4	42.6	3.6
성별	남성	(183)	23.0	21.3	15.8	37.2	2.7
	여성	(148)	16.9	14.2	14.9	49.3	4.7
연령	18~29세	(31)	6.5	16.1	29.0	45.2	3.2
	30대	(40)	22.5	20.0	20.0	35.0	2.5
	40대	(59)	13.6	22.0	16.9	47.5	0.0
	50대	(65)	13.8	16.9	15.4	49.2	4.6
	60대 이상	(136)	28.7	16.9	10.3	39.0	5.1
거주지역	서울	(67)	23.9	17.9	14.9	37.3	6.0
	인천/경기	(103)	19.4	16.5	16.5	45.6	1.9
	대전/세종/충청	(30)	23.3	16.7	26.7	30.0	3.3
	광주/전라	(39)	17.9	23.1	12.8	41.0	5.1
	대구/경북	(32)	21.9	21.9	3.1	50.0	3.1
	부산/울산/경남	(47)	17.0	17.0	14.9	48.9	2.1
	강원/제주	(13)	15.4	15.4	23.1	38.5	7.7
학력	고졸 이하	(82)	22.0	17.1	12.2	46.3	2.4
	대학 재학 이상	(249)	19.7	18.5	16.5	41.4	4.0
정치 관심도	매우 많음	(95)	30.5	13.7	16.8	33.7	5.3
	조금 있음	(167)	18.0	20.4	14.4	44.3	3.0
	(별로+전혀) 없음	(69)	11.6	18.8	15.9	50.7	2.9
제22대 총선 지역구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115)	13.9	22.6	20.9	38.3	4.3
	국민의힘	(95)	37.9	15.8	8.4	33.7	4.2
	새로운미래	(13)	7.7	30.8	7.7	53.8	0.0
	개혁신당	(11)	27.3	0.0	18.2	54.5	0.0
	기타/모름/무응답	(68)	13.2	13.2	16.2	54.4	2.9

구분		사례수	선거구 획정 지연	과다한 지역구 인구수	과대한 지역구 면적	지역 특성 미반영	기타
제22대 총선 비례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연합	(51)	13.7	27.5	17.6	39.2	2.0
	국민의미래	(77)	40.3	11.7	11.7	31.2	5.2
	새로운미래	(14)	21.4	7.1	7.1	57.1	7.1
	개혁신당	(11)	18.2	9.1	9.1	54.5	9.1
	조국혁신당	(63)	17.5	20.6	19.0	39.7	3.2
	기타/모름/무응답	(86)	12.8	18.6	16.3	50.0	2.3
이념 성향	보수	(73)	37.0	16.4	11.0	30.1	5.5
	중도	(142)	16.2	18.3	14.8	50.0	0.7
	진보	(116)	14.7	19.0	19.0	41.4	6.0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평가	(82)	35.4	14.6	8.5	36.6	4.9
	부정 평가	(238)	15.1	20.2	17.6	43.7	3.4
	모름/무응답	(11)	18.2	0.0	18.2	63.6	0.0

유권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선거구 획정 지연(20.2%)이었다.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가 항상 중요하게 부각하고, 이것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역 특성 미반영을 지적한 응답자 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고찰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유권자의 정치·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세부 분류에 따라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지적한 응답자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 정치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을 지지한 유권자, 보수적인 이념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 집단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것이 보수적인 성향의 대통령과 여당 지지 유권자들이 국정운영의 주도권 내지는 책임성을 더 느끼면서 선거구 획정의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인지, 이들 유권자가 법 준수를 중시하는 성향이 더욱 강하여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인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밝혀내기 힘들다. 또한 이와 같은 특성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가장 강하게 표출할 가능성이 큰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역시 향후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과다한 지역구 인구수(18.1%)와 과대한 지역구 면적(15.4%)을 지적한 유권자 비율이

높았다. 과대한 지역구 인구수를 지적한 유권자 비율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것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과대한 지역구 면적을 지적한 유권자 비율은 특정 지역, 구체적으로 충청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유권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V.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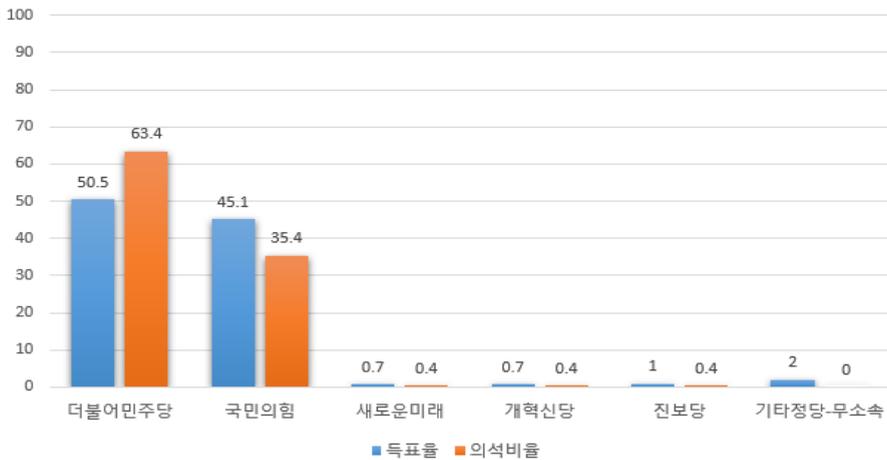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제기된다.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의석이 배분되는 국가에서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권역별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도 행정구역, 생활권, 문화권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 권역의 규모와 인구수에 따라 의석을 얼마나 배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수는 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국가와 같은 수준의 선거구 획정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 기반하여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존재하는 이상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고민과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인 2표제에 기반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²⁴⁾은 선거구 획정이 더욱 지연되고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선택을 정치적 결과로 산출해내는 핵심 기제이다(Farrell 1997). 이러한 이유로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제도가 얼마나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느냐는 당위적 차원의 고려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선거제도가 자신들의 의석 확보나 당선에 유리한가를 따진다(Taagepera and Shugart 1989). 국가마다 이러한 복합적인 고려 속에서 선거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선거제도는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선거제도의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린츠(Linz 1990; Linz and Stepan 1996)가 일찍이 주장한 바 있듯이, 선거제도가 민주성과 공정성이 확보하여 주요 정치세력 간에, 유권자들 사이에 합의 수준이 높아 동네의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으로 인정될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된다.

24)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도입할 당시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위성정당이 난립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유일한 게임의 규칙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의석으로 배분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때, 선거구 획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한국정치도 변화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다수결 방식의 지역구선거에서 거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확보하여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²⁵⁾ 정치권이 이와 같은 추이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면, 비례적 선거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진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림 1> 22대 총선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과 의석비율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선거구 획정 문제 개선은 근본적이지만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무엇이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왔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22대 획정위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국회의 의원정수를 늘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결정하여 명시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회의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최상위법인 헌법의 제40조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처리해야 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 제41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국회가 법률로서 국회의원 수를 200명

25) 단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자가 승리하는 지역구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군소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사표 방지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투표할 수밖에 없다.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양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듀베르제(Duverger 1954)의 가설이 하나의 법칙처럼 통용되는 이유이다.

이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헌법 조항들에 기반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1조제1항에 전체 300명 중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8〉 국회의 의원정수 관련 헌법과 공직선거법 내용

법	조항	내용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이와 같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규정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첫째, 획정위가 입법기구가 아닌 상황에서 자신의 직무를 국회의 입법 기능을 초월하여 행사하기는 어렵다. 특히 국회의 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구 획정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선거구 획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헌법상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300명으로 국회의 의원정수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만든다. 헌법 제41조 제2항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300명을 넘어도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김선화 2012). 하지만 이 문제를 떠나서 한국의 국회 의원정수는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강원택 2002; 김도중·김형준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을 도모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회는 공직선거법상에 국회의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전 획정위에서 활동하신 분들로부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한 두 석 정도의 여유만 있다면 원활하게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셋째, 국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의원정수를 조정하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중심으로 의석을 확보한 군소정당의 반발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국가가 의원정수를 확정하고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²⁶⁾

22대 국회 기준으로,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지역구 국회의원은 254명(84.7%)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6명(15.3%)이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간의 의석 비중은 5 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비대칭적이다. 실제로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한국처럼 지역구에서 후보자투표로 뽑는 의원과 전국 또는 권역 수준에서 정당투표로 선출하는 의원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는 없다(박경미 2011, 129; Shugart and Wattenberg 2001).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한 이후 비례용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상황 속에서 비례대표제에 불만을 느끼고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비례대표제 폐지는 헌법 제41조제3항에서 비례대표제를 명시하고 있고,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헌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동시에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감안할 때,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일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획정위에 맡기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표 9>에 정리한 바와 같이,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첫째, 국회의 의원정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1조제1항을 좀 더 유연한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수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전체 의석 대비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제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고려하면, 양자 간의 비율을 5(250석) 대 1(50석) 정도로 설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²⁷⁾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비례대표 의석의 감소에 반발하는 군소정당의 입장과 비례성이 높은 정당투표 결과에 따른 민의 반영 수용 등의 장점이 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규모를 고려할 때, 국회에서 정당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할 수 있는 범주라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국회가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정확히 정하지

26) 실제로 정개특위에서 활동하였던 심상정 국회의원은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으로 22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한 명 줄인다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였다(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호, 2024년 2월 29일).

27) 1인 2표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국가마다 다양한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다만 1인 2표 혼합형 선거제도는 다수결 선거제도와 비례적 선거제도의 장점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대등하게 설정하는 것이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 측면이 있다. 독일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동등하게 1(50%) 대 1(50%)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90년대 1인 2표 혼합형 선거제도로 개혁한 뉴질랜드와 일본은 3(60%) 대 2(40%) 수준으로, 이탈리아는 3(75%) 대 1(25%) 수준을 채택하였다. 다만 한국은 이와 같은 기준들을 적용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다.

못한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의석수가 아닌 비율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결정하면, 국회가 한 번 선택한 비율을 뒤집을 정도로 의원정수의 변화를 도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때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획정위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시작하여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 당연히 선거의 안정성도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표 9〉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조항	기존	개정안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은 5 대 1로 한다.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 ② 국회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수를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24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 원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2년 전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② 국회의장은 제24조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의장은 제24조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조항	기존	개정안
제25조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2년 전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통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다.

만약 국회가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1항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확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국회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선거구 획정의 지연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선거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와 획정위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그 책임 소재에 따른 획정위의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²⁸⁾

둘째, 공직선거법 제24조제1항을 개정하여 획정위 활동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획정위 위원 구성의 특성과 활동 등을 고려할 때, 획정위가 선거일 18개월 전에 설치되어 13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일정은 현실적으로 빠듯하다. 만약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때 제시한다면, 획정위가 5개월 안에 쟁점과 현황 파악, 전문가 간담회와 정당 의견청취, 지역 순회 의견 청취 등을 다 소화해가면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일 2년 전에 획정위가 설치되어 꼼꼼하게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셋째, 획정위 설치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이와 정합성 있게 관련 절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5조제2항에서 획정위가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선거일 전 18개월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국회가 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검토하고 재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제3항에 국회가 획정안 재제출 여부를 할 수 있는 기한도

28)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국회가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확정하지 못하면 획정위가 사전에 준비한 내용으로 자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국회가 구체적인 획정 기준을 언제까지 정해서 획정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다. 만약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국회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물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초래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더욱 지연시키고 전반적인 선거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사례에 대한 강휘원 2006의 연구를 참고할만하다.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획정위가 제때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도 국회에서 여야가 공방하면서 시간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제3항에 국회의 획정안 재제출 요구 시기를 선거일 전 13개월까지로 명시한다면,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이와 같이 기한을 명시하면, 국회가 선거일 전 13개월을 넘어 획정위에 획정안 재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책임 소재에 관한 모호함을 이용하거나 부담을 덜 느끼면서 선거구 획정을 지연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한 내용이지만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을 개정하여 인구수 파악 시점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인구²⁹⁾를 선거구 획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될 수 있으면 선거가 임박한 시점의 인구를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표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선거일 15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준비를 덜 하게 만들고, 획정위도 사전 준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획정위가 선거일 2년 전에 설치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곧바로 인구 기준으로 불부합 선거구 등을 파악하여 준비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대응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넷째,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지방의 대표성과 거대 선거구 출현 방지를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2대 획정위가 최초 획정안을 마련할 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였던 부분은 특례 선거구를 만들지 않으려는 원칙을 지키다 보니 강원특별자치도에 6개의 시와 군을 합쳐진 거대 선거구(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고성군선거구)의 출현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물론 국회가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하면서 5개의 특례 선거구를 지정해주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다만 지역 의견 청취를 위한 순회를 다녔을 때도 그렇고, 국회가 최초 획정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다음의 주장이 일관되게 제기되었다. 즉 지방은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등도 고려해 주어야 하고, 의석을 줄이면 안 되고, 거대 선거구는 선거운동이나 의정활동 모두 어려움이 있어 피해 달라는 요구였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회의원 수가 10명에서 한 자릿수 대인 9명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컸다. 전국 8개 도의 면적과 인구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29) 전문가 공청회 등을 진행할 때,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현행 인구보다 유권자 수를 고려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냐는 주장이 많았다.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면,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이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어 향후 관련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전국 8도는 최소 몇 석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공직선거법상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거대 선거구에 대한 반감이 크고, 22대 최종 확정안에 5개 이상의 시와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된 사례는 없었다. 이러한 점은 고려할 때,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통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새롭게 마련한다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서 획정위가 논란이 덜한 확정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준이 공직선거법상 마련된다면, 획정위가 인구비례 원칙의 적용에 따른 거대 선거구 출현의 문제로부터 좀 더 유연하게 자체 확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가 부칙을 통하여 특례선거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획정위의 의견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VI. 결론

공정한 선거구 획정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평등선거 원칙을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또한 정치인이 차기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유권자가 투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잘 알기 위해서는 제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선거구 획정은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총선이 임박해져야 극적으로 타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점이 어떠한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고 제안하였다.

22대 획정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구 획정의 신이 존재하면 한국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현행법과 제도를 정합성 있게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평등선거와 인구비례의 원칙, 지방의 대표성 보장,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요구 수용 등은 풀 수 없는 난제의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들다. 정치권, 학계, 관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획정 기준을 가다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22대 국회가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선거구 획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낸다면 23대 선거구 획정은 지금과는 다른 과정을 통하여 제때 마무리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은 국회에 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가 이 정도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모색하고 합의해 줄 필요가 있다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선거구 획정 지연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법을 준수하면서 제때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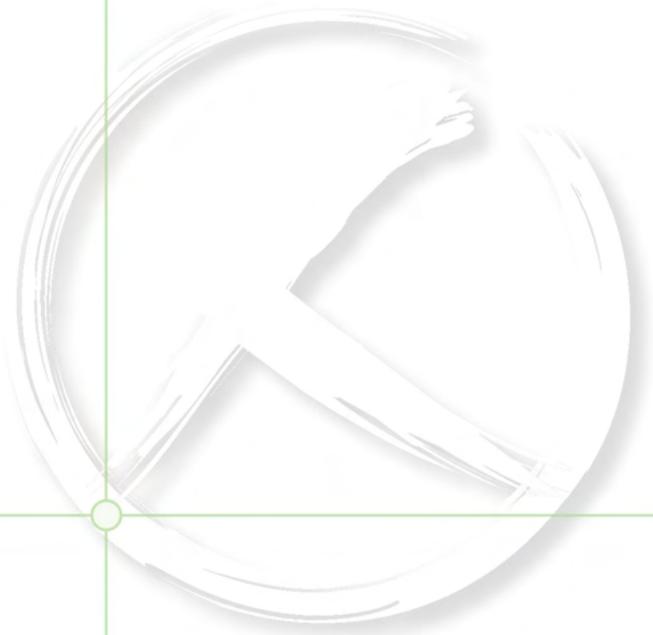
본 연구는 22대 선거구 획정에 관한 중요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1차자료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이 추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22대 국회가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23대 선거구 획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우진. 2015. “선거구 획정의 정치학: 쟁점과 과제.” 의정연구 제21권 2호: 5-32.
- 강원택. 2002.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8권 3호: 133-152.
- 강휘원. 2006. “일본 선거구 획정의 사법적 구제.” 대한정치학회보 제14집 2호: 177-200.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202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2024년 2월 29일.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2023. “획정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제출: 지난 1일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획정 기준으로 획정안 마련.” 선거구획정위원회 보도 자료, 2023년 12월 5일.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김도종·김형준. 2003. “국회의원 정수 산출을 위한 경험 연구: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73-88.

- 김선화. 2012. “국회의원 정수의 적정성과 위헌 논쟁.”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 391호.
- 김주영. 2013.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원리의 비판적 검토: 평등원리 적용 제한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지윤. 좋은 선거구 나쁜 선거구: 대한민국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제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김지윤. 2013. 좋은 선거구 나쁜 선거구: 대한민국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제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박경미. 2011. “정치개혁의 목적과 선거제도의 정치적 결과: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의 혼합선거제 도입.” 동서연구 제23권 1호: 125-157.
- 선거연수원. 2023. 2023년도 각국의 선거구 획정과 당선인 결정방법 비교연구 경기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선거연수원. 2015.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 연구 경기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서복경. 2015. “선거구획정: 해외 제도와 적용 사례.” 입법과 정책 제7권 1호: 27-55.
- 심지연. 2005.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변화.”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2호: 45-72.
- 음선필. 2014.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기준, 주체, 시기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제9권 2호: 211-245.
- 이준희·류석진. 2022. “한국의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정치적 평등: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6권 2호: 39-71.
- 지병근. 2021. “선거구 획정의 정치 과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례 분석.” 한국 정당학회보 제20권 1호: 107-144.
- 홍재우.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과정 및 평가.” 의정연구 제22권 1호: 5-46.

- Balinski, Michael L., and H. Peyton Young. 1982. *Fair Representation: Meeting the Ideal of One Man, One Vo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utler, David., and Bruce E. Cain. 1992. *Congressional Redistricting: Comparative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Duverger, Maurice. 1954.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Farrell, David M. 1997. *Comparing Electoral Systems*. New York: Prentice Hall.
- Hibbing, John R., and Samuel C. Patterson. 1986. "Representing a Territory: Constituency Boundaries for the British House of Commons of the 1980s." *The Journal of Politics* 48(4): 992-1005.
- Linz, Juan J. 1990. "Transitions to Democracy." *The Washington Quarterly* 13(3): 143-164.
- Linz, Juan J., and Alfred C. Stepan. 1996. "Toward Consolidated Democracies." *Journal of Democracy* 7(2): 14-33.
- Shugart, Matthew Soberg, and Martin P. Wattenberg. eds. 2001. *Mixed-Member Electoral Systems: The Best of Both Worl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aagepera, Rein., and Matthew Soberg Shugart. 1989. *Seats and Votes: The Effects and Determinants of Electoral System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부록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1. 2024. 2. 29. 제출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2. 2023. 12. 5. 제출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부록 1-1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2024. 2. 29. 제출

머 리 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과거 국회에 설치되어 오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15년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성에 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별 의원정수 등 획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의 제출기한(2023. 3. 10.)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획정위원회는 8개월여 동안 공청회 및 지역의견 청취 등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지난해 2월과 9월, 그리고 11월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장이 통보한 선거구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국회는 재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12월 5일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충실히 반영되었고,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금지 원칙과 그 예외 등 법률 규정이 엄격히 준수되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제3항제4항에 따라 국회의 재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우리 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재제출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므로 정치권에서 합의하여 통보한 획정 기준을 반영하여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국회는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을 선거일에 임박해서 확정했고, 이로 인해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법률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시하거나 선거구획정 기준 결정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이상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에 온 힘을 다해주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 지원에 최선을 다한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허 철 훈

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1. 설치배경

-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반복되는 선거구획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되어 있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부여하였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2. 10.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설치되었음.

2. 설치근거

-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4조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3. 직무 및 활동기간

가. 직 무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나. 활동기간

2022. 10. 1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

※ 2024. 2. 29.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가. 구 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9명으로 구성(법 §24③)

※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법 §24④)

나.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법 §24③, 규칙 §5①)

※ 위원장 결위 또는 사고 시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규칙 §5③)

다. 임 기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법 §24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9인)

(순서 : 성명의 ‘가’, ‘나’, ‘다’...順)

구 분	성 명 (한 자)	경 력	비 고
위원장	허철훈 (許鐵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송봉섭 위원 후임
위 원	박재운 (朴在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 원	임부영 (任富泳)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위 원	장선화 (張善華)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 인문사회교양학부 강사	
위 원	정상우 (鄭相宇)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위 원	조진만 (趙眞晩)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위 원	최준영 (崔峻榮)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 원	최현선 (崔賢善)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위 원	홍재우 (洪在佑)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가. 회의소집 : 위원장이 소집함.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위원장은 소집하여야 함
(규칙 §8①).

나. 의사정족수 : 위원 과반수의 출석(규칙 §8③)

다.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규칙 §8③)

※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 필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라. 의사기록 :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고,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규칙 §9③·④)

마. 자료요청 :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 가능(법 §24⑨, 규칙 §13)

※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

바. 기 타

-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법 §24⑬).
- 위원회의 공개여부, 의견수렴 방법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규칙 §15).

6.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8명으로 사무국을 구성함.
- 사무국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진행 보좌, 회의결과 정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을 위한 참고자료 작성 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실무적 지원을 함.

직원 명단

직 위	성 명	직 급	비 고
사무국장	조봉기	부이사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운영팀장	조준기	서기관	"
기획·운영팀	문주희	행정주사	"
기획·운영팀	서은주	행정주사	"
기획·운영팀	최일식	행정주사	"
관리팀장	구원우	행정사무관	"
관 리 팀	강민경	행정주사	"
관 리 팀	김재황	행정주사	"

II.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경과

1. 제1차 회의

일시	2022. 10. 11.(화)	10:00 개의,	10:48 산회
회의내용	1. 위원장 호선 : 송봉섭 위원 2.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개황 보고		

2. 제2차 회의

일시	2022. 12. 20.(화)	16:03 개의,	16:48 산회
회의내용	1. 위원회 운영규정 의결 ○ 위원회의 및 회의록 등 비공개 원칙 ○ 윤리강령(정치적 중립, 공정성 등)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진행안 ○ 언론전담위원 선정 : 장선화 위원, 최준영 위원 ○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일정 논의		

3. 제3차 회의

일시	2023. 1. 26.(목)	14:00 개의,	15:05 산회
회의내용	1.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보고자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 보고내용 : 선거구별 인구변동 및 행정구역 변경 현황 2.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3. 선거구획정안 마련 공청회 진행방안 ○ 진출인 추천 대상 : 국회 의석보유 정당, 대한지리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 ○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 통보 관련 논의		

4. 제4차 회의

일시	2023. 2. 13.(월)	14:00 개의,	16:58 산회
회의내용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1. 진출인 명단		
	추천	소속	성명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전문위원)	김진영
	국민의힘	동국대학교(교수)	김준석
	정의당	법무법인 덕수(변호사)	김준우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소장)	오준호
	시대전환	시대전환(정책위원장)	유명종
	대한지리학회	경희대학교(교수)	지상현
	한국공법학회	원광대학교(교수)	강승식
한국정치학회	성공회대학교(연구교수)	김형철	
한국행정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	김동욱	
2. 진출 요지			
가. 김진영(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 ○ 대표성 확대 및 입법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의원정수 및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나 국민적 공감대 전제 ○ 소선거구, 중대선거구는 각각 장단점 존재. 현행 제도하에서 개선방안 마련하는 것이 수용성 측면에서 바람직. 다만, 중대선거구 도입 시 동일 선거구 내 복수 공천 금지 조항은 필수적 ○ 선거구획정 시 농산어촌에 대한 고려는 단순한 지역 안배 차원을 넘어 적극적 검토가 필요 			
나. 김준석(동국대학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는 현상 유지 선호 경향이 있고, 선거구획정 최종 권한도 갖고 있으므로 획정위는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고민 필요 ○ 획정위는 국회와 정치권, 시민사회, 일반 대중 등 여러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 수행 ○ 선관위 지원 인력 외 획정위 상근 인력 및 한시적 전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며, 회의 일정·의제·내용 등도 충분히 공개할 필요 			
다. 김준우(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 선거제도개선 논의와 별도로 획정위는 법정 제출기한 준수를 위한 노력 필요 ○ 인구비례기준(2:1) 및 사도별 의원정수 배장주체가 법상 불명확하므로 획정위가 자체 기준을 제시하되, 그 근거와 논의과정 공개 ○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금지를 전제로 획정안을 제출하고, 불가피하게 지역구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다면 국회에 적극 의견 개진 ○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는 중요한 가치이나, 표의 등가성 범위인 2:1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며, 지역 대표성 보장 시에는 비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입법적 장치 동반 필요 			
라. 오준호(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및 완전 연동형 비례제로 전환, 의원정 			

수 확대, 의석 배분 최소기준(봉쇄조항) 완화 및 정당연합명부제 도입, 민주주의 기본소득 도입 제시

-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획정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획정위를 상설화하거나 시·도별 의원정수를 획정위에 일임하는 등 획정위 권한 강화 및 독립성 실질화 필요

마. 유명종(시대전환 정책위원장)

-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초과하면 자동 발효되는 제도 도입 필요
- 의원정수를 인구별·선거구별로 연동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인구 하한 미달 지역 의석 보전 방안, 의원정수를 확대하되 의원실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여 저항을 줄이는 방안 등 제안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2:1, 권역별비례대표, 명부형비례대표, 대선거구제 등 제시

바. 지상현(경희대학교 교수)

- 수도권-비수도권의 의석수 불균형 문제,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는 '아래로부터의 조정방식'과 시도별 의원정수에 따라 새롭게 정하는 '위로부터의 방식' 중 선택 등 고민 필요
- 지속가능한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지리적 요건, 생활권 등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인구비례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맞추고, 하위단계에서는 조금 완화하는 방안 제안
- 선거구획정 결과를 지도 등 공간포맷 형태의 DB로 제공 필요

사. 강승식(원광대학교 교수)

- 선거구획정 인적 기준을 현행처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 필요
-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해서는 선거구의 조밀성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공개하고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
-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해 선거구의 평균 면적을 크게 초과한 선거구에 대해서는 인구기준 적용 완화 필요. 현재가 이러한 농어촌특별선거구에 대해서도 평등선거 원칙을 관철할지는 미지수

아. 김형철(성공회대학교 교수)

-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선거구획정 시 인구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방안* 고찰 필요
* 거대 지역구 사도에 추가의석 허용, 의석수 증원, 조정의석 활용 등
- 획정위 활동 및 획정안(잠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자. 김동욱(서울대학교 교수)

- 국회가 지역선거구 총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 적용 선거구 범위에 대해 조속한 확정 필요
- 인구 기준을 유권자수로 적용하는 등 농산어촌 배려가 필요하고, 현행 선거구의 개편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획정위원 전원이 세종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중심도시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필요
- 획정위가 법적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인력 등의 넉넉한 배치 필요

5. 제5차 회의

일시	2023. 3. 13.(월)	16:30 개회,	18:00 산회
회의 내용	1.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법정제출시한 경과에 대한 입장문 확정 ○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수렴 방안 ○ 구·시·군별 기초자료 조사 방안		

6. 제6차 회의

일시	2023. 4. 21.(금)	15:00 개회,	17:50 산회																		
회의 내용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안 마련을 위한 제2차 공청회 개최 가. 진출인 명단																				
	<table border="1"> <thead> <tr> <th>추천단체</th> <th>소 속</th> <th>성 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2024정치개혁 공동행동</td> <td>숙명여대(교수)</td> <td>윤 광 일</td> </tr> <tr> <td>한국외대(교수)</td> <td>이 재 목</td> </tr> <tr> <td rowspan="2">범시민사회 단체연합</td> <td>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td> <td>이 기 우</td> </tr> <tr> <td>변호사</td> <td>정 경 모</td> </tr> <tr> <td>대한변호사협회</td> <td>변호사</td> <td>송 해 미</td> </tr> <tr> <td>한국지방자치학회</td> <td>한양대(교수)</td> <td>이 석 환</td> </tr> </tbody> </table>			추천단체	소 속	성 명	2024정치개혁 공동행동	숙명여대(교수)	윤 광 일	한국외대(교수)	이 재 목	범시민사회 단체연합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이 기 우	변호사	정 경 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송 해 미	한국지방자치학회	한양대(교수)
추천단체	소 속	성 명																			
2024정치개혁 공동행동	숙명여대(교수)	윤 광 일																			
	한국외대(교수)	이 재 목																			
범시민사회 단체연합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이 기 우																			
	변호사	정 경 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송 해 미																			
한국지방자치학회	한양대(교수)	이 석 환																			
	나. 진출 요지 1) 윤광일(숙명여대 교수) ○ 이번에도 선거 직전에 선거제 개편 및 확정안 제출 가능성이 크므로 국회 압박을 위한 확정위 차원의 대국민 여론 형성 노력 필요 ○ 과거 확정위 회의록 회람 등 경험 공유 및 쟁점 지역 방문 등 필요 ○ 현지실사, 지역-정당의견 청취 확대, 소위원회 활동 활성화 필요																				
	2) 이재목(한국외대 교수) ○ 시·도별 의석수 불균형, 확정 지연,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과잉분할에 따른 거리맨더링 문제 반복 제기 ○ 시·도별 의석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나, 단기간에 어렵다면 확정위와 국회 간 소통창구 마련, 시민사회·유권자 의견 개진 통로 확대 등 국회 압박 수단 마련 필요 ○ 국토의 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을 근거로 농산어촌은 인구 외 면적 등 고려한 확정 필요, 유권자수 기준 확정 방안도 고려																				
	3)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이상적인 안이 아닌 실현 가능하면서 바람직한 안을 찾는 측면에서 볼 때 전면적 소선거구제, 전면적 중대선거구제는 부적절																				

9. 제9차 회의

일시	2023. 7. 21.(금)	14:33 개의,	15:41 산회
회의 내용	1. 위원회의 운영 관련 논의 ○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여부 논의 ○ 선거구획정 기준 미통보 시 대응 방안 논의		

10. 제10차 회의

일시	2023. 9. 8.(금)	16:00 개의,	17:50 산회
회의 내용	1.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재촉구문안 의결 ○ 정개특위에 10. 12.까지 확정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 2. 위원회의 운영 관련 논의 ○ 획정위원 언론대담 주요 내용 ○ 지역의견 청취 추가 실시 대상지역 논의 - 10. 20.(금) 14시, 서울지역 의견청취 실시 결정 ○ 선거구획정안 작성 방안 논의		

11. 제11차 회의

일시	2023. 10. 20.(금)	15:47 개의,	17:25 산회
회의 내용	1. 위원회의 운영 방안 논의 ○ 획정 기준 미통보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 ○ 지역의견 청취 주요 내용 보고 ○ 민원 등 현황 보고(73건)		

12. 제12차 회의

일시	2023. 11. 17.(금)	14:00 개의,	17:34 산회
회의 내용	1.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문안 의결 ○ 정개특위에 획정기준의 조속한 확정을 세 번째 촉구 2. 지역의견 청취 결과 논의 ○ 진술인이 제안한 지역별 획정안에 대한 논의(11개 시·도)		

13. 제13차 회의

일시	2023. 11. 28.(화) 7:30 개의, 9:02 산회
회의 내용	<p>1. 선거구획정안 관련 논의 ○ 국회의장의 획정기준 통보 예정상황에 따른 획정안 논의 여부 결정</p> <p>2. 의석정당 의견청취 방안 결정 ○ 일시 : 2023. 12. 1.(금) 15:00 ○ 대상정당 : 7개(2023.11.28. 현재) 더불어민주당(168석), 국민의힘(111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1석), 진보당(1석), 한국의희망(1석)</p>

14. 제14차 회의

일시	2023. 12. 1.(금) 15:00 개의, 23:10 산회																								
회의 내용	<p>1. 선거구획정에 대한 정당의견 청취 ○ 진술인 명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정당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직 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더불어민주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김 진 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민의힘</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 선 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의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원내행정기획팀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윤 재 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진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직위원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홍 연 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의희망</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불 참(서면 의견서 제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소득당</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불 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대전환</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불 참</td> </tr> </tbody> </table> <p>○ 주요내용 : 선거구획정 기준,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p> <p>2. 선거구획정 기준 등 논의 ○ 인구기준 및 시도별 의원정수 ○ 특례선거구 적용 여부 ○ 불부합 선거구 중심 최소 조정 여부</p>	정당명	직 위	성 명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김 진 영	국민의힘	전문위원	전 선 영	정의당	원내행정기획팀장	윤 재 설	진보당	조직위원장	홍 연 아	한국의희망	불 참(서면 의견서 제출)		기본소득당	불 참		시대전환	불 참	
정당명	직 위	성 명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김 진 영																							
국민의힘	전문위원	전 선 영																							
정의당	원내행정기획팀장	윤 재 설																							
진보당	조직위원장	홍 연 아																							
한국의희망	불 참(서면 의견서 제출)																								
기본소득당	불 참																								
시대전환	불 참																								

15. 제15차 회의

일시	2023. 12. 2.(토)	10:00 개의,	19:36 산회
회의 내용	1.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16. 제16차 회의

일시	2023. 12. 3.(일)	10:00 개의,	14:11 산회
회의 내용	1.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17. 제17차 회의

일시	2023. 12. 4.(월)	17:00 개의,	18:02 산회
회의 내용	1.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이 기재된 보고서 채택		

18. 제18차 회의

일시	2024. 2. 6.(화)	17:12 개의,	17:29 산회
회의 내용	1. 선거구획정안 관련 논의		

19. 제19차 회의

일시	2024. 2. 29.(목)	14:37 개의,	17:05 산회
회의 내용	1.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등 논의 2.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이 기재된 보고서 채택		

III.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

1. 선거구획정기준 등

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획정기준과 아래와 같이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획정기준 등을 적용함.

가. 국회의원 정수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나. 인구기준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2023년 1월 31일 현재로 한다.

다. 인구편차 허용범위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인구수는 13만 6천 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로 한다.

라.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의 고려와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분할하여 종로구 선거구, 중구·성동구갑을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 경기도 양주시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하여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 속하게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분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하여 김제시부안군 선거구에

속하게 한다.

- 전라남도 순천시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시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마. 경계 및 구역조정

인구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현행 선거구의 경계 및 구역조정을 최소화하되, 경기도 부천시 등 변경된 행정구역을 최대한 존중하고,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각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	정 수
서울특별시	48
부산광역시	18
대구광역시	12
인천광역시	14
광주광역시	8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6
세종특별자치시	2
경기도	60
강원특별자치도	8
충청북도	8
충청남도	11
전북특별자치도	10
전라남도	10
경상북도	13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3

2. 선거구획정안

가. 선거구획정안 주문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노원구갑선거구, 노원구을선거구, 노원구병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노원구갑선거구와 노원구을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 노원구갑선거구 :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2·3동
 - 노원구을선거구 : 중계1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2) 강동구갑선거구와 강동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강동구갑선거구 : 강일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 강동구을선거구 :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길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남구갑선거구와 남구을선거구를 남구선거구로 통합한다.
- 2) 북구강서구갑선거구와 북구강서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북구갑선거구, 북구을선거구, 강서구선거구로 분구·조정한다.
 - 북구갑선거구 :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 북구을선거구 :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만덕제1동
 - 강서구선거구 : 강서구 일원

3) 사하구갑선거구와 사하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사하구갑선거구 :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신평제2동
- 사하구을선거구 : 신평제1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동구갑선거구, 동구을선거구, 경상북도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 중 군위군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동구군위군갑선거구와 동구군위군을선거구로 조정한다.

- 동구군위군갑선거구 : 동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 동구군위군을선거구 : 동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 공산동, 군위군 일원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연수구갑선거구와 연수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연수구갑선거구 : 옥련1동,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 연수구을선거구 :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2) 계양구갑선거구와 계양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계양구갑선거구 : 효성1동, 효성2동, 계산1동, 계산3동, 작전1동, 작전2동
- 계양구을선거구 : 계산2동, 계산4동, 작전서운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3) 서구갑선거구와 서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서구갑선거구, 서구을선거구, 서구병선거구로 분구한다.

- 서구갑선거구 :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서구을선거구 :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 서구병선거구 :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

<경기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1) 수원시병선거구와 수원시무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수원시병선거구 :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수원시 팔달구 일원
- 수원시무선거구 :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2) 부천시갑선거구, 부천시을선거구, 부천시병선거구, 부천시정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부천시 갑선거구, 부천시을선거구, 부천시병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 부천시갑선거구 :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 오정구 일원
- 부천시을선거구 :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 부천시병선거구 :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부천시 소사구 일원

3) 광명시갑선거구와 광명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광명시갑선거구 :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 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학온동
- 광명시을선거구 :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4) 평택시갑선거구와 평택시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평택시갑선거구, 평택시을선거구, 평택 시병선거구로 분구한다.

- 평택시갑선거구 :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 2동, 통북동, 세교동
- 평택시을선거구 :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고덕동
- 평택시병선거구 :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용이동, 동삭동

- 5)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와 양주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선거구,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선거구로 조정한다.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선거구 : 양주시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옥정1동, 옥정2동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선거구 : 양주시 은현면, 남면, 동두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 6) 안산시상록구갑선거구, 안산시상록구를선거구, 안산시단원구갑선거구, 안산시단원구를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안산시갑선거구, 안산시을선거구, 안산시병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 안산시갑선거구 :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 안산시을선거구 :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 안산시병선거구 : 안산시 단원구 와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 7)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병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고양시갑선거구 :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 고양시을선거구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신4동, 화전동, 대덕동
 - 고양시병선거구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1동, 중산2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 8) 시흥시갑선거구와 시흥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시흥시갑선거구 :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 시흥시을선거구 :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능곡동, 월곶동
- 9) 하남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하남시갑선거구와 하남시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하남시갑선거구 :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 하남시을선거구 : 덕풍3동, 미사1동, 미사2동, 미사3동
- 10)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정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용인시을선거구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2동, 상하동
 - 용인시병선거구 :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3동, 성복동
 - 용인시정선거구 :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3동, 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상현2동
- 11) 파주시갑선거구와 파주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파주시갑선거구 :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운정4동, 운정5동, 운정6동
 - 파주시을선거구 :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장단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 12) 화성시갑선거구, 화성시을선거구, 화성시병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화성시갑선거구, 화성시을선거구, 화성시병선거구, 화성시정선거구로 분구한다.
- 화성시갑선거구 :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 화성시을선거구 :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 화성시병선거구 :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기배동, 화산동
 - 화성시정선거구 : 반월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5동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천안시갑선거구, 천안시을선거구, 천안시병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천안시갑선거구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청룡동, 신안동,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성정2동

- 천안시을선거구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부성1동, 부성2동
- 천안시병선거구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불당1동, 불당2동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 1) 전주시갑선거구와 전주시병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전주시갑선거구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 전주시병선거구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 2) 군산시선거구, 김제시부안군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선거구,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선거구로 조정한다.
 -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선거구 : 군산시 옥구읍, 옥산면, 임피면, 서수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해신동, 월명동, 신흥동, 삼학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선거구 : 군산시 회현면, 대야면, 김제시 일원, 부안군 일원
- 3) 익산시갑선거구와 익산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익산시갑선거구 :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삼기면,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영등2동
 - 익산시을선거구 : 옹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용동면, 동산동, 영등1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 4)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를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선거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선거구로 조정한다.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 1) 여수시갑선거구와 여수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여수시갑선거구 :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 여수시을선거구 :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와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를 영주시영양군봉화군선거구와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선거구로 조정한다.

〈경상남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김해시갑선거구와 김해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김해시갑선거구 :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 김해시을선거구 : 주촌면, 진례면,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나.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 구역표 (지역구 : 254)

아래 선거구역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이후의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한 것임.

선거구명	선거구역
서울특별시(지역구 : 48)	
종로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
중구성동구을선거구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중구 일원
용산구선거구	용산구 일원
광진구갑선거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사동
광진구을선거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자양제4동, 화양동
동대문구갑선거구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을선거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선거구명	선거구역
중랑구갑선거구	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3·8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망우제3동
중랑구을선거구	상봉제1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목제1동, 목제2동, 망우본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성북구갑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성북구을선거구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강북구갑선거구	번1동, 번2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을선거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
도봉구갑선거구	쌍문1동, 쌍문3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도봉구을선거구	쌍문2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도봉1동, 도봉2동
노원구갑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2·3동
노원구을선거구	중계1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은평구갑선거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역촌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을선거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서대문구갑선거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서대문구을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마포구갑선거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마포구을선거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양천구갑선거구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양천구을선거구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4동
강서구갑선거구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
강서구을선거구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병선거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
구로구갑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향동
구로구을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5동, 가리봉동
금천구선거구	금천구 일원
영등포구갑선거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신길제3동
영등포구을선거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동작구갑선거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3동, 상도제4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동작구을선거구	상도제1동, 흑석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선거구명	선거구역
관악구갑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신림동
관악구을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서초구갑선거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서초구을선거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강남구갑선거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구을선거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3동, 개포4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강남구병선거구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병선거구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장지동, 위례동
강동구갑선거구	강일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강동구을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길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부산광역시(지역구 : 18)	
중구영도구선거구	중구 일원, 영도구 일원
서구동구선거구	서구 일원, 동구 일원
부산진구갑선거구	부전제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4동
부산진구을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가야제1동, 가야제2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동래구선거구	동래구 일원
남구선거구	남구 일원
북구갑선거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북구을선거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만덕제1동
해운대구갑선거구	우제1동, 우제2동, 우제3동, 중제1동,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해운대구을선거구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신평제2동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금정구선거구	금정구 일원
강서구선거구	강서구 일원
연제구선거구	연제구 일원

선거구명	선거구역
수영구선거구	수영구 일원
사상구선거구	사상구 일원
기장군선거구	기장군 일원
대구광역시(지역구 : 12)	
중구남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 일원
동구군위군갑선거구	동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동구군위군을선거구	동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 공산동, 군위군 일원
서구선거구	서구 일원
북구갑선거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노원동
북구를선거구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수성구갑선거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성구를선거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달서구갑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달서구를선거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유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달서구병선거구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달성군선거구	달성군 일원
인천광역시(지역구 : 14)	
중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중구 일원, 강화군 일원, 옹진군 일원
동구미추홀구갑선거구	미추홀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동구 일원
동구미추홀구를선거구	미추홀구 송의1·3동, 송의2동, 송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갑선거구	옥련1동,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연수구를선거구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남동구갑선거구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남동구를선거구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부평구갑선거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3동, 산곡4동, 부개1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부평구을선거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계양구갑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계산1동, 계산3동, 작전1동, 작전2동
계양구을선거구	계산2동, 계산4동, 작전서운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서구갑선거구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를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서구병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
광주광역시(지역구 : 8)	
동구남구갑선거구	남구 봉선1동, 봉선2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동구남구를선거구	남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동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동천동
서구를선거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북구갑선거구	중흥1동, 중흥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오치1동, 오치2동, 석곡동
북구를선거구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광산구갑선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광산구를선거구	비야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신창동, 수안동, 하남동, 임곡동
대전광역시(지역구 : 7)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서구를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성구갑선거구	진잠동, 학하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 상대동
유성구를선거구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대덕구선거구	대덕구 일원
울산광역시(지역구 : 6)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남구를선거구	달동, 삼산동, 아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북구선거구	북구 일원
울주군선거구	울주군 일원
세종특별자치시(지역구 : 2)	
세종특별자치시갑선거구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나성동, 다정동, 도담동, 어진동, 소담동, 반곡동, 보람동, 대평동
세종특별자치시을선거구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해밀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경기도(지역구 : 60)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수원시을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울천동, 수원시 권선구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수원시 팔달구 일원
수원시정선거구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광고1동, 광고2동, 영통1동
수원시무선거구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성남시수정구선거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
성남시중원구선거구	성남시 중원구 일원
성남시분당구갑선거구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1동, 구미동
의정부시갑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의정부시을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
안양시만안구선거구	안양시 만안구 일원
안양시동안구갑선거구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동, 인덕원동, 부림동
안양시동안구을선거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부천시갑선거구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 오정구 일원
부천시을선거구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병선거구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부천시 소사구 일원
광명시갑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학운동
광명시을선거구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평택시갑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북동, 세교동
평택시을선거구	평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고덕동

선거구명	선거구역
평택시병선거구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용이동, 동삭동
동두천시양주시 연천군갑선거구	양주시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옥정1동, 옥정2동
동두천시양주시 연천군을선거구	양주시 은현면, 남면, 동두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안산시갑선거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시을선거구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안산시병선거구	안산시 단원구 와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신4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병선거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1동, 중산2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고양시정선거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3동, 탄현1동, 탄현2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의왕시과천시선거구	의왕시 일원, 과천시 일원
구리시선거구	구리시 일원
남양주시갑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시을선거구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남양주시병선거구	와부읍, 진건읍, 퇴계원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오산시선거구	오산시 일원
시흥시갑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시흥시을선거구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능곡동, 월곶동
군포시선거구	군포시 일원
하남시갑선거구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하남시을선거구	덕풍3동, 미사1동, 미사2동, 미사3동
용인시갑선거구	용인시 처인구 일원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2동, 상하동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3동, 성북동
용인시정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3동, 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상현2동
파주시갑선거구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운정4동, 운정5동, 운정6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파주시읍선거구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장단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이천시선거구	이천시 일원
안성시선거구	안성시 일원
김포시갑선거구	고촌읍, 김포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김포시을선거구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화성시갑선거구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화성시을선거구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화성시병선거구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기배동, 화산동
화성시정선거구	반월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5동
광주시갑선거구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쌍령동, 송정동, 탄벌동, 광남1동, 광남2동
광주시을선거구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포천시가평군선거구	포천시 일원, 가평군 일원
여주시양평군선거구	여주시 일원, 양평군 일원
강원특별자치도(지역구 : 8)	
춘천시철원군화천군 양구군갑선거구	춘천시 동산면, 신동면, 남면, 동내면, 남산면,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춘천시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을선거구	춘천시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신사우동,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원주시갑선거구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무실동
원주시을선거구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강릉시선거구	강릉시 일원
동해시대백시삼척시 정선군선거구	동해시 일원, 태백시 일원, 삼척시 일원, 정선군 일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 양양군선거구	속초시 일원, 인제군 일원, 고성군 일원, 양양군 일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 평창군선거구	홍천군 일원, 횡성군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충청북도(지역구 : 8)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청주시서원구선거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청주시흥덕구선거구	청주시 흥덕구 일원
청주시청원구선거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충주시선거구	충주시 일원

선거구명	선거구역
제천시단양군선거구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보은군옥천군영동군 괴산군선거구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괴산군 일원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선거구	증평군 일원, 진천군 일원, 음성군 일원
충청남도(지역구 : 11)	
천안시갑선거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청룡동, 신안동,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성정2동
천안시을선거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부성1동, 부성2동
천안시병선거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불당1동, 불당2동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선거구	공주시 일원,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보령시서천군선거구	보령시 일원, 서천군 일원
아산시갑선거구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아산시을선거구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서산시태안군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	논산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당진시선거구	당진시 일원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전북특별자치도(지역구 : 10)	
전주시갑선거구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전주시을선거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전주시병선거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선거구	군산시 옥구읍, 옥산면, 임피면, 서수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해신동, 월명동, 신평동, 삼학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선거구	군산시 회현면, 대야면, 김제시 일원, 부안군 일원
익산시갑선거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삼기면,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영등2동
익산시을선거구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용동면, 동산동, 영등1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순창군선거구	남원시 일원, 장수군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선거구	완주군 일원,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전라남도(지역구 : 10)	
목포시선거구	목포시 일원
여수시갑선거구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총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여수시을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순천시광양시곡성군 구례군갑선거구	순천시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
순천시광양시곡성군 구례군을선거구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나주시화순군선거구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담양군함평군영광군 장성군선거구	담양군 일원, 함평군 일원, 영광군 일원, 장성군 일원
고흥군보성군장흥군 강진군선거구	고흥군 일원, 보성군 일원, 장흥군 일원, 강진군 일원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	해남군 일원, 완도군 일원, 진도군 일원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	영암군 일원,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
경상북도(지역구 : 13)	
포항시북구선거구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시남구울릉군 선거구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시선거구	경주시 일원
김천시선거구	김천시 일원
안동시예천군선거구	안동시 일원, 예천군 일원
구미시갑선거구	송정동, 원평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공단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구미시을선거구	선산읍, 고아읍, 산동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장천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선거구	영주시 일원, 영양군 일원, 봉화군 일원
영천시청도군선거구	영천시 일원, 청도군 일원
상주시문경시선거구	상주시 일원, 문경시 일원
경산시선거구	경산시 일원

선거구명	선거구역
의성군청송군영덕군 울진군선거구	의성군 일원, 청송군 일원, 영덕군 일원, 울진군 일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군 일원
경상남도(지역구 : 16)	
창원시의창구선거구	창원시 의창구 일원
창원시성산구선거구	창원시 성산구 일원
창원시마산합포구 선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
창원시마산회원구 선거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
창원시진해구선거구	창원시 진해구 일원
진주시갑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총무공동
진주시을선거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초장동
통영시고성군선거구	통영시 일원, 고성군 일원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선거구	사천시 일원, 남해군 일원, 하동군 일원
김해시갑선거구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을선거구	주촌면, 진례면,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밀양시의령군함안군 창녕군선거구	밀양시 일원,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창녕군 일원
거제시선거구	거제시 일원
양산시갑선거구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양산시을선거구	동면, 양주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산청군함양군거창군 합천군선거구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합천군 일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구 : 3)	
제주시갑선거구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시을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귀포시선거구	서귀포시 일원

3.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결과

가. 총괄

- 지역구 의석수 : 254(+1)
 - 분 구 : +5
 - 통 합 : △4
 - 구역조정 : 4
 -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 15

- 선거구 평균인구 : 202,481명
 - 최 고 : 동래구선거구(273,177명)
 - 최 저 : 익산시갑선거구(136,629명)

나. 선거구획정안

- 분구 선거구 : +5
 - 부 산(+1)
 - 북구강서구갑을 → 북구갑을, 강서구
 - 인 천(+1)
 - 서구갑을 → 서구갑을병
 - 경 기(+3)
 - 평택시갑을 → 평택시갑을병
 - 하남시 → 하남시갑을
 - 화성시갑을병 → 화성시갑을병정

□ 통합 선거구 : △4

○ 서 울(△1)

- 노원구갑·을병 → 노원구갑·을

○ 부 산(△1)

- 남구갑·을 → 남구

○ 경 기(△2)

- 부천시갑·을병정 → 부천시갑·을병
-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 → 안산시갑·을병

□ 구역조정 : 4

○ 대 구(1)

- 동구갑·을 → 동구군위군갑·을
- ※ 2023. 7. 1. 경북 군위군 → 대구 군위군

○ 경 기(1)

-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을

○ 전 북(1)

- 군산시,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을,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경 북(1)

-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 2023. 7. 1. 경북 군위군 → 대구 군위군

□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 15

○ 서 울(1) : 강동구갑·을

- 부 산(1) : 사하구갑을
- 인 천(2) : 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 경 기(6) : 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 충 남(1) : 천안시갑을병
- 전 북(2) : 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 전 남(1) : 여주시갑을
- 경 남(1) : 김해시갑을

다. 선거구획정안 시도별 조정내역

사도	증감	현 행	획 정 안	비 고
계	+1	253	254	
서 울	△1	노원구갑을병	노원구갑을	통 합
		강동구갑을	강동구갑을	경계조정
부 산	±0	남구갑을	남구	통 합
		북구강서구갑을	북구갑을 강서구	분 구
		사하구갑을	사하구갑을	경계조정
대 구	±0	동구갑을 (군위군)	동구군위군갑을	구역조정
인 천	+1	연수구갑을	연수구갑을	경계조정
		계양구갑을	계양구갑을	경계조정
		서구갑을	서구갑을병	분 구
경 기	+1	수원시병무	수원시병무	경계조정
		부천시갑을병정	부천시갑을병	통 합
		광명시갑을	광명시갑을	경계조정
		평택시갑을	평택시갑을병	분 구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을	구역조정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	안산시갑을병	통 합

사도	증감	현 행	획 정 안	비 고
		고양시갑을병	고양시갑을병	경계조정
		시흥시갑을	시흥시갑을	경계조정
		하남시	하남시갑을	분 구
		용인시을병정	용인시을병정	경계조정
		파주시갑을	파주시갑을	경계조정
		화성시갑을병	화성시갑을병정	분 구
총 남	±0	천안시갑을병	천안시갑을병	경계조정
전 북	±0	전주시갑병	전주시갑병	경계조정
		군산시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을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	구역조정
		익산시갑을	익산시갑을	경계조정
전 남	±0	여주시갑을	여주시갑을	경계조정
경 북	±0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구역조정
경 남	±0	김해시갑을	김해시갑을	경계조정

IV. 건의문

1. 선거구획정 책임성 강화

2015년 6월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가 신설되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실시된 세 차례의 국회의원선거 모두 법정기한을 한참 지나 선거일에 임박해서 선거구가 확정됨.

구체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이 먼저 결정되어야 함. 하지만, 정치권의 참여한 대립으로 인해 이에 대한 결정이 매년 지연되면서 법정기한이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못했던 것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0대·제21대 획정위원회는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도 국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세 차례 촉구하였으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특례선거구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은 선거일을 40여 일 앞둔 2. 29.에 이르러서야 송부되었음.

현행처럼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의 결정 주체와 결정 방법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정치권 협의에 의존하는 관행이 지속되면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큼.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률에 시·도별 의원정수 등을 결정하는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획정위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함.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선거구획정 과정은 고도의 정치 행위로 인식되고 있고,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기준만을 가지고 획정위원회가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는 국회가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향후 선거에서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선 제20대·제21대 획정위원회가 제안했던 것처럼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이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음. 그게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지역선거구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을 결정할 주체와 결정 기한을 법률에 규정하여 선거구획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선거구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임. 향후 선거에서는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을 건의함.

2. 인구비례와 지역대표성 조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 장치 검토 필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비례 2:1 범위에서 획정하여야 하고,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선거구획정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법률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인 농산어촌 지역은 면적이 광활한 소위 거대 선거구의 획정이 불가피한바,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12. 5. 제출한 보고서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에도 6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강원특별자치도의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선거구가 포함되어 있음.

이는 어디까지나 현행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교육지책으로 제안된 것이었던바, 소위 거대 선거구의 획정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함.

지난해 12. 1. 국회의장이 송부한 획정기준에 거대선거구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가 현행법에 부합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거구획정을 할 수는 없었음.

제21대·제22대 획정위원회는 특정 지역의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도록 한 정치권 합의를 반영하여 거대 선거구를 해소하였으나, 향후에는 우리나라 농산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와 지역대표성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부록 1-2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2023. 12. 5. 제출

머 리 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과거 국회에 설치되어 오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15년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성에 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도별 의원정수 등 획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의 제출기한(2023. 3. 10.)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획정위원회는 지난 8개월여 동안 공청회 및 지역의견 청취 등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지난 2월과 9월, 그리고 11월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 위원회에 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12월 1일 우리 위원회가 통보받은 획정기준은 세 차례에 걸친 촉구에 대해 국회를 대표하여 국회의장이 통보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획정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11월 12일 국외부재자 신고가 이미 시작되었고,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를 앞두고 있는 등 유권자의 알권리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의 기회 등 정치적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 불분명한 획정기준과 촉박한 시일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1년여간의 사전 준비작업을 토대로 획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구획정 과정에서도 선거구획정 지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현실을 보건대, 선거구획정 기준의 결정 주체를 명확히 법제화하여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에 온 힘을 다해주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 지원에 최선을 다한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허 철 훈

I.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1. 설치배경

-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반복되는 선거구획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되어 있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부여하였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2. 10.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설치되었음.

2. 설치근거

-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4조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3. 직무 및 활동기간

가. 직 무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 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나. 활동기간

2022. 10. 1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

※ 2023. 12. 5.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가. 구 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9명으로 구성(법 §24③)

※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법 §24④)

나.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법 §24③, 규칙 §5①)

※ 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규칙 §5③)

다. 임 기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법 §24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9인)

(순서 : 성명의 '가', '나', '다'...順)

구 분	성 명 (한 자)	경 력	비 고
위원장	허철훈 (許鐵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송봉섭 위원 후임
위 원	박재운 (朴在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 원	임부영 (任富泳)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위 원	장선화 (張善華)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 인문사회교양학부 강사	
위 원	정상우 (鄭相宇)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위 원	조진만 (趙眞晩)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위 원	최준영 (崔峻榮)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 원	최현선 (崔賢善)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위 원	홍재우 (洪在佑)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가. 회의소집 : 위원장이 소집함.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위원장은 소집하여야 함(규칙 §8①).

나. 의사정족수 : 위원 과반수의 출석(규칙 §8③)

다.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규칙 §8③)

※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 필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라. 의사기록 :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고,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규칙 §9③·④)

마. 자료요청 :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 가능(법 §24⑨, 규칙 §13)

※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

바. 기 타

-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법 §24⑬).
- 위원회의 공개여부, 의견수렴 방법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규칙 §15).

6.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8명으로 사무국을 구성함.
- 사무국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진행 보좌, 회의결과 정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을 위한 참고자료 작성 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실무적 지원을 함.

직원 명단

직 위	성 명	직 급	비 고
사무국장	조봉기	부이사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운영팀장	조준기	서기관	"
기획·운영팀	문주희	행정주사	"
기획·운영팀	서은주	행정주사	"
기획·운영팀	최일식	행정주사보	"
관리팀장	구원우	행정사무관	"
관 리 팀	강민경	행정주사	"
관 리 팀	김재황	행정주사	"

II.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경과

1. 제1차 회의

일시	2022. 10. 11.(화)	10:00 개의,	10:48 산회
회의내용	1. 위원장 호선 : 송봉섭 위원 2.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개황 보고		

2. 제2차 회의

일시	2022. 12. 20.(화)	16:03 개의,	16:48 산회
회의내용	1. 위원회 운영규정 의결 ○ 위원회의 및 회의록 등 비공개 원칙 ○ 윤리강령(정치적 중립, 공정성 등)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진행안 ○ 언론전담위원 선정 : 장선화 위원, 최준영 위원 ○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일정 논의		

3. 제3차 회의

일시	2023. 1. 26.(목)	14:00 개의,	15:05 산회
회의내용	1.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보고자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 보고내용 : 선거구별 인구변동 및 행정구역 변경 현황 2.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3. 선거구획정안 마련 공청회 진행방안 ○ 진술인 추천 대상 : 국회 의석보유 정당, 대한지리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 ○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 통보 관련 논의		

4. 제4차 회의

일시	2023. 2. 13.(월) 14:00 개의, 16:58 산회		
회의내용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1. 진술인 명단		
	추천	소속	성명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전문위원)	김진영
	국민의힘	동국대학교(교수)	김준석
	정의당	법무법인 덕수(변호사)	김준우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소장)	오준호
	시대전환	시대전환(정책위원장)	유명종
	대한지리학회	경희대학교(교수)	지상현
	한국공법학회	원광대학교(교수)	강승식
한국정치학회	성공회대학교(연구교수)	김형철	
한국행정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	김동욱	
2. 진술 요지			
가. 김진영(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 ○ 대표성 확대 및 입법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의원정수 및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나 국민적 공감대 전제 ○ 소선거구, 중대선거구는 각각 장단점 존재. 현행 제도하에서 개선방안 마련하는 것이 수용성 측면에서 바람직. 다만, 중대선거구 도입 시 동일 선거구 내 복수 공천 금지 조항은 필수적 ○ 선거구획정 시 농산어촌에 대한 고려는 단순한 지역 안배 차원을 넘어 적극적 검토가 필요 			
나. 김준석(동국대학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는 현상 유지 선호 경향이 있고, 선거구획정 최종 권한도 갖고 있으므로 확정위는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고민 필요 ○ 확정위는 국회와 정치권, 시민사회, 일반 대중 등 여러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 수행 ○ 선관위 지원 인력 외 확정위 상근 인력 및 한시적 전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며, 회의 일정·의제·내용 등도 충분히 공개할 필요 			
다. 김준우(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 선거제도개선 논의와 별도로 확정위는 법정 제출기한 준수를 위한 노력 필요 ○ 인구비례기준(2:1) 및 시도별 의원정수 배정주체가 법상 불명확하므로 확정위가 자체 기준을 제시하되, 그 근거와 논의과정 공개 ○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금지를 전제로 확정안을 제출하고, 불가피하게 지역구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다면 국회에 적극 의견 개진 ○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는 중요한 가치이나, 표의 등가성 범위인 2:1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며, 지역 대표성 보장 시에는 비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입법적 장치 동반 필요 			

라. 오준호(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및 완전 연동형 비례제로 전환, 의원정수 확대, 의석 배분 최소기준(봉쇄조항) 완화 및 정당연합명부제 도입, 민주주의 기본소득 도입 제시
- 표의 증가성을 보장하는 획정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획정위를 상설화하거나 시·도별 의원정수를 획정위에 일임하는 등 획정위 권한 강화 및 독립성 실질화 필요

마. 유명종(시대전환 정책위원장)

-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초과하면 자동 발효되는 제도 도입 필요
- 의원정수를 인구별·선거구별로 연동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인구 하한 미달 지역 의석 보존 방안, 의원정수를 확대하되 의원실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여 저항을 줄이는 방안 등 제안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2:1, 권역별비례대표, 명부형비례대표, 대선구구제 등 제시

바. 이상현(경희대학교 교수)

- 수도권-비수도권의 의석수 불균형 문제,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는 '아래로부터의 조정방식'과 시도별 의원정수에 따라 새롭게 정하는 '위로부터의 방식' 중 선택 등 고민 필요
- 지속가능한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지리적 요건, 생활권 등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인구비례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맞추고, 하위단계에서는 조금 완화하는 방안 제안
- 선거구획정 결과를 지도 등 공간포맷 형태의 DB로 제공 필요

사. 강승식(원광대학교 교수)

- 선거구획정 인적 기준을 현행처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 필요
- 지역대표성 보안을 위해서는 선거구의 조밀성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공개하고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
-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해 선거구의 평균 면적을 크게 초과한 선거구에 대해서는 인구기준 적용 완화 필요. 현재가 이러한 농어촌특별선거구에 대해서도 평등선거 원칙을 관철하지는 미지수

아. 김형철(성공회대학교 교수)

-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선거구획정 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조화 방안* 고찰 필요
- * 거대 지역구 사도에 추가의석 허용, 의석수 증원, 조정의석 활용 등
- 획정위 활동 및 획정안(잠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자. 김동욱(서울대학교 교수)

- 국가가 지역선거구 총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 적용 선거구 범위에 대해 조속한 확정 필요
- 인구 기준을 유권자수로 적용하는 등 농산어촌 배려가 필요하고, 현행 선거구의 개편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획정위원 전원이 세종·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중심도시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필요
- 획정위가 법적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인력 등의 넉넉한 배치 필요

5. 제5차 회의

일시	2023. 3. 13.(월)	16:30 개의,	18:00 산회
회의 내용	1.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법정제출기한 경과에 대한 입장문 확정 ○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수렴 방안 ○ 구·시·군별 기초자료 조사 방안		

6. 제6차 회의

일시	2023. 4. 21.(금)	15:00 개의,	17:50 산회																			
회의 내용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안 마련을 위한 제2차 공청회 개최 가. 진술인 명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추천단체</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 속</th> <th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2024정치개혁 공동행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숙명여대(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윤 광 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외대(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 재 목</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범시민사회 단체연합</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 기 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변호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 경 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한변호사협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변호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송 혜 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지방자치학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양대(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 석 환</td> </tr> </tbody> </table> 나. 진술 요지 1) 윤광일(숙명여대 교수) ○ 이번에도 선거 직전에 선거제 개편 및 확정안 제출 가능성이 크므로 국회 압박을 위한 획정위 차원의 대국민 여론 형성 노력 필요 ○ 과거 획정위 회의록 회람 등 경험 공유 및 쟁점 지역 방문 등 필요 ○ 현지실사, 지역·정당의견 청취 확대, 소위원회 활동 활성화 필요 2) 이재목(한국외대 교수) ○ 시·도별 의석수 불균형, 획정 지연,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과잉분할에 따른 거리 맨더링 문제 반복 제기 ○ 시·도별 의석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나, 단기간에 어렵다면 획정위와 국회 간 소통창구 마련, 시민사회·유권자 의견 개진 통로 확대 등 국회 압박 수단 마련 필요 ○ 국토의 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을 근거로 농산어촌은 인구 외 면적 등 고려한 획정 필요, 유권자수 기준 획정 방안도 고려 3)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이상적인 안이 아닌 실현 가능하면서 바람직한 안을 찾는 측면에서 볼 때 전면적			추천단체	소 속	성 명	2024정치개혁 공동행동	숙명여대(교수)	윤 광 일	한국외대(교수)	이 재 목	범시민사회 단체연합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이 기 우	변호사	정 경 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송 혜 미	한국지방자치학회	한양대(교수)	이 석 환
추천단체	소 속	성 명																				
2024정치개혁 공동행동	숙명여대(교수)	윤 광 일																				
	한국외대(교수)	이 재 목																				
범시민사회 단체연합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이 기 우																				
	변호사	정 경 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송 혜 미																				
한국지방자치학회	한양대(교수)	이 석 환																				

	<p>소선거구제, 전면적 중대선거구제는 부적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한 안은 도농복합형 선거제이고, 80~100만 대도시 대상 4~5인 이상 선출, 연기명 투표 채택 바람직 <p>4) 정경모(변호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의 등가성 보장, 승자독식 기득권 해소, 지역 일당 체제 해소, 정당 공천에 유권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선 필요 ○ 80만 이상 도시는 4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채택, 의원정수 증원이 어려운 현실 고려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폐쇄형 명부 바람직 <p>마. 송해미(변호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 사표 축소, 유권자 의사 왜곡 방지, 책임 정당정치 제도화 가능, 민주적 책임성 향상 및 지역주의 완화 기여 등의 장점이 있음. ○ 다만, 초과의석 발생에 따른 총 의석수 변동 문제가 쟁점 <p>바. 이석환(한양대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제25조제2항*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볼 때 인구수 기준은 지역대표성 및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 등 다른 기준에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은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투표가치 평등 측면에서 인구수보다는 유권자수가 타당해 보이므로 사회적 합의 필요 ○ 제20대·제21대 국선 선거구는 광역자치단체별 과대 또는 과소 대표 문제 발생, 향후 확정 전 사도별 의석할당절차 법제화 필요 ○ 면적을 획정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안 고려 필요 <p>2.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수렴 강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견 청취 방안 논의 ○ 획정위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구 개설 관련 논의
--	---

7. 제7차 회의

일시	2023. 6. 16.(금) 15:40 개의, 16:22 산회
회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결위에 따른 후임 위원 위촉 및 위원장 호선 절차 등 보고 2. 경북·전북지역 의견청취 주요내용 보고

8. 제8차 회의

일시	2023. 6. 21.(수)	11:11 개의,	11:36 산회
회의 내용	1. 위원장 호선 : 허철훈 위원		

9. 제9차 회의

일시	2023. 7. 21.(금)	14:33 개의,	15:41 산회
회의 내용	1. 위원회의 운영 관련 논의 ○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여부 논의 ○ 선거구획정 기준 미통보 시 대응 방안 논의		

10. 제10차 회의

일시	2023. 9. 8.(금)	16:00 개의,	17:50 산회
회의 내용	1.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재촉구문안 의결 ○ 정개특위에 10. 12.까지 획정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 2. 위원회의 운영 관련 논의 ○ 획정위원 언론대담 주요 내용 ○ 지역의견 청취 추가 실시 대상지역 논의 - 10. 20.(금) 14시, 서울지역 의견청취 실시 결정 ○ 선거구획정안 작성 방안 논의		

11. 제11차 회의

일시	2023. 10. 20.(금)	15:47 개의,	17:25 산회
회의 내용	1. 위원회의 운영 방안 논의 ○ 획정 기준 미통보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 ○ 지역의견 청취 주요 내용 보고 ○ 민원 등 현황 보고(73건)		

12. 제12차 회의

일시	2023. 11. 17.(금) 14:00 개의, 17:34 산회
회의 내용	<p>1.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문안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개특위에 확정기준의 조속한 확정을 세 번째 촉구 <p>2. 지역의원 청취 결과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이 제안한 지역별 확정안에 대한 논의(11개 시·도)

13. 제13차 회의

일시	2023. 11. 28.(화) 7:30 개의, 9:02 산회
회의 내용	<p>1. 선거구획정안 관련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장의 확정기준 통보 예정상황에 따른 획정안 논의 여부 결정 <p>2. 의석정당 의견청취 방안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 12. 1.(금) 15:00 ○ 대상정당 : 7개(2023.11.28. 현재) 더불어민주당(168석), 국민의힘(111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1석), 진보당(1석), 한국의희망(1석)

14. 제14차 회의

일시	2023. 12. 1.(금) 15:00 개의, 23:10 산회																								
회의 내용	<p>1. 선거구획정에 대한 정당의견 청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 명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정당명</th> <th style="width: 33%;">직 위</th> <th style="width: 33%;">성 명</th> </tr> </thead> <tbody> <tr> <td>더불어민주당</td> <td>전문위원</td> <td>김 진 영</td> </tr> <tr> <td>국민의힘</td> <td>전문위원</td> <td>전 선 영</td> </tr> <tr> <td>정의당</td> <td>원내행정기획팀장</td> <td>윤 재 설</td> </tr> <tr> <td>진보당</td> <td>조직위원장</td> <td>홍 연 아</td> </tr> <tr> <td>한국의희망</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불 참(서면 의견서 제출)</td> </tr> <tr> <td>기본소득당</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불 참</td> </tr> <tr> <td>시대전환</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불 참</td> </tr> </tbody> </table>	정당명	직 위	성 명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김 진 영	국민의힘	전문위원	전 선 영	정의당	원내행정기획팀장	윤 재 설	진보당	조직위원장	홍 연 아	한국의희망	불 참(서면 의견서 제출)		기본소득당	불 참		시대전환	불 참	
정당명	직 위	성 명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김 진 영																							
국민의힘	전문위원	전 선 영																							
정의당	원내행정기획팀장	윤 재 설																							
진보당	조직위원장	홍 연 아																							
한국의희망	불 참(서면 의견서 제출)																								
기본소득당	불 참																								
시대전환	불 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 선거구획정 기준,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 <p>2. 선거구획정 기준 등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기준 및 시도별 의원정수 ○ 특례선거구 적용 여부 ○ 불부합 선거구 중심 최소 조정 여부
--	--

15. 제15차 회의

일시	2023. 12. 2.(토) 10:00 개의, 19:36 산회
회의 내용	1.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16. 제16차 회의

일시	2023. 12. 3.(일) 10:00 개의, 14:11 산회
회의 내용	1.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17. 제17차 회의

일시	2023. 12. 4.(월) 17:00 개의, 18:02 산회
회의 내용	1.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이 기재된 보고서 채택

Ⅲ.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

1. 선거구획정기준 등

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획정기준을 적용함.

가. 인구편차 허용범위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인구수는 13만 6천 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로 한다.

나.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각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	정 수
서울특별시	48
부산광역시	18
대구광역시	12
인천광역시	14
광주광역시	8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6
세종특별자치시	2
경기도	60
강원특별자치도	8
충청북도	8
충청남도	11
전라북도	9
전라남도	10
경상북도	13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3

2. 선거구획정안

가. 선거구획정안 주문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종로구선거구, 중구성동구갑선거구, 중구성동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종로구중구선거구, 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을선거구로 조정한다.

- 종로구중구선거구 : 종로구 일원, 중구 일원

- 성동구갑선거구 :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용답동

- 성동구을선거구 :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2) 노원구갑선거구, 노원구을선거구, 노원구병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노원구갑선거구와 노원구을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 노원구갑선거구 :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증계본동, 증계2·3동

- 노원구을선거구 : 증계1동, 증계4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3) 강동구갑선거구와 강동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강동구갑선거구 : 강일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 강동구을선거구 :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길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남구갑선거구와 남구을선거구를 남구선거구로 통합한다.

2) 북구강서구갑선거구와 북구강서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북구갑선거구, 북구을선거구, 강서구선거구로 분구조정한다.

- 북구갑선거구 :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 북구을선거구 :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만덕제1동
- 강서구선거구 : 강서구 일원

3) 사하구갑선거구와 사하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사하구갑선거구 :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체1동, 하단체2동, 신평제2동
- 사하구을선거구 : 신평제1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동구갑선거구, 동구을선거구, 경상북도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 중 군위군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동구군위군갑선거구와 동구군위군을선거구로 조정한다.

- 동구군위군갑선거구 : 동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 동구군위군을선거구 : 동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 공산동, 군위군 일원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연수구갑선거구와 연수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연수구갑선거구 : 옥련1동,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 연수구을선거구 :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2) 계양구갑선거구와 계양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계양구갑선거구 : 효성1동, 효성2동, 계산1동, 계산3동, 작전1동, 작전2동
 - 계양구을선거구 : 계산2동, 계산4동, 작전서운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 3) 서구갑선거구와 서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서구갑선거구, 서구을선거구, 서구병선거구로 분구한다.
- 서구갑선거구 :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서구을선거구 :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 서구병선거구 :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

<경기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 1) 수원시병선거구와 수원시무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수원시병선거구 :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수원시 팔달구 일원
 - 수원시무선거구 :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 2) 부천시갑선거구, 부천시을선거구, 부천시병선거구, 부천시정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부천시갑선거구, 부천시을선거구, 부천시병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 부천시갑선거구 : 심곡동, 신중동, 오정동
 - 부천시을선거구 : 중동, 상동, 대산동, 소사본동
 - 부천시병선거구 : 부천동, 범안동, 성곡동
- 3) 광명시갑선거구와 광명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광명시갑선거구 :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학온동
 - 광명시을선거구 :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 4) 평택시갑선거구와 평택시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평택시갑선거구, 평택시을선거구, 평택시병선거구로 분구한다.

- 평택시갑선거구 :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북동, 세교동
 - 평택시을선거구 :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고덕동
 - 평택시병선거구 :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용이동, 동삭동
- 5)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양주시선거구, 포천시가평군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동두천시양주시갑선거구, 동두천시양주시을선거구, 포천시연천군가평군선거구로 조정한다.
- 동두천시양주시갑선거구 : 양주시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옥정1동, 옥정2동
 - 동두천시양주시을선거구 : 양주시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동두천시 일원
 - 포천시연천군가평군선거구 : 포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가평군 일원
- 6) 안산시상록구갑선거구, 안산시상록구을선거구, 안산시단원구갑선거구, 안산시단원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안산시갑선거구, 안산시을선거구, 안산시병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 안산시갑선거구 :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 안산시을선거구 :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 안산시병선거구 : 안산시 단원구 와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 7)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병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고양시갑선거구 :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 고양시을선거구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신4동, 화전동, 대덕동
 - 고양시병선거구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1동, 중산2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 8) 시흥시갑선거구와 시흥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시흥시갑선거구 :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 시흥시을선거구 :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능곡동, 월곶동

9) 하남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하남시갑선거구와 하남시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하남시갑선거구 :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 하남시을선거구 : 덕풍3동, 미사1동, 미사2동, 미사3동

10)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정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용인시을선거구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2동, 상하동
- 용인시병선거구 :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3동, 성북동
- 용인시정선거구 :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3동, 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상현2동

11) 파주시갑선거구와 파주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파주시갑선거구 :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운정4동, 운정5동, 운정6동
- 파주시을선거구 :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장단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12) 화성시갑선거구, 화성시을선거구, 화성시병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화성시갑선거구, 화성시을선거구, 화성시병선거구, 화성시정선거구로 분구한다.

- 화성시갑선거구 :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 화성시을선거구 :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 화성시병선거구 :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기배동, 화산동
- 화성시정선거구 : 반월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5동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선거구,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선거구, 강릉시선거구,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춘천시갑선거구, 춘천시을선거구, 강릉시양양군선거구,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선거구로 조정한다.
 - 춘천시갑선거구 :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조운동, 약사명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 춘천시을선거구 : 신북읍, 동면, 동내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소양동, 교동, 근화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신사우동
 - 강릉시양양군선거구 : 강릉시 일원, 양양군 일원
 -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선거구 : 속초시 일원,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일원, 고성군 일원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천안시갑선거구, 천안시을선거구, 천안시병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천안시갑선거구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청룡동, 신안동,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성정2동
 - 천안시을선거구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부성1동, 부성2동
 - 천안시병선거구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불당1동, 불당2동

〈전라북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전주시갑선거구와 전주시병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전주시갑선거구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 전주시병선거구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2) 익산시갑선거구와 익산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익산시갑선거구 :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삼기면,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영등2동
- 익산시을선거구 : 옹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용동면, 동산동, 영등1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3) 정읍시고창군선거구,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 김제시부안군선거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를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선거구,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 김제시완주군임실군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1) 목포시선거구, 나주시화순군선거구,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선거구를 목포시신안군선거구, 나주시화순군무안군선거구,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2) 여수시갑선거구와 여수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여수시갑선거구 :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 여수시을선거구 :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3)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선거구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순천시갑선거구, 순천시을선거구,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로 분구조정한다.

- 순천시갑선거구 : 승주읍, 주암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왕조1동, 왕조2동
- 순천시을선거구 :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덕연동, 풍덕동, 도사동
-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 :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1)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와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를 영주시영양군봉

화군선거구와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선거구로 조정한다.

〈경상남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김해시갑선거구와 김해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김해시갑선거구 :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 김해시을선거구 : 주촌면, 진례면,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나.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 구역표 (지역구 : 253)

아래 선거구역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이후의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한 것임.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서울특별시(지역구 : 48)	
종로구중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 일원
용산구선거구	용산구 일원
성동구갑선거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용답동
성동구을선거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광진구갑선거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광진구을선거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자양제4동, 화양동
동대문구갑선거구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을선거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종량구갑선거구	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3·8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망우제3동
종량구을선거구	상봉제1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목제1동, 목제2동, 망우본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성북구갑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성북구을선거구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강북구갑선거구	번1동, 번2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을선거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
도봉구갑선거구	쌍문1동, 쌍문3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도봉구울선거구	쌍문2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도봉1동, 도봉2동
노원구갑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2·3동
노원구을선거구	중계1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은평구갑선거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역촌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을선거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서대문구갑선거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서대문구을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마포구갑선거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마포구을선거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양천구갑선거구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양천구을선거구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4동
강서구갑선거구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
강서구을선거구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병선거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
구로구갑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향동
구로구을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5동, 가리봉동
금천구선거구	금천구 일원
영등포구갑선거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신길제3동
영등포구을선거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동작구갑선거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3동, 상도제4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동작구을선거구	상도제1동, 흑석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관악구갑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신림동
관악구을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서초구갑선거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서초구을선거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강남구갑선거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구을선거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3동, 개포4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강남구병선거구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송파구병선거구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장지동, 위례동
강동구갑선거구	강일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강동구을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길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부산광역시(지역구 : 18)	
중구영도구선거구	중구 일원, 영도구 일원
서구동구선거구	서구 일원, 동구 일원
부산진구갑선거구	부전제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4동
부산진구을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가야제1동, 가야제2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동래구선거구	동래구 일원
남구선거구	남구 일원
북구갑선거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북구을선거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만덕제1동
해운대구갑선거구	우제1동, 우제2동, 우제3동, 중제1동,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해운대구을선거구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사하구갑선거구	과정제1동, 과정제2동, 과정제3동, 과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신평제2동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금정구선거구	금정구 일원
강서구선거구	강서구 일원
연제구선거구	연제구 일원
수영구선거구	수영구 일원
사상구선거구	사상구 일원
기장군선거구	기장군 일원
대구광역시(지역구 : 12)	
중구남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 일원
동구군위군갑선거구	동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동구군위군을선거구	동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 공산동, 군위군 일원
서구선거구	서구 일원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북구갑선거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노원동
북구을선거구	무태조야동, 관문동, 대전1동, 대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수성구갑선거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성구을선거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달서구갑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달서구을선거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유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달서구병선거구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달성군선거구	달성군 일원
인천광역시(지역구 : 14)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	중구 일원, 강화군 일원, 옹진군 일원
동구미추홀구갑 선거구	미추홀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동구 일원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	미추홀구 송의1·3동, 송의2동, 송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갑선거구	옥련1동,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연수구을선거구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남동구갑선거구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남동구을선거구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부평구갑선거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3동, 산곡4동, 부개1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부평구을선거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계양구갑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계산1동, 계산3동, 작전1동, 작전2동
계양구을선거구	계산2동, 계산4동, 작전서운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서구갑선거구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원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을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서구병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
광주광역시(지역구 : 8)	
동구남구갑선거구	남구 봉선1동, 봉선2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동구남구을선거구	남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동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동천동
서구를선거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북구갑선거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오치1동, 오치2동, 석곡동
북구를선거구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광산구갑선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광산구를선거구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대전광역시(지역구 : 7)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서구를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성구갑선거구	진잠동, 학하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 상대동
유성구를선거구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죽동, 관평동
대덕구선거구	대덕구 일원
울산광역시(지역구 : 6)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남구를선거구	달동, 삼산동, 아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북구선거구	북구 일원
울주군선거구	울주군 일원
세종특별자치시(지역구 : 2)	
세종특별자치시갑선거구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나성동, 다정동, 도담동, 어진동, 소담동, 반곡동, 보람동, 대평동
세종특별자치시를선거구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해밀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경기도(지역구 : 60)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수원시울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수원시 권선구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수원시 팔달구 일원
수원시정선거구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광고1동, 광고2동, 영통1동
수원시무선거구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성남시수정구선거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
성남시중원구선거구	성남시 중원구 일원
성남시분당구갑선거구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1동, 구미동
의정부시갑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의정부시을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
안양시만안구선거구	안양시 만안구 일원
안양시동안구갑선거구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안양시동안구을선거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부천시갑선거구	심곡동, 신중동, 오정동
부천시을선거구	중동, 상동, 대산동, 소사본동
부천시병선거구	부천동, 범안동, 성곡동
광명시갑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학운동
광명시을선거구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평택시갑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북동, 세교동
평택시을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고덕동
평택시병선거구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용이동, 동석동
동두천시양주시갑선거구	양주시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옥정1동, 옥정2동
동두천시양주시을선거구	양주시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동두천시 일원
안산시갑선거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시을선거구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동, 부곡동, 율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안산시병선거구	안산시 단원구 와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신4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병선거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1동, 중산2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고양시정선거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3동, 탄현1동, 탄현2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의왕시과천시선거구	의왕시 일원, 과천시 일원
구리시선거구	구리시 일원
남양주시갑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시을선거구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남양주시병선거구	와부읍, 진건읍, 퇴계원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오산시선거구	오산시 일원
시흥시갑선거구	대아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시흥시을선거구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능곡동, 월곶동
군포시선거구	군포시 일원
하남시갑선거구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하남시을선거구	덕풍3동, 미사1동, 미사2동, 미사3동
용인시갑선거구	용인시 처인구 일원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2동, 상하동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3동, 성북동
용인시정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3동, 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상현2동
파주시갑선거구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운정4동, 운정5동, 운정6동
파주시을선거구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장단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이천시선거구	이천시 일원
안성시선거구	안성시 일원
김포시갑선거구	고촌읍, 김포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김포시을선거구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화성시갑선거구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화성시을선거구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화성시병선거구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기배동, 화산동

선거구명	선거구역
화성시정선거구	반월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5동
광주시갑선거구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쌍령동, 송정동, 탄벌동, 광남1동, 광남2동
광주시을선거구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포천시연천군가평군 선거구	포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가평군 일원
여주시양평군선거구	여주시 일원, 양평군 일원
강원특별자치도(지역구 : 8)	
춘천시갑선거구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조운동, 약사명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춘천시을선거구	신북읍, 동면, 동내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소양동, 교동, 근화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신사우동
원주시갑선거구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무실동
원주시을선거구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강릉시양양군선거구	강릉시 일원, 양양군 일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 정선군선거구	동해시 일원, 태백시 일원, 삼척시 일원, 정선군 일원
속초시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고성군 선거구	속초시 일원,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일원, 고성군 일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 평창군선거구	홍천군 일원, 횡성군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충청북도(지역구 : 8)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청주시서원구선거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청주시흥덕구선거구	청주시 흥덕구 일원
청주시청원구선거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충주시선거구	충주시 일원
제천시단양군선거구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보은군옥천군영동군 괴산군선거구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괴산군 일원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선거구	증평군 일원, 진천군 일원, 음성군 일원
충청남도(지역구 : 11)	
천안시갑선거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청룡동, 신안동,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성정2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천안시을선거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부성1동, 부성2동
천안시병선거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불당1동, 불당2동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선거구	공주시 일원,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보령시서천군선거구	보령시 일원, 서천군 일원
아산시갑선거구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아산시을선거구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서산시태안군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	논산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당진시선거구	당진시 일원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전라북도(지역구 : 9)	
전주시갑선거구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전주시을선거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전주시병선거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군산시선거구	군산시 일원
익산시갑선거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삼기면,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영등2동
익산시을선거구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용동면, 동산동, 영등1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정읍시순창군고창군 부안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순창군 일원, 고창군 일원, 부안군 일원
남원시진안군무주군 장수군선거구	남원시 일원,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김제시완주군임실군 선거구	김제시 일원, 완주군 일원, 임실군 일원
전라남도(지역구 : 10)	
목포시신안군선거구	목포시 일원, 신안군 일원
여수시갑선거구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여수시을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순천시갑선거구	승주읍, 주암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왕조1동, 왕조2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순천시울선거구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덕연동, 풍덕동, 도사동
나주시화순군무안군 선거구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무안군 일원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담양군함평군영광군 장성군선거구	담양군 일원, 함평군 일원, 영광군 일원, 장성군 일원
고흥군보성군장흥군 강진군선거구	고흥군 일원, 보성군 일원, 장흥군 일원, 강진군 일원
해남군영암군완도군 진도군선거구	해남군 일원, 영암군 일원, 완도군 일원, 진도군 일원
경상북도(지역구 : 13)	
포항시북구선거구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시남구울릉군 선거구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시선거구	경주시 일원
김천시선거구	김천시 일원
안동시에천군선거구	안동시 일원, 예천군 일원
구미시갑선거구	송정동, 원평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공단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구미시을선거구	선산읍, 고아읍, 산동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장천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선거구	영주시 일원, 영양군 일원, 봉화군 일원
영천시청도군선거구	영천시 일원, 청도군 일원
상주시문경시선거구	상주시 일원, 문경시 일원
경산시선거구	경산시 일원
의성군청송군영덕군 울진군선거구	의성군 일원, 청송군 일원, 영덕군 일원, 울진군 일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군 일원
경상남도(지역구 : 16)	
창원시의창구선거구	창원시 의창구 일원
창원시성산구선거구	창원시 성산구 일원
창원시마산합포구 선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
창원시마산회원구 선거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창원시진해구선거구	창원시 진해구 일원
진주시갑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진주시을선거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초장동
통영시고성군선거구	통영시 일원, 고성군 일원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선거구	사천시 일원, 남해군 일원, 하동군 일원
김해시갑선거구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을선거구	추촌면, 진례면,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밀양시의를령군함안군 창녕군선거구	밀양시 일원,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창녕군 일원
거제시선거구	거제시 일원
양산시갑선거구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양산시을선거구	동면, 양주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산청군함양군거창군 합천군선거구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합천군 일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구 : 3)	
제주시갑선거구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시을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귀포시선거구	서귀포시 일원

3.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결과

가. 총괄

□ 지역구 의석수 : 253(±0)

○ 분 구 : +6

○ 통 합 : △6

○ 구역조정 : 5

○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 15

□ 선거구 평균인구 : 203,281명

○ 최 고 : 동래구선거구(273,177명)

○ 최 저 : 익산시갑선거구(136,629명)

나. 선거구획정안

□ 분구 선거구 : +6

○ 부 산(+1)

- 북구강서구갑을 → 북구갑을, 강서구

○ 인 천(+1)

- 서구갑을 → 서구갑을병

○ 경 기(+3)

- 평택시갑을 → 평택시갑을병

- 하남시 → 하남시갑을

- 화성시갑을병 → 화성시갑을병정

○ 전 남(+1)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 통합 선거구 : △6

○ 서 울(△1)

- 노원구갑을병 → 노원구갑을

○ 부 산(△1)

- 남구갑을 → 남구

○ 경 기(△2)

- 부천시갑을병정 → 부천시갑을병
-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 → 안산시갑을병

○ 전 북(△1)

-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 전 남(△1)

-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 구역조정 : 5

○ 서 울(1)

-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 →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 대 구(1)

- 동구갑을 → 동구군위군갑을

※ 2023. 7. 1. 경북 군위군 → 대구 군위군

○ 경 기(1)

-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균 →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균

○ 강 원(1)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 경 북(1)

-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 청송군영덕군울진군

※ 2023. 7. 1. 경북 군위군 → 대구 군위군

□ 자치구시군 내 경제조정 : 15

○ 서 울(1) : 강동구갑을

○ 부 산(1) : 사하구갑을

○ 인 천(2) : 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 경 기(6) : 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 충 남(1) : 천안시갑을병

○ 전 북(2) : 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 전 남(1) : 여주시갑을

○ 경 남(1) : 김해시갑을

다. 선거구획정안 시도별 조정내역

사도	증감	현 행	획 정 안	비 고
계	±0	253	253	
서울	△1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구역조정
		노원구갑을병	노원구갑을	통 합
		강동구갑을	강동구갑을	경계조정
부산	±0	남구갑을	남구	통 합
		북구강서구갑을	북구갑을 강서구	분 구
		사하구갑을	사하구갑을	경계조정
대구	±0	동구갑을 (군위군)	동구군위군갑을	구역조정
인천	+1	연수구갑을	연수구갑을	경계조정
		계양구갑을	계양구갑을	경계조정
		서구갑을	서구갑을병	분 구
경기	+1	수원시병무	수원시병무	경계조정
		부천시갑을병정	부천시갑을병	통 합
		광명시갑을	광명시갑을	경계조정
		평택시갑을	평택시갑을병	분 구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구역조정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	안산시갑을병	통 합
		고양시갑을병	고양시갑을병	경계조정
		시흥시갑을	시흥시갑을	경계조정
		하남시	하남시갑을	분 구
		용인시을병정	용인시을병정	경계조정
		파주시갑을	파주시갑을	경계조정
		화성시갑을병	화성시갑을병정	분 구
강원	±0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 군	구역조정
충남	±0	천안시갑을병	천안시갑을병	경계조정
전북	△1	전주시갑병	전주시갑병	경계조정

사도	증감	현 행	획 정 안	비 고
		익산시갑을	익산시갑을	경계조정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통 합
전 남	±0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통 합
		여수시갑을	여수시갑을	경계조정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분 구
경 북	±0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구역조정
경 남	±0	김해시갑을	김해시갑을	경계조정

IV. 건의문

1. 선거구획정 책임성 강화

2015년 6월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가 신설되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실시된 세 차례의 국회의원선거 모두 법정기한을 한참 지나 선거일에 임박해서 선거구가 확정되었음.

구체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이 먼저 결정되어야 함. 하지만, 정치권의 참여한 대립으로 인해 이에 대한 결정이 매년 지연되면서 법정기한이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못했던 것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0대·제21대 획정위원회는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도 국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세 차례 촉구하였으나, 국외부재자 신고 등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후인 12. 1.이 되어서야 선거구획정 기준을 송부받았고, 그마저도 필수 기준인 시·도별 의원정수 등은 받지 못했음.

현행처럼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의 결정 주체와 결정 방법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정치권 협의에 의존하는 관행이 지속되면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큼.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률에 시·도별 의원정수 등을 결정하는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획정위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함.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선거구획정 과정은 고도의 정치 행위로 인식되고 있고,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기준만을 가지고 획정위원회가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는 국회가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향후 선거에서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선 제20대·제21대 획정위원회가 제안했던 것처럼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이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음. 그게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지역선거구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을 결정할 주체와 결정 기한을 법률에 규정하여 선거구획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본 보고서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은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지연되자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와 합의해서 요청한 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을 결정하여 마련한 것임. 법정기한을 8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점과 직무상 독립성을 부여받은 획정위원회의 활동이 국회의 정치 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선거구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임. 향후 선거에서는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을 건의함.

2. 인구비례와 지역대표성 조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 장치 검토 필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비례 2:1 범위에서 획정하여야 하고,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선거구획정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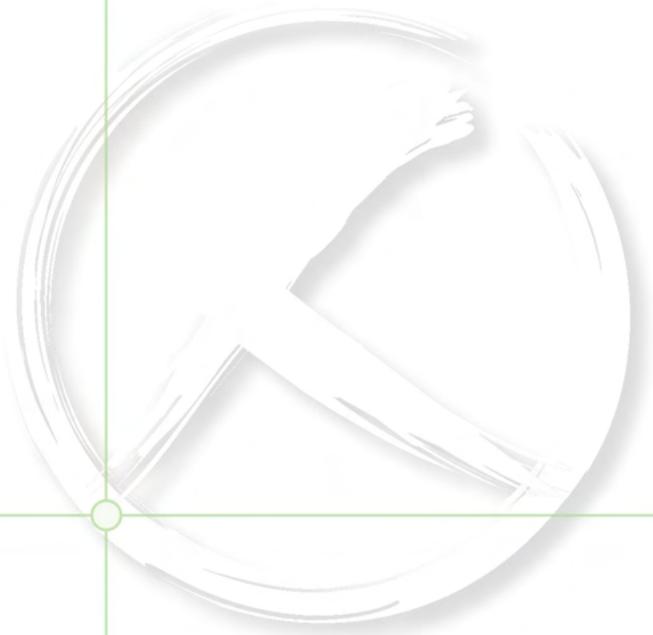
하지만, 해당 법률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인 농산어촌 지역은 면적이 광활한 소위 거대 선거구의 획정이 불가피한바, 우리 위원회가 제출하는 본 보고서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에도 6개 자치구·시·군으로 이루어진 강원특별자치도의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선거구가 포함되어 있음.

지난 9월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강원 지역 의견 청취에서도 이와 동일한 선거구가 제안된 적도 있음.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행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교육지책으로 제안된 것이었던바, 소위 거대 선거구의 획정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국회의장도 우리 위원회에 거대선거구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구획정 기준을 송부하였음. 하지만,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가 현행법에 부합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거구획정을 할 수는 없음.

향후에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농산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와 지역대표성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부록 2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1. 보도자료
2. 언론이 바라본 선거구획정



부록 2-1

보도자료 1. 선거구획정 관련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제공일자 2022. 10. 11. 총 2면

www.nec.go.kr

공보과 02)3294-1000~100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공식 출범

= 첫 위원회의를 열고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호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공식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10월 11일 제1차 위원회의를 열어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2023. 3. 10.)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박재윤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부영 변호사, 장선화 대전대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부교수, 최준영 인하대 교수, 최현선 명지대 교수, 홍재우 인제대 부교수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 8명과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총 9명을 획정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붙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 1부.

획정위, 국회 정개특위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시한 준수 위해 조속히 획정 기준 확정돼야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2월 6일(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인 2023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및 각 계 각 층의 의견수렴 과정, 현지 실사 등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나, 선거구획정안 제출기한을 불과 1개월 정도 남긴 현시점까지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가 정해지지 않아 공정한 선거구획정이라는 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획정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선거구 제도 등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구획정 기준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개특위가 관련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법」 상 인구기준일인 2023년 1월 31일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범위 등 획정 기준에 불부합하는 현행 지역선거구 현황도 송부했다.

한편, 획정위원회는 이달 13일에는 국회에서 정당·학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붙임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 1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위한 공청회 개최

=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가 2월 13일(월) 1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과 4개 학술단체(대한지리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행정학회)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9명이 참석하여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가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할 수는 없지만,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2023년 3월 10일)이 촉박함을 고려하여 공청회를 열고 정당·학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선 청취하였다.

송봉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속히 확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공청회 개요 1부. 끝.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요

1. 행사명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 일시 : 2023. 2. 13.(월) 14:00
3.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4. 참석자 : 획정위원(9명), 진술인(9명), 방청객(50명 정도)
5. 발표내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선거구획정 기준에 관한 의견
6.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진행순서	비 고
14:00 ~ 14:20	20분	개 회	위원장
		위원장 인사말씀 (개최 취지·회의 진행방법 등 설명)	
		진술인 소개	
14:20 ~ 15:50	90분	진술인 발표(각 10분 이내)	
15:50 ~ 16:50	60분	질의·답변	

※ 진술인의 의견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 진행

덧붙임 진술인 명단 1부. 끝.

[덧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진술인 명단

구분	추천	소속	성명	비고
정당 (5)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김진영	
	국민의힘	동국대학교 (교수)	김준석	
	정의당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준우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오준호	
	시대전환	시대전환 (정책위원장)	유명종	
학회 (4)	대한지리학회	경희대학교 (교수)	지상현	
	한국공법학회	원광대학교 (교수)	강승식	
	한국정치학회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김형철	
	한국행정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동욱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 경과에 대한 입장 발표

= 법률에 따른 소임 완수 못해 송구...조속한 선거구 확정 위해 노력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13일(월) 제5차 위원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2023년 3월 10일)이 경과한 것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따른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게 되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획정위원회는 “비록 법정시한 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지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며,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 지역 주민 대상 의견 청취 확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방침이다.

한편, 획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붙임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 경과에 대한 입장 1부. 끝.

[붙임]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 경과에 대한 입장

우리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법정기한인 2023년 3월 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따른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달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 확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회도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게 되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법정기한 내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공청회를 통해 정당과 학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만간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 기회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을 찾아가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도 지난 선거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3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위한 2차 공청회 개최

=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수렴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4월 21일(금) 15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2개 전문가 단체(대한변호사협회·한국지방자치학회)와 2개 시민사회 단체(2024정치개혁공동행동·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6명이 참석하여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송봉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도 선거구획정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회에 “선거구획정기준을 조속히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공청회에서 획정위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당부가 있었던 만큼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경청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하는데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앞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획정위원회는 다음 달 경북·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 붙임 1. 공청회 개요 1부.
2. 공청회 사진 1부(별첨). 끝.

[붙임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요

1. 일 시 : 2023. 4. 21.(금) 15:00
2. 장 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회의실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72길 23,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3. 참 석 자 : 획정위원(9명), 진술인(6명), 방청객(30명 정도)
4. 발표내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선거구획정 기준에 관한 의견
5.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진 행 순 서	비 고
15:00 ~ 15:10	10분	개 회	위원장
		위원장 인사말씀 (개최 취지·회의 진행방법 등 설명)	
		진술인 소개	
15:10 ~ 16:10	60분	진술인 발표(각 10분 이내)	
16:10 ~ 17:00	50분	질의·답변	

※ 진술인의 의견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 진행

덧붙임 진술인 명단 1부. 끝.

[붙임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진술인 명단

(추천단체명 가,나,다 순)

추천단체	소 속	성 명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	윤 광 일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	이 재 목
대한변호사협회	변 호 사	송 혜 미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기 우
	변 호 사	정 경 모
한국지방자치학회	한양대 정책학과 (교 수)	이 석 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지역의견 청취 실시

= 지역민의 의사를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 목적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5월 12일(금) 경상북도, 5월 19일(금)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매달 2개 지역씩 총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선거구획정에 관한 지역의견 청취에 나선다.

지역의견 청취 자리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진솔인들이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획정위원회는 이번 지역의견 청취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도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붙임 지역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개요

I. 목적

선거구획정에 관한 지역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함.

II. 행사개요

1. 대상지역 : 10개 시·도(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 개최일정

5월	6월	7월	8월	9월
경 북	인 천	충 북	부 산	경 기
전 북	전 남	충 남	경 남	강 원

※ 1) 개최시기·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2) 5월 개최일정 : [경북]5. 12.(금) 14시, [전북]5. 19.(금) 13시

3. 진출인 : ①국회 의석 보유 정당(시·도당), ②한국지방자치학회, ③지역 시민사회단체(3곳)
추천 각 1명

4. 진출내용 :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현지 지역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 제시

5. 진행방법 : 진출인별 10분 이내 일괄 의견 발표 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질의,
진출인 답변 순서로 진행

획정위원장으로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호선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 마련 위해 소임 다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 21.(수) 제8차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식 중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에 허철훈(許鐵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호선하였다.

허철훈 신임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 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대상 의견 청취 확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있다.

붙임 신임 위원장 프로필 1부.

획정위,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강력 촉구

= 10월 12일까지 지역선거구 수 등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 통보돼야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는 9월 11일(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6일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3월 10일)을 준수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4월 10일)이 5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 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각각 시작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획정위원회는 “지난 두 차례의 공청회와 약 10개 시·도 지역의 현장 의견 청취 자리에 참여한 국민들도 소속 및 지역 구분 없이 ‘선거제도 개선 및 선거구 확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히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가운데에서 차질 없이 치러지기 위해서 10월 12일(국외부재자 신고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획정위,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세 번째 촉구

=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 앞두고 정치적 기본권 심각한 침해 우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는 11월 20일(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세 번째 촉구했다.

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선거구획정 기준을 통보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11월 12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되었고,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예정되어 있는 등 법정사무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이 더 지체되면 유권자의 알권리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회 등 정치적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구획정안 논의 및 공론을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가운데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제시 선거구획정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안 논의하기로 결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는 국회의장이 12월 1일에 송부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참고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획정위원회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 확정을 촉구하였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 우려를 걱정한 국회의장이 획정위원회에 획정기준을 송부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획정위원회는 비록 국회의장이 통보한 선거구획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시간도 촉박하지만,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대하고, 지난 11월 12일부터 진행 중인 국외부재자신고는 물론이고,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개시되는 등 선거사무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현 상황에서 획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획정위원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고, 입후보예정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획정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 지난 1일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획정 기준으로 획정안 마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오늘(12월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송부한 데에 따라 제출하는 것으로, 선거구획정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획정위원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구획정 결과

- 인구편차 허용범위 : 13만 6천 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
-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조정 : 서울△1, 인천+1, 경기+1, 전북△1

□ 주요 고려사항

-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법정 획정기준 준수
-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 최소화
-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
-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 지양
-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충분히 고려

- 붙임 1.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따른 입장문 1부.
2.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결과 1부(별첨).

[붙임1]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따른 입장

오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면 국민과 예비후보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현행 지역선거구 수를 유지하고 시·도별 의원정수 등을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획정기준을 송부했습니다. 이에 획정위원회는 비록 송부받은 기준이 획정안을 마련하는데 충분치는 않으나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이 요청한 기한이 12. 5.까지였기에 획정위원회가 논의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현지실사, 기존 선거구 분석 등 현행법에 기반하여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고, 전문가 대상 공청회 실시(2회)와 11개 시·도 지역의 현장 의견청취, 국회 의석보유 정당 의견청취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던 점이 큰 뒷받침이 되었고,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 전에 선거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요청 기한을 최대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말 늦은 시간까지 모든 구성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논의한 결과 오늘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제약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여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 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하였으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6,600명 이상 27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하였으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기준을 준수할 수 밖에 없어서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와 획정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발생한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증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재획정안 국회 제출

= 정치권에서 합의한 선거구획정 기준 반영, 지역구 254석 획정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재획정안을 오늘(2월 29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에서 합의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송부한 데에 따라 제출하는 것으로, 선거구획정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획정위원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여야 합의 선거구획정 주요 기준

- 지역구국회의원 수 : 254명
- 인구편차 허용범위 : 13만 6천 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0
-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 서울 성동구, 경기 양주시, 강원 춘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
- 현행 선거구 경계 및 구역조정 최소화

□ 선거구획정 결과

- 시·도별 의원 정수(제21대 국선 구역표 기준) : 서울 △1, 인천 +1, 경기 +1
-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특례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를,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붙임 1.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따른 입장문 1부.

2.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보고서 1부.

[붙임1]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따른 입장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장이 통보한 선거구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국회의 재제출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12월 5일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충실히 반영되었고, 자치구 시·군 일부 분할 금지 원칙과 그 예외 등 법률규정이 엄격히 준수되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제3항제4항에 따라 국회의 재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우리 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재제출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므로 정치권에서 합의하여 통보한 획정 기준을 반영하여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송부된 획정기준에 따른 자치구 시·군 일부 분할의 예외적 허용에 대하여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국회는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을 선거일에 임박해서 확정했고 이로 인해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법률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시하거나 선거구획정 기준 결정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부록 2-1

보도자료 2. 지역의견청취 관련

보도자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공일자 2023. 5. 11.

총 2면

TEL 02)3299-389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경북지역 의견 청취

= 5월 12일(금) 14시,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강당에서 개최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북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경북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5월 12일(금) 14시 경북 예천군 호명면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북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경북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북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5명이 참석하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경북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북지역 의견 청취 개요

- 1. 일 시 : '23. 5. 12.(금) 14시 ※ 소요시간 : 2시간 정도
- 2. 장 소 :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강당(2층) [예천군 호명면 행복1길 5]
- 3. 진 술 인 : 국회 의석 보유 정당(경북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추천(총5명)

(진술인 성명 가,나,다 순)

추천단체(정당)	소 속	직 위	성 명
대구경북기자협회	영남일보	기 자	민 경 석
대한지방자치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회 장	백 석 기
정의당	정의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이 승 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임 미 애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조 영 창

- 4. 진술내용 :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현지 지역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 제시
- 5. 진행방법 : 진술인별 10분 이내 일괄 의견 발표 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질의, 진술인 답변 순서로 진행

【진행시간(안)】

진행시간(소요시간)	내 용
14:00~14:05(5')	개 회 인사말씀(개회 취자회의 진행 방법 등 설명) 진술인 소개
14:05~15:05(50')	진술인 발표(각 10분 이내)
14:55~15:30(35')	획정위원 질의·진술인 답변
15:40~	방청인 발언

※ 진행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경북지역 의견 청취

= 획정위원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청취해 합리적인 획정안 마련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12일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북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처음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정의당 경북도당 이승열 사무처장,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대한지방자치학회 백석기 회장,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조영창 공동대표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술인들은 7월로 예정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한 경북지역 선거구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획정 방안, 면적 등 경북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석수 증대 필요성,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별첨 경북지역 의견 진술 자료집 1부. 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전북지역 의견 청취

= 5월 19일(금) 13시,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전북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전북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5월 19일(금) 13시 전북 전주시 소재 전라북도청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전북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전북도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7명이 참석하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전북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북지역 의견 청취 개요

1. 일 시 : '23. 5. 19.(금) 13시 ※ 소요시간 : 2시간 정도
2. 장 소 : 전라북도청 중회의실(3층)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3. 진 술 인 : 국회 의석 보유 정당(전북도당), 시민사회단체 등 추천(총7명)

(진술인 성명 가,나,다 순)

추천단체(정당)	소 속	직 위	성 명
정의당	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김 민 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김 영 기
시대전환	국민주권, 정치개혁 행동연대	상임대표	김 용 채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두세훈법률사무소	변 호 사	두 세 훈
진보당	진보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전 권 희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북도당	기획과장	한 영 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회	의 원	한 정 수

4. 진술내용 :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현지 지역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 제시
5. 진행방법 : 진술인별 10분 이내 일괄 의견 발표 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질의, 진술인 답변 순서로 진행

【진행시간안】

진행시간(소요시간)	내 용
13:00~13:05(5')	개 회 인사말씀 (개최 취자회의 진행 방법 등 설명) 진술인 소개
13:05~14:15(70')	진술인 발표(각 10분 이내)
14:15~15:05(50')	획정위원 질의·진술인 답변
15:05~	방청인 발언

※ 진행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전북지역 의견 청취

= 획정위원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청취해 합리적인 획정안 마련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19일 전라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정의당 전북도당 김민아 사무처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회 김영기 위원장, 국민주권 정치개혁 행동연대 김용채 상임대표, 두세훈 변호사, 진보당 전북도당 전권희 정책위원장, 국민의힘 전북도당 한영균 기획과장, 전북도의회 한정수 의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술인들은 인구범위 하한에 미달하는 전북 지역선거구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획정 방안, 현행 전북 지역선거구 수 유지 필요성,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 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별첨 전북지역 의견 진술 자료집 1부. 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인천지역 의견 청취 = 6월 16일(금) 14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인천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월 16일(금) 14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인천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인천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인천시당,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6명이 참석하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 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인천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지역 의견 청취 개요

1. 일 시 : '23. 6. 16.(금) 14시 ※ 소요시간 : 2시간 정도
2. 장 소 :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4층)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3. 진 술 인 : 국회 의석 보유 정당(인천시당), 시민사회단체 등 추천(총6명)

(진술인 성명 가,나,다 순)

추천 단체(정당)명	소 속	직 위	성 명
인천경기기자협회	인천일보	부국장	남 창 섭
정의당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박 병 규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 광 호
국민의힘	국민의힘 인천시당	조직팀장	이 명 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정 인 갑
인천YMCA	인천YMCA	사무처장	차 성 수

4. 진술내용 :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현지 지역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 제시
5. 진행방법 : 진술인별 10분 이내 일괄 의견 발표 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질의, 진술인 답변 순서로 진행

【진행시간(안)】

진행시간(소요시간)	내 용
14:00~14:05(5')	개 회
	인사말씀(개최 취자회의 진행 방법 등 설명)
	진술인 소개
14:05~15:05(60')	진술인 발표(각 10분 이내)
15:05~15:55(50')	확정위원 질의·진술인 답변
15:55~	방청인 발언

※ 진행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인천지역 의견 청취

= 획정위원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청취해 합리적인 획정안 마련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6일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인천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인천일보 남창섭 부국장, 정의당 인천시당 박병규 정책실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국민의힘 인천시당이명원 조직팀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인갑 정책실장, 인천YMCA 차성수 사무처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술인들은 인구기준에 불부합하는 인천 지역선거구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획정 방안, 현행 인천 지역선거구 수 증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의 조속한 확정도 요구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별첨 인천지역 의견 진술 자료집 1부. 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전남지역 의견 청취

= 6월 23일(금) 13시,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컨벤션홀에서 개최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전남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전남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월 23일(금) 13시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남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전남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전남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7명이 참석하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 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전남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남지역 의견청취 개요

1. 일 시 : '23. 6. 23.(금) 13시 ※ 소요시간 : 2시간 정도
2. 장 소 :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컨벤션홀(2층)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3. 진 술 인 : 국회 의석 보유 정당(전남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추천(총7명)

(진술인 성명 가, 나, 다 순)

추천 단체(정당)명	소 속	직 위	성 명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강도용
진보당	진보당 전남도당	총선평위위원장	김선동
한국지방자치학회	순천대학교	교수	김선명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남도당	조직과장	나정훈
정의당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박명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남협의회	목포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前공동대표	송영중
더불어민주당	조선대학교	교수	지병근

4. 진술내용 :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현지 지역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 제시
5. 진행방법 : 진술인별 10분 이내 일괄 의견 발표 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질의, 진술인 답변 순서로 진행

【진행시간(안)】

진행시간(소요시간)	내 용
13:00~13:05(5')	개 회
	인사말씀 (개회 취자회의 진행 방법 등 설명)
	진술인 소개
13:05~14:15(70')	진술인 발표(각 10분 이내)
14:15~14:50(35')	획정위원 질의·진술인 답변
14:50~	방청인 발언

※ 진행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전남지역 의견 청취 = 획정위원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청취해 합리적인 획정안 마련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컨벤션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남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전라남도 농업인단체 연합회 강도용 상임대표, 진보당 전남도당 김선동 총선특위 위원장, 순천대학교 김선명 교수, 국민의힘 전남도당 나정훈 조직과장,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 위원장,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송영중 전 공동대표, 조선대학교 지병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술인들은 인구기준에 불부합하는 전남 지역선거구 등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획정 방안, 농산어촌 특수성과 면적 등을 고려한 현행 전남 지역선거구 수 증대 또는 유지, 조속한 선거구획정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별첨 전남지역 의견 진술 자료집 1부. 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충북지역 의견 청취

= 7월 12일(수) 10시, 세종시티 오송호텔 대회의실에서 개최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충북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충북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7월 12일(수) 10시 충북 청주시 소재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북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충북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충북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솔인 6명이 참석하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 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충북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북지역 의견청취 개요

1. 일 시 : '23. 7. 12.(수) 10시
2. 장 소 : 세종시티 오송호텔 대회의실(2층, 골드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78]
3. 진 술 인 : 국회 의석 보유 정당(충북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추천(총6명)

(진술인 성명 가, 나, 다 순)

추천 단체(정당)명	소 속	직 위	성 명
정의당	정의당 충북도당	조직국장	박노일
국민의힘	국민의힘 충북도당	조직팀장	박두용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주시상당구지역위원장	이강일
진보당	진보당 충북도당	청주 지역위원장	이명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	정상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중원대학교	교수	한형서

4. 진술내용: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현지 지역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 제시
5. 진행방법: 진술인별 10분 이내 일괄 의견 발표 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질의, 진술인 답변 순서로 진행

【진행시간안】

진행시간(소요시간)	내 용
10:00~10:05(5')	개 회
	인사말씀 (개최 취자회의 진행 방법 등 설명)
	진술인 소개
10:05~11:05(60')	진술인 발표(각 10분 이내)
11:05~12:00(55')	획정위원 질의·진술인 답변
12:00~	방청인 발언

※ 진행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충북지역 의견 청취

= 획정위원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청취해 합리적인 획정안 마련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일 세종시티 오송호텔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북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정의당 충북도당 박노일 조직국장, 국민의힘 충북도당 박두용 조직팀장,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이강일 청주시상당구 지역위원장, 진보당 충북도당 이명주 청주 지역위원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상호 정책연구센터장, 증원대학교 한형서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술인들은 충북 지역선거구의 구체적 획정 방안, 조속한 선거제도 확정과 선거구획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별첨 충북지역 의견 진술 자료집 1부. 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충남지역 의견 청취

= 7월 12일(수) 14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개최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충남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충남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7월 12일(수) 14시 충남 천안시 소재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남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충남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충남도당,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6명이 참석하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 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충남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남지역 의견청취 개요

- 1. 일 시 : '23. 7. 12.(수) 14시
- 2. 장 소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지하1층)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09]
- 3. 진 술 인 : 국회 의석 보유 정당(충남도당), 시민사회단체 추천(총6명)

(진술인 성명 가, 나, 다 순)

추천 단체(정당명)	소 속	직 위	성 명
진보당	진보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김용자
정의당	정의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유미경
국민의힘	씨엘미디어 한민리서치	대표	유창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윤권종
더불어민주당	선문대학교	교수	윤황
대전충남민주연론 시민연합	S대치영어학원	원장	이종찬

- 4. 진술내용 :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현지 지역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 제시
- 5. 진행방법 : 진술인별 10분 이내 일괄 의견 발표 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질의, 진술인 답변 순서로 진행

【진행시간(안)】

진행시간(소요시간)	내 용
14:00~14:05(5')	개 회
	인사말씀 (개최 취자회의 진행 방법 등 설명)
	진술인 소개
14:05~15:05(60')	진술인 발표(각 10분 이내)
15:05~16:00(55')	획정위원 질의·진술인 답변
16:00~	방청인 발언

※ 진행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충남지역 의견 청취

= 획정위원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청취해 합리적인 획정안 마련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남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진보당 충남도당 김용자 사무처장, 정의당 충남도당 유미경 사무처장, 씨엘미디어한민리서치 유창림 대표,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권종 공동대표, 선문대학교 윤황 교수, 이종찬 S대치영어학원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술인들은 충남 지역선거구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획정 방안, 지역대표성 보장 등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별첨 충남지역 의견 진술 자료집 1부. 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경남지역 의견 청취

= 8월 22일(화) 14시, 경남도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남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경남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월 22일(화) 14시 경남 창원시 소재 경남도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남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경남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남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7명이 참석하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 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경남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남지역 의견청취 개요

1. 일 시 : '23. 8. 22.(화) 14시
2. 장 소 : 경상남도청 본관 대회의실(4층)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3. 진 술 인 : 국회 의석 보유 정당(경남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추천(총7명)

(진술인 성명 가, 나, 다 순)

추천 단체(정당명)	소 속	직 위	성 명
지방분권경남연대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	강 재 규
경남시민주권연합	경남시민주권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 진 철
한국지방자치학회	창원대학교	교 수	송 광 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	이 흥 석
정 의 당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임 동 선
진 보 당	진보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조 용 한
국민의힘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최 낙 범

4. 진술내용 :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현지 지역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 제시
5. 진행방법 : 진술인별 10분 이내 일괄 의견 발표 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질의, 진술인 답변 순서로 진행

【진행시간(안)】

진행시간(소요시간)	내 용
14:00~14:05(5')	개 회
	인사말씀 (개최 취자회의 진행 방법 등 설명)
	진술인 소개
14:05~15:15(70')	진술인 발표(각 10분 이내)
15:15~16:05(50')	확정위원 질의·진술인 답변
16:05~	방청인 발언

※ 진행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경남지역 의견 청취 = 획정위원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청취해 합리적인 획정안 마련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경남도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남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지방분권경남연대 강재규 상임대표, 경남시민주권연합 김진철 대외협력위원장, 창원대학교 송광태 교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이흥석 수석부위원장, 정의당 경남도당 임동선 사무처장, 진보당 경남도당 조용한 사무처장, 경남대학교 최낙범 명예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술인들은 경남 지역선거구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획정 방안,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 선거구획정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선거제도 확정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별첨 경남지역 의견 진술 자료집 1부. 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부산지역 의견 청취

= 8월 23일(수) 10시,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제1강의실에서 개최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산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월 23일(수) 10시 부산 동구 소재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제1강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부산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부산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부산시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8명이 참석하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 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부산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부산지역 의견청취 개요

1. 일 시 : '23. 8. 23.(수) 10시
2. 장 소 :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제1강의실(1층, A동 104호)
[부산 동구 중앙대로 210]
3. 진 술 인 : 국회 의석 보유 정당(부산시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추천(총8명)

(진술인 성명 가, 나, 다 순)

추천 단체(정당)명	소 속	직 위	성 명
국민의힘	국민의힘 부산시당	조직과장	강 영 완
진 보 당	진보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	김 병 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도 한 영
한국지방자치학회	신라대학교	교 수	박 재 욱
21세기정치학회	동서대학교	교 수	이 성 수
정 의 당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이 성 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수석대변인	최 형 욱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부산시당	위원장	홍 지 수

4. 진술내용 :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현지 지역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 제시
5. 진행방법 : 진술인별 10분 이내 일괄 의견 발표 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질의, 진술인 답변 순서로 진행

【진행시간(안)】

진행시간(소요시간)	내 용
10:00~10:05(5')	개 회
	인사말씀 (개최 취자회의 진행 방법 등 설명)
	진술인 소개
10:05~11:25(80')	진술인 발표(각 10분 이내)
11:25~12:05(40')	획정위원 질의·진술인 답변
12:05~	방청인 발언

※ 진행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부산지역 의견 청취 = 획정위원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청취해 합리적인 획정안 마련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제1강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부산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강영완 조직과장, 진보당 부산시당 김병규 정책위원장,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도한영 운영위원장, 신라대학교 박재욱 교수,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 정의당 부산시당 이성한 대변인, 더불어 민주당 부산시당 최형욱 수석대변인, 기본소득당 부산시당 홍지수 위원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술인들은 부산 지역선거구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획정 방안, 현행 부산지역선거구 의원정수 문제,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 선거구획정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선거제도 확정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별첨 부산지역 의견 진술 자료집 1부. 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경기지역 의견 청취

= 경기 북부 9월 1일(금) 13시, 경기 남부 9월 8일(금) 14시 개최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기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경기도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9월 1일(금) 13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 9월 8일(금) 14시 선거연수원 별관동 다목적실에서 각각 경기 북·남부지역의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선다.

경기지역 의견 청취는 지역 선거구수 등을 고려하여 두 번에 나누어 실시하며, 이번 의견 청취 자리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기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이 참석하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 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경기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기지역 의견청취 개요

1. 일시·장소

일시	장소	의견진술 대상지역
9. 1.(금) 13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2층)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 북부 10개 시·군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9. 8.(금) 14시	선거연수원 별관동 다목적실(4층)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경기 남부 21개 시·군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과천시)

※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의원정수 등 고려 대상지역 구분하여 의견청취 실시

2. 진술인 : 국회 의석 보유 정당(경기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추천

(진술인 성명 가, 나, 다 순)

지역	추천단체(정당)명	소속	직위	성명
경기 북부 (7명)	더불어민주당	전략그룹 나무	책임 컨설턴트	강원구
	한국전문기자협회 경기 북부 협회	한국전문기자협회 경기 북부 협회	자문위원	류재수
	진보당	진보당 경기도당	부사무처장	박승하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국민의힘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처장	이준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신한대학교	교수	장인봉
	정의당	정의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조윤민
경기 남부 (8명)	더불어민주당	전략그룹 나무	책임 컨설턴트	강원구
	인천경기기자협회	경기일보	부국장	김재민
	진보당	진보당 경기도당	부사무처장	박승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	유병욱
	국민의힘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처장	이준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성결대학교	교수	임정빈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프론티어 문화예술단	회장	전애리
	정의당	정의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조윤민

3. **진술내용** :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현지 지역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 제시

4. **진행방법** : 진술인별 10분 이내 일괄 의견 발표 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질의, 진술인 답변 순서로 진행

【진행시간(안)】

일 자	진행시간(소요시간)	내 용
9. 1.(금)	13:00~13:05(5')	개 회
		인사말씀 (개최 취자회의 진행 방법 등 설명)
		진술인 소개
	13:05~14:15(70')	진술인 발표(각 10분 이내)
	14:15~15:35(80')	획정위원 질의·진술인 답변
15:35~	방청인 발언	
9. 8.(금)	14:00~14:05(5')	개 회
		인사말씀 (개최 취자회의 진행 방법 등 설명)
		진술인 소개
	14:05~15:25(80')	진술인 발표(각 10분 이내)
	15:25~16:35(70')	획정위원 질의·진술인 답변
16:35~	방청인 발언	

※ 진행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경기 북부지역 의견 청취

= 획정위원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청취해 합리적인 획정안 마련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기 북부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경기 북부 10개 시·군(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의 선거구획정 의견 청취 자리에는 전략그룹 나무 강원구 책임 컨설턴트, 한국전문기자협회 경기북부협회 류재수 자문위원, 진보당 경기도당 박승하 부사무처장, 경기도여성단체연합 이정아 대표, 국민의힘 경기도당 이준호 부처장,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술인들은 경기 북부지역 선거구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획정 방안, 지역선거구 의원정수 문제, 조속한 선거구획정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별첨 경기북부 지역 의견 진술 자료집 1부. 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경기 남부지역 의견 청취

= 획정위원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청취해 합리적인 획정안 마련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일 선거연수원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기 남부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경기 남부 21개 시·군(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과천시)의 선거구획정 의견 청취 자리에는 전략그룹 나무 강원구 책임 컨설턴트, 경기일보 김재민 부국장, 진보당 경기도당 박승하 부사무처장,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유병욱 공동사무처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이준호 부처장, 성결대학교 임정빈 교수, 경기프론티어문화예술단 전애리 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술인들은 경기 남부지역 선거구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획정 방안, 인구 증가로 인한 수도권외 지역선거구 수 문제, 조속한 선거구획정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별첨 경기남부 지역 의견 진술 자료집 1부. 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강원지역 의견 청취

= 9월 15일(금) 13시,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강원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강원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9월 15일(금) 13시 강원 춘천시 소재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강원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강원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강원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솔인 7명이 참석하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 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강원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강원지역 의견청취 개요

- 1. 일 시 : '23. 9. 15.(금) 13시
- 2. 장 소 : 강원연구원 대회의실(1층) [강원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
- 3. 진 술 인 : 국회 의석 보유 정당(강원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추천(총7명)

(진술인 성명 가, 나, 다 순)

추천 단체(정당)명	소 속	직 위	성 명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고 문	권 오 덕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오 동 철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윤 도 현
정의당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사무처장	이 효 성
한지방자치학회	한림성심대학교	교 수	이 훈 래
국민의힘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대 변 인	한 중 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대 변 인	허 소 영

- 4. 진술내용 :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현지 지역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 제시
- 5. 진행방법 : 진술인별 10분 이내 일괄 의견 발표 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질의, 진술인 답변 순서로 진행

【진행시간(안)】

진행시간(소요시간)	내 용
13:00~13:05(5')	개 회
	인사말씀(개최 취자회의 진행 방법 등 설명)
	진술인 소개
13:05~14:15(70')	진술인 발표(각 10분 이내)
14:15~14:45(30')	획정위원 질의·진술인 답변
14:45~	방청인 발언

※ 진행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강원지역 의견 청취

= 획정위원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청취해 합리적인 획정안 마련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5일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강원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권오덕 고문,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오동철 운영위원장,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윤도현 사무처장,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이효성 사무처장, 한림성심대학교 이훈래 교수,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한중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허소영 대변인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술인들은 강원 지역선거구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획정 방안, 인구 외 면적 등 강원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획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별첨 강원지역 의견 진술 자료집 1부. 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서울지역 의견 청취

= 10월 20일(금) 14시, 획정위 위원회의실에서 개최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서울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월 20일(금) 14시 서울 관악구 소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서울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서울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서울시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3명이 참석하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 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서울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서울지역 의견청취 개요

- 1. 일 시 : '23. 10. 20.(금) 14시
- 2. 장 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회의실(3층)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72길 23]

3. 진 술 인

- 추천대상 : ①국회 의석 보유 정당(서울시당 6곳), ②한국지방자치학회, ③지역 시민사회단체(3곳) 각 1명
- 참여자 : 4명(정당 2, 학회 1, 시민사회단체 1)

구분	추천 단체(정당)명	소속	직위	성명
정당	더불어민주당	구민신문	대표	권경호
	국민의힘	동작갑당원협의회	위원장	장진영
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송실대학교	교수	손종민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하상응 (발표 불참)

- 4. 진술내용 :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현지 지역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 제시
- 5. 진행방법 : 진술인별 10분 이내 일괄 의견 발표 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질의, 진술인 답변 순서로 진행

【진행시간(안)】

진행시간(소요시간)	내용
14:00~14:05(5')	개회
	인사말씀(개최 취지·회의 진행 방법 등 설명)
	진술인 소개
14:05~14:35(30')	진술인 발표(각 10분 이내)
14:35~15:25(50')	획정위원 질의·진술인 답변
15:25~	방청인 발언

※ 진행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서울지역 의견 청취 = 획정위원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청취해 합리적인 획정안 마련할 것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서울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구민신문 권경호 대표, 숭실대학교 손종민 교수, 국민의힘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술인들은 서울 지역선거구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획정 방안, 선거구 획정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록 2-1

언론이 바라본 선거구획정 1. 선거구획정 관련

NEWSIS 정치 > 정치일반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위 출범...내년 3월10일까지 획정안 마련

등록 2022.10.11 15:19:44

11일 제1차 위원회의...위원장에 송봉섭



[서울=뉴스시스] 김금보 기자 =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송봉섭 위원장과 위원들이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제1차 위원회의를 열고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2022.10.11. kgb@newsis.com

[서울=뉴스시스]홍연우 기자 =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가 공식 출범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제1차 위원회의를 열어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선거제 개편, '뜨거운 감자'로 부상

尹 '중대선거구 도입' 시사
국회 정개특위서도 논의 중
선거법개정 시한은 4월10일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중대선거구제 도입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여야 양쪽에서 나오고 있지만, 거대 양당 체제가 붕괴하고 당 지도부의 공천권이 약화할 수 있어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국

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고,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 등도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시한은 오는 4월 10일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가 확정하려면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나 대선선거구제나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소선거구제의 특징인 승자독식 현상이 완화되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민의가 왜곡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중대선거구제가 여당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대구에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반면, 광주에선 소수정당인 진보당·정의당 후보가 당선됐다. 조재연 기자

국회 정개특위, 중대선거구제 논의 착수

尹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서 언급
김진표 "승자 독식 더이상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본지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자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승자 독식의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는 3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1곳에서 1표라도 많이 얻은 1명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다. 윤 대통령은 인

터뷰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선거제 변화가 가져올 결과들을 예측하기 힘들어,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고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한다"며 "국회 정개특위에 2월 초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가 복수안을 내놓으면 2월 말간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법안을 심의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결정하지는 것이다.

김경화·주희연 기자 A5면에 계속



뉴스와 시각

민병기

정치부 차장

선거구 획정 시한도 지키라

■ 선거구제 개편은 어지간한 산수로는 풀 수 없는 고차방정식이다. 한 지역구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우선 소선거구제 혹은 중대선거구제로 나뉘지만, 여기에 비례대표를 따를 것인지, 따로 둔다면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연동형인지 병합형인지,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를 같은 방식으로 뽑을 것인지,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할지에 따라 끝도 없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선수'가 직접 경기 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변수는 상상할 수도 없다. 모든 '선수'가 개입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불만만 가지는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 '한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명분'과 '지역구 지키기' 속내가 따로 노는 '연극판'이기도 하다. 의원들이 선거구제 개편이 쉽게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부의 큰 충격, 혹은 내부의 엄청난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확할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진 후 진행돼야 할 선거구 획정 역시 마찬가지다. 개리맨더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구상·하향선을 어떻게 할지, 어떤 지역끼리 합칠지 등 선거구 획정에 별도로 붙는 변수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여야는 투닥투닥하면서 항상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어겨왔다. 절차를 어기는 것에 거리낌 없는 우리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4년마다 어겼다. 선거제 개편 이후 선거구 획정은 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줄곧 선거제 개편을 주장해 온 이들은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 판단한다. 외부의 충격과 내부의 결단이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진 화두에 여당 의원들이 대놓고 반대하기 꺼리렵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중삼총사로 '플랜'을 짜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 양당의 '위성정당' 추태를 재연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합의도 있다.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는 묘안을 만들어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단, 선 고 있는 로 악용: 이뤄지려 해 의원: 론됐다. 과에 작: 시한을: 의원: 법 행위: 명의 파: 1년 전: 자신을: 히 들: 한을 어:

민거레

“선거 비례·대표성 키워 내달까지 복수안 압축”

2023년 2월 7일 화요일 006면 중반

정개혁위, 선거개혁 일정 제시
지역-비례 비율도 손보기로
획정위 “기존 빨리 세워달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 등 네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두고 다음달까지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어내기로 합의했다.

남인순 정개혁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개혁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5일부터 1박2일간 밤샘 워크숍을 통해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네가지 방안의 대안적 유효성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남 위원장은 특히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여기에 권역별 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개선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개방형 명부 부분 도입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개방형 명부란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때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해 뽑을 수 있는 제도다.

정개혁위 여야 의원들은 워크숍에서 논

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이른 시일 내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까지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4월10일) 전에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이날 현행 선거제도 그대로 253개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거가 치러지면 경기 12곳 등 모두 18개 지역구가 인구 범위 상한을 초과하는 등 선거구 획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획정 기준 하한(13만5521명)에 미달하는 지역구도 호남·영남 각 4곳 등 11곳이었다. 획정위는 이에 정개혁위에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윤영 김해정 기자 jyy@hani.co.kr

선거구획정위 "획정안 법정제출시한 경과... 소임 완수 못해 죄

YTN

선거구 획정위 "획정 지연 시 국민에게 피해... 반복 안 돼"

2023년 02월 13일 20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건 국민이었다며, 내년 2

송 위원장은 오늘(13일)는 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한을 준수해... 준을 조속히 정해주길 간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 획정안을 제출해야 합니

매일경제

국회 정개특위 낙장에...선거구획정안 법정시한 넘겨

국회 정개특위 낙장에...선거구획정안 법정시한 넘겨

서동철 기자 sdchaos@mk.co.kr
입력: 2023-03-13 17:00:00

가

[레이더]
법정시한 3월 10일까지 제출 못해
획정위원회의 "이유불문 국민께 송구"



기한을 넘긴 데 대해 국... 구하다"고 밝혔다.

기획특별위원회를 할... 하고 촉구한 바 있다. 그

문화일보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005면 정치

여야 정쟁에 법정시한 넘긴 '선거제 개편' "피선거권·유권자 알 권리 침해받을 우려"

선거구획정위 제출 시한 지나
내달 10일 최종확정 어려울듯

■ 국회가 연일 여야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등 선거제도 개편은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치권에선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기준안 지연의 부작용으로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총선일로부터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현재 여야 의원 모두 선거제도 개편 의지가 크지 않다"며 "의원 간 이해관계가 각기 달라 합의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주도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4월 10일 법정시

한을 넘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4월 말에는 선거제도 개편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3월 10일)을 넘긴 것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획정위는 지난 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안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 확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획정위는 결국 국회의 낙장 대처로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역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기를 보면 19대 총선 때는 선거일 44일 전이었는 데, 갈수록 촉박해져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었다.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복수안을 추려 정개특위 결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혜란 기자

The JoongAng

국회 선거구획정위 "법정 시한 지나...이유 불문

윤영민 | 입력 2023-03-13 19:00:2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2022. 10. 11. 국회의원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공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발표식. 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김민석 원내총무, 김민석 원내총무, 김민석 원내총무, 김민석 원내총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구하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도 선거구획정 전제조건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

“인구비례 기준 지키되 유연하게 획정” “소멸지역에만 비례 의석 배분”

선거구제 대안 어떤 것이 있나

2대1 총지만 수도권 풀림 막아야
면적 넓은 강원·호남은 예외 적용
지역구당 기초단체 숫자 제한도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
제 개편’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
운데 각 지역의 이해를 중앙정치에 고
루 전달할 균형 잡힌 선거제도를 마련
하는 것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
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는 데는 국회의원, 전문가, 학계 등이
대체로 공감한다. 다만 ‘인구 비례’와
지역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또
다른 고민거리다. 현행 틀을 크게 흔들
지 않는 ‘소극적 방안’에서 지방에 우대
요소를 대폭 재검하는 ‘적극적 개입 방

국회 정례회 소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1안	인제 559석
소선거구제, 권역별·병합형 비례대표제	(2534)
(2534)	(974)
2안	인제 509석
소선거구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534)
(2534)	(974)

3안	인제 509석(헌법 유지)
소선거구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534)
(2534)	(974)
4안	인제 509석(헌법 유지)
소선거구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534)
(2534)	(974)

지역균형 방안
선거구 획정 시, 일정 면적 이상 되는 선거구는
2대1 인구비례 기준 적용을 면제하는 특례 마련

안까지 다양한 개안들이 거론된다.
‘소극적 방안’은 현존하는 제도적 테
두리 안에서 유연한 ‘선거구 획정’을
통해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주

장이다. 선거구 획정 시 선거관리위원
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선거
구별 인구 격차가 2대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의 크기를 조정한다. 이와 같은
현재 기준을 준수하되 기계적 획정이
아닌 유연한 획정으로 수도권에 의석
수가 과다 배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것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인구비례 ‘2대1’ 기준만 지켜도 지
역 보장이 된다”고 했다. 박상철 경기
대 정치대학원 교수도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바
른 ‘선거구 획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
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 시 일부 지역에는 ‘인구
비례’ 기준을 면제해 주는 ‘일부 개입
방안’도 거론된다. 강원·호남처럼 인
구 대비 면적이 큰 지역구의 경우 인구
비례 기준을 뛰어넘는 예외를 적용해

주는 주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직
속 ‘합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
원회’에서 제안한 특구 관련 단서 조항
도 같은 맥락이다. 해당 안에는 “농산
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
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
상에 대해서는 인구 범위의 특례 기준
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박준 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소장
은 “지역별로 최소 선거구를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
나의 지역구로 합쳐지는 기초단체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
제’ 등을 통해 지역 격차를 과감히 개
선하는 ‘적극적 개입 방안’도 있다. 수
도권은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되, 지
방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
합형 중대선거구제’가 대표적인 예다.

다만 인지도 경쟁이 중요한 중대선거
구제는 소수 정당의 진입장벽을 더 높
이고, 도농 지역구 간 인구 격차가 최
대 10대1까지 나 위험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지역 배
분 강화도 검토 대상이다. 비례대표 의
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중
론이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비례
대표 의석수를 배분할 때 서울·인천·경
기 권역에는 아무 의석도 배분하지 않
고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방에 많은
의석을 배분하는 안도 생각해 볼 수 있
다”면서 “이런 방식을 아예 ‘국가 균형
비례대표’로 부르자는 논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전북·충북·경북
을 묶는 다특구, 부울경·전남을 묶는 등
권역을 통사조개는 시도로 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기찬 기자

오늘 19년 만의 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편안 난상토론 예고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이후 21번째
13일까지 나흘간 100명 논의의 참여
여당 의원 정수 축소’ 갈등 겪을 듯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나흘간 열린
다. 전원위는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
기 전에 국회위원이 모두 참석해 의견
을 개진하는 회의다. 2004년 이라크전
정파병동의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하지만 선거제를 둘러싼 여야 이해관
계가 워낙 첨예하게 엮였을 난항이 불
가피해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이 회의
의 시작 전부터 당초 논의 주제에 없던 ‘의
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들면서 상황
이 복잡해지고 있다.

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0~13일
총 100명의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을 주
제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10
일 비례대표제 토론 △11일 지역구 제
도 △12일 기타 정표 토론 및 전문자 질

의응답 △13일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다. 의원 각자 5~7분 발언할 수 있고 모
든 회의내용은 생중계된다. 토론에는
의석수 비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54
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이
나선다.

전원위는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에서 마련한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날
짜별 주제에 맞춰 논의한다. 전원위는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열고 정국특
위에서 열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

구제+권역별 병합형 비례제 △개방형
부식 대선거구제+권역별 병합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
제 등 3건의 개편안을 안건으로 채택
했다. 13일 이후 전원위에서 합의된 단
일안을 만들고 정국특위와 본회의의
가처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를 확정한다.

이처럼 여야는 19년 만에 전원위를 개
최하며 전례 없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

대보다는 우러가 크다. 선거제 개편에
따른 의석 조정은 현역의원들의 민감
한 밭고투 싸움으로 변질 수 있고, 한
차이로도 더 연연이라는 각 정당의 생애기
충돌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밖에
때문이다.

실제 정국특위는 당초 2월 안에 전원
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입장차로 인해 지난
달 22일에서야 3차례 안을 좁혔다. 이
로 인해 선거구 획정 법령시행(4월 10

일)에 뒤늦게 전원위 토론이 시작되던
서 이미 절차적으로는 법을 어긴 모양
새가 됐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세 가지 개편
안에 없는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
며 편을 흔들고 있다. 앞서 조경래 의원
이 ‘100석 감축’을 거론해 의석 증원은
외계변기를 들었고, 22일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 30석 이상 줄
일 수 있다”면서 의석 감축을 압박하
고 있다. 유대경 기자

“현행 선거제론 안된다” 공감 속… 여 “비례 축소” 야 “비례 확대”

국회의원 전원이 하나의 의회에 대해 토론하는 국회 의원위원회가 2004년 이래로 10월 시국였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백기행시 주장이 8년과 10년 전부터는 나뉘고 이어진다. 여야는 현행 선거제 모르는 안 된다는 진단에는 공감하지만 서로 해법에서 비례대표 의원 축소 증원으로 양당이 크게 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위상정당’ 흡수 등 현행 존엄성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의원정수 유지와 정례비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합의 산물이지 현행 시의 오류인 존엄성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당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현숙 의원은 “의원정수는 300명 등 내지 축소해야 하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1대 총선 이전의) 비례연으로 개정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구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제 폐지의 견도 나왔다.

여당은 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법을 명분으로 도농복합형 선거제도 도입 등 “지역 대표성 강화”도 요구했다. 조혜민 의원은 “지역별 의석을 배분 할 때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과 교통, 취

선거제 개편 전위원회 첫날 여, 위성정당 흡수 등 문제점 부각 비례 숫자 줄이거나 폐지를 주장 야 “소선거구제 대량 사표 못 막아” 비례 60~75석으로 증원 한목소리 남상표론보다 28명의 ‘연설 결연’ 개최 때 205명 - 신회 때 60명으로

라 구조, 행정 체계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재언했다. 홍시준 의원은 선거구 획정 시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수 차를 화를 주장했다.

여당은 대체로 지역구 의원 축소,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영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의 소선거구제 위주 제도는 대량의 사표를 막을 수 없다”며 “비례대표 의석 수를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비례의원이 75석은 돼야 비수도권 의석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낮은 비례석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비례대표제인데 그 비율은 고작 15.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선거제 개편 방향도 비례대표제 손질에 초점이 맞춰졌다. △광역비례 비례대표제 △개방형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재 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출마 허용, 비례대표 겸내 경선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같은 당 이원희 의원은 “현행 이원희 같은 경우라도 정도 되면 대구에서 당선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선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원위에 참석된 의원들에서 그러나 지역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전에 신청한 의원들이 개편당 7분씩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난상토론보다는 준비된 원고를 읽은 방식이어서 발언(때)은 28명의 ‘연설 결연’ 같았다. 의원들은 출가나 휴를 앞둔 등 출석하지 않았다.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 참석된 의원도 개최 당시 205명에서 신회 당시엔 69명으로 크게 줄었다.

여야 지도부도 마찬가지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원 민주당 대표는 오후 3시 전에 자리를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부총장은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의 도중에 자리를 비웠다. 정원 위가 끝나기 전에 돌아와 앉았다.

이동환의원정준가위원장이자



윤재옥(오른쪽 두 번째)이 원내대표, 박승을 정약외당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회의고 있다. 고영민 기자

“서울 면적 9배 지역구 의원 1명이 감당… 대표성 문제”

선거제 개편 전위원회 이틀째 거대 선거구 둔 의원들 고충 토로 “선거구 획정시 면적·생활권 반영을” 비례 폐지-한국식 양원제 제안도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위원회 토론회의 쟁점 중 하나는 ‘지역구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유지할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지’ 여부다. 전위원회 이틀째인 11일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 확보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인구가 적어 지역구가 넓은 비수도권 의원들은 현행 인구수 기준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지역구가 가장 넓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5,409km²)은 49개 지역구가 몰려 있는 서울(605km²)의 9배에 달한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대도시에서 ‘갑·을·병·정·무’로 쪼개진 곳의 입법과 예산은 의원 5명이

해결사로 나서는 반면 서울 면적의 9배 지역구는 1명이 감당하는데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냐”고 지적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가 감소하면 정부 지원도 줄고 지역은 더 퇴보해 국가 경쟁력도 떨어진다”며 “지역 소멸에 대응할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비례를 ‘2대 1 이하’로 규정한 현행 기준 완화, 선거구 획정시 면적·생활권 반영 등을 요구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5개 이상 사구를 한 지역구로 묶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고충이 있었다. 서울에는 한 구에 3개 지역구가 있는 곳이 4개 있으며, 경기 수원이나 경남 창원은 기초자치단체 안에 5개 지역구가 있다.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6.01km²)은 단 6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과밀 도시는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하

관, 지하철로 한 생활권에 속하는데도 선거구는 골목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며 “국회의원이 구정청이나 시의원, 구의원이 해야 할 일에 매달린다”고 주장했다. 전남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경조사 정치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1분 축사’를 하려고 열 군데씩 뛰다”며 “현행 선거구제는 국회의원과 사·도의원, 구의원 차이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동욱 차의과학대 부총장은 이날 비례대표제 폐지와 사실상의 양원제 도입을 공개 제안했다. 두 사람은 제시한 ‘대타협’ 방안은 △의원정수 300명 동결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대표 48명에 인구대표 252명 선출이다. 이들은 “현행 비례대표제를 지역대표가 대체하면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박세안정준기 기자 김종훈·이아에 인터넷 기자

1월 2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획정위,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 확정' 강력 촉구

"내달 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 통보돼야"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2023-09-11 15:01 송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제공)

선거구획정위, 국회에 "내달 12일까지 획정 기준 달라" 촉구

송고시간 | 2023-09-11 14:42

|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 5개월 넘겨... "더 지연되면 참정권 침해 우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출범
2022. 10. 1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위 "정개특위, 내달 12일까지 획정해달라"

등록 2023.09.11 14:31:48 | 수정 2023.09.11 15:02:05



NEWSIS

[서울=뉴스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2023.09.11 photo@newsis.com

[서울=뉴스1] 이재우 기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다음달 12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종선 13개월 전인 3월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고, 1년 전인 4월10일까지 획정을 끝내야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 20년 동안 법정 기한 안에 선거구가 획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종로-중구, 총선 선거구 합쳐야... 31곳 조정을”

선거구획정위, 인구 기준 분석

“인구수 따라 11곳 합구-분구 필요 선거구 20곳 경계 조정해야” 의견 여야 대치에 조정작업 시작도 못해 12월 예비후보 등록엔 혼란 불가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총선이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중선거구제였던 9~12대 총선에선 중구와 육묘지간 소선거구 제에서 단일 선거구로 유지돼 왔다. 획정위는 이처럼 지역구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합구,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31곳으로 집계했다.

25일 획정위 관계자는 “종로구와 중구 두 곳 모두 인구수가 감소해 합쳐도 상한선을 넘지 않아 ‘종로-중’ 선거구로 묶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성동을 지역구 등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9만5521명, 상한 27만1042명이다. 중구 인구수가 19만317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종로구(14만1223명)와 통합하면 33만4393명으로 인구 범위 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성동구 인구수는 28만707명으로 상한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 총선 때 중구는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였는데, 중구가 성동구에 서 분리돼 종로구에 통합돼야 한다는 것.

중구는 지난 총선 당시 인접한 종로구, 성동구를 포함해 대표구 용산구 서대문구 이과와 묶여도 상한선을 초과했다. 이 때문에 ‘저지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 예외 적용을 통해 생황동이 가까운 성동구 일부를 중구와 합쳐 지역구를 만든 상황이었다.



[동아일보 인터뷰 (2023. 9. 20.) 사진]

획정위는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수 변화로 인한 합구나 분구 또는 경계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중·성동을 등 총 31개로 판단했다. 분할 금지 예외 적용 대상이던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에 더해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 18곳, 하한 미달 지역구 11곳이 해당한다. 하지만 획정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정작

선거구 조정 작업은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197일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각종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지역구 의석수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획

정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할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라며 “예년처럼 선거구가 선거일 40일 남짓 앞두고 확정되면 유권자도 후보자를 판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A3면에 관련기사

1월 2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12월 12일까지 미확정된 선거운동 혼란... 현역 의원만 유리”

(예비후보자 등록일)

선거구획정위 “참정권-알권리 침해” 예비후보자들 공약 정하기 어렵고 유권자들 후보 정보 얻을 시간 부족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후보자의 참정권은 물론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엔 인허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판야구 획정위 사무실에서 만나 국회가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을 미루는 문제를 성토했다. 이 같이 지적했다. 최 교수는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후보자는 공약을 정하기 어렵다”며 “유권자도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의 정보별 선거 직전어야 알게 된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아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지난해 총선 지역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직후부터 지역구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외박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총선 직전에 자신이 등록한 지역구 경계가 조정될 수 있는 것.

예비후보자들의 혼란은 총선 때마다 반복됐다.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는 지역구 253곳 중 40곳(16%)이 조정됐고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자는 451명에 달했다. 20대 총선 때는 253곳 중 98곳(39%)이 변경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에 완료해야 하지만 국회는 현재 선거구 획정의 첫 단계인 지역구 의원 수 등 획정 기준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대로라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선 40여 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될 것만 전망이 나온다.

현역 의원들이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촉박한 선거 운동 기간이 기성 정치인에게는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 최 교수는 “현역 의원들은 대체로 일반 유

권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도전자들보다 인지도가 높다”며 “선거구가 갑자기 변경되면 현역이 도전자들에게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선재 획정위원도 “현역들은 의정활동 보고 등을 하면서 자신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데 신진 정치인들은 그럴 기회가 거의 없지 않느냐”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새로 정당을 만들거나 처음 정치에 뛰어든 신진 세력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대 정당이 신진 정치 세력의 진입을 막는 역효과가 나온다는 것.

선거구 획정 기준 통보가 늦어지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구획정위는 2020년 3월 4일 획정 기준을 전달받고 이틀 뒤인 3월 6일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했다. 최 교수는 “시한이 촉박하면 인구수 기준이란 단일 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약화 등을 두루 고려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현역의원 “합구 안돼”... 인구부족 11곳, 인근 시군구 떼오기 전쟁

인구 하한기준 못미치는 지역구 비상
“순천 떼오자” “예천 받아오자”
선거구 경계조정 움직임에 지역 갈등
“영호남 타협해 하한선 조정” 주장도

한번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근거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선거구 2개 이상, 지역구 5개 이상, 지역구의 편차 2배 이상”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준은 총선 전례 11월 31일 인구다.

이 기준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확정 기준 인구 하한선(330,000명)에 미달하는 영호남 일부 지역구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지역구를 지켜야 하는 현역 의원의 필사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특히 하한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들 사이에서는 “우리 지역구를 중심으로 몇 지역구 일부를 가져오자”는 주장이 돌며 지역 갈등으로 번질 태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근 호남, 영남은 영남이 유가나 시로 타협해 인구 하한선을 맞추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영호남은 ‘시군구 조개 붙이기’ 전쟁 중
2일 중앙일보 분석 결과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확정 기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총 11곳이다. 강원·여수·경북·익산·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경북(대구·의성·청송·영덕) 등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 대부안이고 부안·남원·사하·경(경주·영천·영남)·경남(진주·거창)에도 일부 있다. 지역구 간 비율로 나열하면 전남·영남에서는 더 떨어진다. 영남 소속 현역 의원 2명, 내년 선거

구 확정 문제를 두고 중이다. 주철현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군은 지난해 11월 5749명으로 4배 정도 인구가 1만 명 이상 줄어 하반기 못 미쳤다. 그러나 주 의원은 여수에 지역구 2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구 하한선을 넘긴 여수시의 김희재 의원은 여수와 인접한 순천을 합쳐 3개 지역구(여수·순천·갑·병)로 삼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순천 지역에서 “개리엔더(해장)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7월부터 대구로 편입되는 경북 군위가 포함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국회의원 김희국 의원)도 선거구 문제로 인근 지역들과 다투고 있다. 이 지역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다른 나머지 지역의 인구가 11만 명 남짓한 단일 선거구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국회의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인근-예천 지역구(국회의원 김병환 의원)에서 예천을 받아오면 된다”고 했다가 호전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 중심의 신도시가 인근과 예천의 경제에 형성되는 등 두 지역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했다.

경북 지역 정치에서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국회의원 박홍수 의원)에서 울진을 떼오자”, “포항(국회의원 김경재 의원)에서 옛 영일군 지역을 떼오자”는 각종 주장이 난립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상 지역구들이 “절대 붙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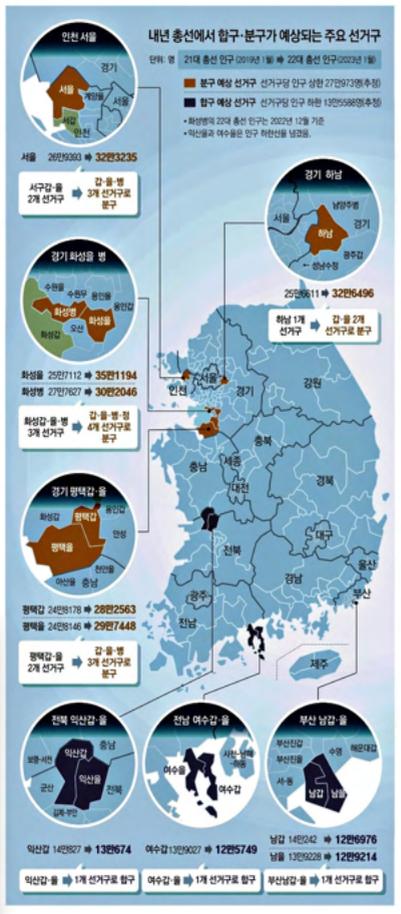
●합구 예상 현역의원 몇 지역구 선별 결정
무엇건 인구수 기준은 하한 높아질수록 많은 양·호남의 지역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인구 급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연일 있다. 10곳의 지역구별 가진 진보

익산·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5곳이 인구 기준 하한에 미달했다. 경북 정치권의 한 인사는 “경북을 특검은 인구 기준으로 정하면 경기 등 수도권은 총선 때마다 지역구가 늘고 영·호남은 계속 줄 것”과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 급감 지역은 인구 하한선을 예외로 하는 등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옆 지역구 문제에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다. 잠재적으로 자신의 선거구가 될 수도 있는 경기도 일찍양지 표심 행거기에 나서는 것. 부산 남구는 갑(120,697명)·병(120,697명)·국회의원 박승원 의원과 을(120,697명)·인구 2만 4천 명으로 2021년 11월 기준 259,611명(322,649명)에 미달해 합구가 유력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재외·외국인 부산 남구에 있는 주한미군 56,603명의 이전 후보 지역이 박승원 의원 지역구(남구)를 담당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지역구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져 지난해 22대 총선 선거구 확정 역시 여야의 정치 격차 등으로 좀처럼 결정을 할 수 없었다. 유력한 정치인 20대 총선 당시 국회 선거구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이준환 의원은 “기본적으로 인구수 기준으로 합·분구를 살펴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조정할 것”이라며 “합·분구가 아닌 ‘구’와 ‘경계조정’을 합치고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중대선거구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구를 둘러싼 혼돈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소선거구제를 전제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는 먼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모든 정국을 뒤흔들어는 때가 온다.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동주 do@dongg.com·권규웅 kwonkyu@dongg.com



세계일보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005면 중편

정치신인·유권자 ‘패닉’... 현역만 유리

예비 출마자 적극적 선거 운동 어렵고
주민 입장선 후보자 파악할 시간 줄어
확정유 “의사결정에 중대한 자장 초래”

조병욱 기자

“운동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조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매년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가 어떻게 나뉠지를 모른 채 선거를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뒷담을 지고 있는 건 늦게 결정될수록 현역 정치인들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이 자신의 지역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펴기가 어렵다. 확정위는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자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에 필요한 선거 공약을 만들 시간도 부족하고, 지역 주민들도 혼란스러워한다고 토로한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선거일이 임박해 선거구가 변경되면 평소 지켜왔던 정치인이 아닌 내가 속하게 된 새 선거구의 후보자를 파악할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자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내년 총선 경기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정치 신인은 “늦게 행사 때마다 지역을 돌며 일꾼도장을 찍고 있지만 어느 동네가 열 선거구고 붙을지 몰라 선거 운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로는 국회부재자 투표 등 일부 유권자가 참정권에 큰 제약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거론된다. 내년 총선의 경우 올해 11월 12일부터 국회부재자신고가 개시되지만 국회에서는 내년 초는 되어야 선거구 확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앞선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가 열리기 41일 전인 그해 3월 3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21대 국회도 2020년 4월 15일 선거가 치러졌는데 선거일 33일 전인 3월 11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예비후보 등록 전엔 명함도 못 돌려…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기분”

내년 총선 노리는 여야 신인 4인
지역구 당원명부 못 봐 명함에 해당
SNS 외엔 인지도 높일 기회 막혀

국회의원		여야 정치신인 4인방 출마 예정지		더불어민주당	
	이동석(66년) ·예정지 충북 충주 ·신 대통령실 행정관		강사연(2005) ·예정지 대구 중·남 ·한국역사진흥원 이사장		정진경(47년) ·예정지 경기 고양평 ·전 국회의원 보좌관
	권자용(28년) ·예정지 서울 서대문갑 ·전 민주당 대외담당				

‘기득권 선거법’에 발목 잡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정치 신인의 생각은 어떨까. 내년 4·10 총선 출마를 노리는 여야 정치 신인 4명은 중앙일보에 “커다란 백이 거문고라고” 입을 모았다. 상대적으로 젊은 신인에만 돈 문제가 난관이다. 4선 이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현역인 서울 서대문갑 민주당 공천

에 도전하려는 권자용(35) 전 민주당 청년내선반인은 “누가 저를 후원하고 싶어도 예비후보 등록(선거일로부터 120일, 올해 12월 12일) 전까진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 정치자금법이 신인 예전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야 후원회 개설 및 모금을 허용해서다. 국민의힘에서

이중재 의원(충주)에 도전하려는 이동석(38)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현역 의원은 매년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모금하지만 신인은 절반인 1억 5000만원밖에 모금할 수 없다”고 했다. 당장 얼굴을 알리는 것도 숙제다. 현역과 달리 예비후보 등록 전까진 명함

한 장 나눠줄 수 없는 등 인지도도 높일 기회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동석 전 행정관은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 하지만 한계”라며 “현역과 비교하면 신인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에게 도전장을 내리는 강

사연(22) 국민의힘 상근부대반인은 “지역구 당원 명부를 열람할 수 없어 시작부터 ‘명함에 해당’”이라고 말했다. 최종 관문인 당내 경선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고양평)에 도전하려는 정진경(44) 전 김대중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은 “여야가 대부분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해 인지도 높은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미국처럼 대외 강당을 빌려 토론회를 여는 등 신인에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경쟁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전만구 기자** (대구 중·남)에게 도전장을 내리는 강 kim.junyoung@joongang.co.kr

선거구 30곳 떼고 붙이고 안갯속… 정치 신인은 패닉

총선 6개월 앞, 선거구 획정 안돼
21대 총선 땀 39일 전에야 결정
신인 “지역구 모르니 명함도 못 파”
“선거 1년 전 획정 강제 수단 필요”

22대 총선에서 영남권이 출마 예정인 국민의힘 원외인사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사용할 명함에 고안해 빠졌다. A씨가 도전할 지역구 인구가 줄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합구(合區) 예상 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A씨는 “도전자 입장에서선 어느 동네가 지역구에 포함될지 모르니 선거 전까지도 세우지 못한다”며 “나중에 명함도 새로 파야 한다”고 토로했다. 신인에만 ‘깜깜이 선거구 획정’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24조의 2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바꿨지만, 총선이 6개월 남짓 다가온 8월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22대 총선 지역구-비

례 의석수조차 아직 못 정했다. 여야는 선거법 협상 공전을 이유로 대지안 역대 총선에서 한 번도 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존(尊)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2020년 21대 총선 땀 선거일 39일 전에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인구 상하한 기준(2대 1 초과)에 부합하지 않아 재조정여 이뮴자야 하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는 무려 30곳에 달한다. 서울 강동갑과 부산 동래, 경기 수원무평택갑·평택을·고양을·고양정 등 18곳이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分區) 가능성이 있다. 부산 남갑·남을·사하갑, 인천 연수갑, 경기 광명갑·동두천·연천 등 11곳은 인구수가 하한에 못 미쳐 합구(合區) 대상이다. 부산 북·강서들은 획정 기준에 안 맞아 재조정해야 한다.

획정위는 지난해 1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에 “국외부재자신고 개시 1개월 전인 10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소한 지역구



정수는 정해져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여야 극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어 총선 직전에 아ف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녹장 획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 신인들에게 돌아간다. 출마를 준비하던 지역구가 획기적으로 공들였던 동네가 제외될 수 있어서다. 선거구 재획정 예상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국민의힘 소속 B씨

는 “아예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른다. 지역이 너무 넓어지면 현역들도 힘든데 시건도, 돈도 없는 원외 신인들은 어쩌려느냐”고 했다. 일부 신인들은 인접 지역구 현역끼리 짬짜미로 동네를 주고받는 이른바 ‘계리멘터리’ 가능성도 우려한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획정위가 안을 마련해도 국회 정계특위-본회의 의결

로 획정되기 때문이다. 2021년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당시 여야가 영·호남 지역 갑소는 피하고 수도권 분구를 최대한 줄이는 데 합작해 행정구역에 맞지 않는 ‘누더기 선거구’를 다수 만든 게 대표적이다. 이에 신인들은 “선거구 획정 지연은 현역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행위고, 이를 방치한 선거법은 ‘현역 우대법’이라고 비판한다. 분구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지역구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원외인사 C씨는 “신인들의 발을 묶기 위해 머무다가 막판에 ‘시간이 없다’며 계리멘타리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선수예비 심판까지 밀린 획정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종민 정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 분구·합구는 쉽게 합의할 수 없는데, 이해당사자에게 맡기기가 어렵다”며 “선거일 1년 전 시한을 지키도록 강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지현 기자** sung.jihyun@joongang.co.kr

현역 의원들의 태업?... 선거 사무 코앞인데 선거구 확정 '감감'

선거구 확정 늦어질수록 현역 유권자들 후보 정보 모르고 투표 정치 신인 '영등한 선거구 포함 편 표방 무용지물' 확정위에 토로

총선 때마다 선거구 확정 지연 반복 현제도 "민주주의 기본원리 위배"

"입법에서 선거제에 종속으로 할의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장에 가게 됩니다. 선거구 확정까지 늦어지면서 정치 신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잃어갑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한 구도인 셈입니다."

지난 6월 16일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위원회(확정위)가 인현 지역구 현역 의정 권위를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지역정기 관제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확정 등 기본원리 불배달 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을 비판했는데, 그 배경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22대 총선 선거구 개편을 코앞에 두고도 선거구 확정 등 선거제 개선은 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1대 총선은 정치 신인과 유권자에게 선되었고, 현정부가 어떤 차례 기준 마련을 촉구해오던지, 국회는 요구를 묵살했다. 현역 의원들의 '사보타주'로 인한 사유책은 피로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사례

연도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총선 전 확정일	37일 전 (2004년 3월 9일)	47일 전 (2008년 2월 27일)	44일 전 (2012년 2월 27일)	42일 전 (2016년 3월 9일)	39일 전 (2020년 3월 9일)
정당	● 1인 2표제 (지역구 비례) ● 지역별 투표 ● 지역별 투표	● 인구 대당비 최소 ● 지역별 투표 ● 지역별 투표	● 1인 2표제 지역구 1석 중립 ● 1인 2표제 지역구 1석 중립	● 1인 2표제 지역구 2석 중립 ● 1인 2표제 지역구 2석 중립	● 1인 2표제 지역구 2석 중립 ● 1인 2표제 지역구 2석 중립
지역구	비례대표 56(+109)	54(+79)	54	47(+79)	47
총인구	299만(+141)	299만	300만(+13)	300만	300만

나 대결이라는 자위하노는 아니다. 확정되는 12일까지 지역선거구 수, 시도별 의원 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확정 기준을 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확정되는 인구수 변동 등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에 앞서 지역구 의석수 등의 기준을 국회에서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

이다. 선거구 확정 기준(현재 4월 10일)을 넘긴 정치권은 확정위가 촉구한 2대 2표제안을 맞출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선거구 확정 지연은 정상적인 선거구 수 방편을 초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국회의원 선거(11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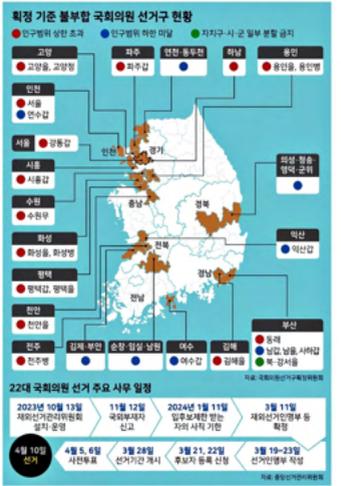
12일) 등의 일정이 대기 중이다. 선거구 확정 지연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때마다 선거구 확정이란 21대 총선 선거구와 맞먹는 등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고 있다"

고 지적한다. 선거구 확정 지연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때마다 선거구 확정이란 21대 총선 선거구와 맞먹는 등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고 있다"

고 지적한다. 선거구 확정 지연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때마다 선거구 확정이란 21대 총선 선거구와 맞먹는 등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고 있다"

고 지적한다. 선거구 확정 지연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때마다 선거구 확정이란 21대 총선 선거구와 맞먹는 등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고 있다"

고 지적한다. 선거구 확정 지연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때마다 선거구 확정이란 21대 총선 선거구와 맞먹는 등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고 있다"



총선 6개월 앞인데... 선거구 확정 또 뒷집진 여야

제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선거의 가장 기본인 '선거구'도 확정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어,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위원회(확정위)가 국회에 '구체적인 선거구 확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선거구 확정 기준은 국회와 지역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면, 확정위가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 확정 기한은 '선거일 1년 전'으로 지난 4월 10일까지였지만, 국회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이미 법정 기한을 6개월이나 넘겼다.

확정위는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되는 등 선거 일정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한달 전인 오는 12일까지는 국회가 확정 기준을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확정위는 지난달 11일 보도자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참정권

비례 배분 방식 맞서 협상 못해 법정기한 이미 6개월이나 지나 확정위 요청한 오는 12일도 넘길듯 유권자·입후보자 참정권 약영함

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가운데 차질 없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한달 전까지 구체적 선거구 확정 기준을 통보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선거 일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선거구 확정 지연이 더 지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확정위가 요청한 기한까지 선거구 확정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의석수와 배분 방식을 놓고 서로의 입장 차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비례형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부족한 의석수를 채우는 현행 방식인 '준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이유로 22대 총선도 앞선 선거 때처럼 선거일 40일 전 안팎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1대 총선은 선거일 39일 전, 20대 총선은 선거일 47일 전야 선거구가 확정된 바 있다.

김상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원 간사는 선거구 확정 지연 이유에 대해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 등으로 원내대표 협상이 어려웠다"고 했다.

김영해 정국위원 민주당 간사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야 여야가 관련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입재주 기자 shin@hani.co.kr

10월 2 보도자료 및 인물 보도

총선 D-174, '선거구제'도 '선거구 획정'도 모두 손놓은 輿野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 문제 등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정개특위가 주관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은 올 3월 1차 시한을 넘긴 데 이어 2차 시한(12일)도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갔다. 결국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오늘로 D-174일이다. 이런 상태라면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더라도 후보자들은 운동장이 어딘지도 모른 채 뛰어야 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선거구 획정보다 선행되어야 할 선거구제나 의원정수 논의가 전혀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정개특위는 3월에 3개의 '지역구+비례대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추가 논의는 진전이 없다. 야권은 지역구는 유지하되 현재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리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아예 의원정수를 축소하자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3년 전 21대 총선에서 대표적인 흠수로 지적된 비례 위성정당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여야는 위성정당의 존재를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법 협상의 큰 가닥도 잡히지 않았으니 선거구 획정은 언제 이뤄질지 기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수 변동에 따라 서울 종로와 중구를 합치는 등 선거구 31곳을 조정 대상으로 확정했지만 어차피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밑그림일 뿐이다. 여야 논의가 차일피일 늦어질수록 선거일에 압박해 여야가 당리당락 차원에서 선거구를 찢어 붙이는 게리맨더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선거법 논의의 의사결정권을 전 여야 지도부가 리더십 위기와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어서 선거법 현안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각 당의 공천 갈등이 불거진다면 선거법 논의는 더뎠전으로 밀릴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등이 줄속으로 이뤄진다면 현장에서 뛰는 후보자는 물론이고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들을 헛갈리게 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선거법 이슈는 시간만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가 파장이 커서 단칼에 무자르듯이 해결될 수 없다. 이렇다 지난 총선 때보다도 더 왜곡된 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정개특위 기한 또 연장한 국회, 선거제 논의 언제 끝낼 건가

국회는 지난달 3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했다. 여야가 내년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개편 방안을 합의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정개특위 활동은 지난 4월 말에서 10월 말로 1차 연장됐고, 이번에는 아예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로 늦춰졌다. 총선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선거제를 논의할 작정인지 개탄스럽다.

정개특위의 마지막 회의는 지난 7월 13일이었다.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수정당을 배제하고 '2+2 협의체'를 꾸렸지만, 이 또한 개점휴업 상태다. 지금까지 논의된 건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선거를 현행 소선거구제로 한다는 정도다.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의원정수 증원, 사표 방지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이미 폐기됐다.

남은 것은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이다. 47석을 유지하되,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뽑자는 데 여야 공감대가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로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회귀'를 선호하나, 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자 수에 연동해 비례 의석수를 조정하는 연동형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 병립형은 소수정당 원내 진입을 막고 사표

가 늘어 거대 양당 쓸림이 커진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흠수 방지라는 이유를 대지만, 개선이 아닌 퇴행이다.

민주당은 1일 총선거획단을 구성했고, 국민의힘에선 2일 총선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가 출범한다.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하는 것이다. 오는 12월 12일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그런데도 게임 규칙을 정하는 일이 하세월이다.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이지만, 과거에도 지켜진 적이 거의 없다. 20대 총선 때는 선거일 42일 전, 21대 때는 39일 전에 끝났다. 선거법 처리가 늦어지면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고 현역에게 유리하다.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이 침해되고, 유권자의 알권리도 제약된다.

선거제 개편 방향은 분명하다.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해 거대 양당 정치를 완화하는 것이다. 진영 간 대결 정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거대 정당이 정치적 섹범과 당리당락으로 질질 끌어서 안 된다. 여야가 차일피일 미루다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었다간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8 NEWS

다섯 달 남았는데 하세월.

[SBS 8시 뉴스 인터뷰(2023. 11. 9.)
= 장선화 위원 =



다섯 달 남았는데..

8 NEWS

장선화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본인이 속한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요.
유권자들이 알 권리를 잃게 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역구 의원수라도” 국회의장의 호소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D-21 인데
양당 쟁법에 선거제 개편 ‘제자리’
김진표 “정수 큰 틀 합의될” 요청



내년 4월 총선에 적용
될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시한이 7개월이
나 지난 가운데 김진
표(사진) 국회의장이

22일까지 지역구 의원 규모라도 합의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수라도 결정돼야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확정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2일 후보자의 이른바 ‘깜깜이 지원’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와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해의 순방을 떠나기 직전인 지난 10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역구(의원) 정수라도 먼저 정해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위원회에 넘겨주자”고 요청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서울 중구·종로구 병합 가능성을 포함해 조정이 필요한 지역구만 30곳에 달해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선거구 확정위원회도 이날 구체적 선거구 확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규모에 대한 윤곽을 잡아가지 않은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이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 방지책으로 보완하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 상태다. 양당 사무총장은 이날 안에 지역구 의원 정수 논의를 마칠겠다는 입장이나 선거법 개정 및 선거구 확정까지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부산엑스포 유치전 등 출정으로 자리를 바꾸는 의원이 많아 정수 합의가 더디라도 전체회의 일정 등이 유동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명희진·김주환 기자**

▶ 관련기사 3면

SBS 뉴스

뉴스 > 정치

선거구획정위 “참정권 침해 현실화...국회, 조속히 기준 정해야”

윤나라 기자

입력 : 2023.11.20 17:43 | 수정 : 2023.11.20 17:43



서울신문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005면 정치

지역구 정수 못 정한 與野... 위헌 논란 우려

與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추진”
野 “29일 의총 최대한 논의 진전”
국회의장 호소에도 정쟁만 지속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 시한을 7개월이나 넘긴 여야가 첫 단추인 ‘지역구 의원 정수’를 정해 선거구획정 위원회에 넘겨 달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호소(서울신문 11월 21일자 1면)마저 외면했다. 이에 선거 차질은 물론 위헌 논란까지 우려된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정쟁성 공방에만 열을 올렸다.

2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의장실 등에 따르면 여야가 지역구 의원 정수를 김 의장이 요청한 시한인 전날까지 내지 않자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각 당의 사정이 있어도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 (11월) 30일까지는 반드시 결론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무조건 위헌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총

선 당시에도 선거 직전까지 여야가 선거제와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후보자·유권자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국회가 ‘의무 불이행’을 했다며 ‘침해’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1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반 넘게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지는 국민의힘 주장과 정면충돌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은 결국 여야 지도부가 물꼬를 틀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나은) 의정들을 정개혁위에서 정리하고 지도부의 의견을 모아 29일 의원총회에서 최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희진·김주환 기자**

여전히 결론 못낸 '선거제 개편' ... 민주당 내홍만 격화

의총서 '병립형 회귀' 난타전
일부 친명도 회귀 반대 입장

김진표, 5일까지 확정안 요청

▶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편을 두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립형 회귀' 필요성을 시사하자 비명(비이재명)계는 물론이고, 일부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이에 반대

하고 있어 당의 내용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다양한 민심을 모아내고, 국민의힘과 돌이만 짚짜미하는 양자 독식 선거를 그만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당 은 수차례에 걸쳐 다당제, 연동형, 이거 는 반드시 민주당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공언을 해왔다"며 "이제 와서 그것을 진

짜 종이자 뒤집듯이 뒤집으면 역사의 완 벽한 심판을 받는 행위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총 28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이 대표가 병립형 회귀 필요성을 시사했던 점에 보조를 맞춰 주로 친명계 의원들이 총선 승리를 위해 한 석이라도 더 의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비명계는 이에 반대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

용민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선거제도는 우리 당이 이기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친명계 의원이 선거제 개편을 두고 이 대표와 이견을 보이면서 당의 내용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는 5일 14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변화 허용범위 내 최소조정 등을 획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김대영 기자



김의장, 획정위에 선거구 기준 현행대로 통보...여야합의 지연

송고시간 | 2023-12-01 12:03

5일까지 확정안 제출 요청...1차례 재확정 요구 가능
획정위 "국회의장 통보한 기준 구체적이지 않고 확정안 마련 시간도 촉박"



의사봉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송고시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he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행 기준대로 통보했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 속여야 따른 조치다.

NEWSIS 정치 > 정치일반

선거구획정위 "국회의장 기준으로 논의 ...정치권 합의점 못 찾아"

등록 2023.12.01 11:17:31



[서울=뉴스시스] 주상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이송재 기자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한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했다.

앞서 획정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 확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에 대한 합의를 찾지 못하자 김 의장이 획정 기준을 전달한 것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도 못한 여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을 통보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여야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제시한 임시조치다. 선관위가 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12일 예비후보 등록일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처지다.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려 8개월이나 지연된 셈이다. 총선에 적용할 기본적인 선거 규칙조차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김 의장이 통보한 기준안은 의원 정수 300명, 지역구 정수 253명이다.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지난 총선과 동일하다.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를 완화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끝내 무산됐다. 여야가 준연동형 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획정위는 세차례에 걸쳐 선거구 획정기준을 제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가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 때문에 획정기준을 합의하지 못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총선 42일 전, 21대 총선에서는 총선 39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된 것을 보면 낙장처리가 고질화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 신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선거구가 빨리 정해지지 않는 바람에 기성 정치인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거대양당이 득권 유지를 위해 논의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가 늦어질수록 소수정당과 정치 신인은 불리한 '기술어진 운동장'이 되고 만다. '고인물정치'가 존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민의 정치혐오와 불신도 그에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선관위와 국회는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여야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서둘러 합의해 유권자에게 부여된 참정권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이해타산을 따지며 선거법을 어긴다면 아예 전권을 가진 독립선거구에 선거구 획정을 맡기는 게 나을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 일주일 전인데... 선거구 아직도 미정

**법정시한 8개월 넘겼지만
여야, 획정기준 확정 못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인일 12월 12일을 코앞에 두고 국회가 여전히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재 기준으로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획정안을 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출 여부는 불투명하다.

4일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김 의

장이 요구한 획정안 제출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논의 중"이라면서도 "시한 내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단 김 의장이 제시한 기준은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 의원 정수(253명) 유지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1) 내 최소 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이다.

선거구 획정은 편의를 위해 관례적으로 국회가 획정 기준을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에 통보하면 획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획정위에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미 법정시한을 8개월가량 넘긴 상황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적인 법정 시한 미준수에 예비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피해를 보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불과 선거 40일 전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서 수도권 지역구의 경계가 조정되며 한 후보자가 선거 사무소를

부라부라 옮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김 의장이 통보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시간도 촉박해 선거구획정위가 시한 내 획정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지난 총선 당시보다 인구가 크게 늘어난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에서 의석 수가 각각 1석씩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등은 의석수가 줄어드는 합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거론된다. 전경윤 기자

예비후보 등록 1주앞 선거구 초안 마련... 총선 임박해 결정될듯

(12월 12일)

여야, 확정 협의체도 마련 못해
정개특위서 재확정 요청할수도
정치 신인 등 꺾꽂이 준비 불가피

내년 4월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구 확정 협의체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구 확정이 총선 직전엔 합의될 가

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12일까지 선거구 확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정치 신인들과, 후보도 모른 채 총선을 맞이하는 유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확정위)가 5일 제출한 선거구 확정 초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초안을 토대로 여야는 협의체를 꾸려 선거구 확정 논의에 들

입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위에 재확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김상춘 정개특위 간사, 최병두 정개특위위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다만 아직 야당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밀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 '3+3' 협의체가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지역구 확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결국 발정시한을 8개월 가까이 넘기기도 여야는 논의 테이블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날 초안도 여야가 선거구 확정 논의에 들어갈 기미를 보이지 않다. 보다 못한 김 의원이 확정위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마련됐다. 여야 협의체가 꾸려지더라도 여야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치열한 수싸움을 펼칠 예정이어서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합의안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번 초안에 긍정적 반응을, 야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국 총선에 임박해서야 선거구 확정이 마무리될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2020년 21대 총선 전에도 선거 40일 전엔 야권 선거구 확정이 마무리됐다. 19대 총선은 44일, 20대 총선은 42일을 앞두고도 선거구 확정을 마쳤다. 김준일 jkim@donga.com·정성택 기자

한국일보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A03면 중편

어김없는 득장 확장... 정치 신인 발목, 유권자 참정권 훼손 비판

☞ '1면' 선거구 확정안 제출에서 계속
확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확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에선 북부지역 6개 시군을 합친 선거구(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가 지나왔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체 했지만, 일부 불만도 나왔다. 한 의원은 강원 북부지역 선거구를 예로 들며 "지금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고,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확정위가 마련한 확정안을 토대로 선거일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뿐 아니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암묵적 담합으로 매년 득장 확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겨레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027면 오피니언

총선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도 확정 못한 여야

내년 4·10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일 시작되지만, 이들이 뛰어야 할 '운동장'인 선거구 확정은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다. 선거제 개편 논의 역시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얽혀 표류하고 있다. 정치 신인들은 자신들의 선거구도 확실하지 못한 채 선거운동에 나서야 할 판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와 위원 한명이 각각 참여하는 2+2 회의를 열어 선거구 확정 논의를 시작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 확정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법정기한 8개월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확정위원회가 지난 9일 확정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그제서야 여야가 협의에 나선 것이다. 선거구확정위의 안을 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되어 결과적으로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선 각 1석이 늘게 된다. 이는 여야의 선거구 협상을 위한 초안의 성격인데, 이미 민주당이 '여당 편향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은 자명하다. 선거구 득장 결정은 역대 총선에서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19대 총선은 선

거일 44일 전에 선거구가 확정됐고, 20·21대 총선은 각각 42일 전, 39일 전에 결정됐다. 국회가 매년 선거구 확정을 이루는 이유는 정쟁 탓도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거구 확정이 늦어지면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유권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선거전에 나서야 한다. 현역 의원들은 선거구가 갑자기 바뀌어도 높은 인지도 덕을 볼 수 있지만, 정치 신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버락치기' 선거구 확정 관행이 결국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개입의 불인 선거제 개편 역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등을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국민의힘은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도부의 병립형 회귀 움직임에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확정과 선거제 개편이 늦어질수록 예비 후보들의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참정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시급히 논의를 마무리 지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총선 신인들 ‘깜깜이 선거구’ 분통... “현수막 어디 걸지도 몰라”

**예비후보자 내일부터 등록 시작
선거구 변경 예정 지역만 32곳
21대 총선엔 한달 전예야 확정
지명도 낮은 신인들 절대적 불리
“낮선 동네 다시 인사 다닐수도”**

내년 4·10총선을 12월 앞두고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야당이 선거구 확정 및 선거제 등 ‘게임의 룰’에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어 ‘깜깜이 선거’가 이번에도 되풀이된다. 야당이 나열한 정치 신인들은 “어느 지역에서 뛰게 될지도 미정인 상황”이라며 “현역 의원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술적인 운동장’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 정치 신인들 ‘깜깜이 선거’에 분통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제와 선거구 확정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11일부터 행정 전국 253개 지역구 불기준으로 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선관위 선거구조정위원회가 앞서 5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확정안에 따르면 지난 총선과 달리 선거구가 변동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총 32곳이다. 올해 1월 전국 선거구 총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분구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이다. 추후 이 확정안이 확정되면 최소 32곳에 출신표를 내는 예비후보자들이 모두 영향권에 든다는 의미다.

“카리커리얼(영향권) 선거구 조정에 몰입해



가대 입당은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야 선거구 확정 작업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야는 지난 18·19대 4월 총선 당시 각각 2008년과 2012년 2월 20일에 선거구를 확정했고, 2016년 20대 총선 때는 2016년 3월 8일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다. 확정된 의회정당이 확정되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야당이 할라도 20일 본회의까지 최소 8일간의 예비후보자들이 혼란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다. 야당이 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확정안을 검토해 재확정을 요구한 뒤 확정안이 다시 국회에 남기는 중간 과정까지 고려하면 공백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 확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면 내년 예비후보자의 혼란이 반복되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시간 제약상 현역 의원처럼 지역구민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할 수도 없고, 현수막을 무제한으로 걸 수도 없는 정치 신인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야권의 한 정치 신인은 “선거구가 유예가 변경되면 낯선 동네에서 처음부터 다시 인사를 하고 다녀야 하는데, 지명도가 낮은 신인일수록 불리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에서 영입된 원외 관계자도 “민선시 장악이 할 핵심 지역에 전략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즉시 해당 지역에 전략하고 싶은 마음과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적인 불편함도 뒤따른다. 정권당 관계자는 “선거구 확정이 늦어지면 예비후보들은 할 수 없이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후원회를 꾸리는데, 확정 후 뒤늦게 선거구 바뀌어 바뀌면 후원회 이름도 바뀌어야 한다”며 “사실상 ‘방만형’을 바꾸는 거라 은행, 국세청 등을 오가면서 관련 서류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한창 바쁜 시기에 상당히 번거로운 일을 떠맡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예비후보 등록일 전후로 제당도 ‘속도전’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전후로 제당원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지 의원들이 대표로 있는 한국인당 관계자는 “다음 주에 경기 상남시 연교, 대전 등에서 모임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전 의당도 정당명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다. 김재철은 “17일 공동 창당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절차가 나온다. 새로 온선배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야권 신인들이 거론되는 등 제당도 지형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이기에 어떤 정당이든 또 합류할지가 결정되면 창당 관련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jurn@donga.com 김은지 기자

선거구 확정 못한 채 예비후보 등록... 속 타는 정치 신인들

총선 D-120- 오늘부터 시작

유니클 기자 uniclee@segye.com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월 앞두고 12일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11일까지 내년도 4·10 총선을 확정할 선거구 확정지도 없었다. 선거구가 변동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거전에 나서야 하는 정치 신인이나 유권자 모두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지역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10일까지 선거구 확정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 확정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 의원선거구조정위원회에 재신청이 지역구 선거구 수를 반영해 253개로 유지하는 내년도 확정안을 어떻게 제출한다. 제출된 선거구 확정안에 따르면 32개 선거구가 변동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서울·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은 4월 초엔 끝났어야 했는데 ‘확장’ 최근 발표돼 논의 착수
지난 총선엔 투표 한달 전 확정

출마 지역 학살이 모른 채 유세
인지도 낮은 신인 불공정 지적

의석수가 1석씩 줄어든다. 인천-경기 의석수는 1석씩 늘어난다. 시·도 내 구역조정 5곳과 자치구·시·군 내 경계 15곳 조정을 포함하면 총 32개 선거구가 지난 총선과 달라지는 셈이다.

이번 확정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확정하여 재확정을 할 차례 요구할 수도 있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선거구 확정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를 한 달 앞둔 3월6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선거구 확정이 늦어지면서 가장 속

타는 건 현역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다. 당당 사무실은 내거니 선거운동은 어디서 해야 할지부터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경기 동두천-연천 출마를 준비하는 손순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현역 위주의 선거법으로 신인들의 손발을 묶어둔 것도 모자라 뛰어오를 운동장까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불공정의 골판지”라고 지적했다.

확정되는 경기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은 동두천-양주, 포천-연천-가평으로 구역조정을 권고했다.

당초 예비 후보자 제도는 현역 정치인보다 불이익이 있는 정치 신인의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령의 선별, 선거구 수 축소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일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된다.

총선 출마일이 제정되는 한동안 법

지론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선거일 전 90일인 다음달 11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기간과 명함 등 선거운동용 위한 유인물 배포 금지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줄었다.

또 기존에는 후보자도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예매기 등을 두를 수 없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예매기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돌에 붙이거나 지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기간에 선거예명장을 주는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향우회·동창회·동향회·단·단체와 자유의 등을 개최할 수 있던 규정도 정당한 이유 없이 총선에선 사적 모임에 들어가지 25명 미만이면 열 수 있다.

선거제·선거구 획정 표류...신인들 “어디서 뛰어야 하나”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선거구 획정까지 늦어지고 있다. 어느 운동장에서 뛰어야 할지 몰라 발이 묶인 상황이다. 여야가 수 싸움으로 허송세월할 게 아니라 획정안을 빨리 발표해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경기 동두천·연천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의 속이 탄다. 같은 당 현역 의원(김성원 의원)에게 도전하려면 하루빨리 예비후보로 등록해 표밭을 다져야 하지만, 지역구 쏬배 여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이 지역을 포함해 기존 선거구 가운데 6곳을 쪼개고, 6곳을 통합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 지역구 조정까지 합하면 총 32개 지역구가 변동된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합의

오늘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 현역보다 불리한 원의 발뚎

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 신인들의 혼란과 속앓이가 반복되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12일 시작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홍보를 배포 등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원의 후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번 총선 선거구 획정도 선거 1년 전이라는 법정 기한을 넘겨 하세월이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방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1대 총선은 선거 39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 18·19대 총선은 각각 47일, 44일 전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다.

획정위에서 분구 지역구로 분류한 경기 하남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이장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일단 하남을 하나로 생각하고 (모두) 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계 조정 지역에서 처음 나서는 한 출마자는 “기존 정치인들은 이미 지역 주민 정보와 네트워크가 탄탄하다. 그러나 신인들은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역구가 갑자기 바뀌면 그동안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다. 제발 법대로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분구 예상 지역에 출마하려는 한 인사는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예비후보제도가 무색할 정도”라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능장 선거구 획정에 정치 새싹이 마른다

오늘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여야 힘겨루기 속 내달로 미뤄질 듯 선거 사무소·어깨띠 등 가능해도 정치 신인들 “명함 돌릴 곳도 몰라 피선거רב 박달과 마찬가지로” 한숨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동두천·연천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소속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내년’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조정안에 동두천과 연천이 동두천양주갑, 동두천양주을, 포천연천가평으로 쪼개졌기 때문이다. 경쟁자인 동두천·연천 현역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인 제가 직접 나서 연천·동두천 지역구를 지게 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손 대표는 도전자 입장에서 너무 불리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호소할 데도 없는 처지다.

국회가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12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았다. 매년 총선을 앞두고 반복된 일이다. 이번에도 정치 신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했지만,

획정위는 지난 5일에서야 일부 선거구를 통한 분구·조정안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과 전북에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이 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의 재획정 요구 및 본회의 표결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야당의 불만이 생각보다 거세. 내년 1월까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해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12일부터 예비후보에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봉 착용 △본인이 전 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도전자들은 예비후보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카르텔과도 무관치 않다.

경기 포천가평 출마를 준비하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연천이 선거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염두에 두어 한다. 그는 “막연한 가능성 때문에 연천에 가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원의 후보 입장에서 불안하다”고 답했다.

손경하·박세민 기자 3에3번에 계속

선거구 미획정...속 터지는 정치신인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되지만 현수락도 못받아...출발 불공정

내년 4월 10일 시하는 총선 내달에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을 정확히 120일 앞둔 12일 시한다. 그러나 아직은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에 현역 지역구 의원들 비해 인력·물력 열세에 놓인 정치 신인들은 분노와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일부터 행정 23개 지역구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그러나 지금의 23개 지역구 중 일부는 포함되는 구역과 경계가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직선거법은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대1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가 앞서 선거구 미획정위원회는 인구 변화를 반영해 지난 5일 총 32개 선거구

를 변경하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과 분구가 각각 6곳, 지역구 구역 조정이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이 15곳 각각 포함된다.

획정안이 확정되기 위해선 여야가 합의할 것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일 첫 회의가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이견만 재확인했다. 다음 회의의 날짜도 미정 상태다. 황재하 원내 수석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11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도 문제지만 비례대표제 등 여러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논의돼야 해서 시간이 더 지날수록 개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 정치 신인들은 울상이다. 지역구 조정이 거론되는 한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당 소속 A씨는 “당론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많은데, 할야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까지 가서 할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개에 지원하려 한다”

를 40여 개 거는데, 지역구에서 배정할 수 있는 등록도 계속 사비를 들여 열 수밖에 없다”면서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은 현수락 비용도 당비도 충당하니 불평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역시 지역구 조정 가능성이 큰 경원춘 현역 의원. 양주을 출마를 준비하는 이주민 국민의힘 후보인 양은 “뽕배개 선거구 바뀌면 기존 선거구 기준으로 연천에 출마할 수 없다”며 “여야가 서로 양보하면 양보할 수 있다”며 “여야가 서로 양보하면 양보할 수 있다”며 “여야가 서로 양보하면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동부출마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당 소속 박영아 전 서울시 정무수석은 “지역구 주민들이 자신이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한다”며 “선거구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선거운동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종민 역시 신인들 기자@nmb.co.kr

與野 쉼법에 막힌 비례제 개편 선거구 획정 논의도 지지부진

시도조차 못한 선거제 합성

김병관 기자 gwan2@sagye.com

내년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각종 비례대표제 유형이 언급되고 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지난 4월 10일)을 8개월 가까이 넘기고, 예비후보자 등록 이틀 차인 13일까지 제대로 된 선거제 합성을 시도조차 못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선 선거제부터 확정되어야 한다. 소선거구제(한 선거구당 1명 선출)로 할지,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당 복수 선출)로 할지 등이 정해져야 이에 맞는 선거구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 선출 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표라도 많으면 당선)를 결합한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선거제 협상이 지지부진한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제 개편 방식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20대 총선 방식인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원희 의원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주장하며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김두관 의원에 이날 페이스북에서 "병립형은 민주당에 대한 배신이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배신이고 국민 배신이자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

이원희 불출마 배경 '준연동 고수' 지역구 의석 많으면 비례는 적게 지난 총선 위성정당 창당 부작용 민주당, 오늘 의총서 당론 논의

국힘-민주 지도부 주장 '병립형' 비례의석 별도 투표 단순 방식 거대 양당 의석 독식 최대 폐해

전국 권역별 비례 배분도 거론 3개 권역이나 6개 권역인 검토 비례의원 지역인재 쏠릴 우려

제로 입장을 정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득표수와 의석수 간 비례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우선 배분하고 지역구 후보의 당선도 보장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보장받을 수 있어 소수 정당의 원내 입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독일이 대표적인 실시 국가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성격을 일부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했다. 정당 득표율에 연동되는 의석수를 30%로 제한하고, 연동률도 50%로 제한해 '준연동형'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단점으로는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이 꼽힌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의 경우 연동형-준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배분받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때 민

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모두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병립형 비례제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제 선거가 독립적으로 치러지는 제도다. 이 경우 각 정당의 의석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당선자 수와 비례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합계로 정해진다. 투표 방식이 비교적 단순해 유권자의 이해가 쉽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 패배로 꼽힌다. 영·호남 등 지역 기반이 있는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식하고 비례 의석의 대부분도 차지할 수 있어서다.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배경도 병립형 비례제로 인해 거대 양당이 과대표되며 민의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제도다. 연동형, 병립형 비례제 모두와 함께 실시될 수 있다. 현제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전라-제주, 경북, 경남의 6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과 수도권-중부권-남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권역별 비례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의 기능 중 하나인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이 낮아진다는 부작용이 있다. 또 비례대표제 공천이 '지역인재'에 초점을 맞춰지며 소수자-차별 대표성이 약해진다는 단점도 있다.

野, 통합선거구 자체 경제조정안 마련... 계리맨더링 논란

전북-부천 '1석씩 축소' 반발 인구 하한 맞춰 시군구 분할 검토 당내에서도 '악습 막을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반발해 통합 대상 선거구를 중심으로 자체 '경제조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서도 '계리맨더링'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행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를 도입해 전북 지역 시군구 일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획정위는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

수 등 4개 지역구를 3개로 통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지역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지역구를 기존대로 4개로 유지하겠다는 것.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북 지역구 의석수를 현재의 10석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각 지역구의 구획을 다시 조정해 인구수 하한(13만6600명) 기준을 맞추는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원희 의원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인근 완주-진안-무주-장수와 합친 뒤, 이를 다시 인구 하한에 맞춰 두 개로 조개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지역 내 민주당 '뺏발'으로 꼽히는 부천에서도 비슷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획정위는 현재 4개인 부천 지역구를 통합해 3개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 내에선 인구수가 부족한 부천시 오정구에 인접한 원미구 도당동, 춘의동 등을 편입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는 오정구와 원미구를 합쳐서 강, 을, 병으로 나누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부천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

구별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충분히 인구수 하한을 맞출 수 있다"며 "당 지도부로부터 부천 선거구를 사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다.

당 내부에서는 이런 시도가 '계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계특위 의원은 "획정위 안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공당이 선거에 임박해서야 자신에만 유리한 계리맨더링을 하는 것도 문제"라며 "거대 양당끼리 서로 '이 정도는 눈감아 주자'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악습으로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총선 때도 여야는 경기 화성시 분담을 분할해 화성갑, 을 지역구에 붙이고, 전남 순천 선거구는 물로 나눈 뒤 일부를 전남 광양에 통합시키는 특례조항을 만들어 계리맨더링이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정계특위 관계자는 "획정위 확정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 조항을 만들고, 이에 대한 여야 논의 과정도 현재처럼 '깜깜이' 방식이 아닌 전체 공개하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성희 기자 yolo@donga.com

거대 양당 힘겨루기에 총선 룰 아직도 '안갯속'

뉴스분석

선거구·선거제 확정 시한 넘긴 국회

지역구 합구·분구 여부 결정 안 돼
연 동네에 후보등록 '기현상' 발생
예비후보들 갈팡질팡- 혼란 심화
쌍특검 등 대차·늑장 '구태' 불 보듯

김승환·김현우·최우석 기자 hwan@segye.com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4선·서울 노원을)은 지난 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서울 노원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노원갑은 같은 당 고용진 의원(재선)의 지역구다. 고 의원은 우 의원 등록 5일 전 이미 노원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터였다.

현역 의원이 제 지역구를 내버려두고 바로 옆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국회에 제때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해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확정 시한은 '선거일 전 1년까지'다. 14일 기준으로 무려 279일이 지났다. **〈관련기사 4면〉**

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역구 합구가 확정적인데 선거법 개정이 여태까지 안 되고 있으니 발생한 일"이라며 "확정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선거운동들을 시작할 순 없는 일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안에는 서울 노원 갑·을·병을 노원 갑·을로 합치는 안이 담겼다. 예비후보 등록은 아니지만, 민주당 김교흥 의원(재선·인천 서구갑) 또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지역구로 검증을 신청해 통과했다. 이 또한 인천 서구가 기존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분구될 것으로 전망되더라.

총선이 석 달도 안 남았지만 국회가 아직도 '선거 룰'을 정하지 못하면서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확정과 선거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쌍특검(김건희 특검·50여클럽 특검) 재표결을 둘러싼 대치 심화가 예상돼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협상이 2월 말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했다.

결국 선거일을 40일 안팎 남겨 두고 가까스로 룰을 정하면 구태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온다. 직전 21대 국회의원 선거 룰도 선거일 39일 전에야 확정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선거구 확정 시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되, 이 시한이 지나면 기존 제도로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이 문제를 '양당의 선의'에만 맡길 수 없단 판단에서였다. **▶ 4면에 계속**

총선 룰 아직도 '안갯속'

▶ 1면서 계속

헌법재판소도 이미 7년여 전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 지연과 관련해 원외 예비후보 측 헌법소원에 각하 처분을 내리면서도 재판관 4명 소수의견으로 "국회의 입법 부작위는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룰 확정 지연이 일심화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민주주의가 공고해지려면 룰에 대한 논란이 적어야 한다"며 "스포츠 경기를 해도 심판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면 패자가 승복하지 않고 경기 자체가 얽어지는 법"이라고 경고했다.

총선, 석달도 안남았는데 지역구 확정 아직도 '깜깜'

비례대표 선거제도 합의 도출 못해 오늘 임시국회 '특검법' 등 총론 예고

어제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이 15일 기준으로, 86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게임의 룰'인 선거제에 대한 합의를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선거구 확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합의 범법형 회피를 단념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회신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말일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도 쌍특검법(김건희 특검·50여클럽 특검) 재표결,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 놓고 '김대중' 총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여야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어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앞기로 할 의했다. 다만 민생 법안 처리는 '제자리 걸음'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날 6월 정쟁의정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합

계하는 민생 법안 '2+2 합의제'를 가동했지만 관련 합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특히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 등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음에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주재원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의 상정이 불발됐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가 쌍특검법 재의결 문제 등에 대해 참여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내 쌍특검법을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인 옵션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대통령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추천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의견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북한인 감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북한인감재단 이사 추천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진척이 없는 상태다.

신용일 박민지 기자
mrmonster@kmb.co.kr

후보등록 50일 남았는데... 선거제·선거구 '깜깜이 총선'

與野, 주판알 뱅기며 협상 멈춰
1년 가까이 선거구획정 못하고
연동형·병립형 아직 '옥신각신'

■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리는 21대 국회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을 50일 앞둔 31일까지 선거제도와 선거구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여야가 옥신각신하고 있고 총선 1년 전에 확정해야 할 선거구는 여야 간 대대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제도는 재외국민 투표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 설 연휴 전에는 확정이 돼야 하는데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고 여야 간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선거구는 2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

역시 아예 협상이 멈춘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4년 전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논란을 가져온 만큼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예 구체적인 당론을 확정하지 못해 공식적인 여야 협상은 멈춘 상태다.

선거제도 확정 및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당하고 정치 신인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상당수 의원이 총선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직접 선

거제도와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형준 배제다 석좌교수는 “불을 자기들이 만들고 이해당사자들이 시간을 끌면서 선거구 획정도 안 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기·김대영 기자
▶관련기사 6면

문화일보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006면 중반

정치신인들 “어디로 출마하나” 울분

■ 22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50일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이 안갇속인 상황에서 정치신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출마해야 하는 거냐”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선거구 의석수 증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특례·경계조정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특히 의석수가 줄어드는 합구 지역 6곳을 어떻게 할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강세 지역이 손해를 보는 안이라고 반

발하면서 경기 부천이나 전북 대신 서울 강남구 의석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획정안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신인들은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대규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예비후보는 “정치권, 특히 정계특위의 무능함과 안일함에 대해 규탄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수조 동두천연천 예비후보는 “후보자의 피선거권,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보름·최지영 기자

東亞日報

2024년 2월 1일 목요일 A04면 중반

예비후보들 “내 지역구 맞는지도조차 모른채 명함 돌려”

“총선 70일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사무소 들 곳조차 몰라
지도부 빨리 협상 끝내야” 분통

“오늘 아침 출근길에 명함을 돌린 곳이 내 지역구가 맞는지도조차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

“지역구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 어느 동네에 선거사무소를 뒀어 할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 원의 예비후보)

총선이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늦어지면서 이미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급한 마음에 선거운

동을 시작했지만 ‘깜깜이 선거구’ 탓에 어느 동네까지가 내 지역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혼란이 가장 극심한 곳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합구 또는 분구를 제안한 지역구다. 경기 부천의 한 현역 의원은 “기존 지역구는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나누어 있었는데 획정위안(국)대로라면 그 기준부터 썩 갈아엎아야 한다”며 “일단 현재 지역구 경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획정위는 부천의 4개 지역구를 3개로 합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합구 또는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 출마자들은 당장 선거사무소를 어디에 낼지부터 막막한 상황이다. 공식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사무소를 1곳씩 설치할 수 있는데, 사무실 건물 외벽에 내걸 현수막을 내걸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입지

선정은 가장 중요한 초기 선거운동 전략 중 하나다.

선거구 획정위가 분구를 제안한 경기 화성 지역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한 예비후보는 “후원의 사무실은 기존 지역구에, 선거사무소는 새로 생긴 지역구로 예상되는 곳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기 평택갑 최호 예비후보도 통화에서 “어디에 현수막을 걸어야 할지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분구나 합구 이슈가 없는 곳 역시 예비후보들이 우왕좌왕하는 마진까지다. 선거구 인구수 하한 혹은 상한을 맞추기 위해 선거 때마다 경계 조정이 이뤄지는데, 이마저도 안갇속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충청 지역 원의 예비후보는 “기존 지역구 밖 경계 조정이 예상된 곳까지 일단 몰아다니며 명함을 뿌리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당 지도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건 선거구 획정 협상이 선거제 협상과 밀려져 있기 때문.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협상에 서둘러야 하는데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선거제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선거구 획정만 먼저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양당이 선거제 협상 과정에서 각자 원하는 선거구 명칭을 ‘교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보니 선거구 획정이 갈수록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분구 예정인 지역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야합을 떠나서 모든 후보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당 입장에서라도 협상을 빨리 해야 후보도 정하고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양당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을 차질피울 미루는 사이 협상을 뛰는 후보들만 새우등 타지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대표가 선거제 결단부터 빨리 내려 협상의 불고를 타야 한다”고 했다.

강성휘 yoo@donga.com·권규문 기자

여야, 유불리 맞춰 멋대로 선거구 조정... 총선 코앞에도 결론 못내

종로-중구 합구, 춘천 분구 권고 무시
전북-부천 선거구 축소 野 반발
선관위 조정권고 32곳 놓고 대립
"선거구 획정 3월초까지 갈수도"

"서울 종로 판례가 가짜이나 아래인데 중구도 붙일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관계자
"서울 성동구에서 중구를 떼는 게 누구한테 유리한지 불리하지 않기도 어렵다. 현상 유지가 낫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하는 권고안을 무시하고 현행대로 가기로 정장 합의한 데 대해 여야 관계자는 "유불리와 이해득실을 계산한 결과"라고 말했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인구수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면 법상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위원회 회장을 검토해 이의가 있으면 획정위원 한 차례 재회정을 요구할 수 있다.



총선 수거표 연습. 대선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31일 대전 중구 한일체육관에서 수거표표 절차를 연습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전자투표 뒤 투표용지를 달달이 검사하는 수거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한뉴스)

● 획정위 "조정 불가"며 여야 "유지" 앞서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하면서 "종로구와 중구 두 곳 모두 인구수가 감소해 합쳐도 상한선을 넘지 않아 '종로-중' 선거구로 유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총선 때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구, 중-성동을 선거구를 구성한 중구를 성동구에서 분리해 종로구에 통합해야 한다는 것. 획정안은 중구가 속한 중-성동구의 기존 성동구 읍수동 권역에 중-성동구에 있는 상수동 송정동을 붙이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는 중-성동구를 선거구로 인구 기준 예외를 허용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성동구엔 신촌 아파트가 대기 들어서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고 민주당에 불리해선다고 본

다. 반면 종로-중은 국회의원 최다행 의원이 있는 종로구에 민주당 박성준 의원(중-성동)이 관리하던 중구가 불이익 여당이 불리하고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여야 관계자들은 "핵심 지역 현역이 조정을 원치 않았다"고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 의원의 유리한 구도에 따라 선거구를 짜는 '게리맨더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획정위가 춘천-철원-화천-양구권에 속해 있던 춘천을 분리해 춘천강-울로 분구하려고 한 것과 달리 현행대로 가는 데 합의한 것도 여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어서다. 춘천-철원-화천-양구권은 민주당 허영 의원, 춘천-철원-화천-양구권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각각 현역이다.

● 시도별 정수 이전에 수심 곳 조정 못 해 여야는 당장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별 정수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획정위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맞바린 전북과 경기 부천의 1석 감축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획정위 안이 인구수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이에 다른 지역도 조정도 늦어지고 있다. 대표 작인 지역이 인구가 증가한 부산 북-강서갑을 2곳을 북강, 북을, 강서 등 3곳으로 나누는 문제다. 현재 북-강서갑은 민주당 정재수 의원, 북-강서갑은 국민의힘 김도을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산 중석이 예외된 상황에서 이를 피하려는 건 지역 반발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1일 본회의 처리가 불리나가면서 일러드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9일 이후에나 처리될 전망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與野, 선관위 권고 무시하고 종로-중구 합치지 않기로

與野 모두 "합구 않는데 유리" 판단
춘천 분구 권고도 따르지 않기로
후보등록 50일 앞 선거구 획정 난항

여야가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인구수 기준에 따라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지역구로 개편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또 춘천을 갑, 을로 분구하라는 권고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에 완료해야 할 선거구 획정을 총선 후보

등록 시작(3월 21일) 5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선거 유불리만 계산해 짬짜미로 합의한 뒤 획정위 권고안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여야 정개특위 간사가 종로구와 중구는 합치지 않고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획정위에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으니 현행대로 가는 게 예비후보나 지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야당세가 강한 중구가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종로구에 붙는 것을 손해라고 판단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중구가 분리된 성동구가 여당에 유리하다고 봤다"고 했다.

여야는 획정위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권을 선거구에서 춘천을 분리해 갑, 을로 나누라는 안을 낸 데 대해서도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갑, 을을 차지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야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나머지 지역 조정에는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5일 획정안을 제출한 지 두 달이 되도록 합의를 못 하고 있다. 전북 1석과 경기 부천 1석을 감축하는 안을 냈는데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다.

조권형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A4면에 관련기사

여야 '선거구' 잠정합의안 제출... '유불리 따라 나눠먹기' 비판

중로-중구-춘천 등 '현행대로' 민주당 "부천 대신 강남 줄여야"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일이 4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잠정 합의안만 중앙선거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세 지역인 전북과 부천 선거구가 줄어드는 획정위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국민의힘에 서울 강남구 의석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어 잠정 해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지난달 29일 획정위가 제안한 특례 설정 필요 지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가 새롭게 합의한 잠정 합의안을 제출했다. 획정위가 제시한 '중로구중구' '상동구갑·을' 구역 조정을 받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여야 서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강원도도 획정안대로 춘천을 갑, 을로 나누기보다 현행 선거구대로 가는 것에 여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이를 두고 획정위 권고안을 무시한 채 여야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를 자의적

로 나눠 먹기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구 내 동별 및 구별 경계 조정 역시 자신의 지역기반이 더 센 곳을 서로 가져가기 위한 물밑 협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획정위라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도 국회가 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정개특위는 획정위의 과도한 개입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획정위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 주요 쟁점인 의석 증감석과 그에 따른 추가 특례 조정이 있어

야 '짬짜미'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경기 부천이 아닌 서울 강남에서 1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강남은 갑·을·병 3석이 국민의힘 의원, 부천은 갑·을·병·정 4석이 민주당 의원이라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전북 역시 1석(이윤호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이날 초라도 추가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자고 압박하고 있지만, 29일 본회의까지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보름·김대영 기자

여야, 선거구 획정 막판 진통... 획정위 안 '우회' 특례지역 또?

동두천시·연천군 유지 위해 양주시 분할 부칙 개정할 듯 의석 증감 6곳 '기싸움' 여전... 오늘 정개특위 획정안 논의

여야가 오는 4월 총선 지역구 획정 방안을 두고 치열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획정위가 제안한 안을 우회하기 위한 특례지역을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가 제안한 각 6곳씩의 의석 증감 지역구를 두고는 유불리에 따른 입장이 팽팽하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달 29일 획정위에 일부 지역구에 대한 획정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안 제

출을 요구는 한 차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획정위는 현행 253개 지역구 수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역구 분구로 의석수가 늘어나는 6곳, 통합으로 의석수가 줄어드는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와 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 총 32곳의 조정을 권고했다.

여야는 지역구 조정 5곳 중 서울 중로구와 중구를 통합하라는 획정위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현행 서을 중로구, 중구성동구 갑·을로 유

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전남·경북·강원 등 획정위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지역구도 현행 유지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21대 총선처럼 획정위를 우회할 수 있는 특례지역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는 강원 춘천시를 분할해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지역구에, 전남 순천시 일부를 분할해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지역구에 속할 수 있게 했는데 여기에 더해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양주시를 분할해 속할 수 있게 하는 부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법률 위반이 아니면 획정위안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입법으로 이를 우회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획정위를 둔 선거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특례지역이 부칙으로 규정된다고 하면 입법 사항"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획정위에서) 특례지역을 수용해서 반영을 했다. 특례지역이라는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렇더라도 인구 범위 등은 획정위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역구 6곳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세지역인

경기 부천시·전북에서 의석수가 1석씩 줄어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잠정 합의안이 아니다. 아직 아니다"라며 "분구, 합구 부분에 대한 진전이 없고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석수가 1석 감소하는 노원구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현재까지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획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획정위가 획정안을 재제출하면 정개특위는 획정안을 확정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윤경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여야, 선거구 유불리 따지다 예정됐던 정개특위 취소

선관위 권고 합구지역 이견 못 좁혀
與 “전북-부천 축소” 野 “부산, 강남”
선관위, 국회에 “설前 비례제 결정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10총선 선거구 확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오후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거대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확정위원회(확정위)가 권고한 합구 지역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논의의 핵심인 합구 지역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총선을 68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회의가 미뤄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각각 강세인 지역의 선거구 합구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당 강세 지역인 부산이나 서울 강남의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정위 권고안에 따르면 부산 북·강서갑·을 등 2곳을 북갑, 북을, 강서 등 3곳으로 나눠야 하지만, 선관위가 제시한 적정 국회의원 정수에 따르면 오히려 부산 선거구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 현재 갑, 을, 병 등 세 개 지역구인 강남도 3개 선거구 평균 인구가 18만 명으로, 1석 감축 대상인 경기 부천(4개 선거구 평균 19만5000명)보다 우선 조정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구수에 따라 전북 1석과 부천 1석을 줄이도록 한 확정위 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전북 10개 지역구 중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을 제외할 9곳과 부천의 4개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 지역구다. 국민의힘은 부천 대신 강남에서 1석을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동일) 시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선을 달리면서 선거구 확정 이 2월 임시국회 내에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는 “선거구 확정 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3월 초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대 총선 때도 최종 확정안은 선거를 40여 일 앞둔 2020년 3월 7일에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확정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도 선거구 확정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총선 때 좀 더 앞당겨 진행하라는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이어지면서 재제출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도 선거제와 관련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바꿀 경우 투표용지 발급 등을 위한 프로그램 변경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최소 6주가 소요되니 적어도 설 연휴(9일) 전에는 윤곽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윤명진 mjlight@donga.com·권규승 기자

세계일보

여야, 선거구 확정 신경전 고조... 룰도 ‘안갯속’

전북·부산·부천·강남 합구 팽팽
정개특위 전체회의 결국 취소
野 “준연동형·병립형” 셈법 복잡
“李 대표에게 최종결정권 위임”

배민영·김나현 기자 goodpoint@segye.com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확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는 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하려 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일정 자체를 취소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제 관련 당론을 여야 정하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최종 결정권을 위임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구 확정 합의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각 당 이견이 좁히지 않아 일정이 취소됐다. 쟁점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확정안을 따를 경우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북, 경기 부천 선거구가 줄어들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선관위 확정안이 야당에 불리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서울 강남구 의석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강세 지역 내 의석을 축소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비례 의원 선출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될지, 병립형이 될지 또는 그밖에 다른 방식이 될지도 여야 오리무중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권에 대해 “이 대표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위임됐다”고 했다. 전 당원 투표로 당론을 정하자는 당내 주장을 두고 ‘리더십 부재’를 넘어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부담을 느낀 지도부가 공을 이 대표한테 넘긴 것이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더

이상의 최고위(회의)는 없을 것”이라고 해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 논의는 사실상 일단락됐음을 시사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입장 표명 시점에 대해서 “설 연휴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앞서 “전 당원 투표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책임정치”를 강조했다. 반면 지도부 한 관계자는 “전 당원 투표가 민주적이지 않겠나”라며 “권역별 병립형과 이중 등례제(지역구와 비례 중복 입후보)를 같이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 대조를 이뤘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할 뿐 별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게(연동형 비례제)는 본인(이재명 대표)의 핵심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권역별’이라고 불리는 것은 원래(병립형 비례제)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획정 지연’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
 명확하지 않은 法규정에
 부결 후속 절차 규정 없어

역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주요 일정

선거명 (선거일)	법정기한		실제 일정		
	획정안 제출 (획정위)	선거구 확정 (국회)	획정기준 통보 (국회→획정위)	획정안 제출 (획정위→국회)	선거구 확정 (법 공포일)
제20대 (2016.4.13.)	2015.10.13.	2015.11.13.	2016.2.23.	2016.2.28.	2016.3.3.
제21대 (2020.4.15.)	2019.3.15.	2019.4.15.	2020.3.4.	1차 : 2020.3.3. 2차 : 2020.3.6.	2020.3.11.
제22대 (2024.4.10.)	2023.3.10.	2023.4.10.	2023.12.1. (국회의장)	2023.12.5.	미정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선거의 경계선이 정해지지 않으니 다음 규칙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렵기 마련.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역량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토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모양새다. 선거구 획정안이 분회의에서 부결돼도 후속 절차에 대한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없는 것이 근원적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되풀이 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국회는 고질적인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20대 총선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 기구로 설치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역구는 의원들의 연임과 직결된 민감한 이슈인데다 획정위의 결정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서다. 제22대 총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2023년 4월 10일에서 이미 300일이나 지났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지역구 253명 유지, 인구편차 허용범위 내 최소조정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제시했다. 획정위는 사·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기준을 결정하고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해 12월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 획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치개별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고 수정 없이 선거구법률안으로 제안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이 제안된 후 첫 분회의에 이를 부의해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하게 된다. 다만,

정개특위 심사과정에서 획정위 획정안이 법 제25조 제1항의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개특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 재제출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모호한 규정이 지연 원인

획정안 재제출 요구를 고려할 때 선거구획정 지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년 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함에도 제20대 총선은 선거일 전 41일, 제21대 총선은 선거일 전 35일여야 각각 확정됐다. 관행적 선거구획정 지연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명확하지 않은 규정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선거구획정은 인구범위(상·하한 인구수)와 사·도별 의원정수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그 결정 주체와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다. 제20대, 제21대 총선에서도 여야가 이를 합의해 획정위에 통보했다. 지난해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획정 기준에도 여야가 합의한 사·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기준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재제출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가 제시한 선거구획정 기준에 획정위가 기속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획정안 부결되면 법적 절차 없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한 차례만 선거구획정안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제출을 요구해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재제출하면 해

당 법률안은 그대로 국회 분회의에 부의돼 표결하게 된다. 분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가결되면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지만, 분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에는 분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부결된 이후의 선거구획정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중대한 입법 미비 사항으로서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며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 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정치적 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적으로 이해충돌 금지를 명확히 하는 결단을 내리거나 공직선거법에 선거구 획정 관련 시기를 앞당기고,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 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흥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선거구 획정도 예산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다”며 “결국 국회가 스스로 ‘모럴 해저드’를 감성하고 탈피하지 않는 한 입법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공동기획 : 법률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 50일 남았는데... '깜깜이 선거구' 어쩌나

서울 노원 등 합구지역 놓고 이견
현역 프리미엄 탓 신인 '노심초사'
29일 본회의 확정안 처리 불투명

거대 정당의 고질적인 '늑장 선거구 획
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오
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
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18일에도
협상 재개에 실패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유권자와 정치 신인만 피
해를 보는 '현역 프리미엄' 불공정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전국 253개 지
역구 중 89명의 단수 또는 우선(전략) 공
천을 확정했고 44개 지역구에 대해선 경
선을 확정했다. 전체 지역구 중 52.6%의
후보자 윤곽이 드러났으나 선거구 조정
이 필요한 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

정을 모두 보류했다.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합의가 나올 때까지 공천이 보류되
면서 예비후보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여야 의견이 팽팽한 지점은 지역구
를 줄이는 합구 대상 지역이다. 앞서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
원회는 서울 노원, 경기 부천, 전북 등
에서 합구를 통해 지역구를 1개씩 줄여
야 한다고 했다. 광역시도 의원 정수 문
제는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까지 맞물
리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
특위) 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위 안이 민주
당 텃밭 지역만 손을 대는 '편파적인
안'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지역
구를 1석씩 줄인다면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부산에서도 1석씩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
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획정위 방
안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근접 선거구의 일부를 합치거나 나
누는 구역 조정과 자치구·시·군 내 경
계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원외 예비후
보들은 '깜깜이' 선거를 치르고 있다.
구역·경계 조정은 이미 정개특위 내에
서 잠정 합의가 이뤄졌고 대상 지역의
현역 의원도 물밑에서의 의견을 냈다. 반
면 원외 인사들은 논의에서 배제돼 '정
보비대창'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여야는 26일 정개특위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
리한다는 목표를 잡았으나 전망은 밝
지 않다. 29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선거일 39일 전에는 획정이 이뤄졌던
지난 21대 총선의 불명예 기록을 갈아
치우게 된다. 손지은 기자

총선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 언제까지 미룰 건가

총선이 50여일 앞인데도 선거구 획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
다. 당리당락에 따른 신경전으로 공직선거
법상 획정 시한(총선 1년 전)을 넘긴 지 오래
다.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는 고질적 병폐를
재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유권
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로 비
판받아 마땅하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에 앞서 선거구의 경
계를 정하는 일이다. 총선 주기인 4년간의 인
구 변동을 반영해 선거구를 통합하거나 분
구·신설한다. 그런데 직접 이해당사자인 여
야 협상에만 맡겨 놓아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2015년 선거법을 개정해 중립
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
정위원회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는 전
체 300석 가운데 비례 47석을 제외한 253개
지역구가 대상이다.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
회에 제출한 획정안에는 인구 상한선을 넘은
6곳의 분구,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친 6곳의 합
구, 지역구·경계 조정 20곳 등이 포함돼 있다.

여야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놓고 팽팽
히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노원
지역구를 현행 3곳에서 2곳으로 줄이는 획정

안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텃
밭인 전북에서 1석을 줄일 거면 국민의힘 아
성인 서울 강남에서도 1석을 줄여야 형평에
맞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획정위
획정안이 인구 변동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
인 만큼 원안대로 수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회에 한해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선거법 단서 조항을 악용해 여야
모두 법 위반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양쪽의 협상은 18일 현재 사실상 멈춘 상
태라고 한다. 어차피 의석 대부분을 양분할
테니 서두를 필요 없다는 태도다. 이런 상황
이면 획정위가 제시한 '데드라인'인 오는 21
일(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도 그냥 지
나칠 공산이 크다. 그로 인한 유권자와 정치
신인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지역구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유권자는 후보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국
회 입법조사처의 지적대로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운동장' 정리는 뒷전
으로 미룬 채 '선수' 선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
다. 지난 총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39일
전에는 야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을 확정했다. 이
번엔 내친김에 기록 경신이라도 할 셈인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날까지 선거구도 확정 못한 여야

국민의힘은 20일 현재 22대 총선 전국 지역구 253곳 중 164곳의 단수·우선공천 또는 경선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8곳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총선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선거구는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총선 1년 전 지역구를 확정토록한 공직선거법을 8개월째 위반하고 있다. 협상도 중단 상태다. 이렇다간 선거일 39일 전에야 선거구가 정해져 21대 총선의 '늑장기록'을 경신할 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확정안에서 인구 상한선을 넘는 6곳의 분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6곳의 합구, 구역조정 5곳, 경계조정 15곳 등을 제시했다. 지역구 32곳에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최소 64곳, 즉 4곳 중 1곳꼴로 경계선이 4년 전과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여야는 선거구가 어떻게 되건 말건 대진표 짜기에만 여념이 없으니 이런 무책임이 또 없다.

선거구 획정이 하염없이 미뤄지는 건 거대 양당이 이해득실에만 골몰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 방안에 한 차례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를 반영한 획정위의 수정안이 확정된다. 획정위원을 두고 국민

의힘은 원안대로 처리하지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강제지역인 서울 노원·경기 부천·전북에서 1석씩 줄어드는 것은 '여당 편향적'이라며 여당 우위의 서울 강남에서도 1석을 줄이는 재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총선 41일 전인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확정안을 처리하겠다고지만, 만날 약속도 없이 손만 놓고 있어 가능성이 희박하다. 역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18대 선거일 47일 전에서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으로 계속 늦어졌다. 이번에는 이마저도 경신할 태세다. 해도 해도 너무나 한 건 아닌가.

총선 선거구 획정은 차기 국회를 구성하는 출발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지연될수록 현역 의원들이 웃는다. 현역 의원에 비해 정견을 알릴 기회를 제한받는 정치 신인은 어디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명백한 불공정 경쟁이다. 더 큰 피해자는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받는 국민이다. 여야는 자신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고, 유권자를 우롱하면서 대의 정치를 말할 자격이 있나.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 차제에 국회 밖 기구를 통해 선거구 획정 시한을 강제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간곡필도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A649면 3사

여야, 의석 재분배 놓고 두 달 허비... 시한 또 넘긴 선거구 획정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대립 중인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산하 선관위 테드라인 아래까지 정쟁을 하지 못했다. 지역구 의석수 배분 문제를 두고 밀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시한에 쫓긴 더불어민주당에서 '획정위 제시 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본회의 차리룰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안 밖에서 정쟁 시한을 넘긴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보인다.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여야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강준석 민주당 의원은 선거구 획

정위를 둘러싼 게 먼저라는 분위기가 커져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해 12월 5일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 골자는 253개 지역구 중 6곳을 분구, 6곳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여야에 유리한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2개 의석을 줄여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데 유리한 서울 강남·부산은 안 줄이고 부천만 줄이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의석수 재배분을 요구했다.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는 두 달 넘게 공전 중이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 때마다 획정위로 넘겨진 선거구 획정 권한에 대해 국회는 명백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한해 1회 "재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안이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이를 수용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경우 선관위가 인구 비례에 맞춰 산출한 획정안이 불타돌아갈까 때문에 굳이 재배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날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여당이 획정위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야당이 획정위 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뒤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그대로 총선을 치르는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하지만 여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획

정위 최종안을 거부하면 현재 지역구가 유지될 수도 있고, 일단 임시 회에서 '인구 편차 그(이하) 규모 선거구 의인구수가 최소 선거구 인구수의 두 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밖의 제약을 제시할 수 있다"며 "선거 후 뒷담화는 위한 소문은 원의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싶" 받아들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바뀔 명분도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획정위 안 수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최

관한 협상의 여야가 전이 없다"는 우려의 보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상대를 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은 만큼, 선택의 여야가 마땅치 않다"며 "이런 주 중 성의를 통해 지도부 차원의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싶"은 뜻을 밝혔다. 여야는 26일까지 합의의 29일 본회의 차리룰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월 국회 차리가 무산되면, 선거구 획정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민주당 내부에서도 '획정위 안 수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최

나눔한글출판인쇄소 3자

與 “29일까지 선거구 결론내야”... 野 “수정안 내나라”

선거구 확정 싸고 티격태격

■ 4·10 총선이 43일 앞으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야 지도부는 여전히 선거구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며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29일까지 선거구 확정 결론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수용하거나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협상에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기존의 획

정위안을 고수하기만 했다”며 “결국 민주당은 확정위안이 매우 부당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눈앞에 닥친 국회의원 총선거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겠다고(확정위안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인제 와서 민주당이 확정위안을 한다고 하니 받아들이 수 없다고 한다”며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거나 아니면 확정위안을 받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빨리 입장을 정해서 오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구 기준으로 (나눠) 권고한 확정위안엔 국회에서 조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그런데도 전략적 판단 때문에 확정안 그대로 하자는 것은 기본적인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진 의원들도 최소한 합의된 4개 특례지역만이라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윤 원내대표는 권영세·김상훈·박대출·박덕흠·하태경·한기호 의원 등과 만나 선거구 확정에 대해 논의했다.

중진 의원들은 “29일까지 선거구 확정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선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공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권순현·김보름 기자

與 “비례 1석 축소·특례 4곳”... 野 “선거구 합의 못하면 원안대로”

여야 선거구 확정 협상 난항

與 “공공 선거구 되면 주민 피해”
野 “내일 본회의 넘기지 않을 것”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27일까지 4·10 총선 선거구 확정안 협상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했던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확정위 원안대로 총선을 치를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

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확정위가 인구 변화를 감안해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1석을 줄이라는 의견을 내자 민주당은 ‘부산도 1석 축소’ 주장으로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이 ‘전북 의석 유지 및 비례대표 1석 축소’ 협상안을 내놓았지만 홍 원내대표가 역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원내대표가 ‘서울 중로·강원 춘천·경기 양주·전남 순천’ 등 4개 지역에 ‘특례’를 적용해 기존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한 앞서 잠정 합의라도 인정하자고 요구했지만 홍 원내대표는 이 역시 거절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확정위 원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의 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9일 본회의를 넘기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여야 간 추후 협의를 진지하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확정위의 원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행정적 손실과 유권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확정위 원안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춘천이 단독 분구되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데 이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

지역구가 된다.

현재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의 현역 의원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는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의 대표성도 떨어뜨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서 유권자의 피해 역시 커지는 상황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이 늦어질수록) 경선이 무산돼 공천 자체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정치인들이 장난친다는 생각에 국민도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욱·황인주 기자

與 비례 1석 양보에도 ... 선거구 합의 막판 진통

본회의 하루 앞두고 협상 파행
典 "野, 선거구 요구 안 들어주자
정특검법도 재표결 앞장섰다" 등본
선관위 확정안대로 통과 '유력'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에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의 재표결도 29일 본회의에서 하지 않겠다고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더 이상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9일 오전까지도 협상이 불발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지난

해 12월 국회에 전달한 선거구 획정안 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획정위는 당시 서울 노원구와 전북에서 의석수를 1석씩 줄이는 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인천과 경기에서는 의석수를 1석씩 늘리는 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북 지역의 의석수는 유지하며 여야의 관련 협상이 공전해 왔다.

원구가 3석에서 2석으로 감소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인구 기준으로 서울 강남 지역구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1석 줄여 전체 지역구를 유지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강남이나 부산 지역의 의석수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산 추가 조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회담 정위 안대로 하겠다"며 협상을 포기하고 "간선 상형"이라고 했다. 김광래 민

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강사는 "부산 선거구 일부를 구역 조정하지는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세부 협상에서 뒤집었다"며 "민주당이 협상을 권 것처럼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정특검법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며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부권 등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제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이 이미 지난 해 12월 강행 처리한 정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총선 야당명을 우려해 빠른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박우연/홍용희 기자

선거구 획정 '역대 최장 지각' 기록 쓰나

부산-강원조정 이전-2월 국회 처리난항
'정특검법 재의결'도 연개-셈법 더 복잡
오늘 재논의-내달 임시국회로 넘길 수도

김영관 기자 yeon@segye.com

여야는 4·10 총선이 42일 남은 29일에도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과 '정특검법(김건희 여사 주주조각·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재의결 문제를 연 개헌안과 여야의 협상 전선은 한층 복잡해졌다. 당초 예정된 29일 본회의에서 정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윤재욱-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불발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심야 협상을 통해 '비례대표 1석 축소를 통한 전체 지역구 10석 현행 유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예초 1석 축소를 주장했던 부산에서 18개 지역구를 유지하는 대신 '남·북·강사구'의 경계 조정을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여야는 이날 '내외 관방'을 밝히며 협상 열의의 확인을 내걸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실제 국회 민주당 백재호(부산 남동), 정재수(북·강사구) 의원들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광래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부산과 관련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고 약속했음에도 협상장에선 막상 그 말을 순바다 뒤집는 듯했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 담판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정계특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협상 불발 시 29일 본회의에서 획정 위 원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획정 위 원안 중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한 데 묶어 '공통 선거구'로 만드는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안이 합의돼야 '정특검법'을 재표결할 수 있다고 못 박으면서 여야의 행방은 혼란 속이었다. 당초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정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입찰을 원한 윤재욱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통과와 상투권을 연계시킨 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이 재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무슨 이런 정치가 있다. 선거 때 마음싸워 고개 숙이기 조항하다가 약속 파기하는 정당이 광우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지 국민들이 무엇 하냐"고 비판했다.

여야는 29일 오전 정계특위를 열고 선거구 획정 담판용 이견 조정 예정이라 막판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 또한 있다. 그러나 획정위 재의결 등이라는 시간을 고려하면 정황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여야는 3월 초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표결' 본회의를 열 소집해야 한다. 그렇해 처리된 21대 국회는 선거 37일 전에 획정안을 처리한 16대 국회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틀 후 선거구 획정 법제시행(2023년 4월 10일)에 이어 재의선거인명부 작성(지난 21일을 넘기고도 아직 작성 안 해)이 뒤따라야 한다.

총선 41일 남았는데... 여야 선거구 획정 또 무산

'1년 전 확정' 법정 기한 못 지켜
획정위 "법률로 기한 안 정하면
앞으로도 지연 문제 반복될 것"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28일도 선거구 획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추가 협의를 통해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21대 총선 때는 본투표 39일 전

에, 20대 총선 때는 42일 전에도 선거구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작년 12월 인구 비례 기준에 따라 경기 부천과 전북 등에서 의석을 줄이는 선거구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뺏방'인 서울 강남과 부산에서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며 협상은 공전해 왔다. 여야는 최근 전북 의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방안을 놓고는 의회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획정위는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공문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연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획정위는 별도의 건의문에서 "2015년 공직선거법 신설로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했으나 이후 세 차례의 선거 모두 정치권의 침예한 대립으로 선거구 획정이 매년 지연되면서 법정 기

한이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20·21대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22대 국회 선거구 획정 기준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세 차례 촉구했으나 12월이 지나서도 필수 기준인 시도별 의원 정수 등을 받지 못했다"며 "현행처럼 시도별 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의 결정 주체가 법원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재정치권 협의에 의존하는 관행이 지속되면 선거구 지연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총선 D-40 '선거구 획정' 통과, 서울 1석 줄고 경기-인천 1석씩 늘어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 '쌍특검법' 재표결서 부결-폐기

서울에서 지역구 1석을 줄이고,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1석을 늘리는 '22대 총선 지역구 획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구 의석이 1석 늘어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의석수 300석은 유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기로 했는데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 1석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총선을 41일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를 확정하면서 최악의 낙장 사태는 피했지만 정치권에선 "비례대표를 줄여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는 품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에 따르면 22대 총선의 지역구 의석수는 254석으로 21대(253석)보다 1석 늘어난다. 비례대표 의석은 21대 47석에서 22대 46석으로 8년 만에 줄어든다. 서울에서 노원갑·을·병 3개의 지역구가 노원갑·을 2개로 줄여 서울 의석수가 49석에서 48석으로 감소한다. 노원갑(고용진·재선)·을(우원식·4선)·병(김성환·재선)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이 있는 곳으로 공천 단계부터 집안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경기에선 각각 4개의 지역구가 있는 부천, 안산이 각각 3개 지역구로 줄어든다. 그 대신 평택(2개→3개), 하남(1개→2개), 화성(3개→4개)에서 지역구가 1개씩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경기 전체에선 지역구 1석이 늘어나 60석이 된다. 합·분구가 이뤄지는 이들 지역은 평택을(국민의힘 유의중 의원) 지역구를 제외하면 모두 아권이 차지하고 있다. 인천은 서갑·을 지

역구가 서갑·을·병으로 나뉘면서 1석 증가해 14석이 된다. 갑석 논란을 빚던 전북은 의석수(10석)를 여야가 비례대표를 줄여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제3정당은 여야가 선거구 유폐리를 따지다 뒤늦게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로 합의안을 내놓자 "품수"라고 비판했다. 획정위는 "구체적 기준의 결정 주제, 방법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정치권 협의에 의존하는 관행이 지속되면 선거구 지역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여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석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은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폐기됐다.

김준일 jkim@donga.com · 윤영진 기자
▶4·5면에 관련기사

전북 대신 비례 1석 줄였다, 선거구 낙장 통과

총선 41일 남기고 획정안 처리

지역구 253석→254석·비례 46석으로 민주당 텃밭 갑축 반발에 비례 줄여 현역 기득권 위한 특례구역 5곳 합의 평택·하남 등 +1석, 노원·부천 -1석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선거를 41일 앞두고서다. 여야는 전북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20대 국회가 21대 총선을 불과 39일 남겨두고 처리했던 기록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법정시한(지난해 4월 10일)을 10개월 이상 넘기는 고질적 낙장처리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역 의원 기득권을 위해 선거제의 비례성을 약화시킨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재욱 국민의힘총의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에 돌입해 중앙선관위 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안 일부 수정에 합의하면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2월 국회를 남길 경우 여야 모두에게 돌아올 비난을 의식해야 하는 동시에 선거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우선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리고, 비례의석을 47석에서 46석으로 줄였다. 당초 획정위는 지역구를 253석으

로 유지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서울, 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텃밭 전북 의석 감축에 거세게 반발하자, 해당 지역 의석을 현행(10석)대로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대신 줄이기로 한 것이다. ★관련기사 3·4면

여야는 인구 범위 미달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하나의 자치구·사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우회하는 특례구역 5곳도 합의했다. 현행대로 △서울 종로 △중성동갑, 을로 선거구를 조정할 서울 중심 지역이 대표적이다. 획정위는 선거법 취지에 따라 △서울 종로중구 △성동갑, 을 3개 선거구를 제안했다. 정계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지역 유권자 정서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현역의원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북부 선거구에 대해서도 여야는 획정위가 제안한 △동두천양주갑, 을 △포천가평 지역구를 △동두천양주연천갑, 을 △포천가평으로 바꿨다. 동두천연천을 지역구 현역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 기존 연천을 때주고 양주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보다 연천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양주 일부만 받아오는 게 유리한 상황이다. 초·대선 선거구라는 이유로 획정위 제안인 △춘천갑, 을 △강릉양양 △속초철원화천 양구안계고성 선거구를 현행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을 △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으로 뒤를린 강원 역시 해당 지역구 현역인 이광수·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교했다.

손영하나광한정준기자 3·4면에 계속

영호남 지역구 살리고...만만한 비례 줄여

여야 총선 41일 전 선거구 합의 비례의석 20년새 10석 줄여
서울 노원구 3석 → 2석 조정
경기평택·하남·화성 1석씩 ↑

여야가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확정안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막판 합의 처리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넘기지 않고 합의에 이르면서 최악의 피해지민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게 되면서 제3지대를 중심으로 기득권 아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화합하고 선거구 확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 제출한 재확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에 따라 총 의석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줄이고 지역구를 253석에서 254석으로 1석 늘렸다. 확정안 원안은 전북 지역구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도록 했는데 이를 10석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역구가 1석 늘게 됐다.

서울은 노원 지역구가 갑·을·병에서 갑·을로 합구되면서 전체 의석수가 1석 줄어들어 총 48석으로 조정됐다. 인천은 서갑·을에서 서갑·을·병으로 분구돼 1석이 증가해 전체 14석이 됐다. 경기는 평택·하남·화성1석씩 각 1석 늘어나고 부천·안산이 1석씩 감소하며 최종적으로 1석이 순증하게 됐다. 전체 의석수는 60석이다.



민주당이 추가 조정을 요구했던 부산 선거구는 확정위 원안대로 합의됐다. 부산은 북강서갑·을이 북갑·을과 강서로 분구되고 남갑·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전체 의석은 18석으로 유지됐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4개의 '특례구역' 지정도 그대로 유지됐다. 강원도는 현행 선거구 8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선거구는 생기지 않는다. 이 선거구는 서울의 8배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 때문에 여야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경기도 양주 지역 일부를 동두천원천 선거구에 붙인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도 생기지 않게 됐다. 서울도 현행대로 종로와 중성동갑·을 지역구를 유지하고

전남 역시 순천을 분할해 현행 선거구 틀 큰 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가 거대 양당의 유불리에 따라 '벼락치기' 식으로 선거구 확정에 합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줄이는 대신 인구감소로 감축이 예상된 전북 지역구 의석수를 보전했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 싸움에 예고된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수까지 줄인 것이어서 제3지대와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17대 총선에서 56석이었던 비례대표 의석수는 18·19대 총선에서 54석, 20·21대 총선에서 47석으로 각각 줄어 들었다.

정계특위 소속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

히 규탄한다"며 "자당에 유리한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 없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깎으려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계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해당 시도 주민의 자존심과 관련돼 있다"며 "부득이 여야가 합의해 비례 의석을 1석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0년 사이 비례대표 의석이 무려 10석 줄었다. 선거의 불비례성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양당의 기득권 앞에서는 뒤로 손잡는 행태야말로 적대적 공생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경운·신유경 기자

민거레

2024년 3월 1일 금요일 001면 종합

강세지역 사수하려...비례 1석 줄인 거대양당

총선 41일 앞두고 선거구 확정
쌍특검법은 재표결서 부결...폐기

국회가 29일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고 지역구 1석을 늘리는 내용의 22대 총선 선거구 확정안을 의결했다. 4·10 총선을 불과 4일 앞두고 '녹장 처리'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익에 맞춰 비례대표를 줄인 결정에 녹색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의 제 밭고투 자기기아합"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5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22대 총선 선거구 확정안'을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47석에서 46석으로 줄고, 253석인 지역구 의석은 254석으로 늘어

났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 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확정위)는 지난해 12월 인구 증가를 반영해 서울, 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 유리한 지역의 의석을 지켜내면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꼼수'에 합의했다.

확정위는 애초 전북에서 전체 10석 가운데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석을 3석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여야는 4석을 유지했다. 그 밖에 서울에서 노원구 갑·을, 병을 갑·을로 합쳐 전체 의석을 49석에서 48석으로 줄이는 등 확정위 안대로 통과했다. 여야는 전체적으로 지역구 1석을 늘리면서 현 국회의원 정수(300명)는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

표를 1석 줄였다.

이날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5일 제 의원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재표결했으나, 재의결에 필요한 '재석 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2/3 이상(188명) 찬성'에 못 미쳐 모두 폐기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추가조각 의혹 특검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은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순환수 선임 기자 boysoo@hani.co.kr

여야, 텃밭 지키려 비례 1석 줄였다

선거구 확정안 베풀치기 합의

총선 1년전 처리해야 했지만 41일 앞두고서야 국회 통과 전북 지역구 10석은 현행 유지

여야는 29일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 전북 지역 선거구는 현행(10석)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구 확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지키기에 몰두하던 여야는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초 치기' 식으로 급히 합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 특검법' 대표결안은 이날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선 선거구 확정안 등 67개 안건을 처리했다. 선거구 확정안은 이날 재석 259명에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통과됐다. 인천·경기가 1석씩 늘고, 서울에서 1석을 줄이기로 해 전체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54석이 됐다. 대신 비례의석을 1석 줄여 전체 의석 수는 300석을 유지했다.

당초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전복에서도 1석을 줄이도록 권고했지만, 민주당이 "서울 강남과 부산 등에서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왜 전북만 줄여야 하나"고 반발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국 여야는 자신의 텃밭을 지키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돼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제의안은 재석 2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109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도 재석 281명에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최종 폐기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0명만 표결에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과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은 처리에 반대해 전원 퇴장했다. 김태준 기자 기사 A2면

지역구 싸움에 등 터진 비례... 20년 새 의석수 10석 줄었다

22대 총선 선거구 확정안
총선을 앞두고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22대 총선 선거구 확정안이다.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었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1석 줄여 전체 의석 수를 300석으로 유지했다.

지역구 싸움에 등 터진 비례... 20년 새 의석수 10석 줄었다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었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1석 줄여 전체 의석 수를 300석으로 유지했다.



경향신문

2024년 3월 1일 금요일 027면 오마니언

총선 41일 앞에 확정된 선거구, 언제까지 이 혼란 겪을 텐가

22대 총선 선거구가 선거 41일을 앞두고서야 확정됐다. 여야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4·10 총선 선거구 확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구 '늑장 획정'은 4년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구태다. 입법기관의 범위 위반뿐더러 정치 신인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강요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악습이다. 여야 정치권은 자성하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구 확정안은 현행 국회 300석에서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이고 지역구를 1석 늘린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이 10석인 전북 지역구 축소에 이의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확정안을 반대하자 국민의힘이 제안했다. 광역시도 간에도 인구 총수와 지역구 의석수 비례가 균일하지 않아 벌어진 줄다리기가 재연된 셈이다.

지역구 기득권을 위해 안 그래도 많지 않은 비례의석은 더 축소됐다. 소선거제만으로 부족한 대표·표·다양성을 보완하는 비례제도 취지에 비춰보면 퇴행이라 할 만하다. 거대 양당은 선거구 획정이 막힐 때마다 수순을 비례를 희생시키는 데 의기투합해 왔다. 17대 국회 56석이던 비례는 22대 국회에선 46석

까지 줄게 됐다. 정략적 답합이라는 소수정당들의 비판은 타당하다.

선거구 획정 논의는 그간 정략과 기득권 지키기 구태가 점철된 여야의 직무유기가 뒤집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선거 1년 전으로 못 박고 있다. 이번에도 국회가 10개월 넘게 법을 위반한 셈이다. 그사이 유권자들은 선거구 경계와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정당 공천 등 선거전을 지켜봐야 했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얼굴과 공약을 알릴 기회를 벗어난 것이다.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다. 이 때문에 현역 기득권을 지키려는 고의적 '늑장 획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선 먼저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갈등이 적은 새 국회 초기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정해야 이 혼란을 끊을 수 있다. 개선 방안으로는 국회 밖에 중립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뒤선 선거구를 확정하고 시한도 못 박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고 시간을 끌면서 유권자와 정치 신인을 우롱하는 판이니 강제적 방안도 필요하다. 여야는 유권자를 무시하고 참정권을 방해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부록 2-1

언론이 바라본 선거구획정 2. 지역의견청취 관련

[경북]

대경일보

2023년 05월 15일 월요일 005면 사회

군위, 총선 선거구획정 출발부터 ‘삐걱’

경북지역 의견수렴 공청회 국힘 관계자 불참 ‘반쪽행사’

오는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예정된 가운데, 2024년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북지역 선거구획정 공청회가 여당 없이 출발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지난 12일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마련을 위한 경북지역 의견 청취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관계자가 불참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처음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정의당 경북도당 이승열 사무처장,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대한지방자치학회 백석기 회장,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조영창 공동대표만 진출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획정위는 12일 “진출인들은 7월로 예정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한 경북지역 선거구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획정 방안, 면적 등 경북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석수 증대 필요성,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획정위는 “이날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획정만을 위한 독립기구로 구성된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은 지난 3월 10일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획정위 사무도 순연됐다.

획정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참여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강병한 기자 jameskang05@naver.com

대구KBS 인터뷰(관리팀장)



[전북]

전라매일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003면 총정

김제, 부안, 군산 묶어 2석 획정 방안 제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병삼)는 19일 전라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 의견 청취회를 실시했다. <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정의당 전북도당 김연아 사무처장, 황여치(안북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의 김영기 위원장, 국민주권 정치개혁 행동연대 김용재 상임대표, 두세훈 변호사, 진보당 전북도당 전권회 정

전북 기준 10석 유지에 방점

책임위원, 국민의힘 전북도당 한영군 기획과장, 전북도의회 한정수 의원이 진출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진출인들은 인구분위 하향에 미달하는 전북 지역선거구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획정 방안, 현행 전북 지역선거구 수 유지 필요성,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 청취를 제시했다.

황여치(안북시)민연대 전북 국회의원 수 10석을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을 모이면서 이를 위해 최대한 현역의 힘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선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데 한방대안소가 정한 선거구 인구 하한선인 13만5521명에 미치지 못하는 전북 지역구는 익산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해지선 밝히지 않았지만 ▲전주갑, 을, 병(3석) ▲익산갑, 을(2석) ▲김제, 부안, 군산(2석) ▲고창, 송림(1석) ▲완주, 임실, 순창(1석) ▲진안, 무주, 장수, 남원(1석) 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도 전주시 병의 인구 1등을 전주시 갑으로 편입하는 경제조정을 제시할 것을 제의하고 갑과 을을 병행도 했다. 익산시도 을 지역의 남산면과 삼기면을 김제지역으로 경제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기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을 완주 대신 남원으로 구역을 조정하고 완주, 임실, 순창 지역은 완주와 남원을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이병재 기자

부록 2.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10석 사수 한목소리... 해법은 '동상이몽'

전북 총선 선거구 개편안 의견 수렴 여야 모두다 10석 유지 필요성 강조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놓고선 제각각

정성학 기자

인구 감소세로 또다시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여야 모두 10석 사수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다만, 그 해법을 놓고선 제각각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북도청에서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진술인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 의견 청취회를 열어 이 같은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 도내 선거구의 경우 전체 10곳 중 ▲익산 1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인구 하한선(3만5,521명)에 미달돼 의석을 유지하는데 빨간불 켜진 상태다.

진술인들은 이를 놓고 22대 총선 또한 지금처럼 최소 10석을 유지해야만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소멸위기에 처한 도·농 복합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단, 그 해법을 놓고선 의견이 분분했다. 전북지방변호사와 추천인이자 완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위원을 역임한 두세은 변호사는 전주군 선거구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구의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완주만 떼내 이웃이자 인구 상한선(2만1,042명)을 초과한 전주병 일부와 통합해 가장 ▲전주·완주병인 선거구를 만들자는 안이다.

두 변호사는 "현재 완주군 주민들은 전주에 소재한 병원,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농어촌공사 등과 같은 많은 국가기관을 이용할 정도로 사실상 전주시와 동일한 생활권화가 이뤄진 상태"라며 "두 시군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공유한다면 양측 교포체증이 심각한 출·퇴근길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 전주완주혁신도시 현안 중 하나인 금융도시 개발과 철도역 유치에 힘을 받는 등 상승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여당측 진술인인 한영근 국민의힘 전북도당 기획과장은 완주를 전주가 아닌 동부권 선거구 개편안에 포함시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도내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지역구이자 인구 하한선 미달자인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가장 ▲완주·임실·순창으로, 현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가장 ▲남원·진안·무주·장수로 각각 변경하자는 안이다.

한 과정은 "완주와 남원만 선거구를 서로 바꾼다면 의석 수 유지는 물론 동일한 생활권이자 직선제 도입이후 분구된 사례가 없는 진안·무주·장수 선거구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주·완주 선거구 통합안을 놓고선 "타 선거구의 연쇄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안이라 단정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계하기도 했다.

새만금 선거구 통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돼 비상이 걸린 ▲김제·부안 선거구를 동일한 새만금권인 ▲군산 선거구와 통합해 가장 ▲군산·김제·부안 갑과 을 2개 선거구로 획정하자는 안이다. 이경우 지역 대표

성도 살리고 공동 사업인 새만금 개발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실장을 지낸 한정수 전북도의원(익산)은 "전북도민의 열원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은 물론 그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김제와 부안 선거구는 군산 선거구와 함께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밖에 혼란 방지 차원에서 자체적인 읍면동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11개 시·군만 개편방안을 집중 검토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와 승차목적 구도 등을 고려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권의 진보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은 "진정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사표도 방지하려면 개방형 대선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김안이 정역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인구 수만 단순히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중대선거구제 실시나 비례대표 확대 등과 같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공직선거법개정안과 전국시민운동연합(총재 나유민) 소속 전국 대의원 300여 명이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를 향해 국회의원 선수와 특권 축소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주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 의견 청취가 19일 정담국제저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희철 기자

인구 하한선 미달 3곳 조정 불가피

군산, 김제부안 합쳐 2석으로 익산갑은 익산을 일부 동편일 남원과 완주 맞바꿔 10석 유지 선거구 '전면 재검토' 주장도

내년 총선에서 전북 선거구 3곳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으로 마지막 보루인 전북 국회의원 10석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인구하한선 미달 선거구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정국권 대응이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지난 19일 전북도청에서 지역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진술인 7명이 참석해 행정구역과 지역 의견, 교통,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정주병' 1곳과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인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 3곳에 대한 획정 제안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전북 10석 유지'를 위한 '경멸병 비례대표 도입'이 가장 핵심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3곳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한 인구수 3곳 중 익산갑은 익산읍과의 분할 등을 통해 2곳 선거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이다. 이들 지역은 2대 총선 선거

구 획정에 적용됐던 현재 선거구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남원·임실·순창이 재조정될 경우 완주와 무주·진안·장수 등도 조정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주요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제안안은 '군산과 김제부안을 합치고 남원과 완주를 맞바꾸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과 진보당 측은 ▲익산갑은 익산을 일부 동편 일로 해결하고 ▲김제부안→군산갑제부안 갑·을, ▲남원·순창·임실, 완주진안무주장수→남원진안무주장수, 완주순창임실로 개편하는 안을 구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제부안의 경우 국회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 행정구역인 군산과 함께 조정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남원·임실·순창과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남원·임실·순창에 장수를 포함하자는 인도 제시했지만 주요 조정안은 각 정당이 내놓은 것과 비슷했다.

결국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를 무조건 인구 기준으로만 정하면 총선이다 지역구 분할합병이 이어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경우 해당 지역사회의사는 '어느 시군구와 합칠 것이냐'를 두고 갈등이 이어진다. 선거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건영기자)

“국회의원 10석 반드시 유지해야”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내년 총선 공청회 개최

정당과 학계·시민단체 등 참여
인구 하한지역 대표성 강화해야

전북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은 전북 국회의원 10석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등을 도입해 농어촌 등 인구수 하한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북도청에서 내년 총선 전북 지역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에는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진술인 7명이 참석해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향을 발표하고 방청객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인구기준 선거구 획정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민아 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1945년 당시 한국 인구는 약 2000만명이었는데 2012년 5000만을 돌파하면서 2.5배 이상 늘어났다”며 “하지만 전북 인구는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인구감소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1인구의 인구 격차 뿐만 아니라 지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가 진행된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발표 및 질의를 하고 있다. /정영기기자

체 소멸 등의 전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무시한 채 인구수리는 단순적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중대선거구제와 의석·권역별 비례대표 확대 등을 통해 전북의 현재 의석수 유지 방법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권의 진보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역사적으로도 다수 사표를 발생시켜 투표가 치러지는데도 20%가 넘는 표를 얻지 못하는 점을 간파 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의 결함을 패배한 채, 단순 인구비례에 입각한 표의 등가성만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일면적”이라고 비판했다.

와 같은 근본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대표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구 축소 비례제 확대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면서 “의원들의 기록을 침해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을뿐더러 지역구 1석을 축소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이 과거 선거구 획정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구절벽과 소멸의 현실에서 인구 중심의 획리적인 선거구 획정은 망국의 길”이라며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

례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김용재 국민주권 정치개혁행동연대 상임대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인구중심 등가성을 절대시하는 기준을 정하면서 선거구 획정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지역 대표성을 무시하고 단순 인구비례로만 선거구 획정 시 자칫 공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 상임대표는 “대도시 인구상향선을 더욱 끌어올리며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농어촌지역을 소선거구제로 유지하는 방안인 ‘농어촌 산림지역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과

신북중추위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002면 중판

“전북 몫10개 국회의석 사수” 뜻모아

선거구획정위 획정안 마련
도민의견 청취... 하한 인구
‘익산갑’ - ‘임남승’ - ‘김제부안’ 지역구일부조정등 제시

내년 4월 2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 선거구 획정에 관해 전북도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7명은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 선거구 획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인구수 상·하한선 기준에 벗어난 지역구를 일부 조정하거나 선거제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전북 몫의 10개 의석을 지켜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



다. 또 수도권 과밀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전북을 포함한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은 의석이 빠르게 감소하는 만큼, ‘인구 대표성’ 뒷받침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선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전북의 현행 선거구는 전주 3곳, 군산 1곳, 익산 2곳,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완주·무주·진안 등 10곳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선거구 하한인구는 13만 5천 521명으로, 도내에선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개

선거구가 기준에 미달해 현행 선거구 유지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 가운데 김제·부안 선거구를 인접한 군산과 합쳐 ‘특별 선거구’를 만들고 새만금 권역을 하나로 묶어 2명의 국회의원을 뽑자는 대안이 나왔다.

한정수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은 “국책사업인 새만금과 군산, 김제, 부안 등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다면 새만금사업도 현재보다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이 지역의 생활권이나 경제권도 비슷하게 묶여가고 있어 단일한 체계로 가는 게 맞

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구가 부족한 ‘익산갑’은 익산을 지역 선거구를 일부 떼어 붙여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역시 장수 등 인접지역을 하나로 묶어 의석 1석을 유지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김용재 국민주권 정치개혁행동연대 상임대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선거구 조정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일 뿐”이라며 “단순히 인구의 등가성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정치개혁 특위는 농어산림지역의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세훈 변호사는 “미국 델라웨어는 100만 명이 안 되는 인구가 살지만 상원의원수가 2석, 텍사스는 2천800만명이 거주하며 델라웨어보다 크지만 상원의원수가 2석으로 똑같다”며 “해외사례처럼 지방을 배려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영기기자 jungm@

▶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 8면 9면 10면 11면 12면 13면 14면 15면 16면 17면 18면 19면 20면 21면 22면 23면 24면 25면 26면 27면 28면 29면 30면 31면 32면 33면 34면 35면 36면 37면 38면 39면 40면 41면 42면 43면 44면 45면 46면 47면 48면 49면 50면 51면 52면 53면 54면 55면 56면 57면 58면 59면 60면 61면 62면 63면 64면 65면 66면 67면 68면 69면 70면 71면 72면 73면 74면 75면 76면 77면 78면 79면 80면 81면 82면 83면 84면 85면 86면 87면 88면 89면 90면 91면 92면 93면 94면 95면 96면 97면 98면 99면 100면



지난 19일 전북도청 강당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오세삼 기자

“전북 10석 유지...권역 비례대표 도입”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토론회

“지역구 축소, 비례제 확대는 현실성 결여. 전북 의석 10석 유지해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의견 청취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북도청 강당에서 김민아(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 김용채(국민주권 정치개혁 행동연대 상임대표), 두세훈(번호사), 전권희(진보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함영균(국민의힘 전북도당 기획과장), 한정수(전북도의원) 패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인구상향과 하한지역의 합구와 분구를 통해 전북지역 의석 10석을 유지하는 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였다.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정리한다.

“의석을 일부, 갑으로 편입을”

△김민아=전주 만성지구와 혁신도시가 있는 덕진구 일부와 신시가지가 있는 효자동, 서신동을 묶어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의석을 지역구의 일부 등을 갑으로 편입시켜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 김제부안 선거구를 군산과 통합해 군산김제부안갑, 군산김제부안을 등 2개의 선거구로 만들어야 한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장수군을 편입시키자는 주장도 제안해 본다. 또는 남원진안무주장수, 완주순창임실 선거구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장수, 임실남 지역구로 통합”

△김영기=전북 10석 유지를 위해 대승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전주

병 지역구는 초과인구를 조정해 전주갑이나 전주로로 합구하면 된다. 인구 하한인 익산갑도 마찬가지로 익산을 지역 일부 읍면동을 익산갑으로 분구하면 된다. 남원과 인접한 장수를 임실남 지역구로 통합하면 가능하다. 완주임실순창 선거구와 무진장남원 선거구로 분할하는 방식도 있다. 김제부안군을 동일한 선거구로 결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다른 안은 특례 조항을 마련해 전주 성덕동을 김제부안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도 있다.

“선거구 조정, 단기처방 불과해”

△김용채=인구상향을 초과한 전주 병은 전주갑과의 조정을, 하한선을 이탈한 익산갑은 익산읍과 조정한다해도 이는 단기처방으로 오는 2027년 선거에서 두 곳 모두 하한지역으로 전

락할 우려가 있다. 김제부안 지역구는 경제권으로 형성돼 있고 지리적 여건 인접해 있는 군산, 전주, 익산의 일부 지역과 조정을해도 해법찾기는 쉽지 않다. 결국 김제부안은 군산과 익산 어느지역과 연계하느냐, 남임순 선거구는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와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관건이다.

“전주병·완주군 합해 2개 지역구”

△두세훈=전주병과 완주군의 인구를 합하면 2개의 지역구를 만들 수 있다. 혁신도시의 경우 완주 이서면과 전주 장동을 각각 공유하고 있어 금융기관 유치, 철도역 유치 등의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이다. 새만금권역을 중심으로 군산김제부안갑과 군산김제부안을 나눠 재편할 필요가 있지만 경강권역을 중심으로 전주 예곡시터, 전미동 일부를 같은 지역구로 재편하면 전주완주 공동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김제부안·군산, 생활문화권 인접”

△전권희=단순 인구비례에 입각한 표의 등가성만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익산갑의 경우 익산읍과 일부 읍면동을 조형하면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 남원임실순창에 장수군을 포함하면 선거구를 지킬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완주임실순창, 남원진안 무주장수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김제부안 지역구는 새만금

경제권으로 형성돼 있고 지리적 여건 및 생활문화권이 인접한 군산을 포함해 두개의 선거구로 조정하면 된다.

“진무장 동일 지역구 유지돼야”

△함영균=전주병과 전주갑의 경제조정, 익산갑과 익산읍의 경제조정으로 상향과 하한을 충족할 수 있다. 새만금권의 군산김제부안을 통합해 2개의 지역구를 만들면 된다. 무진장 지역구의 경우 오랜기간 같은 생활권역을 형성해 온 점을 감안, 동일 선거구를 유지하되 남원과 완주의 구역 조정으로 인구하한을 충족하면 된다. 남원, 완주 구역조정 경우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거래면터링 의혹이 일지 않도록 소통이 필요하다.

“새만금 관할권·특자도 반영을”

△한정수=새만금 관할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지역 상황 등을 반영해 현행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북 특수성을 반영한다면 충분히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부안과 김제의 경우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 행정구역에 있는 만큼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전북은 특별자치도법 시행으로 다양한 특례를 지역 사정에 맞게 발굴추진할 계획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입법부인 국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강모 기자

선거구 획정 의견수렴 국힘·민주·정의 섀범 '같은듯 다른듯'

민주당 가장 서구·연수구로 나눠 A·B안 들고와 국힘·정의 일부 일치... 선거구 늘려야 한다는 점엔 한목소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의견수렴 청취회에서 여야 섀범은 달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정 부인천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청취를 실시했다.

각 당은 인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1-2개 늘려야 한다는 큰 틀에 한목소리를 냈고,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선 조금씩 차

이를 보였다. 우선 한대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선 연수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각각 A안과 B안을 나눠 의견을 제시했다. A안은 지리적요인과 정역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고, B안은 인구최소관차를 고려한 것이다.

연수구 선거구 조정 A안은 기존 연수구갑 선거구(옥련2동, 선학동, 연수1·2·3동, 청학동, 동촌3동)에 연수구를 선거구 중 옥련1동을 포

함해야 한다는 게 뼈대다. B안은 기존 연수구갑 선거구에 연수구를 선거구 중 옥련1동, 동촌1·2동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 A안은 서구 선거구를 갑을병으로 나눠 ▲서구갑(가정2·3동, 석남1·2·3동, 신현원창동, 가좌1·2·3·4동) ▲서구을(가정1동, 청라1·2·3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서구병(검단동, 불로대과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천동, 아라동)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 B안은 ▲서구갑(가정1·2·3동, 석남1·2·3동, 신현원창동, 가좌1·2·3·4동) ▲서구을(청라1·2·3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서구병(검단동, 불로대과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

길동, 마천동, 아라동)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 가지 안을 가져왔는데, 연수구는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즉 옥련1동, 동촌1·2동을 연수구갑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 갑을병으로 나뉘었으며 민주당의 서구 B안과 같다.

정의당 측은 국민의힘 측과 같이 연수구를 원도심과 신도심을 경계로 나누야 한다고 했다. 서구의 경우 이는 서구갑과 을의 등이 바뀌었을 뿐 민주당과 국민의힘측의 의견과 동일하다.

박소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인천지역 의견 청취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인천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명원 국민의힘 인천시당 조직담당, 정인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차성수 인

천YMCA 사무처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진술인들은 인구기준에 불부합하는 인천 지역선거구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획정 방안, 현행 인천 지역선거구 수 증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의 조속한 확정도 요구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성배기자

여야·시민단체, 인천 국회의원 수 '1석 추가' 한 목소리

국회선거위, 선거구획정안 의견청취 인구 비슷한 부산比 의석 5개 적어

인천지역 여야와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수를 1석 추가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청취를 실시했다. ▶▶ 관련기사 14면

이날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인천시당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의 대표로 참석한 진술인들은 모두 인천 지역선거구 수 증

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진술인들은 인천의 인구는 외국인 포함 303만 명으로 부산의 인구는 335만 명, 약 30만 명이 차이 나는 데도 국회의원 수는 부산 18명, 인천 13명으로 5명이 차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구비율로 따져봤을 때 인천지역 선거구가 1-2개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구의 경우 청라와 검단을 중심으로 인구가 폭증해 60만 명을 넘겼고, 특히 서구를 선거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인구 수 상한선을 약 5만 명 초과해 분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천의 선거구를

늘릴 경우 다른지역의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한발제란소의 판단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개별선거구의 인구비율을 따지는 것이지 광역시도 간의 인구비율을 따질 수 없다며 부산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구획정위는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게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오늘 전남서 의견 청취

정당·학회 등 의견 제시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두 달 이상 넘기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전남을 방문

한다.

22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3일 오후 1시 무안군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전

남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7명이 참석해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역민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국회의 선거제 개편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정근산 기자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위 전남서 의견 청취...여수갑 인구미달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두 달 이상 넘기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전남을 방문한다.

22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3일 오후 1시 전남 무안군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의 전남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7명이 참석해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역민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국회의 선거제 개편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인구 하한선은 13만5521명이다. 전남지역 선거구 10곳 중 여수갑이 유일하게 인구 하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양동민 기자



목포MBC 인터뷰기획운영팀장

진보당, 순천 해룡면 선거구 정상화와 갑·을 분구 촉구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전남지역 선거구 11곳으로 늘려야”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1달여 남겨놓고 광양시에 때이다 붙었던 순천시 해룡면을 순천시로 원상복구시키고 순천시를 갑·을로 분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 전남지역 의견 청취회’에 김선동 진보당 전남도당 24년 총선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회의원)이 참석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1달여 남겨놓고 순천시 해룡면을 때이다 광양시에 붙였던 최악의

게리먼더링을 규탄하고 이번엔 정상화해서 순천시를 갑·을로 분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여수시도 갑·을를 조정하여 2개 선거구를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구는 농촌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김선동 총선특위 위원장은 선거법 24조에 따라 선거일전 1년 전에 확정해야 할 국회의원 선거구를 아직도 확정하지 않은 국회의 위법과 직무태만을 지적하면서 현행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를 경우 국회의원 정수

를 7곳 이상 늘려서 전남지역 선거구를 11곳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만약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한다면 바람직한 선거제도로 ‘개방명부형 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전남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한 전남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도 민주당은 책임있는 당직자를 참석시키지도 않았고 민주당 추천을 받아 참석한 지방군 조선대 교수가 현행유지와 순천시 해룡면은 현재와 같이 광양에 붙이는 방안을 주장했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지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국민의 힘 전남도당에도 “전남지역 선거구획정에 대한 당론이라도 먼저 정리해서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쓴소리를 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당협위원장이 순천시의 갑·을 분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힘 전남도당 대표로 참석한 나정훈 전남도당 조직과장은 여수시 갑·을 합구와 인구 상한을 넘는 것을 용인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순천시를 분구하는 방안과 순천시 여수시를 3분할 하는 갑·을병 방안을 주장해 공청회에 참석한 해룡면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양성욱 기자

주목발보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0011면 8호

“괴산, 중부로 환원” 선거구 조정 목소리 고조

국회의원 최정위, 내년 총선 충북 의견 청취 “생활권 벗어나… 주민들 의사 대변 어려워”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 충북 남부3군(보은·옥천·영동)과 선거구가 통합된 괴산을 유사 생활권인 중부4군(충청·진천·음성)으로 다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권 선거구로 묶인 남부3군과 괴산은 지역적 여건, 교통, 생활권이 현저히 다른 데다 지역 주민들이 낯이 낄 주민들을 대변하기 어렵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2일 청주 세종시대 오소호발령회 개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충청북지역 의견 청취를 위해 괴산·영동·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괴산·영동·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괴산·영동·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괴산·영동·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옥천, 영동과 통합했다”며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뿐 아니라 연직과 행정 단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 소수에 의한 농촌지역 복지, 생활 편의가 더 중요하고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상으로 총복합역자지선연대 정책연구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때 괴산은 어느 지역을 붙일 것이냐”가 쟁점 문제였다”며 “단순히 인구 소수에 따라 편입된 괴산의 선거구와 괴산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와 “인구에 따른 괴산의 등가성도 중요한 선거의 원칙이지만 단원제인 현재 상황에서 지역·문화적 정체성, 행정 통합, 연직과 도민 의견 등도 선거구 획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와 함께 지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가다.

이렇듯 괴산 선거구를 남부3군에 편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한행시 중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과 경정은 지역 주민 의사에 직접 전달되고 생활권, 교통 등과 상당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괴산은 남부3군으로 통합되고,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 정치권 획득률이 낮다”고 꼬집었다.

또 “괴산은 지역적 영역이나 교통, 문화, 생활권에서 남부3군과 전혀 다르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두용 의원은 충북도당 조직담당관은 “선거구 획정 시 차이를 고려해 정치권이 정치권화하는 단계를 고려해 정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부4군으로 중부4군으로 남부3군에 통합4군으로 조정했다”며 “22대에도 선거구 획정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수를 중심으로 하고, 영역단계를 취하는 경향은

그해 4월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남부3군 선거구 통합과 동남부3군이었다.

괴산 지역은 생활권과 다르게 지역적 여건과 교통 등이 다른 남부3군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한행시기자
choonka@hanmail.net

중경백보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0041면 7호

“괴산선거구, 중부4군으로 돌아와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충북지역 의견 청취 나서 “인구 증가·감소 추세 고려 선거구획정 미리 준비”

내년 4월 11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 괴산군 선거구를 중부4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12일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북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리에서 괴산·영동·충청·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는 “괴산지역은 2016년 보은·옥천·영동과 선거구가 통합되거나 생활권 유은 충청·음성·충청·진천·음성의 “인구 소수인 괴산 지역을 편입하지 말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일 청주 세종시대 오소호발령회 “괴산·영동·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괴산·영동·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을 위해 “특정 지역 인구가 상향을 받았으며, 다른 지역은 인구 하향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다른 지역과 통합해야 한다는 등 현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진행했다”며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들어가지 않지만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23년에는 분구가 될 지역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차기 선거구 획정과 함께 차차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준비를 미리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이를 위해 차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인계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도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괴산·영동·충청·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행시 중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과 경정은 지역 주민 의사에 직접 전달되고 생활권, 교통 등과 상당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괴산은 남부3군으로 통합되고,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 정치권 획득률이 낮다”고 꼬집었다.

또 “괴산은 지역적 영역이나 교통, 문화, 생활권에서 남부3군과 전혀 다르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두용 의원은 충북도당 조직담당관은 “선거구 획정 시 차이를 고려해 정치권이 정치권화하는 단계를 고려해 정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부4군으로 중부4군으로 남부3군에 통합4군으로 조정했다”며 “22대에도 선거구 획정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수를 중심으로 하고, 영역단계를 취하는 경향은

전천·음성 21만5천400명, 보은·옥천·영동·괴산 16만2천782명이다.

중부4군 환원을 요구하는 괴산군의 인구는 3만8천여명으로, 남부3군에서 괴산이 제외되면 이 지역구의 인구는 12만4천여명이다. 반면, 중부4군으로 편입되면 이 지역구의 인구는 25만3천여명이다. 현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선거는 27만1천42명이며, 남부 지역구는 하향 인구수에 미달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앞서 2021년 괴산지역의 선거구와 단계를 국회의원 선거구 중부4군 환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괴산 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괴산 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괴산·영동·충청·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두용 의원은 “괴산·영동·충청·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괴산·영동·충청·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경 8호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0021면 8호

“보은·옥천·영동·괴산… 인구만 고려한 잘못된 선거구 획정”

최정위, 총선 대비 충북 의견 청취 동남권 선거구 획정 사례 지역·행정·문화적 특성 반영 국토 균형발전 고려 방안 논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2일 충북 청주시 ‘세종시대 오소호발령회’에서 진행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북지역 의견 청취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세경시기자

괴산은 보은·옥천·영동과 함께 묶은 선거구 획정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원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일 청주 세종시대 오소호발령회 “괴산·영동·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괴산·영동·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행시 중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과 경정은 지역 주민 의사에 직접 전달되고 생활권, 교통 등과 상당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괴산은 남부3군으로 통합되고,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 정치권 획득률이 낮다”고 꼬집었다.

또 “괴산은 지역적 영역이나 교통, 문화, 생활권에서 남부3군과 전혀 다르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두용 의원은 충북도당 조직담당관은 “선거구 획정 시 차이를 고려해 정치권이 정치권화하는 단계를 고려해 정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부4군으로 중부4군으로 남부3군에 통합4군으로 조정했다”며 “22대에도 선거구 획정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수를 중심으로 하고, 영역단계를 취하는 경향은

안정적으로 향상됐다.

청주시의회는 “괴산·영동·충청·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괴산·영동·충청·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행시 중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과 경정은 지역 주민 의사에 직접 전달되고 생활권, 교통 등과 상당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괴산은 남부3군으로 통합되고,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 정치권 획득률이 낮다”고 꼬집었다.

또 “괴산은 지역적 영역이나 교통, 문화, 생활권에서 남부3군과 전혀 다르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두용 의원은 충북도당 조직담당관은 “선거구 획정 시 차이를 고려해 정치권이 정치권화하는 단계를 고려해 정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부4군으로 중부4군으로 남부3군에 통합4군으로 조정했다”며 “22대에도 선거구 획정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수를 중심으로 하고, 영역단계를 취하는 경향은

어찌구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구 획정에 인구수를 중심으로 무리 편입과정을 취하는 경향은 충북 지역을 편입하고 지역적, 교통 및 문화 생활권 등을 반드시 고려해 정치권의 이해 관계보다 지역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반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 획정하는 “보은·옥천·영동과 괴산 지역을 편입하지 말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일 청주 세종시대 오소호발령회 “괴산·영동·충청·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괴산·영동·충청·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괴산지역은 2016년 보은·옥천·영동과 선거구가 통합되거나 생활권 유은 충청·음성·충청·진천·음성의 “인구 소수인 괴산 지역을 편입하지 말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일 청주 세종시대 오소호발령회 “괴산·영동·충청·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괴산·영동·충청·진천·음성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행시 중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과 경정은 지역 주민 의사에 직접 전달되고 생활권, 교통 등과 상당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괴산은 남부3군으로 통합되고,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 정치권 획득률이 낮다”고 꼬집었다.

또 “괴산은 지역적 영역이나 교통, 문화, 생활권에서 남부3군과 전혀 다르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두용 의원은 충북도당 조직담당관은 “선거구 획정 시 차이를 고려해 정치권이 정치권화하는 단계를 고려해 정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부4군으로 중부4군으로 남부3군에 통합4군으로 조정했다”며 “22대에도 선거구 획정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수를 중심으로 하고, 영역단계를 취하는 경향은

‘지역소멸 대응하는 선거구 획정’ 내년 총선도 회의적

경남 의견청취회서 잇단 지적
“인구 기준, 대표성 보장 못해”
논의·개선 필요 강조하면서
“시일 촉박해 반영 어려울 것”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남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제 기한을 넘긴 데다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이라 실질적인 의견 반영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인구 기준만 고집해서는 지역 대표성 보장은 어렵다는 우려도 지속할 전망이다.

획정위원회는 22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의석을 보유한 정당 경남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 추천을 받은 진술인 7명의 선거구 획정 의견을 들었다.

진술인들은 선거구 획정 법제 기한을 넘긴 탓에 의견 청취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제출 기한은 지난 3월 10일까지, 확정은 지난 4월 10일까지였다.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때론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데 입법기관인 국회 권위를 떨어뜨리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준다”며 기한과 관련한 규정을 현실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낙범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선거가 불과 8개월 남았는데 지금 논의가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며 “(의견이) 현실적으로 수용될지는 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이 22일 경남도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남지역 진술인들로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의견을 듣고 있다.

의적”이라고 말했다. 진술인들은 인구 기준 중심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제기하고 수도권 집중과 대비되는 지역소멸 가속화 우려를 의견으로 냈다.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가령 인구가 적은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 투표수가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 투표수보다 적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여럿 묶는 ‘공룡선거구’ 문제도 불거진다. 경남에 3~4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지역구가 3곳이다. 사천·남해·하동, 밀양·의령·함안·창녕, 산청·함양·거창·함천이다. 시군 4곳을 묶는 지역구는 경남 2곳을 포함해 전국에 11곳이나 된다. 강재규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는 “인구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유일한 선거구 획정 기준이 아니다”며 지역 대표성 기준도 같은 가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비대해진 수도권의 지역구 의원수는 절반에 육박한다. 그만큼 국회에 비수도권 목소리가 줄어들었다. 1988년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이후 전체 지역구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대 34.4%(전체 224석 중 77석)에서 21대 47.8%(253석 중 121석)로 높아졌다. 송광태 교수는 “서울 국회의원 정수는 49명으로 인구 19만 2000여 명당 1명 꼴인데 경남은 20만 명이 넘어 과소 대표된다”며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낙범 교수는 “(21대 총선 기준) 253개 선거구를 획일적으로 인구 비례 기준으로 획정하는데 대표성에 문제가 있지만 누구도 논의를 하지 않는다”

며 농어촌지역 등 과소 대표에 문제를 제기했다. 진술인들은 1개 선거구에서 대표자 여럿을 뽑는 중선거구제나 대선구제 도입 등 국민 대표성을 충실하게 반영할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국회가 지역소멸 가속화에 대응하는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해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 시 상한(2만 1042명)을 초과해 유일하게 도내에서는 불분할 선거구인 김해시 읍과 관례 해서는 2개 선거구로 분구하는 안, 선거구를 신설해 갑·을·병으로 두는 안, 을 선거구에 포함된 일부 지역을 갑 선거구로 변경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일부영 획정위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최흥석 기자 che@idomin.com

10월 2주
10월 2주
10월 2주

“인구 초과 김해를 조정해야”

선거구획정위, 경남 의견 청취
논이론 지역 대표성 강화
수·중대선거구제 병행
현행 선거구 유지 등 의견

내년 4월 10일 차질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경남도민 의견을 듣는 지사가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김해구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 김진철 경남

시민주권연합 대표위원장인 송광태 상임대표,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김도성 사무처장,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송광태 교수, 이희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처장, 최낙범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등 7명의 진술을 청취했다. 이날 의견 청취에서는 국회의원 선출 상한 인구수 27만1천42명보다 10만여명이 많은 도내 선거구 중 획정 불분할 선거구인 김해시를 조정해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연대차별평가 추천인 송광태 상임대표 교수는 “인구가 과잉일수록 1명 의정로 불

을 김해시로 편입해 3개 선거구로 편제하는 등의 방안이 언급됐다. 조희만 김해시도당 사무처장은 김해시를 선거구로 분구해 일부 등을 조정해 총 3개 선거구로 하자는 의견과 민주당이 선거구의 선별되고 이원화를 생활·문화권 관련을 고려해 민주당을 선거구로 조정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의원추천회 추천인 최낙범 경남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21대 총선과 동일하게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김해시를 선거구가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선거구는 하한인구수 13만5천521명당 상한인구수

수 27만1천42명의 범위 안에 21대 총선과 동일하게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선거가 끝나면 바로 논의 시작해 다음 선거일 1년 전에 모든 문제를 종결해야 선거로 실현될 수 있다”며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는 힘을 유해적으로 지적했다. 강재규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는 수 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거론하며 농산어촌 등 지역적 다양한 목소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흥석 기자

내년 총선 '김해을 선거구' 분구나 조정이나

선거구획정안 마련 의견 청취
"지리적 특성 감안 3개로 나뉘어"
"현행 갑 을 간 조절로도 충분"

내년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조정 대상이 된 '김해시를' 선거구의 분구 여부를 두고 지역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갑을병 3개 지역구로 분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현행 갑-을 간 조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맞선다. 선거구를 신설하지 않고, 밀양시를 김해로 편입해 갑을병으로 나누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남지역 의견 청취' 자리를 가졌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열린 이날 자리에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남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솔인들이 참석해 의견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는 법적으로 조정 대상이 된 '김해시'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인

구수는 15개월 전 주민등록인구수(2023년 1월31일)를 기준으로 하며, 한 선거구당 인구수는 13만5521명 이상, 27만1042명 이하여야 하는데, 김해시를 선거구의 경우 상한 기준보다 1만695명이 많은 28만1737명(거주불명자·재외국민 포함)이다.

창원대 송광대 교수는 "김해시 인구가 53만4935명으로, 전국 선거구당 평균 인구 20만3281명에 비해 많다. 따지고 보면 3개로 나뉘도 될 정도지만 법적으로 지역구는 253개로 정해져 있다"며 "갑-을 선거구 간 조절하는 방안을 생각해봤다. 현제 김해시를 선거구에 있는 진례면(7749명)과 회현동(9095명)을 갑선거구로 바꾸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회현동은 20대 총선 때 갑선거구였던 바 지리적 여건, 생활문화권 등에 부합될 것으로, 진례면 역시 생활권이나 정치 성향이 비슷한 측면 있어 갑선거구의 진영유과 동일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경남대 최낙범 명예교수는 "경남 16개 선거구 중 불부합 선거구는 김해시를 딱 한 곳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정 인구 기준 안에 있으므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지역 야당들은 김해시를 3개

선거구로 분구하는 안을 들고 나왔다. 진보당 경남도당 조용한 사무처장은 "인구,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장유와 내의·주촌·진영, 북부·동김해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민주당 경남도당 이홍석 수석부위원장은 장유지역, 원도심+북부·동부 등 지역+대동면, 내외동+칠산서부동+나머지 읍면으로 나누는 분구안을 제시했다.

이홍석 수석부위원장은 "선거구를 늘리지 않는다면, 밀양시를 김해로 편입해서 김해 갑을병 3개 선거구로 편제하고 의령군을 진주 선거구로, 함안군을 창원 선거구로, 창녕군을 거창함양산청합천 선거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진주시 선거구에 대한 의견도 일부 제시됐다. 민주당은 진주 갑 선거구에서 성북동(1만786명)을 위로 옮기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진보당은 "갑선거구 성북동과 이현동은 을 지역의 중앙동, 상봉동과 함께 구도심으로서 생활문화적으로 더 밀접하다"면서 갑선거구에서 성북동-이현동을 을 선거구로 넘기는 안을 제안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경남 선거구획정안 제시만큼이나, 법적 시한을 한참 남기고도 아직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끝내지 못한 데 대한 비판과 획정제도 문제점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진보당은 "사실상 이 선거구획정의 최소한의 도리가 1년이라고 생각하는 데 오늘로 내년 선거가 232일 남은 상황이다. 사실 군소 후보들이 이 제도에 의해 선거를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불공정한 싸움을 시작한 지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낙범 명예교수는 "총선이 8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시점에 선거구를 늘린다 줄인다 또는 지역 조정 등은 사실상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다. 선거구역을 조정했을 때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 또 선거를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를 수용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하다"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해봐도 선거구획정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도당 임동선 사무처장도 "매번 선거구획정을 위한 전제조건 등에 국회가 적극대응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면서 "선거구획정 문제에서 국회가 손을 떼고,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에서 논의한 후 국회는 무조건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기자 hmm@knews.co.kr

'상한인구 초과' 김해을 선거구 나뉘어

경남 선거구획정 의견 청취
논여촌 지역 대표성 강화
내년 총선 시간상 조정 못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남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 경남도민 의견은 국회의원 선출 상한 인구수 27만 1042명보다 1만 695명이 많은 도내 선거구 중 획정 불부합 선거구인 '김해시'를 조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의견 청취는 22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마련됐다.

한국지방자치회회가 추천한 송광대 창원대 교수는 "인구기준일(올해 1월 31일)로 볼 때 경남도의 획정 기준 불부합 선거구는 인구 상한기준을 초과한 김해시를 선거구 한 곳이다"며 김해시를 선거구인 진례면과 회현동을 김해시갑 선거구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홍석 민주당 도당 수석부위원장은 김해시갑·을 선거구를 갑·을·병으

로 분구해 도내 선거구를 기존 16개에서 17개로 확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김해는 장유신도시와 주촌선천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늘고 있어, 인구 상한선이 지난 21대 총선과 같다는 가정 아래 김해 인구가 55만에 근접하므로 3개 선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선거구 신설없이 조정한다면 밀양시를 김해시로 편입해 3개 선거구로 편제하는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조용한 진보당 도당 사무처장은 김해시를 선거구를 분구해 일부 등을 조정해 총 3개 선거구로 하자는 의견과 진주시갑 선거구의 성북동과 이현동을 생활·문화적 환경을 고려해 진주시 을 선거구로 조정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최낙범 경남대 명예교수는 지난 21대 총선과 동일하게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김해시를 선거구가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선거구는 하한인구수 13만 5521명

과 상한인구수 27만 1042명의 범위에 있어 21대 총선과 동일하게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2대 총선이 8개월도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를 늘리거나 줄이고, 조정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재근 기자

국제신문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006면 장2

“남·을 통합, 강서 분할... 부산 의석 18석 유지해야”

선거구 획정위, 지역 의견 청취 “신병2·구평, 사하을→갑 거론도 인구수로 획정 댄 지방소멸 심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23일 부산에 유라시아플랫폼에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주최로 부산지역의견청취가 진행됐다. 획정위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번이 8번째 자리다. 이날 의견 청취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부산시장 관계자와 학회, 시민단체 등 8명이 참석해 획정위 위원 6명에게 부산지역 선거구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참석자 8명 가운데 5명은 현행 18석 유지를 주장했으며, 17석 1명, 19석 1명, 20석 1명이었다.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보다는 현행 유지에 무게가 실렸다. 일부는 오히려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의석수 유지 또는 확대의 근거로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이 꼽혔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강영원 조직과장은 “당정의 기계적인 균형을 위해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 소멸을 심화시키는 완인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부산은 2030세대가 많고 유지, 가덕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인 현



23일 부산에 유라시아플랫폼 제1강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부산지역 의견 청취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원훈 기자 winstorm@kookje.co.kr

안이 산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최형욱 수석대변인도 “대한민국이 정체하는 건 수도권 일극화의 부작용”이라며 “이를 뛰어넘으려면 남부권 수도, 그중에서도 중심이 될 부산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어느 지역구를 합치고 쪼갤 것인가를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획정위가 지난 2일 내놓은 선거구 조장안에 따르면 부산에선 남갑·을, 사하갑은 합구 대상으로, 분례는 분구 대상으로, 북강서·을은 분할금지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참석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남갑

을 통합 ▷동래 현행 유지 ▷사하갑은 사하을과 선거구 조장 ▷강서는 북구와 분할하자는 의견이 주로 모아졌다. 구체적으로 사하을에서 갑으로 옮길 지역으로는 신병2동 혹은 구평동이 거론됐다.

강서를 분리한 뒤 북구를 갑으로 나눌 것인지, 단일 선거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북구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단일 선거구로 두는 게 맞다는 의견과 동래보다 인구가 많으니 쪼개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맞섰다. 획정위의 역할과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부산시

체대도현영 운영위원장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권한을 내리고 획정위가 적극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그 차원에서 가구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부산시장 이상한 대변인은 “22대 총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치를지 국회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지역별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 청취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유권자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MBC 인터뷰(기획운영팀장)

초준기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기획운영팀장
저희 획정위에서는 수치제 국회 정개특위에 공문 등을 통해서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 통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일보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006면 장2

여야 “부산 국회의원 18석 유지해야”

선거구 획정위, 부산서 의견 청취 정치권 “북구 분할·강서구 독립을”

부산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의 부산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현행 18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구 합구와 동래구 분할에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강서구 독립 선거구로 하고 북구를 2개 선거구로 나누자는 데에는 의견을 함께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오전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미션을 위한 부산지역 의견 청취 행사를 열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독립 선거구 유지가 필요한 하한 인구수는 13만 5521명이며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는 상한 인구수는 27만 1042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강영원 조직과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최형욱 수석대변인, 진보당 부산시장 김병구 정책위원장, 정의당 부산시장 이상한 대변인, 기본소득당 부산시장 홍지수 위원장을 비롯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도현영 운영위원장, 신라대 박재욱 교수, 동서대 이상수 교수가 참여했다.

국민의힘 강영원 과장은 “현재 국회의

원 정수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면 부산 국회의원 정수도 18석이 유지돼야 하며 선거구도 조정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현재 남구 등 선거구 조장이 언급되는 지역은 주택 재개발·재건축으로 향후 인구 수가 크게 유동적일 수 있다. 현재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다음에 큰 혼란이 야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2030세대가 밀집해(월드엑스포) 부산 유지, 가덕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같은 부산 현안과 지역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의석 1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형욱 수석대변인은 “현행 18석에 2석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강서갑·을 선거구를 북갑과 북을, 강서로 나누자고 했다. 북구는 선거구 분할에 필요한 인구 상한 기준을 넘었으며 강서구도 단독 선거구가 될 수 있는 인구 하한 기준을 넘어섰다.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인구 상한 기준을 넘은 동래구를 갑·을로 나누고 남구의 경우 일시적인 인구 감소이므로 현행 갑·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이상한 대변인은 “남구를 합치는 대신 강서구를 독립 선거구로 떼어내고 북구를 갑·을로 나눠 현행 18석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형 기자 moon@

중무필보

2023년 9월 4일 월요일 009면 중반

경기북부지역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기획위, 도 북부지역 의견 청취
고양을·경·인구 상한 초과 지역
동두천·연천 하한기준도 못미쳐
'선거구 신설·인근지역 병합' 분분

제22대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유지를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층실에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기 북부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원구 전략그룹 나무책 임철린트, 유재수 한국전문기자협회 경기 북부협회 지문위, 박승하 진보당 경기도당 부사무처장, 이경아 경기도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준호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처장, 장인봉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상 이번 총선의 인구기준일은 지난 1월 31일이었으며, 지역선거구 수는 253개다.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는 27만1천42명, 하한 인구수는 13만5천521명이다. 도 북부지역의 경우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고양을(31만2천152명)·고양영(27만1천512명)·파주갑(32만1천755명)이다. 하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선거구는 동두천·연천(13만3천205명)이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파주갑·을의 지역을 일부 조정해 한영 선거구 수를 유지하자는 데 입을 모았다. 그러나 고양을·영과 동두천·연천에 대한 입장은 분분했다. 고양의 경우 기존처럼 4개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지역을 분할하자는 입장과 1개의 선거구를 신설하자는 입장이 엇갈렸다. 또 하한 기준을 미달한 동두천·연천은 양주와 합치거나 포천·가평 선거구와 지역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된다. 강원구 컨설턴트는 "고양시 내에서 선

거구 경계를 조정해 불부합을 해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동두천·연천은 양주와 합쳐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갑과 을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수 지문위원은 "고양시의 경우 을·영·정선거구를 조정해 기존 4석을 유지하거나 기술적으로 1개 선거구를 증설해야 한다"면서 "동두천·연천은 포천·가평과 지역을 조정해 19만여 명의 포천·연천 선거구와 15만여 명의 동두천·가평 선거구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호 사무처장 역시 "양주시는 도 농북합치지역으로 은현면·남면은 동두천·연천 생활권이 될 수 있다"며 "여러 여건상 동두천, 연천, 양주시 일부를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하는 게 국민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합리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획정위는 오는 8일 2시께 선거연수원 별관동 다목적실에서 경기 남부지역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듣는다. 신대본기자

중무필보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002면 중반

“인구 많은 평택·하남·화성 선거구 신설해야”

선거구획정위, 경기남부 의견청취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 9곳 중
수원·시흥·용인은 조정 의견 제시
하한 미달 평택·화성 조정 바람직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부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선거연수원 대회의실에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기 남부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강원구 전략그룹 나무책 임철린트, 김재민 경기일보 부국장, 박승하 진보당 경기도당 부사무처장, 유병욱 정실련경기도협회와 공동사무처장, 이준호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처장, 임정민 성원대학교 교수, 정애리 경기프론트어문과예술단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는 27만1천42명이며 하한 인구수는 13만5천521명이다. 도 남부지역의 경우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수원

무, 평택갑·을, 시흥갑, 하남, 용인을·병, 화성을·병 등 9곳이다. 하한에 도달하지 못한 선거구는 광명갑이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평택갑·을과 하남, 화성을·병 선거구를 분구해 새로운 선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과 포수원부, 시흥갑, 광명갑, 용인을·병은 선거구를 일부 조정해 선거구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로 내놨다. 강원구 컨설턴트는 "수원부, 시흥갑, 광명갑 선거구의 불부합은 해당 시군서 경계 조정을 통해 해소 의견을, 평택갑·

을, 하남, 화성을·병 선거구의 불부합은 해당 시군서 선거구를 신설해 해소하는 의견을 제시한다"며 "용인을·병 불부합의 경우 용인시 내 4개 선거구 모두 경계를 조정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욱 공동사무처장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건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종속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순 없다. 늦더라도 최대한 심사숙고해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평

택갑·을과 인구가 대거 유입된 하남, 화성을·병은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다"며 "광명갑은 유출 인구수가 크지 않은 만큼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제안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은·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이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대본기자

도내 국회의원 얼마나 늘어날까?... 선거구획정 촉각

선거구 4곳→3곳 '대수술' 가능성 여전

경기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권선포인트 **안산**
상륙·강북을 단원·간원을 모두 하한인구수 넘어
확정 비례 인구 27만명 적지만 국회의원 1명 더 많아

안산시는 4개 선거구 모두 획정 기준에 부합하지만 3개 선거구로의 통합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있는 곳이다.
 안산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때도 4개 선거구에서 간·을·병 3개 선거구로 줄였다가 국회의 재획정 요구를 거둬들이 다시 상륙·강·단원·간·을 4개 선거구를 유지했다.
 이번에도 획정일 기준인 올해 1월 말 현재 모든 선거구 정량인구수(13만5천521명)를 넘어 4개 선거구 유지는 가능하다.
 전체 인구가 64만679명인 가운데 ▲상륙·강 20만2천963명 ▲상륙·간 14만1천21명 ▲단원·간 15만936명 ▲단원·을 14만3천87명이다. 상륙·을이 가장 적고 단원·을이 두 번째로 적다.
 4개 선거구 모두 하한인구수를 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3개 선

구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지난 8일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기남부지역 의견청취'에서 안산시를 3개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한 인구 수를 모두 넘어선 만큼 4개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의당 조윤민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전술원고를 통해 "안산시는 경기도내 다른 지역보다 인구 대비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행정성 차이를 선거구 수 기준 4석에서 3석으로 줄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산 인구는 3개 선거구인 화성·안산·간원(14만5천500명)과 비교하면 무려 27만3천821명이 적음에도 국회의원 수는 1명이 더 많은 상태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에 과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에서 국회 재획정을 요구하면서 여가 합의된 획정 기준을 비판하며 화성·안산을 거론한 바 있다.
 획정위는 "국회는 재획정 요구와 동시에 야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했다"며 "획정 기준에 화성·간원을 포함했으므로 했고 인구 기준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만 선거구 조정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어 "이러한 획정 기준은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 중 '화성·안산'을 각각 14석 중 각각 한 것을 이해당사자인 여야가 중립하게 조정할 때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 기준에 불부합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구 기준에 불부합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산 인구는 3개 선거구인 화성·안산·간원(14만5천500명)과 비교하면 무려 27만3천821명이 적음에도 국회의원 수는 1명이 더 많은 상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의 의견청취를 마무리한 가운데 경기도 국회의원수가 몇 석이나 증가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과 '지역선거구 수 및 사·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지 않아 변수가 있지만 획정위가 기초차료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거나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시·군 등에 출마하려는 주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인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내 획정 기준 불부합 선거구는 상한 초과 12곳(수원·무·평택·경북, 고양, 고양·평·시흥·강, 하남, 용인, 용인·평·과·수, 화성, 화성·평)과 하한 미달 2곳(경남·경, 동두천·연천)이다. 상한 인구수는 27만1천42명, 하한 인구수는 13만5천521명이다.

상한 인구 초과·하한 미달 시·군 총선 출마예정 주자들 예외주시
평택·하남·화성 분구 의견 다수
 10일 획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선거인수인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기 남부(21개 시·군) 지역 의견청취'에서는 평택과 하남, 화성 등 3개 시를 분구, 각 1곳씩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선거구 2곳(간·을·1, 3곳(간·을·병) 중 2곳(간·을·병)이 상한을 넘는 화성(4만(간·을·병)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이 3명인 화성의 경우, 올해 1월 말 기준 9만14천500명이다. 국회의원이 4명인 안산(64만679명)·부천(78만8천936명)보다 각각 27만3천여명, 12만5천여명 많은 상황이다.
 수원부와 시흥을 일부 행정동

을 수원부와 시흥을 일부 행정동으로 조정 수준에서 획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4곳 중 2곳(을·병)이 상한을 초과한 용인에 대해서는 "5개 선거구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경계 조정으로 해소"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경계 조정으로 해소할 경우, 일부 행정동을 분할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안산은 4개 선거구 모두 하한 인구수를 넘어 획정기준에 불부합하지는 않지만 안산 전체 인구수를 감안, 3개 선거구로의 개편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호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처장은 "경기 남부지역이 선거구 획정에 있어 최대 과대지역이 돼 온 측면이 있다"며 "반드시 인구기준을 따를 수 없다고 하면 특정 지역과 과대표 현상, 과소대표 현상을 바로잡고 경기도의 인구상향 초과 지역이 시·군·도시와 같은 기준으로 획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상한인구수 5만5천명 넘어 '분구' 불가피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해 획정일 기준(올해 1월 말) 32만6천496명으로, 상한인구수(27만1천42명)를 5만 5천454명 넘어 분구가 불가피하다.

하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미사1동으로 5만3천739명, 다음이 미사2동으로 4만7천218명, 신장2동으로 4만6천204명으로 세 번째로 많다.
 하남시 분구안과 관련, 미사지구를 중심으로 남북 분구 혹은 동서 분구가 함께 거론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8일 개최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기남부지역 의견청취'에서 임정민 성결대 교수는 하남시 분구와 관련, "인구와 면

경기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권선포인트 **하남**
미사지구 중심 '남북' 또는 '동서' 분구방안 거론
획정위 "인구·면적 감안 지방의원 선거구 참조"

적을 고려했을 때 분구의 참고기준으로 현재 지방의원(도·의·시·의원 선거구 일치) 선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남시 지방의원 선거구의 경우, 도의원(1·2·3), 시의원(가·나·다) 선거구로 구성돼 있는데, 1도의원(가 시의원)은 천현동, 신장1·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등 8개 행정동이 속해 있으며, 2도의원(나 시의원)은 덕풍1~3동, 미사3동 등 4개동, 3도의원(다 시의원)은 미사1·2동 등 2개동으로 이

뤄져 있다.
 1도의원(가 시의원) 선거구 8개동을 하남갑, 2도의원(나 시의원)·3도의원(다 시의원) 선거구 6개동을 하남을로 조정하고자 임 교수는 제안했다. 이는 미사지구를 중심으로 남북 분구하는 경우로, 인구는 하남갑이 13만1천206명, 하남을이 18만9천290명이 된다.
 강원구 전략그룹 나무 책임 컨설턴트는 미사1~3동과 덕풍3동 등 4개동(15만6천58명)만 하남을로

하고, 나머지 10개 동(17만438명)은 하남을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도심과 구도심을 감안, 하남을 동서로 분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덕풍1~3동과 신장1·2동, 천현동, 춘궁동, 위례동 등 8개동을 하남갑으로 묶고, 미사1~3동과 초이동, 감북동, 감일동 등 6개동을 하남을로 묶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면 하남갑 15만3천876명, 하남을 17만2천620명으로 남북 분구보다 인구차이가 크지 않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과 관련,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지역특성 무시한 획일적 선거구 기준 문제”

정차권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5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를 두고 여야 간의 견미가 첨예하게 대립, 이달 중 개편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특성 필요=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주최로 15일 강원연구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강원지역 의견 청취'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 여건, 교통, 생활권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획일적 기준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중일 국민의힘 도당 대변인은 “시·군·구가 3개 이상 합쳐져 1개 선거구를 획정하면 하한인구수 규정 없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강원연구원서 도내 의견 청취 하한인구 특례·춘천시 자체 분구 등 다양한 제안 나와 여야 비례대표제 방식 놓고 평행선 - 이달 중 개정 난항

민주당 도당 대변인은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 하나의 지역구로 압축되는 기초단체 수를 제한하는 등 특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도현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은 “강원도처럼 면적 대비 지역구 의원 수가 적은 곳은 정당별 비례대표를 우선 선별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구의 구체적인 획정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생활권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획정을 주장한 이효성 정의당 도당 사무처장은 “춘천시는 자체 분구가 필요하고 속초·고성·양양은 이들만의 선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덕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고문은 “춘천선거구는 단독 분구로 하고 속초는 접경지역과 함께 편제, 관광을 위해

양양은 강릉시와 연계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법률 개정 없이는 강원도가 특례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 선거제 개편 9월엔 가능하나=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다음달 12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1일 처리를 목표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이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정당별 의견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앞서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전국을 수도권·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하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며 “이번 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 달라”고 당부했으나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하늘·이현정기자

현행 선거구제 적용 맨 ‘춘천 단독분구’ 가능성 희박

중앙선관위 “현 상황 예측 무리” 획정위 “내달 12일까지 확정될”

도내 여야 “면적 특례 적용” 강조

차기 총선이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도 역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올해 4월 10일)은 불발된 가운데 춘천 단독 분구 실현이 불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안 마련이 주목된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공직선거법상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현행 선거구 중 18곳이 인구 상한(27만 1042명)을 초과, 11곳 이하한(13만 5521명)에 미달해 ‘획정 기준 불부합 선거구’에 속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선거구제가 22대 총선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기존 지역구의 석 ‘253석’ 내에서 선거구 분구 및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해당안이 적용되면,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먼저 축소시켜더라도 의석이 줄어들 곳보다 늘어날 곳이 많아 춘천 단독 분구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 입장에서 현행 강원도 의석정수(8석) 안에서 6개 시·군이 묶인 초대형 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이란 기형적 선거

구가 생겨난 만큼, ‘춘천 단독 분구’에 따른 불가피한 연쇄적 선거구 조정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춘천 단독 분구 예외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여야는 “인구 외 면적을 고려한 획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교해 인구 격차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구 면적 특례’를 적용, 인구 하한에 미달되더라도 하나의 선거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경우, 4개 시·군이 한데 묶인 복합 선거구가 5곳이나 발생된 강원도는 국회에서 시·도별 의원정수가 조율되는 과정에서 인구 기준 외 행정구역 총면적을 감안한 정치작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의석 확대도 기대해볼 여력이 생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어떠한 획정 기준을 확정해 주느냐에 따라 다양한 안이 나올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춘천 단독 분구 등 예측안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에 22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내달 1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획정위 춘천 단독분구 갑론을박 '초대형 선거구' 반복 우려

강원지역 의견청취 간담회 '축약 정치권 면적·인구범위 확대 강조 시민단체 비례대표제 확대 주장'

내년 4월 11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춘천 단독 분구'와 도내 '초대형 선거구' 문제가 맞물리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주최한 강원 지역 의견청취 간

담회가 지난 15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도내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농산어촌 면적 확대,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면적 차등 적용 등을 주장하며 도내 선거구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현안은 '춘천 단독 분구'였다.

도정차권을 대표해 진술인으로 참석 한 현종일(국민의힘)·허소영(더불어민주당)·이효성(정의당) 등 도내 각 정당 대변인은 '면적 확대', '인구범위 확대' (현종일·허소영) 등을 주장하며

"춘천에 오롯이 갑·을 선거구 2석을 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종일 국민의힘 도당 대변인은 "춘천(인구)을철원, 화천, 양구에 뒤 준 입장이 됐다"며 "절경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특례로 인구와 현선의 기준을 예외 적용하자"고 했다.

하지만 홍재우 선거구획정위원은 "춘천 분구를 위해 한 석을 늘리자고 하면, 타 시·도(국회의원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고 난색을 표사했다.

시민단체 측에선 지역 경제성에 대한 고려없이 농산어촌 지역에 '초대형

선거구'가 반복되는 점을 짚었다.

권오미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 민연대 고문은 "(선거구로 묶이는) 시·군 수가 아니라 지역 공통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보여줄지 보자"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다른 인구 기준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윤도현 강원시 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춘천을 어떻게든 분구하려고 하면 지역 이기주의의 가 될 뿐"이라며 지역 요소를 반영한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했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는

영위원장 역시 강원도 8석을 유지하면서 춘천 단독분구는 사실상 어렵다"며 '면적' 기준 적용과 주둔군인 반영을 촉구했다. 허소영 민주당 도당 대변인은 "있는 파이(제한된 의석수)를 갖고 나 누려고 하니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사회적 다양성' 등에 초점을 맞추는 획정기준을 언급했다. 이효성 정의당 도당 대변인 역시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강원도 문화권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하

[서울]

선거구획정위, 서울 공청회 개최... '성동구·강동구 조정' 의견 청취

기사일력 : 2023년 10월 20일 17:56 | 최종수정 : 2023년 10월 20일 1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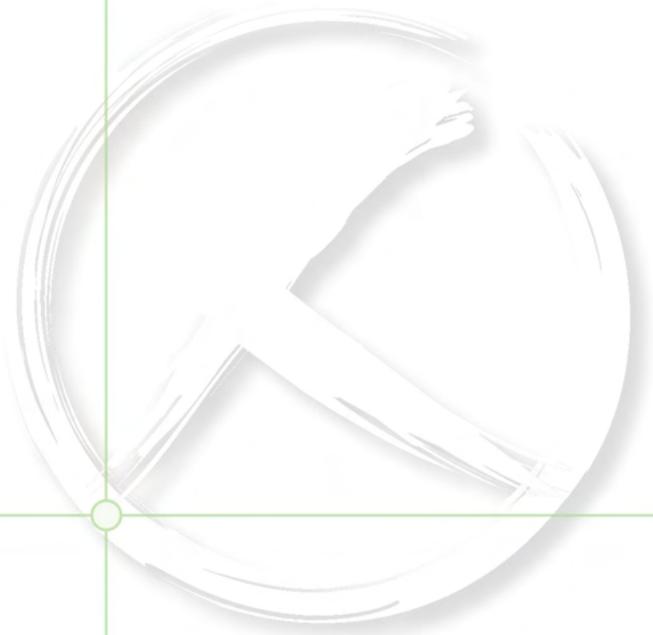
'강동 갑·을 선거구 경계 조정' 논의 '성동구 단일 선거구로 환원' 현수막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20일 서울 지역 공청회를 열고 '성동구 단일 선거구 환원' 및 '강동 갑·을 선거구 경계 조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위 관악청사에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서울지역 공청회'를 열고 진술인 및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 주관 서울 지역 공청회가 20일 오후 중앙선거위 관악청사에서 개최됐다. 2023.10.20 hong90@newspim.com



부록 3



관련 법령 및 규정

1. 공직선거법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규정



부록 3

관련 법령 및 규정

1.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4. 3. 8.>

②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 3. 3.>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 3. 3.>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⑦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⑧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
-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⑫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지원 조직”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다.
- ⑭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6. 19.]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

- ② 국회의장은 제24조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3. 3.>

⑥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회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 [본조신설 2015. 6. 19.][제목개정 2016. 3. 3.]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 3. 3.>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3.>

③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3. 3.>

[제목개정 2016. 3. 3.][2004. 3. 12. 법률 제7189호에 의하여 2001. 10.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별표 1을 개정함.][2016. 3. 3. 법률 제14073호에 의하여 2014. 10.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3항 별표 1을 개정함.]

부 칙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 지리적 여건 · 교통 · 생활문화권의 고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를국회의원지역구에, 경기도 양주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연천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사퇴하거나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7조의8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이 법 시행일 후 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국회의원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그 국회의원지역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의 범위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확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0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제6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2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 20.]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68호, 2023. 1. 2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소관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원이 국회의원 또는 당원이 된 때에는 해촉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항의 해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위원회가 위원 선정을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① 획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이 획정위원회의 회의(이하 “위원회의”라 한다)에 출석한 때 또는 획정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별표의 제1호에 따른 일비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0.>

- ② 위원의 안전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제2호에 따라 안전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 20.>

제7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새로이 구성된 획정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1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① 획정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일련 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0.>

-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④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제3장 지원 조직

제10조(지원 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획정위원회 사무를 지원 하기 위한 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

제1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의 수집·검토에 관한 사무
2. 획정위원회 지원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
3.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4.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사무

제12조(공무원의 파견) ① 법 제24조제12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획정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파견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 칙

제13조(자료요청 등)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무처리 등) 획정위원회의 조직·인사(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위원장이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제15조(위임규정) 획정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획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568호, 2023.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제24조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
2.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을 기재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장 호선공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후단의 경우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회의 개최일 전 2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③ 의결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속기록을 첨부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회의록 등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정당의 의견진술)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0항에 따라 정당이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진술 방법·순서 및 발언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되, 정당 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 등 공청회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청회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공청회 개최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언론관계자와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의 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하거나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이 선거구획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강령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삭제 <개정 2023.1.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정당의 의견진술에 참석한 진술인
2. 제8조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3. 제9조에 따른 토론자 또는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등

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윤리강령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공정하게 획정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이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강령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윤리강령 준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2조(품위 유지) 위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치적 중립) 위원은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제4조(청렴성, 공정성)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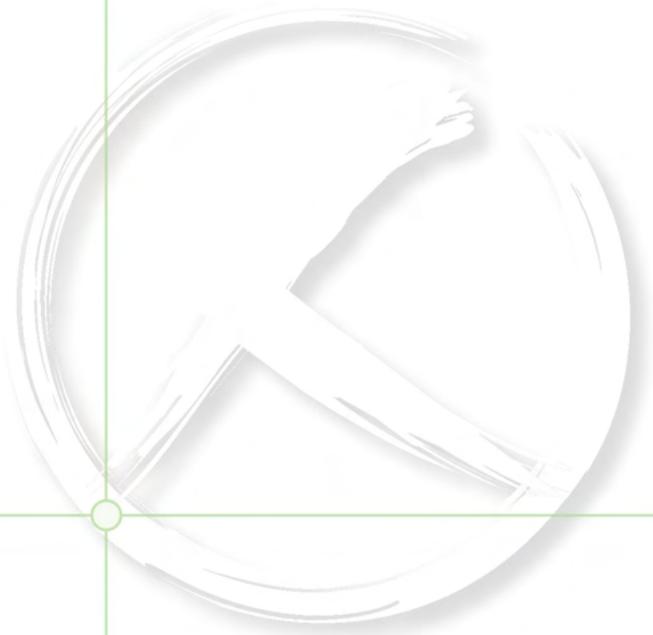
② 위원은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며,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① 위원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직무상 비밀의 유지)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한다.

제7조(직무 외의 활동) 위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언론 인터뷰, 토론 참여, 신문 기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으로 비추어지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부록 4



역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기준



부록 4

역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기준

구 분	국회구성	선거구제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구획정기준																																				
제21대 (‘20)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53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정위원회(‘18. 12. 7. 구성)에서는 국회의 선거구획정기준을 적용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20. 3. 6.) <p>[선거구획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기준일) 2019년 1월 31일 현재로 함. - (인구편차 허용범위)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인구수는 13만9천명 이상 27만8천명 이하로 함. -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인구 증가로 상한 기준을 초과하여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내에서 인접 6개의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강원도 춘천), 또는 해당 시·도의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라남도 순천)에 예외적으로 분할함. / 제21대 국선에 한해 경기도 화성시 병의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하여 화성시 갑의 선거구에 속하게 함. -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시·도</th> <th>정 수</th> </tr> </thead> <tbody> <tr><td>서울</td><td>49</td></tr> <tr><td>부산</td><td>18</td></tr> <tr><td>대구</td><td>12</td></tr> <tr><td>인천</td><td>13</td></tr> <tr><td>광주</td><td>8</td></tr> <tr><td>대전</td><td>7</td></tr> <tr><td>울산</td><td>6</td></tr> <tr><td>세종</td><td>2</td></tr> <tr><td>경기</td><td>59</td></tr> <tr><td>강원</td><td>8</td></tr> <tr><td>충북</td><td>8</td></tr> <tr><td>충남</td><td>11</td></tr> <tr><td>전북</td><td>10</td></tr> <tr><td>전남</td><td>10</td></tr> <tr><td>경북</td><td>13</td></tr> <tr><td>경남</td><td>16</td></tr> <tr><td>제주</td><td>3</td></tr> </tbody> </table>	시·도	정 수	서울	49	부산	18	대구	12	인천	13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59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
시·도	정 수																																							
서울	49																																							
부산	18																																							
대구	12																																							
인천	13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59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																																							
				※ [참고] (‘20. 3. 3. 제출) [선거구획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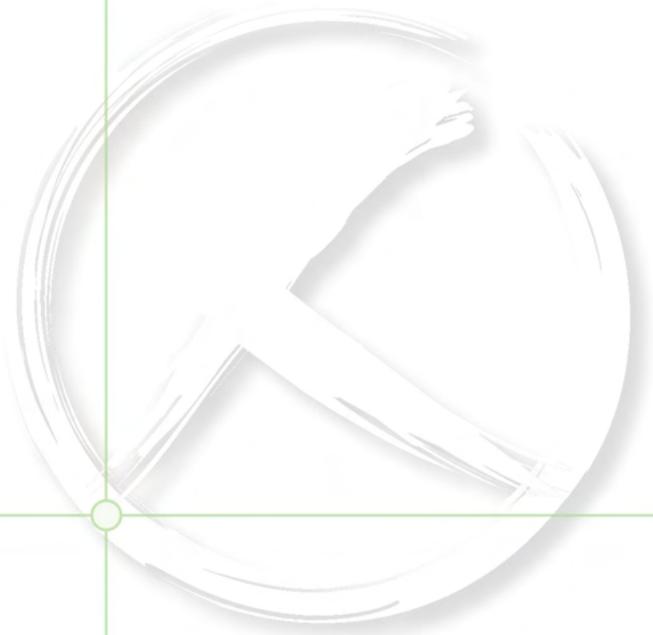
구 분	국회구성	선거구제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구획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편차 허용범위)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수는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 상하 33$\frac{1}{3}$%인 136,565명 이상 273,129명 이하로 함. -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table border="1" data-bbox="724 409 1240 97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60%;">시·도</th> <th style="width: 40%;">정 수</th> </tr> </thead> <tbody> <tr><td>서울</td><td>48</td></tr> <tr><td>부산</td><td>18</td></tr> <tr><td>대구</td><td>12</td></tr> <tr><td>인천</td><td>13</td></tr> <tr><td>광주</td><td>8</td></tr> <tr><td>대전</td><td>7</td></tr> <tr><td>울산</td><td>6</td></tr> <tr><td>세종</td><td>2</td></tr> <tr><td>경기</td><td>60</td></tr> <tr><td>강원</td><td>8</td></tr> <tr><td>충북</td><td>8</td></tr> <tr><td>충남</td><td>11</td></tr> <tr><td>전북</td><td>10</td></tr> <tr><td>전남</td><td>10</td></tr> <tr><td>경북</td><td>13</td></tr> <tr><td>경남</td><td>16</td></tr> <tr><td>제주</td><td>3</td></tr> </tbody> </table> 	시·도	정 수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3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
시·도	정 수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3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																																							
제20대 (16)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53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정위원회(15. 7. 15. 구성)에서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기준을 적용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16. 2. 28.) [선거구획정기준] -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국회의원 253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확정함. - (인구기준일) 2015년 10월 31일 현재로 함. - (인구편차 허용범위) 하나의 지역선거구의 인구수는 140,000명 이상 280,000명 이하로 함. -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그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함. -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구 분	국회구성	선거구제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구획정기준	
				시·도	정수
				서울	49
				부산	18
				대구	12
				인천	13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1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
제19대 (12)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46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정위원회('11. 9. 6. 구성)에서는 하한 104,342명(남해군하동군), 상한 304,107명(강서구갑)을 기준(인구편차 2.9:1)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11. 11. 25.) ※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부산) ② 북구강서구를선거구(부산) ③ 서구강화군을선거구(인천) ④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경북) 	
제18대 (08)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45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정위원회('08. 1. 18. 구성)에서는 2개의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08. 2. 15.)하였고, 하한 104,000명, 상한 312,00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획정(인구편차 3.0:1) ※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부산) ② 북구강서구를선거구(부산) ③ 서구강화군을선거구(인천) 	
제17대 (04)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43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가 지역구 획정에 관하여 인구하한 10만 5000명, 인구상한 31만 5000명의 기준을 설정하여 획정위원회에 통지 ○ 획정위원회에서는 하한 105,892명, 상한 295,916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획정(인구편차 2.8:1) ※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부산) ② 북구강서구를선거구(부산) 	

구 분	국회구성	선거구제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구획정기준
				③ 서구강화군선거구(인천)
제16대 (00)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27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하한 9만, 상한 35만을 기준으로 통·폐합 및 분구하고,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운대구기장군선거구(부산) ② 북구강서구선거구(부산) ③ 서구·강화군선거구(인천)
제15대 (96)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53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하한 7.5만, 상한 30만을 기준으로 통·폐합 및 분구하고,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7.5만 이상~30만 미만 : 1개 선거구 - 인구 30만 이상~60만 미만 : 2개 선거구 - 인구60만 이상 : 3개 선거구 ※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운대구·기장군선거구(부산) ② 북구·강서구선거구(부산) ③ 계양구·강화군선거구(인천) ④ 목포시·신안군선거구(전남)
제14대 (92)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37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하여 획정 ※ 약 인구 20만명당 1인 선출
제13대 (88)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24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하여 획정 ※ 약 인구 20만명당 1인 선출
제12대 (85)	단원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184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선거구당 2인 선출 ※ 약 인구 40만명당 2인 선출
제11대 (81)	단원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184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선거구당 2인 선출 ※ 약 인구 40만명당 2인 선출
제10대 (78)	단원제	중선거구제 유 정 회	154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고 각 선거구의 인구를 감안하여 획정하되, 선거구당 2인 선출 ※ 약 인구 40만명당 2인 선출
제9대 (73)	단원제	중선거구제 유 정 회	146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고 각 선거구의 인구를 감안하여 획정하되, 선거구당 2인 선출 ※ 약 인구 40만명당 2인 선출
제8대 (71)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153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20만명당 1인 선출

구 분	국회구성	선거구제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구획정기준
제7대 (‘67)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131 (44)	○ 인구 20만명당 1인 선출
제6대 (‘63)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131 (44)	○ 인구 20만명당 1인 선출
제5대 (‘60)	양원제	소선거구제 (민 233인) (참 58인)	233	○ 인구 15만 초과시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 선거구를 증설하되 인구가 비등하도록 획정(민의원 선거의 경우 4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
제4대 (‘58)	단원제	소선거구제	233	○ 인구 15만 초과시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 선거구를 증설하되 인구가 비등하도록 획정
제3대 (‘54)	단원제	소선거구제	203	○ 인구 15만 초과시 그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의 선거구 증설 ※ 15만 미만 : 1개구, 15만~25만 : 2개구, 25~35만 : 3개구, 35~45만 : 4개구
제2대 (‘50)	단원제	소선거구제	210	○ 인구 15만 초과시 그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의 선거구 증설 ※ 15만 미만 : 1개구, 15만~25만 : 2개구, 25~35만 : 3개구, 35~45만 : 4개구
제1대 (‘48)	단원제	소선거구제	200	○ 인구 15만 초과시 그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의 선거구 증설 ※ 15만 미만 : 1개구, 15만~25만 : 2개구, 25~35만 : 3개구, 35~45만 : 4개구





부록 5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및
직원 명단



부록 5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및 직원 명단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

(2024. 3. 8. 기준)

구 분	성 명	경 력	비 고
위원장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위 원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 원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위 원	장선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 인문사회교양학부 강사	
위 원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위 원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 원	최준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 원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위 원	홍재우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 직원 명단

(2024. 3. 8. 기준)

구 분	성 명	소 속	직 급	비 고
사무국장	조봉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선거연구부장	부이사관	
기획 ·운영팀	조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실 감사1과	서기관	팀장
	문주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행정주사	
	서은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 사이버조사과	행정주사	
	최일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국 홍보과	행정주사	
	구원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선거연구부	행정사무관	팀장
관리팀	강민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육연수부	행정주사	
	김재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국 총무과	행정주사	